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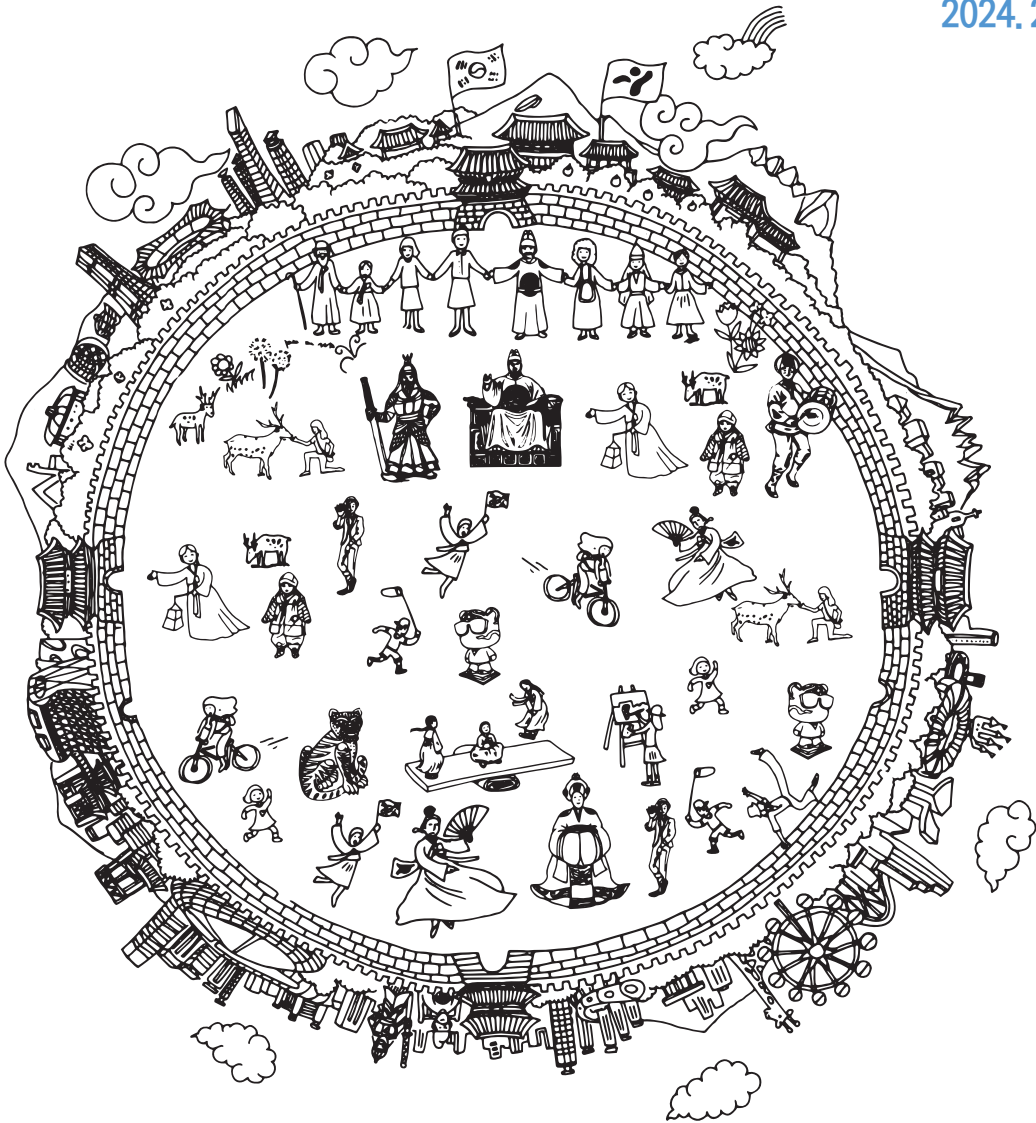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49호
2024. 2. 1.(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24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4-254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행정예고]

제2024-264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2
------------	------------------------------	----

◆ 고 시

제2024-60호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3
제2024-61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6
제2024-62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9
제2024-63호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9
제2024-64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9
제2024-6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6
제2024-66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2
제2024-67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279
제2024-68호	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2
제2024-6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301

◆ 공 고

제2024-184호	서울공예박물관 자료구입공고	304
제2024-192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315
제2024-1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18
제2024-20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20

제2024-211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327
제2024-21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332
제2024-21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333
제2024-219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34
제2024-22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335
제2024-224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 예고	336
제2024-22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348
제2024-226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54
제2024-229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60
제2024-23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62
제2024-23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364
제2024-23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395
제2024-23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396
제2024-242호	도시관리계획【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397
제2024-243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399
제2024-245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403
제2024-2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05
제2024-258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409
제2024-26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14
제2024-28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415

◆ 구 고 시

제2024-8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노원구)	560
제2024-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571
제2024-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573
제2024-2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577
제2024-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변경) 고시(관악구)	580
제2024-2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서초구)	585
제2024-12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588

◆ 구 공 고

제2024-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성북구)	591
제2024-1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성북구)	592
제2024-1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593
제2024-1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595
제2024-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597
제2024-1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599
제2024-1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601
제2024-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603
제2024-215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강동구)	605

◆ 사업소고시

제2024-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608
-----------	-------------------	-----

◆ 기 타

제2024-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609
제2024-3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610
제2024-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611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9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7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팩 스: 02-768-8917
-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도시계획과
- (3) 이메일: hanie98@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
(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⑩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⑪ ----- ----- ----- ----- ----- ----- ----- ----- ----- ----- ----- .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54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직무대행 단서 신설 (안 제24조)
- 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안 제32조)
- 다.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33조)
- 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FAX : 02-768-8869
- 2) 이메일 : public409@seoul.go.kr
-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충분한” 을 “충분하며 안전한”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 을 “위촉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고” 를 “맡고” 로, “된다” 를 “맡는다” 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모두” 를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로, “때는” 을 “때에는” 으로, “대리한다” 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분기” 를 “분기별” 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33조 본문 중 “출석한 자에 대하여” 를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35조 중 “2024년 9월 21일” 을 “2027년 9월 30일” 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①·② (생략)	제2조(기본이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u>충분한</u>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 ----- <u>충분하며 안전한</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u>외측직</u>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3조(구성) ① ----- ----- ----- ----- <u>외측위원</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u>되고</u> ,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u>된다</u> .	⑤ ----- --- <u>맡고</u> ----- ----- <u>맡는다</u> .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u>모두</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u>대리한다</u> .	④ ----- <u>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u> --- ----- <u>때에</u> <u>는</u> ----- <u>대행하고</u> , <u>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u> <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u> <u>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현행	개정안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 분기별 ----- ----- ----- ----- ---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현행	개정안
<u>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당) ----- ----- ----- -----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운영세칙) ----- ----- 필 요한 ----- -----.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u>2024년 9월 21일까지</u>로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u>2027년 9월 30일</u>-----.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64호****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제21조, 제24조)
-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안 제30조)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력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과(전화: 02)2133-5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2) 이메일: yyjang@seoul.go.kr
- 3) 팩 스: 02)2133-0775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운영하되”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영 제31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만 50세”를 “50세”로, “만53세”를 “53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만55세”를 “55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57세”를 “57세”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달성 할”을 “달성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법 제19조 및 영 제30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제6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훈련 주관기관의 장”을 “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공무원이 제출한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성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지도·감독사항”을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훈련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훈련공무원은 훈련목적에 맞게 훈련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때”를 각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시비로”를 “시 예산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비용으로써”를 “비용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비용”을 “주관부서의장은 총비용”으로, “판단”을 “판단하여 지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을 “별표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3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1조 중 “지급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41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4조 중 “훈련주관부서장”을 “주관부서의장”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일할계산 하여”를 “일할계산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체제비”를 각각 “체재비”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환수 할”을 “환수할”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를 “영 제34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8조제1항 단서의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란”을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영 제33조 각 호의”를 “영 제35조제1항 각 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를 “법과”로,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을 “없어”로, “바”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무 복무한”을 “의무복무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를 “법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를 “법 제19조”로, “의무복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자에 대한”을 “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복무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무복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국외훈련이수공무원이”를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무 의무”를 “복무의무”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로, “시비”를 “시 예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성과”를 “시장은 훈련성과”로, “승인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파견기간”을 “훈련공무원이 파견기간”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훈련의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어 학 요 건

(제10조제2항 관련)

훈 령 종 류		어 학 성 적
장기 훈련 (6월 이상)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IELTS 5.5점, G-Telp (Level 2) 70점, TOEIC 700점, NEW TEPS 32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단기 훈련 (6월 미만)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IELTS 5점, G-Telp (Level 2) 60점, TOEIC 590점, NEW TEPS 29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

(제28조 관련)

1. 항 공 료 :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과 시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2. 체 재 비

가. 5급 이하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과 같음

나. 4급

－ 일반훈련(대학원 학위과정 등)

구 분	지 급 기 준
가 산 비 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0% 가산

－ 직무훈련

구 분		지 급 기 준
체 재 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70% 가산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50% 가산지급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달러

다. 3급 이상

구 분	지 급 기 준
체재비가산비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 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생략)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③ (생략)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회의) <신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 ----- ----- -----.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제>
제9조(국외훈련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훈련계획) ①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 국외훈련 공무원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 ----- ----- ----- -----.

현행	개정안
1. 영 제3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6개월 이상의 장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만 50세 이하의 자(직무훈련의 경우 국장급은 만53세 이하)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3. ----- ----- 50세 ----- ----- 53세 ----- -----
4.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시 전입 2년 이상인 자)인 공무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만57세 이하인 자	4. ----- ----- 55세 ----- ----- ----- 57세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① ~ ⑤ (생략)	제13조(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 ----- ----- ----- ----- 범위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훈련기관 선정) 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제14조(훈련기관 선정) ① -----

현행	개정안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국외훈련의 파견) ①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발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훈련기간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9조(일시귀국)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로 일시귀국한 경우에 일시귀국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제20조(훈련계획의 변경) ① 훈련기간 중 부득이	----- ----- 달성할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외훈련의 파견) ① ----- ----- 법 제19조 및 영 제30조 ----- ----- 범위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일시귀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 ----- 범위 ----- -----. 제20조(훈련계획의 변경) ① -----

현행	개정안
한 사유로 훈련계획 (훈련목적·기관·기간·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연령이 50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의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제21조(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①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그리고 파견기간 종료 3일 전까지는 <u>훈련 주관기관의 장</u>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 종료 전까지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4조(훈련성실의 원칙) ① 훈련공무원은 훈련	----- ----- ----- - 각 호의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범위 ----- -----. 제21조(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① ----- ----- ----- ----- ----- <u>주관부서의장</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공무원이 제출한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성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제24조(훈련성실의 원칙) ① -----

현행	개정안
기간 중 법령 및 주관부서의장 등의 <u>지도·감독</u>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u>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u> ----- -----.
② 훈련공무원은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u>	② ----- ----- ----- ----- <u>훈련수행</u> ----- ----- -----.
<신 설>	③ 훈련공무원은 <u>훈련목적에 맞게 훈련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위조, 변조, 포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27조(복귀명령) ① 훈련공무원이 영 제32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크게 벗어난 때(이하 "중도복귀"라 한다)는 다음 <u>각 호</u> 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복귀명령) ① ----- ----- ----- ----- ----- <u>각 호 어느 하나</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때	7. ----- ----- <u>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u>
② 영 제33조에서 정한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때	4.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훈련비) <u>시비</u> 로 실시하는 국외훈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의료보조비 등)를 지급한다.	제28조(훈련비) <u>시 예산</u> 으로 ----- ----- ----- ----- -----.
제29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그 밖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u>필요한 비용으로서</u>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 실무수습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29조(학자금) ① ----- ----- ----- ----- ----- <u>비용으로써</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지급한도액은 연도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훈련기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자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훈련기간 동안 지원 가능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u>총비용</u> 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여부를 <u>판단</u> 할 수 있다.	③ ----- ----- ----- ----- ----- ----- ----- <u>주관부서의장은 총비용----- 판단하여 지급-----</u> -----.
제30조(항공료) ① 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급한다.	제30조(항공료) ① ----- ----- <u>별표3에 따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훈련공무원이 제2항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견 요청 시에 주관부서의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u>호적등본</u>)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u>가족관계증명서</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제32조----- ----- ----- -----.
제31조(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체재비, 특수지역 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는 별표 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u>지급</u> 한다.	제31조(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 ----- ----- ----- <u>지급한다</u>.
제33조(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① ~ ③ (생략)	제33조(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1조에 따른 의무복무 위반에 대하여 훈련비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환수사유 발생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39조-----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훈련비 차액지급)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u>훈련주관부서</u>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제34조(훈련비 차액지급) ----- ----- -----

현행	개정안
<u>위 내에서</u> 국외훈련 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훈련비 정산) ①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u>일할계산하여</u>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견 종료시점의 <u>체재비</u>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고, 그럼에도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u>체재비</u>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② ~ ⑤ (생략) 제36조(훈련비 환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훈련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위를 미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u>환수</u>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7조(의무복무) ①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은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u>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8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 <u>제38조 제1항</u>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란 훈련	<u>주관부서의장</u>----- <u>별</u> <u>위</u>----- ----- -----. 제35조(훈련비 정산) ① ----- ----- ----- ----- ----- <u>일할계산하여</u> ----- ----- ----- <u>체재비</u> ----- ----- ----- <u>체재비</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훈련비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환수할</u>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무복무) ① ----- --- <u>영 제34조</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 <u>제37조 제1항</u>-----

현행	개정안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사법부 등에서의 근무, 국·공립대학(교)등에서 교원으로 근무,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8조제1항 단서의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자연적인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란 ----- -----.
제39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제39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시장은 훈련공무원이 영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① ----- 영 제35조제1항 각 호 ----- ----- 법과 ----- ----- ----- ----- 보증인 -----.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 ----- ----- ----- -----
③ 주관부서의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	③ ----- ----- ----- ----- -----

현행	개정안
출발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u>보증인</u> (‘보험업법’ 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 는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제40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생략)	제40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항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 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 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 ----- 제1항에 따른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외훈련 이수자가 시에 복귀할 시점에 결원 이 없는 경우에 국외훈련 복귀자 또는 차기 파 견대상자의 무보직 상태가 예견되는 바,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 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청에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 준비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 ----- <u>없어</u> ----- ----- ----- <u>경우</u> ----- ----- ----- -----.
④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27조2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 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u>의무 복무한 기 간으로 본다.</u>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u>의무복 무한</u> ----- . ----- <u>법에</u> -- ----- ----- -----.
제41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 「지방공무원 교 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	제41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 <u>법 제19조</u> ----- -----

현행	개정안
나 국외훈련 종료 후 <u>의무복무</u> 중에 있는 <u>자</u>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해외유학)에 따른 휴직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훈련 중인 자 및 <u>의무복무 기간</u> 중에 있는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u>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2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u>의무복무</u> 중에 있는 <u>국외훈련이수공무원</u>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u>복무 의무</u>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3조(박사과건 훈련) ① 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 ----- <u>의무복무기간</u> ----- <u>자의</u> ----- ----- ----- ----- ② ----- <u>의무복무기간</u> ----- ----- ----- ----- <u>위원회</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u>의무복무기간</u> ----- ----- <u>자가</u> ----- ----- ----- ----- ----- ② ----- ----- ----- <u>복무의무</u> ----- ----- 제43조(박사과건 훈련) ① ----- -----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u>신비</u> 지원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3. 4. (생략) ② <u>훈련분야가 첨단과학기술분야이고 전향의 요건을 갖춘 경우 파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 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u> ③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u>훈련성</u>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u>승인</u>한다. ④ <u>파견기간</u>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 <u>시 예산</u>의 ----- 3. 4. (현행과 같음) ② 박사과정 훈련의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③ ----- -- <u>시장은 훈련성과</u>----- <u>승인</u>할 수 있다. ④ <u>훈련공무원이 파견기간</u> -----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어학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어학성적	어학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어학성적
[별표 3]	어학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어학성적	어학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어학성적
[별표 3]	어학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어학성적	어학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어학성적

행	개 정 안														
나. 4급 － 일반훈련(대학원 학위과정 등)	가. 5급 이하: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과 같은 나. 4급 － 일반훈련(대학원 학위과정 등)														
－ 직무훈련	－ 직무훈련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지 급 기 준</th></tr> <tr> <td>가 산 비 율</td><td>「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10% 가산</td></tr> <tr> <td>체제비 가산비율</td><td>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td></tr> <tr> <td>직무훈련 보조비</td><td>월 300 미합중국 달러</td></tr> </table>	구 분	지 급 기 준	가 산 비 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10% 가산	체제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 달러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지 급 기 준</th></tr> <tr> <td>체제비 가산비율</td><td>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td></tr> <tr> <td>직무훈련 보조비</td><td>월 300 미합중국 달러</td></tr> </table>	구 분	지 급 기 준	체제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 달러
구 분	지 급 기 준														
가 산 비 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10% 가산														
체제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 달러														
구 분	지 급 기 준														
체제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 달러														
나. 3급 이상	나. 3급 이상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지 급 기 준</th></tr> <tr> <td>체제비가산비율</td><td>「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75% 가산</td></tr> <tr> <td>직무훈련보조비</td><td>월 500 미합중국달러</td></tr> </table>	구 분	지 급 기 준	체제비가산비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지 급 기 준</th></tr> <tr> <td>체제비가산비율</td><td>「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75% 가산</td></tr> <tr> <td>직무훈련보조비</td><td>월 500 미합중국달러</td></tr> </table>	구 분	지 급 기 준	체제비가산비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구 분	지 급 기 준														
체제비가산비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구 분	지 급 기 준														
체제비가산비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제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현	행	개 정 안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혼련국 소재 재외 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 여 <u>행정안전부장관</u> 이 정하는 금액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혼련국 소재 재외 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 여 <u>시장</u> 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 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 합중국달러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0호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09.2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 2021-222호(2021.11.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송파나루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아트갤러리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등을 변경하여 석촌호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호수공원 고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건물을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32 일대

3. 공원면적: 285,757.6㎡

4.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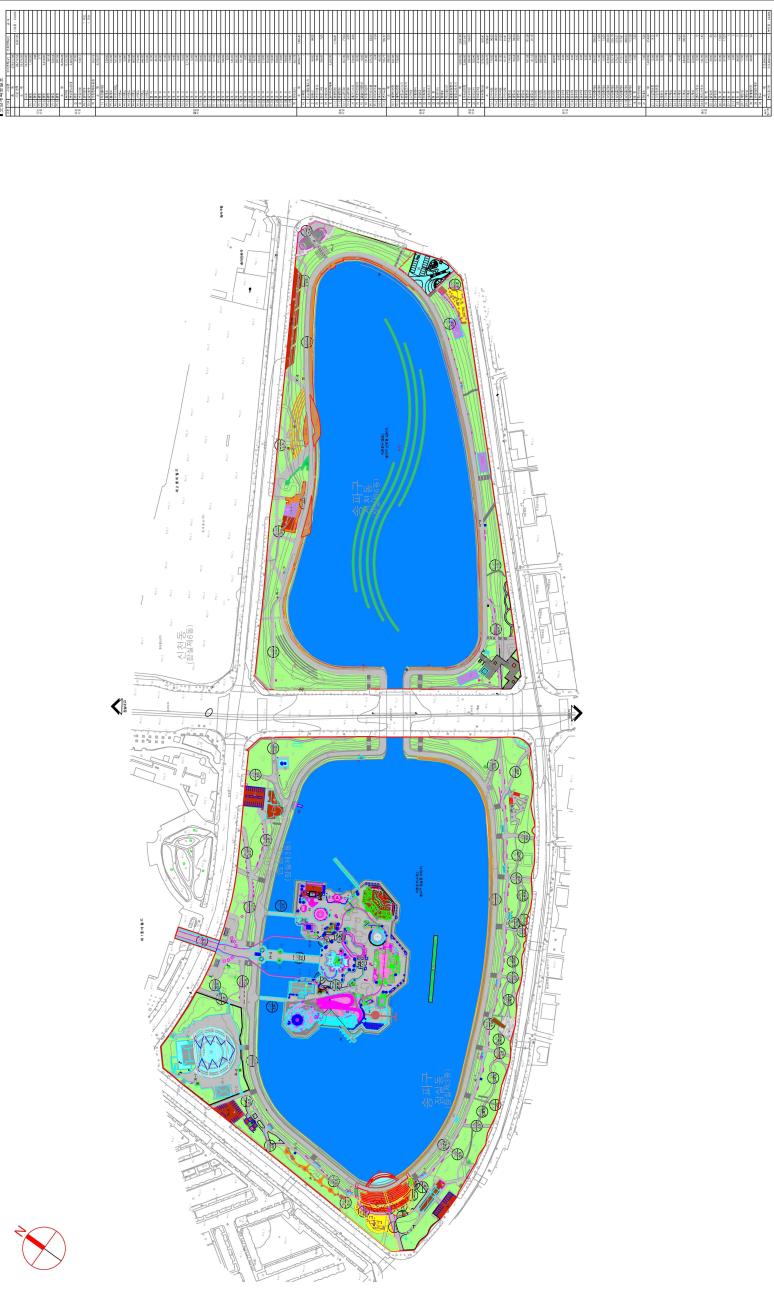
- ※ 첨부된 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송파구청 공원녹지과(☎2147-3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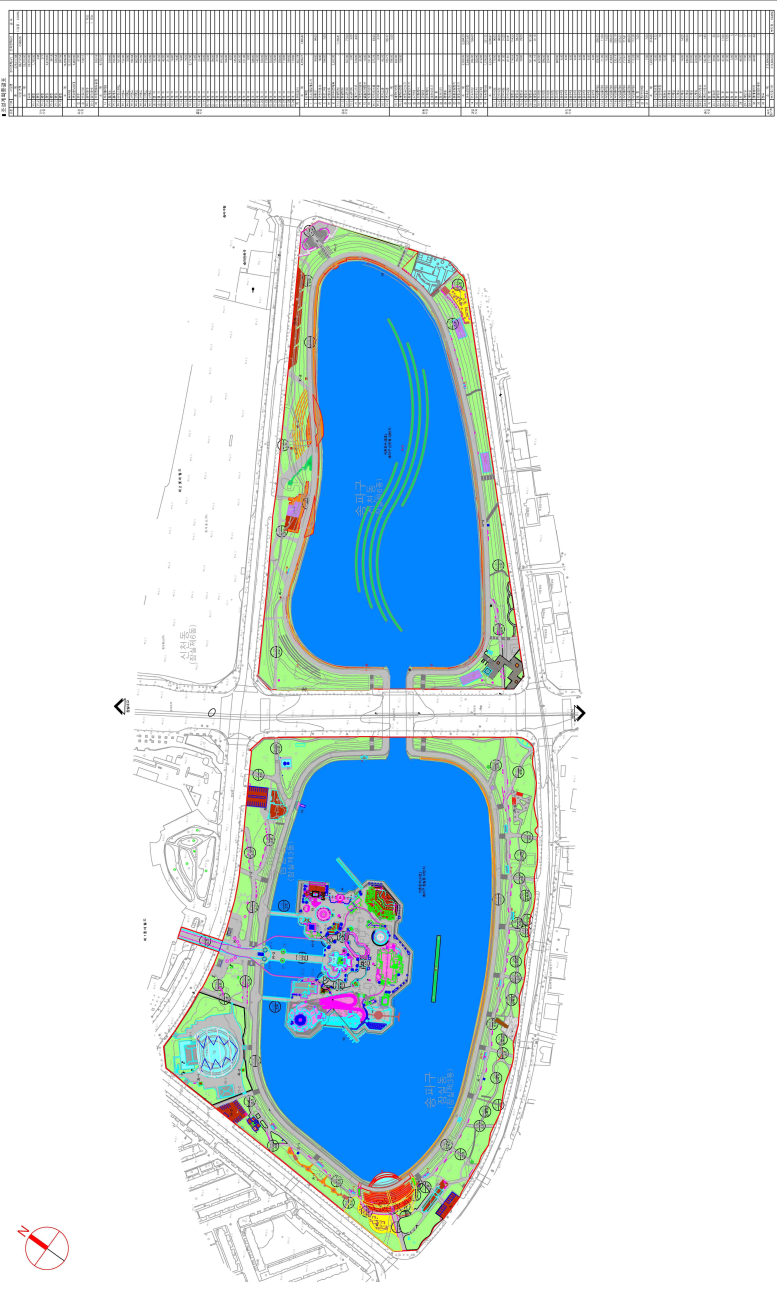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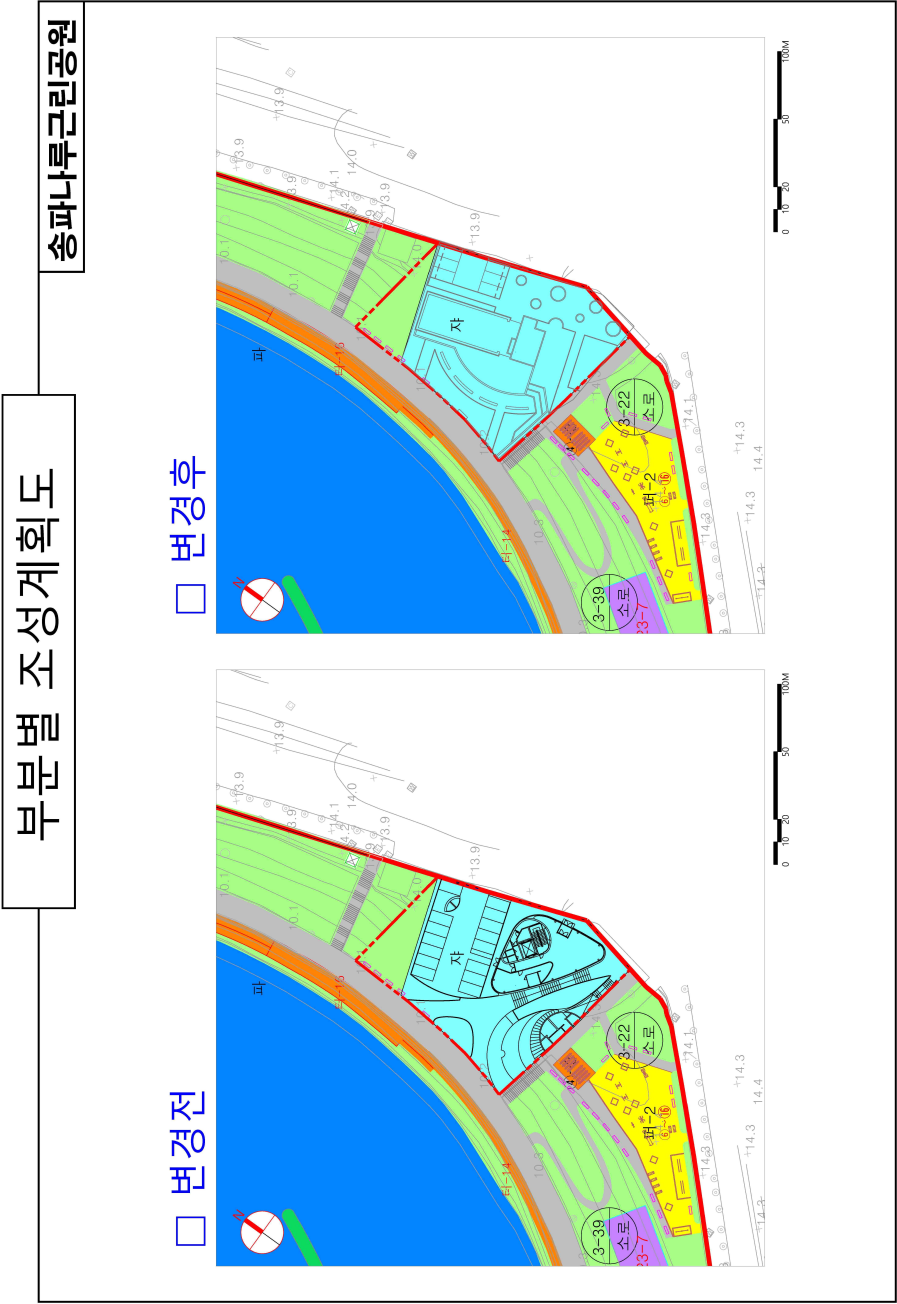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송파나루근린공원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송파구 신천동 32번지, 잠실동 47번지 일대)

구	분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전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기반 시설	285,757.60	73,153.05	50	8,501.67	25,508.08 [12,882.54]	137	285,757.60	73,168.40	50	7,752.98	24,566.67 [13,305.98]	137	
		29,513.52	29,513.52					29,513.52	29,513.52					
		23,109.00	23,109.00					23,109.00	23,109.00					
		6,404.52	6,404.52					6,404.52	6,404.52					
조경시설		16,928.28	16,928.28				9	16,928.28	16,928.28				9	
유희시설		4,206.27	4,206.27	9	1,465.42	14,018.29 [10,488]	16	4,206.27	4,206.27	9	1,465.42	14,018.29 [10,488]	16	
휴양시설		9,730.37	9,730.37				37	9,730.37	9,730.37				37	
교양시설		5,030.95	5,030.95	5	3,342.98	5,235.95 [399.3]	4	5,046.30	5,046.30	5	2,594.29	4,294.54 [822.74]	4	증+5.35㎡
운동시설		788	788				41	788	788				41	
편익시설		5,524.70	5,524.70	15	3,208.87	4,912.98 [1,102.80]	16	5,524.70	5,524.70	15	3,208.87	4,912.98 [1,102.80]	16	
관리시설		1,430.96	1,430.96	21	484.40	1,340.86	14	1,430.96	1,430.96	21	484.40	1,340.86 [892.44]	14	
누지 및 기타		212,604.55						212,589.20						감+5.35㎡
시설율 (법정 40%)		(73,168.40/ 285,757.60) × 100 = 25.60%												
건폐율 (법정 10%)		(8,501.67 / 285,757.60) × 100 = 2.97%												

2.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계			73,153.05			8,501.67	25,508.08				7,752.98	24,566.67				
관	광	장	소계			29,513.52														
			도로		잠실동 47 신원동 32	23,109.00					잠실동 47 신원동 32	23,109.00	23,109.00							
			카			6,404.52				카		6,404.52	6,404.52							
			카-1		잠실동 47 신원동 32	1,180.00				카-1		1,180.00	1,180.00							
			카-2		"	238.00				카-2		238.00	238.00							
조	경	시	설	카-3		"	277.00						카-3		"	277.00				
				카-4		"	3,619.92					카-4		3,619.92	3,619.92					
				카-6		신원동 32	361.80				카-6		361.80	361.80						
				카-7		잠실동 47	330.54				카-7		330.54	330.54						
				카-8		"	397.26				카-8		397.26	397.26						
소	계				16,928.28												9			
녹	지	대		잠실동 47 신원동 32	12,722.00			녹지대		12,722.00	12,722.00			녹지대						
관	상	용		잠실동 47 신원동 32	3,660.00			화단		3,660.00	3,660.00			화단			1			
분	수		①	"	37.00	R.C	원형 4개소			4	①	"	37.00	R.C	원형 4개소			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수경시설	②	신천동 32	154.12	154.12					1	②	신천동 32	154.12					1
	마								2	마							2
	마-1	잠실동 47			철물 FRP	노즐 600개			1	마-1	잠실동 47		철물 FRP	노즐 600개			1
	마-2	신천동32							1	마-2	신천동32						1
수질정화 식물원	파	잠실동47	355.16	355.16					1	파	잠실동47	355.16					1
			9,730.37	9,730.37					37			9,730.37					
옥상 휴게실	나	잠실동 47 (인도의성)							1	나	잠실동 47 (인도의성)						
휴게소	커		974.00	974.00						커		974.00					
	커-1	잠실동 47	239.00	239.00						커-1	잠실동 47	239.00					
	커-5	신천동 32	735.00	735.00						커-5	신천동 32	735.00					
	마		167.00	167.00						마		167.00					
수변 스탠드	마-1									마-1							삭제
	마-2	신천동 32	167.00	167.00						마-2	신천동 32	167.00					
휴양시설	바		1,365.84	1,365.84						바		1,365.84					
	바-1	잠실동 47	152.00	152.00						바-1	잠실동 47	152.00					
	바-2	신천동 32	53.80	53.80						바-2	신천동 32	53.80					
	바-3	"	182.04	182.04						바-3	"	182.04					
	바-4	잠실동 47	360.00	360.00						바-4	잠실동 47	360.00					
	바-5	잠실동 47	152.00	152.00						바-5	잠실동 47	152.00					
	바-6	잠실동 47	343.00	343.00						바-6	잠실동 47	343.00					
	바-7	신천동 32	123.00	123.00						바-7	신천동 32	123.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첼터	④			74.50	74.50					6	④		74.50	74.50							6				
	④-3	신천동 32	32.00	32.00	32.00					2	④-3	신천동 32	32.00	32.00							2				
	④-5	"	42.50	42.50	42.50					4	④-5	"	42.50	42.50							4				
	⑤			45.00	45.00					1	⑤		45.00	45.00							1				
	⑤-2	신천동 32	45.00	45.00	45.00		높이 7M			1	⑤-2	신천동 32	45.00	45.00			높이 7M				1				
데크	터			6,646.25	6,646.25					29	터		6,646.25	6,646.25							29				
	터-1	잠실동 47	21.00	21.00	21.00					1	터-1	잠실동 47	21.00	21.00							1				
	터-2	"	16.80	16.80	16.80					1	터-2	"	16.80	16.80							1				
	터-3	"	14.40	14.40	14.40					1	터-3	"	14.40	14.40							1				
	터-4		16.80	16.80	16.80					1	터-4		16.80	16.80							1				
	터-5		19.20	19.20	19.20					1	터-5		19.20	19.20							1				
	터-6		2,172.00	2,172.00	2,172.00					1	터-6		2,172.00	2,172.00							1				
	터-7		12.60	12.60	12.60					1	터-7		12.60	12.60							1				
	터-8		25.40	25.40	25.40					1	터-8		25.40	25.40							1				
	터-9		24.00	24.00	24.00					1	터-9		24.00	24.00							1				
	터-10		24.00	24.00	24.00					1	터-10		24.00	24.00							1				
	터-11		84.00	84.00	84.00					1	터-11		84.00	84.00							1				
	터-12		27.03	27.03	27.03					1	터-12		27.03	27.03							1				
	터-13	신천동 32	973.00	973.00	973.00					1	터-13	신천동 32	973.00	973.00							1				
터-14		166.00	166.00	166.00					1	터-14		166.00	166.00							1					

후 양공 시 보

한양시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규모	구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한양시원	데크	타-15	8.02	8.02							8.02	8.02	1
		타-16	143.00	143.00							143.00	143.00	1
		타-17	562.00	562.00							562.00	562.00	1
		타-18	121.00	121.00							121.00	121.00	1
		타-19	9.00	9.00							9.00	9.00	1
		타-20	348.00	348.00							348.00	348.00	1
		타-21	143.00	143.00							143.00	143.00	1
		타-22	330.00	330.00							330.00	330.00	1
		타-23	219.00	219.00							219.00	219.00	1
		타-24	350.00	350.00							350.00	350.00	1
		타-25	126.00	126.00							126.00	126.00	1
		타-26	204.00	204.00							204.00	204.00	1
		타-27	119.00	119.00							119.00	119.00	1
		타-28	189.00	189.00							189.00	189.00	1
		타-29	179.00	179.00							179.00	179.00	1
유원시원	호반잠터	허	잠실동 47	457.78					잠실동 47		457.78	457.78	
		소계		4,206.27			1,465.42	14,018.29 [10,488]			4,206.27	4,206.27	16
		신착장	다	잠실동 47	(57)	(57)			간이 승선장	목재	(57)	(57)	1
		모노레일 궤도차	1		-			775.00	189인승 28대	철물	-	-	1

구분		변경			경장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림선	2	"	99.00	99.00	99.00	FRP	40인승 3대	99.00	99.00	1	2	"	99.00	99.00	FRP	40인승 3대	99.00	99.00	1		
	어린이반수 라	"	18.00	18.00	"	노즐15중 1개소			1	라	"	18.00	18.00	"	노즐15중 1개소				1		
	회전그네	5	"	184.00	184.00	철물 FRP	32인용	7.00	7.00	1	5	"	184.00	184.00	철물 FRP	32인용	7.00	7.00	1		
	음악분수	마	"			"	노즐600개			1	마	"			"	노즐600개			1		
	소형보트	바	"			FRP	2인승 22대			1	바	"			FRP	2인승 22대			1		
	잃어버린 대륙	8	"	2,352.00 [374]	2,352.00	RC	8인승8대 높이21M	1,103.41	3,404.55 [1,091]	1	8	"	2,352.00 [374]	2,352.00	RC	8인승8대 높이21M	1,103.41	3,404.55 [1,091]	1		
		11							9,397.00 [9,397]	1	11							9,397.00 [9,397]	1		
	등돌림형	11-1	잠실동 47			RC	지하2층		4,800.00 [4,800]	1	11-1	잠실동 47			RC	지하2층		4,800.00 [4,800]	1		
		11-2	"			"	"		4,597.00 [4,597]		11-2	"			"	"		4,597.00 [4,597]			
		12	"	360.00	360.00		40인승 1기	80.00	78.00	1	12	"	360.00	360.00		40인승 1기	80.00	78.00	1		
고공타워	12-1	"	357.00	357.00	철물	높이 68.3M	77.00	75.00	1	12-1	"	357.00	357.00	철물	높이 68.3M	77.00	75.00	1			
	12-2	"	3.00	3.00	목조	지상1층	3.00	3.00		12-2	"	3.00	3.00	목조	지상1층	3.00	3.00				
매가디스코	사	잠실동 47	374.00	374.00	철물	40인승	4.00	4.00	1	사	잠실동 47	374.00	374.00	철물	40인승	4.00	4.00	1			
	카	잠실동 47	35.00	35.00	철물	1인승 8대			1	카	잠실동 47	35.00	35.00	철물	1인승 8대			1			
어린이 전망차 물놀이 해적선	타	"	14.00	14.00	철물	16인승 1대			1	타	"	14.00	14.00	철물	16인승 1대			1			
	자동차경주 머	"	191.80	191.80	RC	탑승인원4			1	머	"	191.80	191.80	RC	탑승인원4			1			
자이로스윙	버	"	377.00	377.00		1인승 40대	66.24	101.24	1	버	"	377.00	377.00		1인승 40대	66.24	101.24	1			
	버-1	"	373.76	373.76	철골	높이 26M	63.00	98.00	1	버-1	"	373.76	373.76	철골	높이 26M	63.00	98.00	1			
양 회 시 설																					

구분	전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편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비 고	
번지드름	버-2	"	3.24	3.24	"	지상1층	3.24	3.24	3.24			
	서	"	201.47	201.47		189승 1대	105.77	152.50	152.50	1		
	서-1	"	95.70	95.70	철골	높이 41M				1		
	서-2	"	105.77	105.77	RC	지상2층	105.77	152.50	152.50			
소계			788.00	788.00						41		
	퍼		788.00	788.00						41		
채벽단량장	퍼-1	잠실동 47 민원동 32	632.00	632.00						23		
	퍼-2	산전동 32	156.00	156.00						18		
봉산고 등학교 건너기 윗물 입구키기	⑥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⑦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4)		
도약대	⑧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⑨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수평레더	⑩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⑪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수직레더	⑫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⑬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네트오르기	⑭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⑮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평형 철	⑯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⑰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점프더저	⑱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⑲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평형 봉	⑳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㉑	잠실동 47 민원동 32 신원동 32								(3)		

안민당시정

안민당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 설	허리틀라기	⑩	잠실동 47 신원동 32							⑩	잠실동 47 신원동 32													
	몸통 균형잡기	⑪	잠실동 47							⑪	잠실동 47													
	링탑고 오르기	⑫	잠실동 47							⑫	잠실동 47													
	소계			5,030.95	5,030.95			3,342.98	5,235.95 [399.30]	4			5,046.30	5,046.30			2,594.29	4,294.54 [822.74]		4	증15.35㎡			
교 양 시 설	민속공연장 (아외무대)	12	잠실동 47	2,644.00 [1,947.39]	RC	지하1층 지상1층	2,213.97 [399.30]	2,613.27 [399.30]	2,644.00 [1,947.39]	1	12	잠실동 47	2,644.00 [1,947.39]	2,644.00 [1,947.39]	RC	지하1층 지상1층	2,213.97 [399.30]	2,613.27 [399.30]	1					
	인도의성	14	"	396.00	396.00	RC	지상3층	158.60	877.51	1	14	"	396.00	396.00	RC	지상3층	158.60	877.51	1					
	삼전도비	32	잠실동 47	200.90	200.90			158.60		1	32	잠실동 47	200.90	200.90			158.60		1					
	아외무대	야	잠실동 47	414.00	414.00					1	야	잠실동 47	414.00	414.00					1					
	전시장	자	신원동 32	1,376.05	1,376.05			970.41	1,586.57	1,391.40		자	신원동 32	1,391.40	1,391.40		지하1층 지상2층	221.72	645.16 [423.44]			증15.35㎡		
	소계			5,524.70	5,524.70			3,208.87	4,912.98 [1,102.80]	16			5,524.70	5,524.70			3,208.87	4,912.98 [1,102.80]	16					
편 의 시 설		15		311.81	311.81			234.81	353.81 [96]	3	15		311.81	311.81			234.81	353.81 [96]	3					
	간이식당	15-1	잠실동 47	173.00	173.00	RC	지상1층 지하1층	96.00 [96]	192.00 [96]	173.00		15-1	잠실동 47	173.00	173.00	RC	지상1층 지하1층	96.00	192.00 [96]					
		15-2	"		46.00	46.00	RC	지상1층	46.00	46.00	1	15-2	"	46.00	46.00	RC	지상1층	46.00	46.00	1				
		15-4	"		31.00	31.00	RC	지상2층	31.00	54.00	1	15-4	"	31.00	31.00	RC	지상2층	31.00	54.00	1				
		15-5	"		61.81	61.81	철골	지상1층	61.81	61.81	1	15-5	"	61.81	61.81	철골	지상1층	61.81	61.81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화장실	16	신천동 32	490.51	490.51	490.51			490.51	554.28 [142.56]	2	16	신천동 32	490.51	490.51			490.51	554.28 [142.56]	2					
	16-1	잠실동 47	114.53	114.53	114.53	RC	지상1층	114.53	110.03		16-1	잠실동 47	114.53	114.53	RC	지상1층	114.53	110.03						
	16-2	"		94.24	94.24	철골	지상1층	94.24	94.24		16-2	"	94.24	94.24	철골	지상1층	94.24	94.24						
	16-5	"		79.00	79.00	"	지상1층	79.00	79.00	1	16-5	"	79.00	79.00	"	지상1층	79.00	79.00	1					
	16-6	"				RC	지하1층		[74.29]		16-6	"			RC	지하1층		[74.29]						
	16-7	"		161.58	161.58	철골	지상1층	161.58	161.58	1	16-7	"		161.58	161.58	철골	지상1층	161.58	161.58	1				
주차장	16-1 0	"		41.16	41.16		지상1층 지하1층	41.16	109.43 [68.27]		16-1 0	"		41.16	41.16		지상1층 지하1층	109.43 [68.27]						
	아			2,109.00	2,109.00		83				아		2,109.00	2,109.00		83								
	아-1	잠실동 47	620.00	620.00	620.00	ASP	24				아-1	잠실동 47	620.00	620.00	ASP	24								
	아-2	"		396.00	396.00	"	18				아-2	"	396.00	396.00	"	18								
	아-3	"		224.00	224.00	"	16				아-3	"	224.00	224.00	"	16								
	아-6	"		869.00	869.00	"	25				아-6	"	869.00	869.00	"	25								
음수대	자			50.40	50.40						자		50.40	50.40										
	자-1	잠실동 47	6.30	6.30	6.30	석재	간이				자-1	잠실동 47	6.30	6.30	석재	간이								
	자-2	"		6.30	6.30	RC	"				자-2	"	6.30	6.30	RC	"								
	자-3	"		6.30	6.30	"	"				자-3	"	6.30	6.30	"	"								

편의시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일반음식점	자-4		"	6.30	6.30	"	"			자-4	"	6.30	6.30	"	"						
	자-5		신천동 32	6.30	6.30	"	"			자-5	신천동 32	6.30	6.30	"	"						
	자-6		"	6.30	6.30	"	"			자-6	"	6.30	6.30	"	"						
	자-7		"	6.30	6.30	"	"			자-7	"	6.30	6.30	"	"						
	자-8		"	6.30	6.30	"	"			자-8	"	6.30	6.30	"	"						
	17			2,548.98	2,548.98			2,469.55	3,990.89 [864.24]	8	17			2,548.98	2,548.98			2,469.55	3,990.89 [864.24]	8	
	17-1		잠실동 47	326.00	326.00	석재	지상1층 지하1층	326.00	517.00 [301]	1	17-1	잠실동 47	326.00	326.00	석재	지상1층 지하1층	326.00	517.00 [301]	1		
	17-2		"	11.00	11.00	RC	지상1층	11.00	11.00	1	17-2	"	11.00	11.00	RC	지상1층	11.00	11.00	1		
	17-3		"	15.00	15.00	"	지상1층	15.00	15.00	1	17-3	"	15.00	15.00	"	지상1층	15.00	15.00	1		
	17-4		"	418.63	418.63	"	지상1층	339.20	433.20	1	17-4	"	418.63	418.63	"	지상1층	339.20	433.20	1		
	17-6		"	235.19	235.19	"	지상1층	235.19	235.19	1	17-6	"	235.19	235.19	"	지상1층	235.19	235.19	1		
	17-8		잠실동 47	273.27	273.27	"		273.27	514.28 [109.54]	1	17-8	잠실동 47	273.27	273.27	"		273.27	514.28 [109.54]	1		
	17-9		"	717.61	717.61			717.61	717.61	1	17-9	"	717.61	717.61			717.61	717.61	1		
	17-10		"	440.00	440.00			440.00	981.63	1	17-10	"	440.00	440.00			440.00	981.63	1		
	17-11		신천동 32	112.28	112.28			112.28	565.98 [453.70]		17-11	신천동 32	112.28	112.28			112.28	565.98 [453.70]			

구분		변경				전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매점	18	잠실동 47	7.00	7.00	RC	지상1층	7.00	7.00	1	18	잠실동 47	7.00	7.00	RC	지상1층	7.00	7.00	1	
	탑 (전망대)	③	잠실동 47			RC	지상3층 60㎡			1	③	잠실동 47			RC	지상3층 60㎡			1	
	안내소	31	"	7.00	7.00	"	지상1층	7.00	7.00	1	31	"	7.00	7.00	"	지상1층	7.00	7.00	1	
관리시설	소계			1,430.96	1,430.96			1,430.96	1,430.96	14			1,430.96	1,430.96			484.40	1,340.86 [892.44]	14	
	가압필포장	21	잠실동 47	24.00	19.44			24.00	19.44		21	잠실동 47	24.00	19.44			19.44	19.44		
		21-1	"	12.00	12.00	RC	지상1층	9.72	9.72		21-1	"	12.00	12.00	RC	지상1층	9.72	9.72		
매표소		21-2	"	12.00	12.00	"	지상1층	9.72	9.72		21-2	"	12.00	12.00	"	지상1층	9.72	9.72		
		22	잠실동 47	12.00	12.00			12.00	12.00	1	22	잠실동 47	12.00	12.00			12.00	12.00	1	
	22-2	"	12.00	12.00	RC	지상1층	12.00	12.00	1	22-2	"	12.00	12.00	RC	지상1층	12.00	12.00	1		
기계실	23			756.00	756.00			756.00	756.00	7	23			756.00			114.00	870.00 [742]	7	
	23-1	잠실동 47				RC	지하1층 (한강수인입음)			1	23-1	잠실동 47			RC	지하1층 (한강수인입음)			1	
	23-2	"	62.00	62.00		"	지하1층 (수질개선용, 냉각탑)	47.00 [47]	1	23-2	"	62.00	62.00	"	지하1층 (수질개선용, 냉각탑)			47.00 [47]	1	
	23-3	신원동 32				"	"		1	23-3	신원동 32			"	"			47.00 [47]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3-4	잠실동 47	14.00	14.00	"	지하1, 지상2 (ELESCLATOR용)	14.00	59.00 [31]	1	23-4	잠실동 47	14.00	14.00	지하, 지상2 (ELESCLATOR용)	14.00	59.00 [31]	1		
	23-5	신천동32	240.00	240.00	"	지하1, 지상1	100.00	240.00 [140]	1	23-5	신천동32	240.00	240.00	지하, 지상1	100.00	240.00 [140]	1		
	23-6	"	220.00	220.00	"	지하1		220.00 [220]	1	23-6	"	220.00	220.00	지하		220.00 [220]	1		
	23-7	"	220.00	220.00	"	지하1		220.00 [220]	1	23-7	"	220.00	220.00	지하		220.00 [220]	1		
	24	"	154.96	154.96			154.96	154.96	2	24	"	154.96	154.96		154.96	154.96	2		
	관리사무소	24-2	"	12.00	12.00	RC	지상1층	12.00	12.00	1	24-2	"	12.00	12.00	지상1층	12.00	12.00	1	
		24-4	"	142.96	142.96	"	지상1층	142.96	142.96	1	24-4	"	142.96	142.96	지상1층	142.96	142.96	1	
답장	차	잠실동 47	217.00	217.00	토석	335M				차	잠실동 47	217.00	217.00	335M					
출입문	25	잠실동 47	71.00	71.00			55.00	55.00		25	잠실동 47	71.00	71.00		55.00	55.00			
	25-1	"	39.00	39.00	목조	지상1층	30.00	30.00		25-1	"	39.00	39.00	지상1층	30.00	30.00			
	25-2	"	32.00	32.00	"	"	25.00	25.00		25-2	"	32.00	32.00	"	25.00	25.00			
정문	26	"	74.00	74.00			34.00	34.00		26	"	74.00	74.00		34.00	34.00			
	26-1	"	37.00	37.00	RC	지상1층	17.00	17.00		26-1	"	37.00	37.00	지상1층	17.00	17.00			
관 리 시 설																			

구 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협문	26-2	"	37.00	37.00	"	"	17.00	17.00		26-2	"	37.00	37.00	"	"	17.00	17.00							
	27	"	10.00	10.00			10.00	10.00		27	"	10.00	10.00			10.00	10.00							
	27-1	"	5.00	5.00	목조	지상층	5.00	5.00		27-1	"	5.00	5.00	목조	지상층	5.00	5.00							
	27-2	"	5.00	5.00	"	"	5.00	5.00		27-2	"	5.00	5.00	"	"	5.00	5.00							
삼문	28	"	44.00	44.00	RC	"	17.00	17.00		28	"	44.00	44.00	RC	"	17.00	17.00							
계단실	29		34.00	34.00			34.00	34.00	2	29		34.00	34.00			34.00	34.00			2				
	29-1	점실동 47	17.00	17.00	RC	지상층	17.00	17.00	1	29-1	점실동 47	17.00	17.00	RC	지상층	17.00	17.00			1				
	29-2	"	17.00	17.00	"	"	17.00	17.00	1	29-2	"	17.00	17.00	"	"	17.00	17.00			1				
엘리베이터	30	"	34.00	34.00	"	"	34.00	34.00	1	30	"	34.00	34.00	"	"	34.00	34.00			1				
문화재 안내관	33	점실동 47							1	33	점실동 47									1				
창고	35	산천동 32				지하층		100.46 [100.46]		35	산천동 32					100.46 [100.46]								
소 계			212,604.55									212,589.20										감15.35㎡		
누지 및 기타		점실동 47 산천동 32	212,604.55								점실동 47 산천동 32	212,589.20										감15.35㎡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합 계				6,160	23,109				
변경	소 계				5,268	21,358				
당초		1	1-1	11	(47.3)	(511)	지하통로	옥외레저 센터(지하)	잠실길	
당초		1	1-2	10	(82.5)	(825)	지상육교	옥외레저센터(지하층)	"	
당초		3	3-2	5	1,267	6,385	조경로	송파로교량 복서측	송파로교량 남서측	
당초	소로	3	3-3	5	1,204	6,020	"	송파로교량 북동측	송파로교량 남서측	
당초		3	3-4	23	673	2,020	산책로	민속공연장 좌측	송파로(성남측)	
당초		3	3-5	3	48	144	"	서호 4단지측	서호(호안측)	
당초		3	3-6	3	17	51	"	"	"	
당초		3	3-7	5	45	232	"	서호 서남측	"	
당초		3	3-8	3	97	291	"	"	"	
당초										
당초										

구분	대표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당초	3	3-9	3	28	84	■	서호 남측	서호(호안측)	
당초		3	3-10	3	28	84	■	■	■	
당초		3	3-11	3	27	81	■	■	■	
당초		3	3-12	3	24	72	■	■	■	
당초		3	3-13	3	26	78	■	■	■	
당초		3	3-14	3	29	87	■	■	■	
당초		3	3-15	3	57	171	■	서호 남동측	■	
당초		3	3-16	3	37	111	산책로	서호 남동측	서호(호안측)	
당초		3	3-17	4	33	132	■	서호 북동측	■	
당초		3	3-18	4	43	172	산책로	서호 북측	서호(호안측)	
당초	당초	3	3-19	4	30	120	■	민속공연장 우측	지상연결 교량측	
당초		3	3-20	4	59	236	■	■	■	
당초		3	3-21	3	107	321	■	동호 서남측	동호(호안측)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소로	3	3-22	3	63	174.4	·	동호 남동측	·	구적오류
당초		3	3-23	3	22	66	·	동호 북동측	·	
당초		3	3-24	3	324	735	·	동호 북측	·	
당초		3	3-25	3	98	294	·	동호 서측	·	
당초		3	3-26	8	41	326	섬진교량	조강로	인도의성	
당초		3	3-28	4	31	110	·	·	수퍼반스토머	
당초		3	3-29	4	31	110	·	·	관리사무실	
당초		3	3-30	5	8	40	섬연결교량	인도의성	·	
당초		3	3-31	5	8	40	·	·	전자놀이	
당초		3	3-32	8	8	64	·	·	모노레일케도차	
당초		3	3-33	5	8	40	·	·	어린이코스타	
당초		3	3-34	5	8	40	·	·	수퍼반스토머	
당초		3	3-35	4	45	180	신화로	민속공연장	지성학교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36	4	70	280	·	지상육교	관리사무소	
당초		3	3-37	4	56	224	·	·	·	
당초		3	3-38	4	70	280	·	관리사무소	송파대로	
당초		3	3-41	3	29	87	·	민속공연장 좌측	서3-7분기점	
당초		3	3-47	3	300	900	·	동호 북측	동호(호인측)	
당초		3	3-48	3	71	213	·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	
당초	소로	3	3-49	3	39	117	·	주차장	동호(호인측)	
당초		3	3-50	4	28	34	진입로	서호남측	서호(호인측)	
당초		3	3-51	1.2	22	98	·	서호남측	서호(호인측)	
당초		3	3-57	1.5	9	14	·	서호남측	3-59	
당초	산책로	계			892	1,751				
변경										
당초		3	3-39	1.2	84	101	장애이용 진입로	조경로	휴게소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40	1.2	25	30	신책로	동호북영축	조기로	
당초		3	3-42	1.5	37	60	장애인을 진입로	동호 서남축	조기로	
당초		3	3-43	1.5	40	60	신책로	3-13	3-14	
당초		3	3-44	2.5	38	92	신책로	고고스	스탠드	
당초		3	3-45	2	25	62	신책로	고고스	체력단련장	
당초		3	3-46	2	36	84	신책로	고고스	체력단련장	
당초		3	3-52	2	29	57	신책로	3-10	3-50	
당초		3	3-53	2	74	171	"	3-50	3-11	
당초		3	3-54	2	22	43	"	3-11	카-7	
당초		3	3-55	1.5	106	223	"	카-7	3-12	
당초		3	3-56	1.5	89	179	"	3-12	3-51	
당초		3	3-58	1.5	2	3	"	3-59	3-59	
당초		3	3-59	2	114	204	"	3-51	3-13	

구분	비고	분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60	2.5	57	146	■	3-2	3-7	
당초		3	3-61	2.5	20	51	■	3-7	3-44	
당초		3	3-62	1.5	65	122	■	3-60	3-44	
당초		3	3-63	2	7	17	■	3-7	3-62	
당초		3	3-64	2	16	31	■	3-62	3-2	
당초		3	3-65	2.5	6	15	■	3-44	3-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 비오톱1등급 토지 중 경계가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도면번호	지 번		지목	비고
1	2024-1-01	강동구	고덕동 산99-1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감소로 경계 변경
2	2024-1-02	강북구	우이동 산45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감소로 경계 변경
3	2024-1-03	성북구	성북동 79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감소로 경계 변경
4	2024-1-04	성북구	성북동 330-300	대	필지 내 비오톱1등급 감소로 경계 변경

3. 관계도면 :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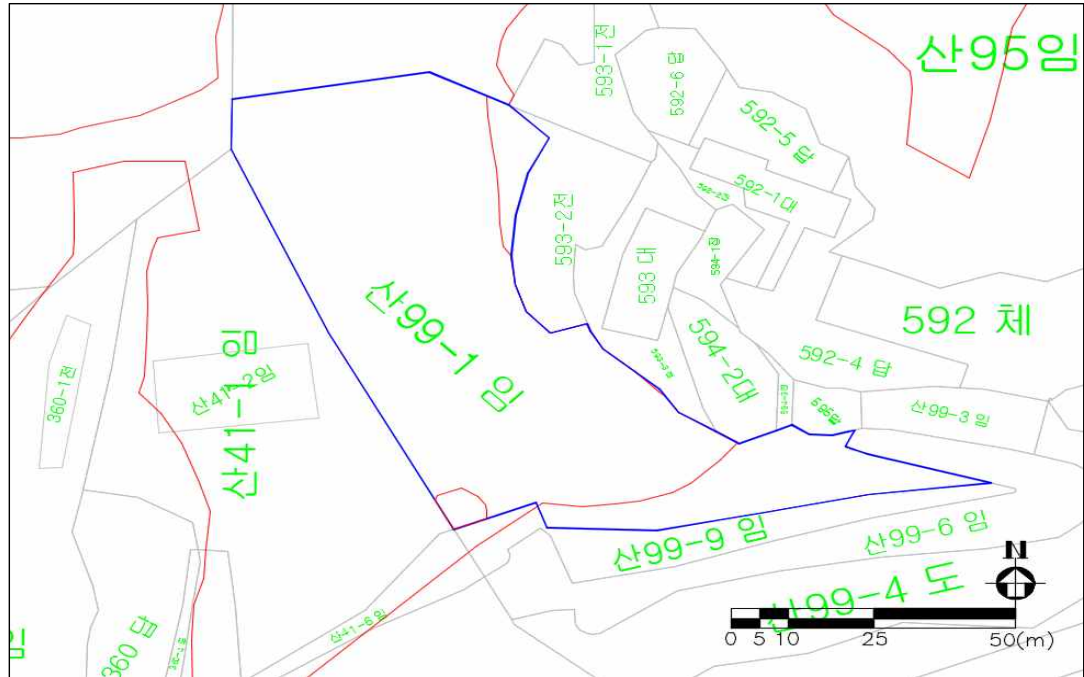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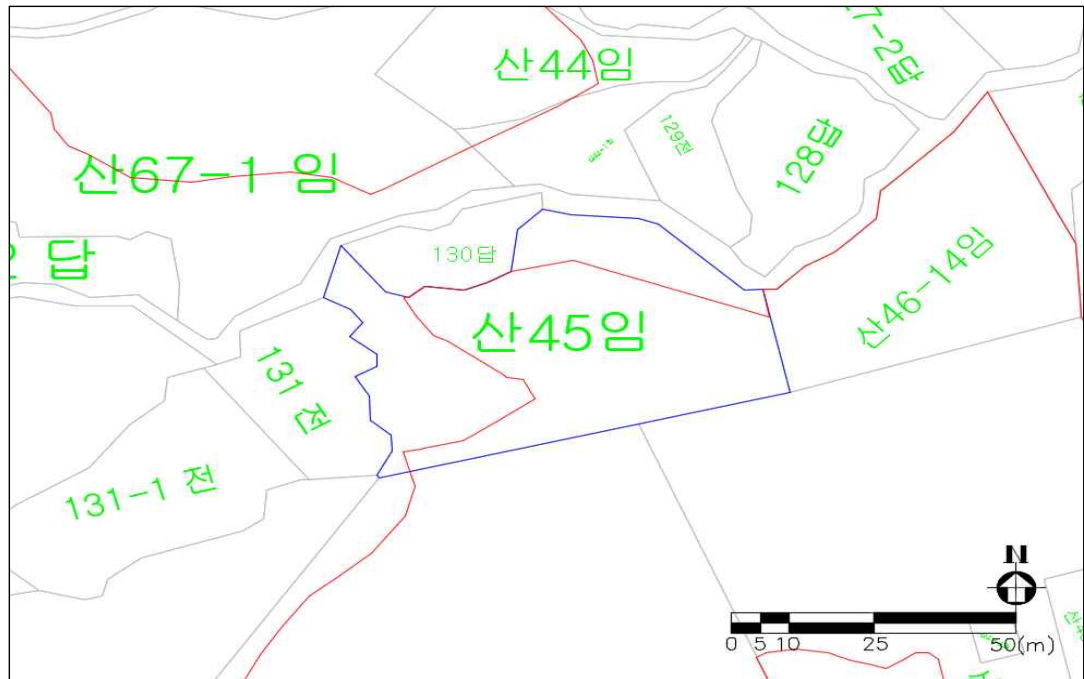
첨부 #1

비오름1등급 토지 경계 변경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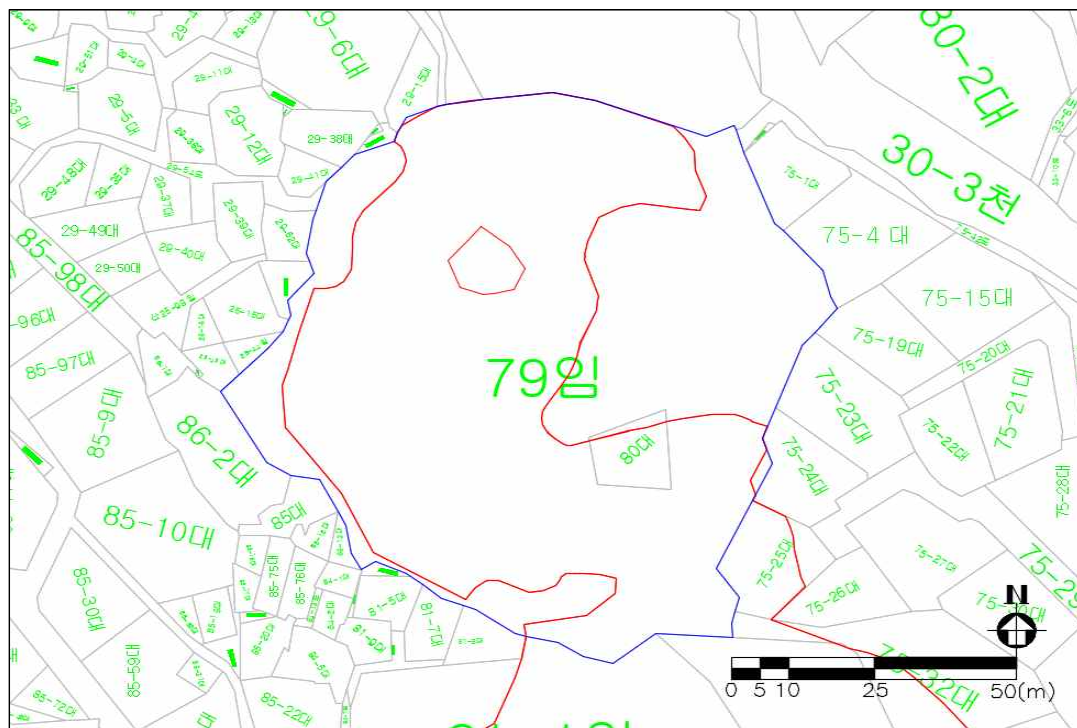
도면 2024-1-01. 강동구 고덕동 산99-1



도면 2024-1-02. 강북구 우이동 산45



도면 2023-2-03. 성북구 성북동 79



도면 2023-2-04. 성북구 성북동 330-3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역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3.11.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변경) 취지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초고시(서울특별시 제2012-257호, ' 12.9.27.)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종합의료복합단지, 화양변전소부지 등) 및 중곡지구중심 신규 지정 등 지역 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 노후 이면주거지 정비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 및 지정용도, 용적률 등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①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역 일대	392,337.0	증)12,097.9	404,434.9	2012.0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7호)	-

■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역 일대	◦면적변경 -기정) 392,337.0 -변경) 404,434.9 증) 12,097.9	◦능동로변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 및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하여 긴고랑로 복층 일부 관리부제지역을 포함하여 구역경계 확장 ◦중곡동 18-16번지(대원빌라) 일원 노후주택지로서 정비가 시급하여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의 구역제척 요구 반영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2,237.0	증) 12,097.9	404,434.9	100.0	-
소계	392,337.0	증) 12,097.9	404,434.9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3,399.4	0.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19,498.4	감) 7,886.0	52.3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161.3	증) 16,584.5	34.6	-
	준주거지역	49,677.3	-	49,677.3	12.3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능동로변 및 중합의로복합단지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곡동 150-25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1종일반 주거지역	3,399.4	140%/15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기준/허용/상한)	◦당초 누락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 반영
-	중곡동 241-16일대	-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584.5	190%/2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기준/허용/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	중곡동 18-16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	4,486.6	-	◦중곡동 18-16번지(대원빌라) 일원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의 구역제척 요구 반영

※ 당초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서고 제2012-257호, 2012.9.27.)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용마산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망우사거리~중곡동117-11 (중곡동150-72~중곡동297-8)	154,416 (10,581)	5,300 (772)	양측15	2019.4.18 (서고제2019-19호)	
기정	6	능동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용곡삼거리~중곡동647-15 (용마사거리~중곡동168-1)	36,545 (10,757)	1,300 (720)	양측15	"	
기정	7	긴고랑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동곡삼거리~중곡사거리 (중곡1동사거리~중곡동40-13)	31,286 (4,284)	1,100 (288)	양측15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기정	41	7,971	3	495	8	1,560	30	5,916
	변경	41	7,623	3	495	8	1,301	30	5,827
대 로	변경없음	2	1,460	-	-	-	-	2	1,460
중 로	변경없음	1	589	-	-	-	-	1	589
소 로	기정	38	5,922	3	495	8	1,560	27	3,867
	변경	38	5,574	3	495	8	1,301	27	3,77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6	35~48 (28)	주간선 도 로	3,750 (739)	중곡동169	성수동2가 72	일반도로	1973.2.28 (건고제73호)	능동로
기정	대로	3	47	25~28 (25~28)	보조간선 도 로	4,500 (721)	능동 (광로5)	면목동 (대3-42)	일반도로	1976.7.19 (건고제109호)	용마산로
기정	중로	3	57	12	집산도로	1,120 (589)	송정동 62-5	군자동 80-1	일반도로	1976.12.9 (서고제334호)	면목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5 (72)	중곡동 297-15	중곡동 296-1	일반도로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12	중곡동 28-1	중곡동 34-8	일반도로	"	용마산로21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1	중곡동 21-11	중곡동 271-2	일반도로	"	용마산로22길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1	중곡동 521-11	중곡동 771-2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2	1	8~10 (10)	국지도로	261 (15)	중곡동 168-1	중곡동 170-24	일반도로	"	- (화양변전소부지 2m확장)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58	중곡동 167-13	중곡동 164-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9	중곡동 29-56	중곡동 29-5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1	중곡동 18-67	중곡동 18-136	일반도로	"	용마산로24길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21	중곡동 18-67	중곡동 18-136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87	중곡동 18-7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111	중곡동 18-10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136	중곡동 18-124	일반도로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2	8	6~10 (8~10)	국지도로	172 (159)	중곡동 29-70	중곡동 266-2	일반도로	"	용마산로23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11	중곡동 170-25	중곡동 170-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26	중곡동 167-1	중곡동 172-59	일반도로	"	능동로53길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7-4	중곡동 167-1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172-16	중곡동 172-5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6-41	중곡동 166-17	일반도로	"	능동로49길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6-41	중곡동 166-17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220-27	중곡동 193-52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220-27	중곡동 193-52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5-10	중곡동 165-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221-45	중곡동 230-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9	6~8 (8)	국지도로	130 (112)	중곡동 170-2	중곡동 171-20	일반도로	"	- (화양변전소부지 2m확장)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73	중곡동 193-1	중곡동 193-4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21-47	중곡동 221-9	일반도로	"	긴고량로11길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21-47	중곡동 221-9	일반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30-1	중곡동 230-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1	중곡동 34-1	일반도로	"	능동로50길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1	중곡동 34-1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38	중곡동 34-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1-3	중곡동 31-4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2-9	중곡동 32-2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3-43	중곡동 33-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87	중곡동 24-2	중곡동 35-47	일반도로	"	능동로50길
변경	소로	3	19	6	국지도로	87	중곡동 24-2	중곡동 35-47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82	중곡 150-107	중곡동 35-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59	중곡동 35-65	중곡동 150-15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34	중곡동 297-15	중곡동 180-2	일반도로	1964.1.24 (건고제768호)	용마산로28길
변경	소로	3	22	6	국지도로	134 (63)	중곡동 297-15	중곡동 180-2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81	중곡동 296-7	중곡동 296-4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2	중곡동 150-72	중곡동 150-42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71-2	중곡동 150-42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3-1	중곡동 150-4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7	4	국지도로	198	중곡동 29-29	중곡동 29-4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31	중곡동 29-7	중곡동 29-16	일반도로	"	용마산로25길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3	소로 1-3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통학로 및 지역 커뮤니티가로변을 보행자 중심의 생활가로 조성 및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의 사용형태 변경 ◦중곡제일시장 이용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의 사용형태 변경
소로 2-4	소로 2-4		
소로 3-5	소로 3-5		
소로 3-6	소로 3-6		
소로 3-11	소로 3-11		
소로 3-14	소로 3-14		
소로 3-19	소로 3-19		
소로 3-22	소로 3-22		

■ 철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m)	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일대~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43,760.0	B=10~30m L=43.76km	-	중곡역 (7호선)

■ 철도 부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중곡동 273-2	4,925.73	1991.7.15 (건고 제399호)	중곡역 (7호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	중곡동 166-14 앞	363.0	1992.12.14 (서고 1992-420호)	-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상 : 공공공지
기정	②	주차장	중곡동221-6	695.0	-	695.0	2009.1.2 (광진구고시 제2008-55호)	노외주차장
기정	③	주차장	중곡동230-12	1,757.4	-	1,757.4	1999.4.27 (광진구고시 제1999-13호)	노외주차장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중곡동 30-1	1,276.7	-	1,276.7	-	-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4,875.0	-	4,875.0	-	중복결정 지하 : 주차장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시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	중곡동 229-5외 1필지	3,796.3	-	3,796.3	1973.8.18 (건고 제61호)	중곡제일골목시장 (광성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학교	초등학교	중곡동 220-22	5,616.6	-	5,616.6	1982.2.4 (서고 제50호)	중광초등학교

■ 체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체육시설	-	중곡동 168-8	3,690.0	-	3,690.0	2004.12.27 (서고 제2004-422호)	중곡문화 체육센터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 주거지역(변경)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GR-1	중곡동 168-1 일대	15,301.3	-	15,301.3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GR-2	중곡동 167-1 일대	3,086.3	-	3,086.3	제2종일반주거지역
GR-3	중곡동 166-1 일대	8,452.3	-	8,452.3	제2종일반주거지역
GR-4	중곡동 165-1 일대	7,462.7	-	7,462.7	제2종일반주거지역
GR-5	중곡동 16 일대	6,153.3	-	6,153.3	제2종일반주거지역
GR-6	중곡동 29-29 일대	5,118.6	-	5,118.6	제2종일반주거지역
GR-7	중곡동 29-3 일대	5,614.5	-	5,614.5	제2종일반주거지역
GR-8	중곡동 31-1 일대	40,917.7	감) 1,888.9	39,028.8	준주거지역
GR-9	중곡동 31-1 일대	7,612.9	-	7,612.9	제2종일반주거지역
GR-10	중곡동 170-1 일대	7,184.4	-	7,18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1	중곡동 171-1 일대	5,534.4	-	5,53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2	중곡동 172-1 일대	10,840.7	증) 30.0	10,87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3	중곡동 193-1 일대	9,741.1	-	9,74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4	중곡동 220-1 일대	13,161.2	-	13,161.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5	중곡동 230-1 일대	6,861.9	-	6,861.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6	중곡동 229-1 일대	3,730.2	-	3,730.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7	중곡동 221-1 일대	7,442.5	-	7,442.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18	중곡동 30-2 일대	11,175.3	-	11,1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GR-19	중곡동 32-1 일대	6,761.8	-	6,761.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20	중곡동 33-1 일대	8,369.0	-	8,369.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21	중곡동 34-1 일대	7,290.7	-	7,29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22	중곡동 35-1 일대	12,345.4	-	12,34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GR-23	중곡동 24-1 일대	7,951.8	-	7,951.8	제2종일반주거지역
GR-24	중곡동 28-1 일대	5,400.7	-	5,400.7	제2종일반주거지역
GR-25	중곡동 21-1 일대	7,058.4	-	7,058.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26	중곡동 23-1 일대	7,109.2	-	7,109.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27	중곡동 271-1 일대	2,723.8	-	2,723.8	제1종일반주거지역
GR-28	중곡동 18-67 일대	3,098.7	-	3,098.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29	중곡동 18-76 일대	5,187.1	-	5,18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0	중곡동 18-100 일대	5,186.9	-	5,186.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1	중곡동 18-124 일대	2,886.6	-	2,886.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2	중곡동 18-19 일대	8,194.8	-	8,194.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3	중곡동 18-24	14,779.4	-	14,779.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4	중곡동 18-1 일대	2,766.3	증) 1.6	2,767.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5	중곡동 18-2 일대	4,383.0	감) 2,976.2	1,406.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6	중곡동 297-1 일대	2,380.9	-	2,3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7	중곡동 241-30일대	-	증) 9,646.8	9,646.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GR-38	중곡동 164-1일대	-	증) 2,644.8	2,644.8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시, 해당 법률 및 운영기준을 따름

■ 가구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GR-1~36	GR-1~36	능동로, 용마산로, 긴고량로 일원	◦면적 변경 - 289,149.1㎡ → 284,432.3㎡, 감) 4,716.8㎡	◦ 면적 오기 정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민원 (구역 제척) 반영
-	GR-37	능동로 47길 일대	◦가구 신설(9,646.8㎡)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확장에 따른 가구 신설
-	GR-38	긴고량로 13길 일대	◦가구 신설(2,644.8㎡)	

■ 공공용지(변경없음)

구분	위치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 정	중곡동 168-8대	GR-1	3,690.0	중곡문화체육센터
	중곡동 30-75대	GR-8	187.6	중곡역
	중곡동 30-77대	GR-8	35.8	중곡역
	중곡동 29-1대	GR-8	5,348.8	공공공지(주차장)
	중곡동 220-22학	GR-14	5,616.6	중광초등학교
	중곡동 230-12차	GR-15	1,757.4	주차장
	중곡동 229-5대	GR-16	2,242.6	중곡시장
	중곡동 229-15대	GR-16	1,553.7	중곡시장
	중곡동 221-6차	GR-17	695.0	주차장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공동개발 계획(변경)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능동로변 (9개소 - 38,744.0㎡)	능동로변에 적정개발규모유도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된 일단의 지역으로 향후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	용도지역 상향시 20%이상 공공기여
변경	특별계획 가능구역	- 능동로변 (3개소 - 11,538.6㎡) - 의료복합단지 남측 (1개소 - 17,955.0㎡)	능동로변 및 의료복합단지 남측에 적정개발규모 유도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된 일단의 지역으로 향후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	용도지역 상향시 20%이상 공공기여
기정	공동 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필지 및 동일소유 필지 과소필지	-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자 율 적 공동개발	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제외)	주변과 연계된 적정개발규모 유도 제외 대상 1. 부정형(요철형, 과소형)대지 발생시 2. 세장비(장단변의 비)가 1:3이상이 되는 경우 3. 차량진출입 불가능 대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설	공동개발 (특별지정) 가능구역	용마산로 동측변 (40,448.4㎡)	아차산자락의 구릉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보행·녹지공간을 확충·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계획 ※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내 2필지 이상 주민동의 등에 따라 공동개발(특별지정) 제안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경미한 변경 절차)을 통해 공동개발(특별지정)결정	-

■ 공동개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공동개발 계획 기준 변경 - 지정 : 2개소 → 28개소, 증) 26개소 - 권장 : 46개소 → 43개소, 감) 3개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검토 - 동일소유자, 과소필지, 기 공동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조정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신설 - 가구번호 : GR-25~31	◦아차산자락의 구릉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보행·녹지공간 조성 유도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

■ 대지분할 가능선(폐지)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대지분할 가 능 선	◦대지형태의 정형화 유도가 필요한 대지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대지	◦대형대지의 분할가능한 위치를 지정	국립서울병원 부지

■ 대지분할 가능선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지분할 가 능 선	◦대지분할 가능선 폐지 - 가구번호 : GR-8	◦특별계획구역@ 조성(' 21.7.) 및 지적분할(' 21.6.) 완료에 따른 폐지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기정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1	1	168-2대	9,497.2	9,497.2	특별계획구역	-
	2	168-3대	152.4	305.1	공동개발(권장)	
		168-4대	152.7			
GR-2	1	167-1대	165.6	634.7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7-11대	152.4			
		167-21대	316.7			
		167-2대	151.4	876.3	공동개발(권장)	
		167-3대	152.4			
		167-4대	163.6			
		167-6대	108.4			
		167-7대	91.9			
		167-8대	93.6			
		167-9대	115.0			
		167-5도	78.3	1,575.3	-	
		167-12도	73.7			
		167-13대	138.8			
		167-14대	130.9			
		167-15대	129.9			
		167-16대	160.3			
		167-17대	170.9			
		167-18대	158.0			
		167-19대	153.4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67-20대	133.9			
		167-22대	130.2			
		167-23대	117.0			
GR-3	1	166-3대	127.3	763.0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4대	533.9			
		166-34대	101.8			
		166-6대	165.3	406.9	공동개발(권장)	
		166-30대	105.1			
		166-31대	136.5			
		166-7대	160.3	565.3	공동개발(권장)	
		166-8대	186.8			
		166-28대	108.4			
		166-29대	109.8			
GR-3	1	166-1대	142.8	1,841.1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2대	95.5			
		166-5대	121.7			
		166-21대	113.7			
		166-22대	117.4			
		166-23대	112.4			
		166-24대	98.5			
		166-25대	104.5			
		166-26대	103.1			
		166-27도	246.3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66-32대	92.2			
		166-33대	111.1			
		166-46대	103.5			
		166-47대	104.5			
		166-48대	123.0			
		166-49도	50.9			
	2	166-9대	199.0	679.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10대	117.4			
		166-11대	103.5			
		166-38대	115.7			
		166-39대	143.5			
		166-12대	182.5	378.5	공동개발(권장)	
		166-42대	196.0			
		166-13대	1,002.6	1,438.2	공동개발(권장)	
		166-35대	172.2			
		166-36대	133.2			
		166-37대	130.2			
		166-15대	182.8	399.0	공동개발(권장)	
		166-41대	216.2			
		166-19대	1,086.3	1,981.2	-	
		166-16대	156.4			
		166-17대	312.4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66-40도	47.6			
		166-43대	196.0			
		166-44대	182.5			
GR-4	1	165-1대	186.4	783.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5-2대	596.7			
		165-3대	330.6	970.2	공동개발(권장)	
		165-5대	380.5			
		165-6대	259.1			
		165-15대	138.8	1,761.1	-	
		165-16대	170.6			
		165-17대	246.0			
		165-18대	258.8			
		165-19대	149.1			
		165-20대	143.1			
		165-21도	77.0			
		165-22대	149.1			
		165-23대	147.1			
		165-24대	139.5			
		165-25대	142.5			
		165-9대	376.2	683.7	공동개발(권장)	
		165-10대	133.6			
		165-35대	173.9			
		165-7대	333.3	3,264.1	-	
		165-8대	1,814.2			
		165-14대	224.1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65-28대	169.9			
		165-30도	49.6			
		165-31대	136.2			
		165-32대	147.4			
		165-33대	215.5			
		165-34대	173.9			
GR-5, GR-6	1	29-56대	515.0	663.4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57대	148.4			
		29-58대	149.1	303.8	공동개발(권장)	
		29-82대	154.7			
		29-59대	224.1	377.8	공동개발(권장)	
		29-81대	153.7			
		29-60대	226.1	364.3	공동개발(권장)	
		29-80대	138.2			
		29-61대	116.9	259.7	공동개발(권장)	
		29-79대	142.8			
		29-62대	233.1	373.6	공동개발(권장)	
		29-77대	140.5			
		29-78대	142.1	258.9	공동개발(권장)	
		29-91대	116.8			
GR-5, GR-6	1	16대	508.4	3,923.5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29대	168.9			
		29-30대	253.2			
		29-31대	125.0			
		29-32대	246.9			
		29-33대	242.0			
		29-34대	230.1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9-48대	133.6			
		29-49대	132.9			
		29-50대	134.2			
		29-51대	135.9			
		29-52대	134.5			
		29-53대	133.9			
		29-54대	226.8			
		29-55대	200.0			
		29-85도	560.2			
		29-89대	124.9			
		276-1도	232.1			
	2	29-63대	135.2	391.4	공동개발(권장)	
		29-76대	256.2			
		29-64대	137.5	534.2	공동개발(권장)	
		29-65대	146.8			
		29-75대	249.9			
		29-66대	154.7	404.6	공동개발(권장)	
		29-74대	249.9			
		29-67대	181.2	349.1	공동개발(권장)	
		29-73대	167.9			
		29-68대	187.8	543.5	공동개발(권장)	
		29-71대	147.4			
		29-72대	208.3			
		29-69대	153.1	538.9	공동개발(권장)	
		29-70대	385.8			
		29-35대	128.0	2,893.8	-	
		29-36대	133.9			
		29-37대	135.9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9-38대	153.1			
		29-39대	134.5			
		29-40대	135.9			
		29-41대	171.2			
		29-42대	245.0			
		29-43대	285.6			
		29-44대	226.4			
		29-45대	119.9			
		29-46대	221.5			
		29-47대	136.2			
		29-85도	445.1			
		29-88대	119.8			
		29-90대	101.8			
GR-8	1	29-1대	5,348.8	46,266.5	특별계획구역	-
		30-1대	40,414.5			
		276-23도	503.2			
GR-9	1	31-1대	162.6	534.5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6대	371.9			
		31-7대	227.8	454.2	공동개발(권장)	
		31-8대	226.4			
		31-9대	158.0	869.1	공동개발(권장)	
		31-11대	165.3			
		31-36대	545.8			
		31-2대	232.7	1,259.0	-	
		31-3대	335.0			
		31-28대	133.6			
		31-29도	89.9			
		31-30대	131.9			
		31-31대	148.8			
		31-32대	126.6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31-34도	60.5				
	2	31-10대	252.2	451.2	공동개발(권장)		
		31-19대	199.0				
		31-20대	166.6	375.5	공동개발(권장)		
		31-25대	208.9				
		31-21대	166.9	335.5	공동개발(권장)		
		31-24대	168.6				
		31-22대	166.9	338.5	공동개발(권장)		
		31-23대	171.6				
		31-37대	126.3	666.2	공동개발(권장)		
		31-38대	398.7				
		31-40대	141.2				
		31-12대	249.5	2,329.2	-		
		31-13대	161.3				
		31-14대	181.5				
		31-16대	181.5				
		31-17대	181.5				
		31-18대	194.7				
		31-26도	328.9				
		31-33대	148.1				
		31-39도	44.6				
		31-41대	163.6				
		31-42대	248.9				
	31-43대	245.1					
GR-23	1	24-11대	83.6	423.5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
		150-288대	17.0				
		24-19대	172.6				
		152-1대	23.0		공동개발(지정)		
		24-10대	127.3		-		
	2	150-104대	324.0	430.4	공동개발(권장)		-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확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3	150-290대	106.4	442.0	공동개발(권장)	-
		150-106대	221.0			
		150-107대	221.0			
GR-24	1	28-3대	285.8	515.4	공동개발(권장)	-
		28-26대	229.6			
GR-25	1	21-1대	230.7	461.8	공동개발(권장)	-
		21-2대	231.1			
GR-26	1	23-1대	181.8	366.9	공동개발(권장)	-
		23-2대	185.1			
GR-32	1	18-22대	205.6	581.5	공동개발(권장)	-
		18-55대	175.2			
		18-65대	200.7			
	2	18-26대	168.9	848.2	공동개발(권장)	-
		18-54대	255.2			
		18-61대	168.9			
		18-62대	255.2			
	3	18-27대	387.1	971.9	공동개발(권장)	-
		18-56대	584.8			
	4	18-28대	255.2	439.9	공동개발(권장)	-
		18-29대	99.2			
		18-146대	85.5			
GR-32	4	18-144대	99.0	529.5	공동개발(권장)	-
		18-145대	430.5			
GR-34	1	18-1대	287.6	520.0	공동개발(권장)	-
		18-3대	232.4			
GR-36	1	297-14대	140.5	317.0	공동개발(권장)	-

가구번호	연 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97-15대	176.5			

- 변경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1	1	168-2대	9,497.2	9,497.2	특별계획구역		-
GR-2	1	167-1대	165.6	634.7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 가능구역
		167-11대	152.4				
		167-21대	316.7				
	2	167-2대	151.4	876.3	공동개발(권장)		
		167-3대	152.4				
		167-4대	163.6				
		167-6대	108.4				
		167-7대	91.9				
		167-8대	93.6				
		167-9대	115				
	3	167-5도	78.3	1,575.3	-		
		167-12도	73.7				
		167-13대	138.8				
		167-14대	130.9				
		167-15대	129.9				
		167-16대	160.3				
		167-17대	170.9				
		167-18대	158				
		167-19대	153.4				
		167-20대	133.9				
		167-22대	130.2				
		167-23대	117				
GR-3	1	166-3대	127.3	763.0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특별계획 가능구역
		166-4대	533.9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확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66-34대	101.8		-		
		166-6대	165.3	406.9	공동개발(권장)		
		166-30대	105.1				
		166-31대	136.5				
		166-7대	160.3	565.3	공동개발(권장)		
		166-8대	186.8				
		166-28대	108.4				
		166-29대	109.8				
		166-1대	142.8	1,841.1	-		
		166-2대	95.5				
		166-5대	121.7				
		166-21대	113.7				
		166-22대	117.4				
		166-23대	112.4				
		166-24대	98.5				
		166-25대	104.5				
		166-26대	103.1				
		166-27도	246.3				
		166-32대	92.2				
		166-33대	111.1				
		166-46대	103.5				
		166-47대	104.5				
		166-48대	123.0				
		166-49도	50.9				
	2	166-9대	199.0	679.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 가능구역
		166-10대	117.4				
		166-11대	103.5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66-38대	115.7	378.5	공동개발(권장)		
		166-39대	143.5				
		166-12대	182.5				
		166-42대	196.0				
		166-13대	1,002.6	1,438.2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166-35대	172.2				
		166-37대	130.2		-		
		166-36대	133.2				
		166-15대	182.8	399.0	공동개발(지정)		
		166-41대	216.2				
		166-19대	1,086.3	1,981.2	-		
		166-16대	156.4				
		166-17대	312.4				
		166-40도	47.6				
		166-43대	196.0				
		166-44대	182.5				
GR-4	1	165-1대	186.4	783.1	공동개발(권장)		-
		165-2대	596.7				
	2	165-3대	330.6	970.2	공동개발(권장)		-
		165-5대	380.5				
		165-6대	259.1				
	3	165-14대	224.1	394.0	공동개발(지정)		-
		165-28대	169.9				
	4	165-9대	376.2	683.7	-	공동 개발 (권장)	-
		165-10대	133.6		공동개발(지정)		
		165-35대	173.9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5	1	29-56대	515.0	663.4	공동개발(권장)	-
		29-57대	148.4			
	2	29-58대	149.1	303.8	공동개발(권장)	-
		29-82대	154.7			
	3	29-59대	224.1	377.8	공동개발(권장)	-
		29-81대	153.7			
	4	29-60대	226.1	364.3	공동개발(권장)	-
		29-80대	138.2			
	5	29-61대	116.9	259.7	공동개발(권장)	-
		29-79대	142.8			
	6	29-62대	233.1	373.6	공동개발(권장)	-
		29-77대	140.5			
	7	29-78대	142.1	258.9	공동개발(권장)	-
		29-91대	116.8			
	8	29-63대	135.2	391.4	공동개발(권장)	-
		29-76대	256.2			
	9	29-64대	137.5	534.2	공동개발(권장)	-
		29-65대	146.8			
		29-75대	249.9			
	10	29-66대	154.7	404.6	공동개발(권장)	-
		29-74대	249.9			
	11	29-67대	181.2	349.1	공동개발(권장)	-
		29-73대	167.9			
	12	29-68대	187.8	543.5	공동개발(권장)	-
		29-71대	147.4			
		29-72대	208.3			
	13	29-69대	153.1	538.9	공동개발(권장)	-
		29-70대	385.8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8	1	29-1대	4,875.0	46,257.7	특별계획구역	-
		29-2도	494.4			
		29-92대	473.8			
		30-1대	19,561.3			
		30-78도	694.5			
		30-79공	1,276.7			
		30-80대	18,190.8			
		30-81도	691.2			
GR-9	1	31-1대	162.6	534.5	공동개발(권장)	-
		31-6대	371.9			
	2	31-7대	227.8	454.2	공동개발(지정)	-
		31-8대	226.4			
	3	31-9대	158.0	869.1	공동개발(권장)	-
		31-11대	165.3			
		31-36대	545.8			
	4	31-21대	166.9	674.0	공동개발(권장)	-
		31-22대	166.9			
		31-23대	171.6			
		31-24대	168.6			
	5	31-10대	252.2	826.7	공동개발(권장)	-
		31-19대	199.0			
		31-20대	166.6			
		31-25대	208.9			
	6	31-37대	126.3	666.2	공동개발(권장)	-
		31-38대	398.7			
		31-40대	141.2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10	1	170-1대	99.5	267.4	공동개발(지정)	-
		170-41대	167.9			
	2	170-3대	110.4	240.6	공동개발(지정)	-
		170-4대	130.2			
	3	170-11대	92.2	210.9	공동개발(지정)	-
		170-13대	118.7			
	4	170-16대	83.6	207.2	공동개발(권장)	-
		170-17대	123.6			
GR-11	1	171-23대	84.6	203.9	공동개발(지정)	-
		171-25대	119.3			
	2	171-15대	158.7	321.0	공동개발(지정)	-
		171-37대	162.3			
GR-12	1	172-8대	102.8	183.1	공동개발(권장)	-
		172-11대	80.3			
	2	172-20대	74.0	248.2	공동개발(권장)	-
		172-21대	88.6			
		172-22대	85.6			
	3	172-24대	87.3	171.3	공동개발(권장)	-
		172-26대	84.0			
	4	172-27대	168.3	252.9	공동개발(권장)	-
		172-29대	84.6			
	5	172-30대	84.3	176.5	공동개발(권장)	-
		172-31대	92.2			
	6	172-44대	106.1	110.7	공동개발(권장)	-
		172-60대	4.6			
GR-13	1	193-26대	232.7	505.1	공동개발(권장)	-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93-59대	272.4				
	2	193-32대	229.8	409.7	공동개발(권장)	공동 개발 (권장)	-
		193-62도	13.6				
		193-63도	4.0				
		193-68도	1.7				
		193-33대	155.2		공동개발(지정)		
		193-69도	5.4				
	3	193-47대	99.8	758.0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
		193-48대	82.0				
		193-49대	290.2		공동개발(권장)		
		193-50대	286.0				
GR-14	1	220-13대	92.2	177.8	공동개발(권장)		-
		220-14대	85.6				
	2	220-15대	78.0	377.2	공동개발(지정)		-
		220-16대	79.7				
		220-69대	108.8				
		220-70대	110.7				
	3	220-18대	82.0	168.9	공동개발(권장)		-
		220-19대	86.9				
	4	220-39대	134.2	140.1	공동개발(권장)		-
		220-89대	5.9				
	5	220-45대	143.8	227.8	공동개발(권장)		-
		220-46대	84.0				
	6	220-63대	172.2	344.4	공동개발(지정)		-
		220-64대	172.2				
GR-15	1	230-8대	252.9	501.8	공동개발(지정)		-
		230-37대	248.9				
	3	230-13대	736.3	925.7	공동개발(권장)		-
		230-14대	189.4				
GR-17	1	221-7대	159.0	339.2	공동개발(지정)		-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	221-51대	180.2	318.6	공동개발(지정)	-
		221-41대	159.3			
		221-42대	159.3			
GR-19	1	32-6대	148.8	317.4	공동개발(지정)	-
		32-20대	168.6			
GR-20	1	33-6대	111.7	218.8	공동개발(지정)	-
		33-7대	107.1			
	2	33-21대	84.6	166.3	공동개발(권장)	-
		33-22대	81.7			
	3	33-37대	252.5	444.3	공동개발(지정)	-
		33-69대	191.8			
	4	33-47대	144.1	287.9	공동개발(지정)	-
		33-50대	143.8			
	5	33-60대	162.3	329.6	공동개발(지정)	-
		33-61대	167.3			
GR-21	1	34-39대	140.2	314.1	공동개발(지정)	-
		34-40대	173.9			
GR-22	1	35-2대	144.1	257.1	공동개발(지정)	-
		150-153대	113.0			
	2	35-8대	127.9	137.0	공동개발(권장)	-
		35-71대	9.1			
	3	35-66대	194.4	239.4	공동개발(지정)	-
		150-417대	45.0			
GR-23	1	24-1대	151.1	261.5	공동개발(지정)	-
		24-35대	110.4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	24-8대	390.4	820.9	공동개발(지정)	-
		24-10대	127.3			
		24-11대	83.6			
		24-19대	172.6			
		150-288대	17.0			
		150-289도	7.0			
		152-1대	23.0			
	3	24-9대	218.8	395.3	공동개발(지정)	-
		24-30대	176.5			
	4	150-104대	324.0	430.4	공동개발(지정)	-
		150-290대	106.4			
	5	150-151대	66.0	225.0	공동개발(권장)	-
		152-5대	159.0			
GR-25	1	21-1대	230.7	3,847.9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21-2대	231.1			
		21-3대	238.0			
		21-4대	292.2			
		21-5대	43.3			
		21-7대	8.3			
		21-8대	123.3			
		21-9대	357.4			
		21-10대	241.0			
		21-11대	600.7			
		21-15대	196.9			
		21-16대	197.0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1-17대	175.2			
		150-58대	212.0			
		150-60대	238.8			
		150-61대	231.0			
		150-62대	231.0			
GR-25	2	150-63대	231.0	1,384.0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64대	231.0			
		150-65대	231.0			
		150-66대	231.0			
		150-67대	231.0			
		150-68대	229.0			
	3	150-69대	229.0	1,382.0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70대	231.0			
		150-71대	231.0			
		150-72대	231.0			
		150-73대	231.0			
		150-74대	229.0			
GR-26	1	23-1대	181.8	2,384.3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23-2대	185.1			
		23-3도	52.2			
		23-4대	134.5			
		150-14대	318.1			
		150-17대	245.6			
		150-18대	231.0			
		150-19대	36.0			
		150-20대	213.5			
		150-21대	231.0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50-22대	231.0			
		284대	324.5			
	2	150-32대	231.0	1,382.0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33대	231.0			
		150-34대	229.0			
		150-35대	231.0			
		150-36대	231.0			
		150-37대	229.0			
	3	150-38대	231.0	1,386.0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39대	231.0			
		150-40대	231.0			
		150-41대	231.0			
		150-42대	231.0			
		150-43대	231.0			
	4	150-44대	231.0	1,386.0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45대	231.0			
		150-46대	231.0			
		150-47대	231.0			
		150-48대	231.0			
		150-49대	231.0			
GR-27	1	150-23대	81.4	2,723.8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24대	195.0			
		150-25대	301.0			
		150-27대	314.0			
		150-28대	317.0			
		150-29대	258.0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50-30대	237.4			
		150-31대	88.0			
		150-286대	77.6			
		150-422대	8.0			
		271-1대	204.0			
		271-2대	196.4			
		271-3대	269.8			
		271-4대	176.2			
GR-28	1	18-67대	686.6	3,098.7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8-69대	337.5			
		18-70대	337.5			
		18-71대	337.5			
		18-72대	337.5			
		18-73대	337.5			
		18-74대	337.5			
		18-75대	387.1			
GR-29	1	18-76대	218.2	5,187.1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8-77대	215.9			
		18-78대	215.9			
		18-79대	144.0			
		18-81대	215.9			
		18-82대	144.0			
		18-84대	215.9			
		18-85대	215.9			
		18-86대	215.9			
		18-87대	217.5			
		18-88대	216.2			
		18-89대	215.9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8-90대	215.9			
		18-91대	215.9			
		18-92대	215.9			
		18-93대	215.9			
		18-94대	215.9			
		18-95대	215.9			
		18-96대	215.9			
		18-97대	215.9			
		18-98대	215.9			
		18-99대	217.2			
		18-148대	143.9			
		18-149대	143.9			
		18-150대	143.9			
		18-151대	143.9			
GR-30	1	18-100대	217.2	5,186.9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8-101대	215.9			
		18-102대	215.9			
		18-103대	215.9			
		18-104대	215.9			
		18-105대	215.9			
		18-106대	144.0			
		18-108대	215.9			
		18-109대	215.9			
		18-110대	215.9			
		18-111대	216.9			
		18-112대	215.2			
		18-113대	215.9			
		18-114대	215.9			
		18-115대	216.2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8-116대	216.2			
		18-117대	216.2			
		18-118대	216.2			
		18-119대	216.2			
		18-120대	216.2			
		18-121대	216.2			
		18-122대	216.2			
		18-123대	217.2			
		18-152대	143.9			
		18-153대	143.9			
GR-31	1	18-124대	228.1	2,886.6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8-125대	210.6			
		18-126대	211.6			
		18-127대	213.2			
		18-128대	212.2			
		18-129대	208.6			
		18-130대	213.2			
		18-131대	216.9			
		18-132대	222.8			
		18-133대	221.5			
		18-134대	231.1			
		18-135대	239.3			
		18-136대	257.5			
GR-32	1	18-19대	363.6	804.6	공동개발(권장)	-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8-49대	243.3				
		18-50대	197.7				
	2	18-22대	205.6	581.5	공동개발(권장)		-
		18-55대	175.2				
		18-65대	200.7				
	3	18-26대	168.9	424.1	공동개발(권장)		-
		18-54대	255.2				
	4	18-27대	387.1	1,396.0	공동개발(권장)		-
		18-56대	584.8				
		18-61대	168.9				
		18-62대	255.2				
	5	18-29대	99.2	184.7	공동개발(권장)		-
		18-146대	85.5				
GR-35	1	18-45대	561.6	580.8	공동개발(권장)		-
		18-47대	19.2				
GR-37	3	241-24대	62.5	576.9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
		241-25대	49.3				
		241-26대	146.4				
		241-27대	233.1				
		241-28대	85.6		-		

다. 대지규모 결정(변경)조서

■ 최대개발규모(변경)

구분		규모	비고
기정	간선부	2,000㎡	능동로 및 응마산로변 일대
기정	이면부	1,000㎡	배후주거지역

- ※ 기개발지, 동일소유필지,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계획 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허용
 ※ 능동로변은 개별건축시 간선부 2,000㎡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하되,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하지 않음
 ※ (신설)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내 2필지 이상의 공동개발(특별지정) 계획시 최대개발규모의 30% 이내로 완화 적용 가능
 ※ (신설)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사업 추진시 해당 관련 법령·운영기준을 따름

■ 최대개발규모 변경사유서

적용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예외조항 변경 -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내 공동개발 시행시 최대개발규모의 30% 이내로 완화 적용	◦아차산자락의 구릉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보행·녹지공간 조성 유도를 위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에 따른 완화 조항 신설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불허용도	비고
기정		공통사항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
기정	A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유사시설 포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숙박시설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B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구분	분류	용도지역	불허용도	비고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 시설 포함),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숙박시설(관광숙박 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변경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숙박시설(관광숙박 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능동로변
기정	C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 주거복합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
변경	C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
기정	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신설	E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 주거복합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지침 적용

■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 신설	◦당초 고시(서고 제2012-257호, ' 12.9.27.)에서 누락된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불허용도 변경 - 공동주택 중 아파트 폐지	◦배후주거기능 강화 및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폐지
준주거지역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불허용도 변경 - 주거복합 허용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 도입 유도를 위해 주거복합 예외

※ 당초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서고 제2012-257호, 2012.9.27.)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권장용도	비고
기정	A	준주거지역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B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능동로변
기정	C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독서실	-
기정	D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신설	E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의료시설(격리병원, 종합병원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약품판매점, 한의원, 침술원 등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면목로 간선변
신설	F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독서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의 완화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함

※ 권장용도 'B'구간의 관광숙박시설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에만 해당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지침 적용

■ 권장용도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권장용도 신설	◦당초 고시(서고 제2012-257호, '12.9.27.)에서 누락된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면목로 간선변 권장용도 신설 - 생활의료관련시설 추가	◦생활의료시설이 밀집한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면목로변의 생활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권장용도 신설

※ 당초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서고 제2012-257호, 2012.9.27.)

다.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라. 건축물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준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신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지침 적용

■ 건폐율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체계 신설	•당초 고시(서고 제2012-257호, ' 12.9.27.)에서 누락된 사항 반영

※ 당초 : 종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서고 제2012-257호, 2012.9.27.)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A	준주거지역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480%이하)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기정	C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기정	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0%이하	190%이하	250%이하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구분	분류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설	E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신설	F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내 2필지 이상 공동개발(특별지정) 시행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의 상한용적률 적용(국립서울병원부지 제외)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지침 적용

※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내 2필지 이상 공동개발시 인센티브 항목 준수에 한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용적률의 1.2배 이하 완화 가능

■ 용적률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신설	◦당초 고시(서고 제2012-257호, ' 12.9.27.)에서 누락된 사항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내 용적률 체계 신설 - 제1종 : 180% 이하 - 제2종(7층) : 240%이하 ※ 허용용적률 1.2배 이내	◦아차산자락의 구릉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보행·녹지공간 조성 유도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내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시 인센티브 항목 적용에 한하여 용적률 완화

※ 당초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서고 제2012-257호, 2012.9.27.)

■ 상한용적률 완화내용

1) 공공시설등 제공시 인센티브

내용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 · 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 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 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를 적용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1) 유형 1(일반주거지역) · 유형2(특별계획구역)

- 기정

내 용			항 목	유 형 1 (일반주거지역)	유 형 2 (특별계획구역)	비 고
규 제 형 (50% 이내)	획 지 계 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	-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전면금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1.0	-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
	대지내 동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0.25$, 개방형 $\alpha=0.4$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1.0$, 개방형 $\alpha=1.2$	-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
유 도 형 (30% 이상)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0.3$, 개방형 $\alpha=0.5$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1.2$, 개방형 $\alpha=1.5$	-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0.3$, 개방형 $\alpha=0.5$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1.2$, 개방형 $\alpha=1.5$	-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0.5$, 개방형 $\alpha=0.8$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형 $\alpha=1.5$, 개방형 $\alpha=2.0$	-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설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3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1.0	-
		특정층 개방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 × 1.0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도시 경관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	기준용적률 × 0.2	-
의 무 형 (20% 이상)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 보 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3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2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1	-

내 용				항 목	유 형 1 (일반주거지역)	유 형 2 (특별계획구역)	비 고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 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신재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 × 0.05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 ※ 의무형 인센티브 친환경 계획 항목은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 ※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 ※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단,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 ※ 의무형 인센티브는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 ※ 특정층 개방이라 함은 1층, 옥상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 가능한 지하층, 2층이상의 옥외공간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 ※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유형 2를 적용하여 인센티브 산정함

－ 변경

내 용				항 목	유 형 1 (일반주거지역)	유 형 2 (특별계획구역)	비 고
기존대형 (30% 이상)	획지 계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α ※ 2필지=0.2, 3필지=0.3, 4필지 이상=0.4	－	－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0.4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1.2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설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 5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1. 5	－
계획 유도 (70% 이내)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필로티형=0.4, 개방형=0.6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필로티형=1.2, 개방형=1.5	－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필로티형=0.4, 개방형=0.6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필로티형=1.2, 개방형=1.5	－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필로티형=0.6, 개방형=1.0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필로티형=1.5, 개방형=2.0	－
	도시 경관	지하철 및 건축물내 설치	지중화시설		－	기준용적률×0.5	－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연면적)× α ※ 필로티형=1.0, 개방형=1.2	－
	친환경 계획	자연지반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5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05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3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05	－
		녹색 건축자재	준수시		기준용적률×0.02	기준용적률×0.04	주요 건축부재 6개 중 2개 이상 녹색건축자재 제품을 해당 부재 총 사용량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

내 용				항 목	유 형 1 (일반주거지역)	유 형 2 (특별계획구역)	비 고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 대지면적)×0.02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 대지면적)×0.04	관련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과 중복적용 불가

- ※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 중점형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중점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단,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 ※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2) 유형 3(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9%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3%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20% 이하 15% 초과	15% 이하 10% 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 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합 계	최대 20% 이내		

3) 유형 4(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신설)

구분	완 화 내 용				비 고
(A) 허용용적률 1.1배 완화 (2개 총측)	의무 사항	A-1	주차장 조성시	◦법정주차대수 10%이상 공유주차장 설치(최소 1대 이상)	용마산로22길·24길변에 면하지 않는 필지에 한함
		A-2	보행 및 휴게공간	◦전면공지(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차량 통행공간 조성시(추가1m 이상)	용마산로22길·24길변에 면한 필지에 한함
	선택 사항	A-2	보행 및 휴게공간	◦전면공지(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차량 통행공간 조성시(추가1m 이상)	-
		A-3	건축품질향상 및 안전시설 설치시	◦공용CCTV, 소화전 설치시(사각지역이 없이 최소 3개소 이상) ◦조경 의무대상 면적 제외한 추가 녹화 조성시 (대지면적의 5%이상)	-
		A-4	생활SOC시설 도입시	◦공간제공 협약 체결시 :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 어린이, 청소년 등 학생을 위한 공간(최소 33㎡ 이상)	-
(B) 허용용적률 1.2배 완화 (A+1개 총측)	선택 사항	B-1	주차장 조성시	◦법정주차대수 20%이상 공유주차장 설치(최소 2대 이상)	-
		B-2	보행 및 휴게공간	◦소공원 조성시(대지면적의 5% 이상, 최소면적 25㎡)	-

※ A+B 모두 총측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경미한 변경)을 통해 사업계획 및 인센티브 계획 검토하여 최종 결정함

3) 유형 5(특별계획가능구역)

내 용		항 목		완 화 내 용	비 고
KSI인증 (30% 이상)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2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설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1.5	-
계획 유도 (70% 이내)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형=1.0, 개방형=1.3	-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형=1.0, 개방형=1.3	-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형=1.2, 개방형=1.5	-
	도시 경관	지하철 및 건축물내 설치	지중화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5	-
	친환경 계획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연면적)×0.15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연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0.05	-
		녹색 건축자재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주요 건축부재 6개 중 2개 이상 녹색건축자재 제품을 해당 부재 총 사용량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 대지면적)×0.04	관련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과 중복적용 불가

※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중점형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30%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중점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단,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마.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높이		비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정	A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4m	배후주거지역
기정	B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0m	용마산로변
기정	C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m	능동로변
기정	D	준주거지역	60m	90m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E	준주거지역	80m	100m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F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0m (최고12층이하, 평균10층 이하)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신설	G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m (4층이하)	-

※ 높이계획 "F"는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층수계획 기준 적용

※ 최고높이 기준 : 1층의 바닥 지표면 기준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지침 적용

※ (신설)용마산로변 간선·이면부는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
(구릉지 평균 10층/최고 13층이하, 50m이하)

■ 높이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높이계획 신설	◦당초 고시(서고 제2012-257호, '12.9.27.)에서 누락된 사항 반영
단서 조항	◦용마산로 간선·이면부 높이완화 예외조항 신설	◦주변 여건변화(종합의료복합단지 등)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한하여 높이 완화

※ 당초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서고 제2012-257호, 2012.9.27.)

■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없음)

항 목		계 획 내 용
기준높이 완 화	우수디자인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
	지하철 출입구 연계	기준높이 × 0.2
	권장용도	기준높이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우수디자인'의 적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높이완화 항목은 용적률 완화항목(허용/상한용적률)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바.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 배치계획(변경)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능동로	능동로변 인접 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국립서울병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
	화양변전소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용마산로	용마산로변 인접 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국립서울병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
면목로	면목로변 인접 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이면도로	배후주거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
	용마산로23길	국립서울병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용마산로24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능동로49길 · 50길 · 51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능동로53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3.0m	
	긴교량로13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국립서울병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5.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5.0m	-
화양변전소 부지	능동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능동로53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2.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2.0m	-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적용

■ 건축한계선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목로변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확대 - 1m → 2m, 증) 1m	◦지역커뮤니티가로변인 면목로의 보행안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확대
능동로49길 · 50길 · 51길 및 긴교량로13길	◦건축한계선 확대 - 1m → 2m, 증) 1m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변의 보행약자(학생, 노인 등) 보호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확대
능동로53길 (일부)	◦건축한계선 확대 - 1m → 2~3m 증) 1~2m	◦특별계획구역 ^㉞ 외 계획적 연속성 확보 및 보행안전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대

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주요 가로변 및 역세권 건축물의 적용범위 및 대상(변경없음)

구 분	적 용 범 위	적 용 대 상
주요가로변 및 역세권	◦능동로변 ◦용마산로변 ◦중곡역 일대	◦건축물 : 대로변에 접해있는 건물 ◦건축물 외부공간 : 건축선 후퇴부, 공개공지 ◦공공공간 : 시설물 설치구역, 통행구역, 인접녹지

1) 건축물 계획지침(변경없음)

- 배치, 규모·높이, 형태·외관, 재질, 색채 등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준수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수

목 표	가 이 드 라 인 (권장사항)
창조적 디자인 유도	◦가각부 건축물은 역세권의 랜드마크로서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 (지나친 디자인 지양)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층부에 야외카페 조성, 개방적 입면 계획 등을 유도
옥외광고물 개선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건축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관에 기여하는 요소가 되도록 함
부속시설물의 시각적 차폐	◦에어컨실외기 등의 건물 부속물은 건축계획시 건물디자인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함
휴먼스케일 고려 및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	◦2층 높이(6m)로 저층부 높이를 제한하여 휴먼스케일을 고려하고, 중·고층부는 3m 셋백(setback)을 하여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
고층부 후퇴공간에 녹화 유도	◦고층부의 셋백(setback)된 공간에는 녹화공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광진구의 중심 가로로서의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
획일적인 건물외관 지양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분절화에 의한 표정이 풍부한 건물외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 사용	◦재료가 갖는 질감과 물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장재를 쓰도록 하며, 재료 간의 색채 및 패턴의 조화를 고려함 (광택이 강하거나 반사성 재질은 제한적으로 사용)

2) 건축물 외부공간(전면공지, 공개공지) 계획지침(변경없음)

－ 외부공간에 대한 일반사항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준수

목 표	가 이 드 라 인 (권장사항)
건축선 후퇴부 관리	◦건축선 후퇴부에 노상 적재를 방지행위, 주차,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금지 ◦계단출입구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설치 금지
건축물 전면부 녹화공간 조성	◦건물 전면측면에 화단 등의 녹화공간 조성으로 가로 경관 향상(인접 건축물의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 고려)
역세권 각각부에 외부공간 배치	◦각각부 건축물의 경우, 공공공간과 연속성을 갖도록 각각부에 공개공지 등의 외부공간 조성
통합적 보도포장	◦공공공간과의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보도를 포장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쌈지공원 등 가로활성화 및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보도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보행가로 부문 준용

3) 공공공간(시설물 설치구역, 통행구역, 인접녹지) 계획지침(변경없음)

－ 공공공간에 대한 일반사항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준수

목 표	가 이 드 라 인 (권장사항)
역세권 공공공간 통합계획	◦주요 교차점이자 역세권으로서 인지도 강화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역세권의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정비
역세권 광장 조성 및 시설물 통합디자인	◦역세권 공공공간 통합 정비 시에, 휴게기능을 강화하고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세권 광장을 조성하며, 휴게시설 및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통합 디자인함
정보제공을 위한 미디어키오스크 설치	◦보행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키오스크를 설치 하며, 키오스크는 지하철 출입구 등의 기존 가로시설물과 통합디자인함
디자인거리 조성 유도	◦테마가 있는 디자인거리로의 조성을 유도
가로 특성에 맞는 보도포장 디자인	◦가로의 특성을 살리며 가로경관적, 기능적, 환경적 측면에서 충족되는 보도포장을 유도 (민간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통합적으로 조성)

※ 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유형별 세부가이드라인(교차점광장)」 준수

※ 가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준수

※ 보도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보행가로 부문 준수

3.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	특별계획구역 ㉠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46,266.5	-	46,266.5	-
기정	㉡	특별계획구역 ㉡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68-2 일대	9,497.2	-	9,497.2	-
신설	㉢	특별계획구역 ㉢ (신항빌라 재건축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8-24	-	증) 15,757.8	15,757.8	-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 (신항빌라 재건축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8-24	15,757.8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배후 주거기능 강화 및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폐지)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①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광진구 중곡동 167-1 일대	3,086.3	GR-2
②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광진구 중곡동 166-1 일대	3,576.3	GR-3
③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광진구 중곡동 166-9 일대	4,876.0	GR-3
④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광진구 중곡동 165-1 일대	3,514.9	GR-4
⑤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광진구 중곡동 165-7 일대	3,947.8	GR-4
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⑥	광진구 중곡동 16 일대	6,525.0	GR-5, 6
⑦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⑦	광진구 중곡동 29-35 일대	5,655.5	GR-5, 6
⑧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⑧	광진구 중곡동 31-1 일대	3,116.8	GR-9
⑨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⑨	광진구 중곡동 31-12 일대	4,496.1	GR-9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신설)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①	특별계획가능구역 ①	광진구 중곡동 167-1 일대	3,086.3	GR-2 (능동로)
②	특별계획가능구역 ②	광진구 중곡동 166-1 일대	3,576.3	GR-3 (능동로)
③	특별계획가능구역 ③	광진구 중곡동 166-9 일대	4,876.0	GR-3 (능동로)
④	특별계획가능구역 ④	광진구 중곡동 30-49 일대	17,955.0	GR-18,24 (의료복합단지 남측)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특별계획 가능구역①	중곡동 167-1 일대	3,086.3	◦상위·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의료복합단지와의 기능을 연계하고 지구 중심 기능 강화 및 의료특화거점으로 조성고자 능동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또한, 의료관련 종사자 등의 직주근접 실현 및 업무 기능 도입 유도를 위해 종합의료 복합단지 남측으로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계획의 실현성 증대를 위해 분할시행 가능토록 획지분할가능선 계획
	②	특별계획 가능구역②	중곡동 166-1 일대	3,576.3	
	③	특별계획 가능구역③	중곡동 166-9 일대	4,876.0	
	④	특별계획 가능구역④	중곡동 30-49 일대	17,955.0	

■ 특별계획구역 ①(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종합의료복합단지로서 중곡역 역세권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의료중심의 판매 및 업무기능, 문화기능 중심의 복합개발 유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면적	46,266.5㎡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 계획시 결정
공공기여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율 20%이상 확보 -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 그 밖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구분		계획지침	비고
가구 및 획지		• 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치료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위해 단일대지를 분할하여 단계별로 개발토록 함	-
건축 용도	불허 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	-
	권장 용도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 200%이하 / 330%이하 / 40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2' 준용	-
기준 / 최고높이		• 80m/100m이하	• 완화 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달성
건축물 배 치	건 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확보
	건축물 형 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기 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능동로변 및 옹마산로변 일부구간에 지정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특별계획구역 ⑥(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 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에 의한 주변여건 변화 및 증곡문화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계획	-
면적		• 9,497.2㎡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 계획시 결정
기반시설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 그 밖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축 용도	불허 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의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권장 용도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의료 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을 인센티브 부여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00%이하 / 330%이하 / 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의 용적을 적용
	인센티브	• 용적을 인센티브 '유형2' 준용	-
기준 / 최고높이		• 60m / 90m이하	• 완화 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적용
건축물 배 치	건 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3.0m	•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확보
	건축물 형 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구분		계획지침	비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가로변 연접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 능동로변 및 이면도로변
기 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능동로변에 지정	-
	공공 보행통로	• 대규모 개발지의 능동로변과 이면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유도 • 폭원 최소 4.0m이상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도입시 ()의 상한용적을 적용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역을 배분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2.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역을 적용기준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⑥(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 경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에 의한 주변여건 변화 및 중국문화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계획 • 획지②는 원활한 관리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조정 공간으로 조성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 계획시 결정
공공기여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 그 밖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가구 및 획지		• 획지① 6,656.1㎡ / 획지② 781.3㎡ / 획지③ 2,059.8㎡	•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 분리, 획지분할(①,②,③)
건축 용도	불허 용도	획지①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획지③ • 공장 및 창고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관장 용도	획지①	획지③	•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의료 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판매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밀도	건폐율	획지①	획지③	-
		• 60%이하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획지①	획지③	•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 시설 도입 시 ()의 용적률 적용
		• 200%이하 / 330%이하 / 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2' 준용		-
기준 / 최고높이		획지①	획지③	• 완화 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적용
		• 60m / 90m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3.0m		•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확보
	건축물 형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 능동로변 및 이면도로변
기 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능동로변에 지정		-
	공공 보행통로	• 대규모 개발지의 능동로변과 이면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유도 • 폭원 최소 4.0m이상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도입시 ()의 상한용적률 적용

※ 효율적·합리적인 공공기여 계획 등을 위해 건축물 내 기부채납 시설(도서관 및 주차장)은 획지①에 설치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

※ 획지②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획지로 구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

■ 특별계획구역 ㉠(신향빌라 재건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지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계획	-
면적		• 15,757.8㎡(획지:14,779.4㎡/ 도로:978.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기반시설		• 학교통학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등을 대상지 내 계획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축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 170%이하 / 190%이하 / 25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현금)이내	•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3' 준용	-
기준 / 최고높이		• - / 40m이하(최고12층이하, 평균10층이하)	• 완화 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적용
건축물 배 치	건 축 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용마산로24길변으로부터 4.0m	•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 확보
	건축물 형 태	• 학교통학로 조성(공공기여) • 개방형시설 배치구간 - 용마산로24길 및 학교변에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 •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용마산로24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 배치구간은 지침도를 따름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 조성 - 보도연접형, 도로연접형, 공원녹지형	• 용마산로24길 4m 공지 - 도로연접형(보도형)
기 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 용마산로24길변에 지정	-
	입체적 통경구간	• 용마산로변에서 옹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입체적 통경구간 설정하여 용마산 경관 공유 • 입체적 통경구간은 가급적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배치시 옹곡초등학교 운동장	-

구분	계획지침	비고
	레벨(+68.5m) 이하로만 가능	
보행통선	• 남측 보행출입구는 용마산로22길과 위치를 맞춰서 연결	• 보행출입구에 건축물배치 지양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개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특별계획 구역①	토지이용	• 획지② 토지이용계획으로 조정공간 조성	• 획지②는 전력공급의 원활한 관리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해 조정공간 조성
	가구 및 획지	•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 분할 - 획지① : 6,656.1㎡ - 획지② : 781.3㎡ - 획지③ : 2,059.8㎡	•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획지②)을 분리,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 분할 계획 수립
	건축한계선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2.0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3.0m 로 변경	• 이면부 건축한계선 2.0~3.0m 계획에 따라 계획지침 반영(오기사항 정정)
특별계획구역②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신설	•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합리적이고 구체적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배후주거기능 강화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안)

□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폐지)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에 의한 주변여건 변화 및 중곡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업무, 문화복합 기능 강화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 계획시 결정
기반시설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율 20%이상 확보 •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 그 밖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 용도	불허 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관장 용도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의료 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을 인센티브 부여
밀도	건폐율	60%이하	-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200%이하 / 330%이하 / 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관광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의 용적을 적용
	인센티브	용적을 인센티브 '유형2' 준용	-
기준 / 최고높이		- / 60m이하	-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 확보
	건축물 형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능동로변에 지정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추후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의 제·개정 등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호텔을 관광용도로 지정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도입시 ()의 상한용적률 적용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2.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에 따름

□ 능동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특화거점 조성을 위해 의료산업·업무 기능 도입 및 중곡역 역세권 활성화 유도												-	
면적		특별계획가능구역①				특별계획가능구역②				특별계획가능구역③				분할시행 가능	
		• 3,086.3㎡				• 3,576.3㎡				• 4,876.0㎡					
		①-1	1,516.1	①-2	1,570.2	②-1	1,494.3	②-1	2,082.0	③-1	2,567.5	③-1	2,308.5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 계획시 결정	
공공기여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20%이상 확보 • 도로, 문화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공공시설 확보 • 지하철 출입구 및 연결통로 신설, 환기구 이전 : 특별계획가능구역 ①, ②, ③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	
건축 용도	불허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권장용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보건산업관련 업종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소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업무시설은 의료 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00%이하 / 330%이하 / 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 + 1.0 ~ 1.2×a건축물 + 1.0×a현금)이내 [건축물 기부채납계수 1.2 적용하는 경우] -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 1.2 적용 • ※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 내에서 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포함)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의 용적률 적용	
기준 / 최고높이		• 60m이하 / 70m이하												권장용도 도입시 한하여 높이 완화 적용	
건축물 배 치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확보	
	건축물 형 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능동로) 차량불입불허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 타	전면공지	- 간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공개공지 (위치권장)	1개소 (분할시 2개소)	- (분할시 1개소)	2개소 (분할시 3개소)	-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폭2m) (분할시 공공보행통로(폭2m))	공공보행통로(폭2m) (분할시 공공보행통로(폭2, 4m))	계획지침도 참조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교육환경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호텔의 조성을 금지하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에 따라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함

- 추후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의 제·개정 등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중 한국전통호텔을 권장용도로 지정

※ 관광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도입시 ()의 상한용적률 적용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3-4. 용적률 계획을 따름

※ 역세권 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적용시 해당 사업의 법률 및 운영기준 적용

※ 향후 특별계획구역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 검토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 속하는 건축물 부분의 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 종합의료복합단지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토지이용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에 의한 주변여건 변화 및 중곡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문화복합 기능 강화 및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						-
면적		17,955.0㎡						분할시행 가능
		④-1	5,660.0㎡	④-2	5,471.0㎡	④-3	5,368.0㎡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 계획시 결정
기반시설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능동로50길변 도로 4m 확폭 - 노인여가복지시설, 오픈스페이스(공원 등) 지역 내 부족시설 확보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축 용도	불허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권장용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전체 연면적 중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	-
밀도	건폐율	60%이하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200%이하 / 330%이하 / 40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이내	-
기준 / 최고높이		60m이하 / 70m이하	권장용도 도입시 한하여 높이 완화 적용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변·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 공지확보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용마산로) 차량출입불허 - 능동로50길변 보차분리 및 보행자우선도로 폐지 등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 ※보행자우선도로 폐지시, 보행약자의 안전편의를 위해 보행공간 확보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능동로 49길 등과 계획적 연속성 확보	-
기 타	전면공지	간선변·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보행공간 확보
	공개공지 (위치지정)	1개소	
		-	-
		시설배치구간	- 간선변(용마산로), 이면부(능동로50길)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이용시설 배치권장 - 보행결절부 및 간선변(용마산로)·이면부(능동로50길)로 공공시설(복지시설, 공원 등) 배치 권장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역세권 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적용시 해당 사업의 법률 및 운영기준 적용

※ 향후 특별계획구역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 검토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 속하는 건축물 부분의 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능동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일반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개발	지정	• 3개소 - 기 공동개발 필지, 건축물 및 동일 소유 필지	-
	권장	• 8개소 - 적정개발 유도가 필요한 필지	-
건축용도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관장외발매소, 마관전화투표소	-
	권장용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 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상한용적률의 2배 이하	-
기준 / 최고높이		• - / 60m이하	-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능동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긴고랑로13길 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능동로)제한적 차량출입불허 • 공동주차출입구 3개소	-
기타	전면금지	• 간선변 : 3.0m / 이면부 : 2.0m	-

□ 종합의료복합단지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일반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	불허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
	권장	• (이면주거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용마산로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교육연구시설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기준 190%이하 / 200%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높이 (기준/최고)		• 간선변(용마산로) : - / 30m 이하 • 이면부 : - / 24m 이하	-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변(용마산로) · 능동로50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용마산로) 차량출입불허 및 공동주차출입구 ·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	-
기타	전면공지	• 간선변 : 2.0m / 이면부 : 1.0~2.0m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계획(변경)

구분	항목	적용목표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비고
기정	전면공지	• 가로보행 환경제고 • 일체적 보행공간 확보 및 조성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보도·도로 연결형 • 공원 녹지형	-
기정	공개공지	• 가로보행 환경개선 • 가로변 및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 위치 권장	• 지정 : 5개소 • 권장 : -개소
변경	공개공지	• 가로보행 환경개선 • 가로변 및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 위치 권장 • 중곡역 출입구변 • 도로결절부 및 가각부	• 지정 : 5개소 • 권장 : 5개소
기정	쌈지형공지	•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 미대상 필지	-
기정	침상형공지	• 지하철역과 연계한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지하철과 연계 가능한 필지 중곡역 주변필지	-
폐지	공원 및 공공공지	• 휴게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	•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부지	-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위치권장	-

■ 대지내 공지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개공지	• 공개공지(권장) 신설(5개소)	• 통학로 및 지하철출입구 등 주변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권장) 신설
공원 및 공공공지	• 폐지	• 공원 및 공공공지는 기반시설로서 대지내 공지에 해당하지 않아 오기정정

나. 교통처리계획(변경)

■ 교통처리 계획(변경)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 • 보행의 안전, 쾌적성 확보	• 대상구역내 통학로 및 주요 보행지역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부 차량진출입을 최소화하여 교통흐름 원활 유도 • 이면부 차량 진출입 유도	• 주요 간선도로변 (능동로변, 용마산로변) • 용마산로24길(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 최소화 유도	• 특별계획가능구역 • 간선가로변 공동개발 권장사항 필지
공동주차 출입구	• 간선가로변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및 보행안전성 증진	• 이면부의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
공공 보행통로	• 주요시설 및 대형건축물과의 보행연계 및 보행동선 단축	• 화양변전소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 대규모 개발시 주변과 연계계획 필요에 따라 설치
보차 혼용통로	• 이면도로의 원활한 보행 및 교통동선 유도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	• 대규모 개발시 주변과 연계계획 필요에 따라 설치
보행동선	•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남측 보행출입구는 용마산로22길과 위치를 맞춰서 연결 ※ 보행출입구에 건축물 배치 지양	•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용어변경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용어 변경
- 제한적 차량출입허용구간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용어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번호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가로변 및 이면도로변 일부구간	• 간선도로(능동로, 용마산로)변 및 이면도로(용마산로24번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
기정	제한적 차량출입허용구간	-	간선도로변 일부구간	• 이면도로로부터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출입허용 계획	-
변경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일부구간	• 이면도로로부터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출입허용 계획	-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 명칭 변경 - 제한적차량출입허용구간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및 용어 통일	-

■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지 정 사 유
기정	-	중곡동 18-75 일대 (용마산로22길)	• B = 10.0m, L = 115.0m	• 인접 학교(대원외고, 대원고) 학생 및 지역주민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
기정	-	중곡동 18-29 일대 (용마산로24길)	• B = 8.0m, L = 120.0m	• 인접 학교(용곡중) 학생 및 지역주민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
기정	-	중곡동 18-1 일대 (용마산로28길)	• B = 6.0m, L = 130.0m	• 인접 학교(용곡초) 학생 및 지역주민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
변경	-	중곡동 18-1 일대 (용마산로28길)	• B = 6.0m, L = 63.0m	• 인접 학교(용곡초) 학생 및 지역주민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 및 대원빌라(중곡동 18-16)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민원(구역제적) 반영에 따른 연장 축소
신설	-	중곡동 275-4 일대 (능동로49길, 50길)	• B = 6.0m, L = 519.0m	• 학생 및 지역주민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
신설	-	중곡동 221-15일대 (긴고랑로 11길)	• B = 6.0m, L = 154.0m	• 중곡제일시장 이용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지정

※ 능동로변50길변 일부는 특별계획가능구역 ④가 세부개발계획수립시 폐지하되, 능동로49길과 계획적 연속성 확보

2.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합계	305	100.0	15	-	15	4.9	-	100.0
60㎡이하	178	58.4	15	-	15	4.9	-	100.0
60㎡초과~85㎡이하	75	24.6	-	-	-	-	-	-
85㎡초과	52	17.0	-	-	-	-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3.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1.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3.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4.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5.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6. 수중·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7.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공동개발하는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따를 것을 전제함)
8.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9.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Ⅲ.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특별계획구역⑥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68-2	9,497.2	-	9,497.2	-

주)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497.2	-	9,497.2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4	-	234.4	2.5	-
	준주거지역	9,262.8	-	9,262.8	97.5	-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용곡삼거리 ~ 중곡동 647-15	36,545 (1,006)	1,300 (67)	양측 15	2019.4.18. (서고 제129호)	능동로

주) ()는 특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10 (10)	국지 도로	261 (15)	중곡동 168-1	중곡동 170-24	일반 도로	1964.1.24. (건고제 768호)	-
기정	소로	3	9	6~8 (8)	국지 도로	130 (112)	중곡동 170-2	중곡동 171-20	일반 도로	1964.1.24. (건고제 768호)	-

주) ()는 특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구 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가구 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특별 계획 구역	GR-1	168-2대	9,497.2	9,497.2	GR-1	168-2대	9,497.2	9,497.2	공공시설 (도로) 234.4㎡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구 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가구 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특별 계획 구역	GR-1	168-2대	9,497.2	①	GR-1	168-2대	9,497.2	①	공공시설 (도로) 234.4㎡
				②				②	
				③				③	
				6,656.1				6,656.1	
				781.3				781.3	
				2,059.8				2,059.8	

주1)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

주2) 획지②는 조경을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5) 획지② 조성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가구 및 획지	• 획지 9,497.2㎡	• 획지① 6,656.1㎡ • 획지② 781.3㎡ • 획지③ 2,059.8㎡	•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획지②)을 분리,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 분할계획 수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불허·권장·지정용도 결정조서

- 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 용도	불허 용도 (B)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권장 용도 (B)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지정 용도 (A) -	• 수련시설^{주1)}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주2)}	-

주1) 건물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기부채납 함에 따라 지정용도로 결정한 사항이며, 규모·용도 등은 'IV.-[1]-4.-라.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내용 참조, 청소년수련시설 연면적은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총 기반시설 순부담률 20%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2) 어린이집의 위치 및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IV.-[3] 건축계획(안)'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건축 인·허가시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 등에 의해 조정된 위치 및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 용도	불허 용도 (B)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확지①, 확지③
	권장 용도 (B)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확지①, 확지③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지정 용도	• 수련시설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 기존 건축물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함에 따라 지정용도로 결정된 사항을 건축물 기부채납 용도변경 및 유연한 시설도입을 위해 지정용도 삭제

■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결정조서(변경)

－ 기 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200%이하/330%이하/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200%이하/330%이하/388.3%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인센티브	•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

－ 변 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확지①, 확지③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200%이하/330%이하/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200%이하/330%이하/40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인센티브	•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용적률	• 상한용적률 388.3%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법정 상한용적률 범위내 유연성 부여를 위해 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 '유형2'

내 용				항 목	유 형 2(특별계획구역)	비 고
규 제 형 (50% 이내)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형 $\alpha=1.0$, 개방형 $\alpha=1.2$	-
	주차 계획	공동주차 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유 도 형 (30% 이상)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형 $\alpha=1.2$, 개방형 $\alpha=1.5$	-
		쌈지형 공 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형 $\alpha=1.2$, 개방형 $\alpha=1.5$	-
		침상형 공 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형 $\alpha=1.5$, 개방형 $\alpha=2.0$	-
유 도 형 (30% 이상)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설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면적)×1.0	-
		특정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1.0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도시 경관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0.2	-
의 무 형 (20% 이상)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 보 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3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	-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빗물저류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 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신재생 에너지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내 용			항 목	유 형 2(특별계획구역)	비 고
	에너지절약 계획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0.08	-
		2등급		기준용적률×0.05	-

- 주1) 의무형 인센티브 친환경 계획 항목은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주2)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 주3)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주4)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 주5)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단,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주6)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 주7) 의무형 인센티브는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 주8) 특정층 개방이라 함은 1층, 옥상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 가능한 지하층, 2층이상의 옥외공간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 주9)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유형 2를 적용하여 인센티브 산정함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의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은 권장용도 중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의료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2)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높이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준 / 최고높이	60m / 90m 이하	60m / 75m(주1) 이하	완화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적용	획지①, 획지③

- 주1) 높이 완화항목 중 '우수디자인'의 적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준 높이 완화	우수디자인	•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 • 우수디자인 적용시 : 75m 이하 - 60m + 15m = 75m ≤ 75m • 우수디자인 미적용시 : 60m 이하	-
	지하철 출입구 연계	• 기준높이 × 0.2	-
	권장용도	• 기준높이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 주1) '우수디자인'의 적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주2) 높이완화항목은 용적률 완화항목(허용/상한용적률)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 능동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능동로53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획지①, 획지③
	건축물 형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능동로변에 인접배치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를 위해 능동로변에 공개공지와 연결배치 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	획지①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보도/도로/공원 연결형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가로변 2~3m : 보도연접형	획지①, 획지③
공개공지		- 건축법상 설치대상 필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 건축법상 설치대상 (대지의 7%이상)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 - 능동로 : 지하철 출입구 및 중곡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 면목로12길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휴게공간 제공	획지①, 획지③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창조적 디자인	가각부 건축물은 역사권의 랜드마크로서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지나친 디자인 지양)	해당사항 없음	-
저층부 계획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층부에 야외카페 조성, 개방적 입면 계획 등을 유도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 도입, 공개공지를 연도형으로 계획	-
옥외광고물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건축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관에 기여 하는 요소가 되도록 함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건축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관에 기여 하는 요소가 되도록 계획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	비 고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등의 건물 부속물은 건축계획시 건물디자인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함	에어컨실외기 등의 건물 부속물은 건축계획시 건물디자인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휴먼스케일 및 가로경관	2층 높이(6m)로 저층부 높이를 제한하여 휴먼스케일을 고려하고, 중고층부는 3m 셋백(setback)을 하여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	저층부를 3층으로 계획하여 휴먼스케일을 고려하고, 중고층부는 일부 셋백(setback)하여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 유도하도록 계획	-
고층부 후퇴공간	고층부의 셋백(setback)된 공간에는 녹화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광진구의 중심 가로로서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	고층부의 셋백(setback)된 공간에는 녹화공간 및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광진구의 중심 가로로서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계획	-
건물외관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분절화에 의한 표정이 풍부한 건물외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분절화에 의한 표정이 풍부한 건물외관을 형성하도록 계획	-
재료 및 색채	재료가 갖는 질감과 물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장재를 쓰도록 하며, 재료 간의 색채 및 패턴의 조화를 고려함 (광택이 강하거나 반사성 재질은 제한적으로 사용)	- 재료가 갖는 질감과 물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장재를 쓰도록 계획 - 재료 간의 색채 및 패턴의 조화를 고려하여 광택이 강하거나 반사성 재질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	-

－ 건축물 외부공간(전면공지, 공개공지)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선 후퇴부	- 건축선 후퇴부에 노상 적재물 방치행위, 주차,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금지 - 계단출입구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설치 금지	- 건축선 후퇴부에 노상 적재물 방치행위, 주차,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금지하도록 계획 - 계단출입구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설치 금지하도록 계획	-
건축물 전면부	건물 전면측면에 화단 등의 녹화공간 조성으로 가로경관 향상 (인접 건축물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고려)	건물 전면측면에 화단 등의 녹화공간 조성으로 가로경관 향상하도록 계획 (인접 건축물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고려)	-
역세권 가각부	가각부 건축물의 경우, 공공공간과 연속성을 갖도록 가각부에 공개공지 등의 외부공간 조성	해당사항 없음	-
보도포장	공공공간과의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보도를 포장	공공공간과의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보도를 포장하도록 계획	-
공간계획	쌈지공원 등 가로활성화 및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가로활성화 및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연도형으로 계획	-

－ 공공공간(시설물 설치구역, 통행구역, 인접녹지)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	비 고
역세권 공공공간	주요 교차점이자 역세권으로서 인지성 강화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역세권의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정비	주요 교차점이자 역세권으로서 인지성 강화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중곡역과 인접한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합적으로 계획	-
역세권 광장 및 시설물	역세권 공공공간 통합 정비 시에, 휴게기능을 강화하고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세권 광장을 조성하며, 휴게시설 및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통합 디자인함	- 주변 공개공지를 연계하여 휴게기능을 강화하고 장소성을 부각시켜 역세권 광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휴게시설 및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통합적으로 계획	-
미디어 키오스크	보행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키오스크를 설치하며, 키오스크는 지하철 출입구 등의 기존 가로시설물과 통합디자인함	해당사항 없음	-
디자인거리	테마가 있는 디자인거리로의 조성을 유도	테마가 있는 디자인거리로 계획	-
보도포장 디자인	가로의 특성을 살리며 가로경관적, 기능적, 환경적 측면에서 충족되는 보도포장을 유도(민간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통합적으로 조성)	- 가로의 특성을 살리며 가로경관적, 기능적, 환경적 측면에서 충족되는 보도포장으로 계획 - 민간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통합적으로 계획	-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능동로변에 지정	능동로변에 지정	획지①

－ 공공보행통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개발지의 능동로변과 이면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유도 - 폭원 최소 4.0m 이상	- 대상지 북측에 설치 - 폭원 7.0m 이상	획지①

4)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시 설	규 모	용 도	비 고
도 로	234.4㎡	-	• 부지면적의 2.5%, 도시계획시설 결정
청소년수련시설	연면적 5,730.0㎡ ^{주1)}	수련시설	• 부지면적의 21.7%(부속토지 포함 제공)
합 계			• 부지면적의 24.2%

주1) 청소년수련시설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예시면적이며,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은 향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 변경

시 설	규 모	용 도	비 고
도 로	234.4㎡	-	• 부지면적의 2.5%,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시설	연면적 4,003.8㎡ ^{주1)}	도서관	• 부지면적의 21.0%(부속토지 포함 제공)
	연면적 302.7㎡ ^{주1)}	주차장	• 부지면적의 1.3%(부속토지 포함 제공)
합 계			• 부지면적의 24.8%

주1) 도서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예시면적이며,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은 향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주2) 효율적·합리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위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일괄 산정 및 적용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건축물 기부채납	• 청소년수련시설 - 연면적 5,730.0㎡	• 공공시설 - 도서관 : 연면적 4,003.8㎡ - 주차장(거주자우선) : 연면적 302.7㎡	• 자치구 필요시설 도입 및 특별계획구역의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도서관 및 주차장 도입

- 공공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 시설 (도서관, 주차장)	시설 연면적	4,306.5㎡ (도서관 4,003.8㎡, 주차장 302.7㎡)	• 건축물 내 공공시설 계획 연면적(공공시설 전체 획지①에 설치) - 획지① 제공 : 연면적 1,316.1㎡ - 획지③ 제공 : 연면적 2,990.4㎡
	공사비	3,540,000원/㎡, 2,574,545.5원/㎡	•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부가세제외) : 도서관 2천㎡이상~6천㎡미만 / 공영주차장 1,000㎡ 미만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비용	14,952,766,909원	• (공사비×공공시설 연면적) - 획지① 설치비용 : $3,540,000\text{원}/\text{m}^2 \times 1,013.4\text{m}^2 + 2,574,545.5\text{원}/\text{m}^2 \times 302.7\text{m}^2$ = 4,366,667,328.7원 - 획지③ 설치비용 : $3,540,000\text{원}/\text{m}^2 \times 2,990.4\text{m}^2$ = 10,586,099,580.4원
	부지가액	10,908,000원/㎡	• 중곡동 168-2번지 2023년 공시지가(5,454,000원/㎡)의 2배
	환산부지면적	1,370.8㎡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획지① = $4,366,667,328.7\text{원} \div 10,908,000\text{원}/\text{m}^2$ = 400.3㎡ - 획지③ = $10,586,099,580.4\text{원} \div 10,908,000\text{원}/\text{m}^2$ = 970.5㎡
	시설지분면적	748.3㎡	• 획지① 대지면적 × (공공시설 연면적 ÷ 획지① 전체 연면적) = $6,534.9\text{m}^2 \times (4,306.5\text{m}^2 \div 37,611.2\text{m}^2)$
합 계		2,119.1㎡	• 총 기부채납 면적(순부담율 22.3%)

주1) 상기 내역은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대지면적(대지지분) (㎡)	규모(연면적 등)	채납행정청 (관리청)
1	문화시설	중곡동 168-2	695.6	1,995.0 (연면적 4,003.8)	광진구
2	주차장		52.6	124.1 (연면적 302.7)	

※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규모,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 (도시계획과-8893호, 2021.7.5.)을 적용함.

※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합의서’ 결정도서에 첨부

5) 획지② 조성에 관한 계획(신설)

- 획지② 조성계획

구 분	조성계획	비고
조성목적	• 전력시설 운영·관리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부를 조정으로 계획	-
조성방법	• 관목 울타리, 교목 식재 등을 통해 조정공간 조성 • 능동로변은 주변 공개공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 • 하부 전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상부에 거주자 등의 출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필요시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구 별도 설치	-
유지 및 관리	• 상부 조정공간의 유지·관리 의무는 한국전력공사에 있으며, 주기적 유지·관리를 통해 상부 조정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하부 전력구 및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는 한국전력공사 유지관리 기준에 따름	-

-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사유
획지② 조성계획	•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3개 획지로 분리,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획지②에 대한 세부 조정공간 조성 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토지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에 의한 주변여건 변화 및 중곡문화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계획	• 복합시설 계획, 역세권 기능 및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저층부판매시설 도입, 공개공지 조성, 도로확폭,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도입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반시설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 그 밖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도로(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건축물 및 부속토지)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축 용도	불허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운동시설 중 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동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동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권장용도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의료 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정용도	-	- 수련시설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밀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
	용적률	200%이하/330%이하/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이내	200%이하/330%이하/388.3%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이내	-
	인센티브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
기준 / 최고높이		60m / 90m 이하	60m / 75m 이하	원화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적용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능동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능동로53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 능동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능동로53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건축물 형태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능동로변에 인접배치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건축법상 설치대상 필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 - 능동로 : 지하철 출입구 및 중곡문화 체육 센터와 연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 면목로12길 : 공공보행통로변 이면가각부에 계획하여 접근성·인지성 개선	능동로변 및 이면도로변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능동로변에 지정	능동로변에 지정	-
	공공보행 통로	- 대규모 개발지의 능동로변과 이면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유도 - 폭원 최소 4.0m 이상	- 대상지 복측에 설치 - 폭원 7.0m 이상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 가능함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청소년수련시설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 가능함	-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을 배분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2.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을 적용기준에 따름

－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토지이용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에 의한 주변여건 변화 및 증곡문화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계획 • 획지②는 원활한 관리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조정공간으로 조성		•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획지분할, 복합시설 계획, 역세권 기능 및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저층부판매시설 도입, 공개 공지 조성, 도로확폭, 도서관 및 주차장 도입, 획지② 조정공간 조성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기여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 그 밖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 순부담률 20%이상 확보 - 도로(토지) 및 도서관(건축물 및 부속 토지)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 축 용 도	불허용도	획지①	획지③	획지①	획지③	-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권장용도	획지①	획지③	획지①	획지③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의료 관련시설인 경우만 용적을 인센티브 부여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	건폐율	획지①	획지③	획지①	획지③	-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획지①	획지③	획지①	획지③	-
		• 200%이하/330%이하/400%(48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 200%이하/330%이하/40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인센티브	획지①	획지③	획지①	획지③	-
		•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 용적률인센티브 ‘유형2’ 준용		
기준 / 최고높이		획지①	획지③	획지①	획지③	완화내용 준수시 최고높이 적용
		60m / 90m 이하		60m / 75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 능동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능동로53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보행공간,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건축물 형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능동로변에 인접배치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
대지내 공지		• 건축법상 설치대상 필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 • 능동로 : 지하철 출입구 및 중곡문화 체육 센터와 연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 면목로12길 : 공공보행통로변 이면가각부에 계획하여 접근성·인지성 개선		능동로변 및 이면도로변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능동로변에 지정		능동로변에 지정		-
	공공보행 통로	• 대규모 개발지의 능동로변과 이면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유도 • 폭원 최소 4.0m 이상		• 대상지 북측에 설치 • 폭원 7.0m 이상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 가능함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도서관 및 주차장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 가능함		-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토지이용	•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 분할 • 획지② 조정공간 조성 • 청소년 수련시설 제외, 도서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입	•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에서 관리하는 구간(획지②) 분리, 획지 분할 계획 • 획지②는 전력공급의 원활한 관리 및 가로 경관을 위해 조정 공간 조성 계획
공공기여	•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도서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입	• 자치구 필요시설 도입 및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도서관 및 주차장 도입
지정용도	• 지정용도 삭제	• 기존 건축물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함에 따라 지정용도로 결정된 사항을 건축물 기부채납 용도변경 및 유연한 시설도입을 위해 지정용도 삭제
용적률	• 상한용적률 변경	• 법정 상한용적률 범위내 유연성 부여를 위해 변경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기준 삭제	• 관련지침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 배분 관련 기준 삭제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V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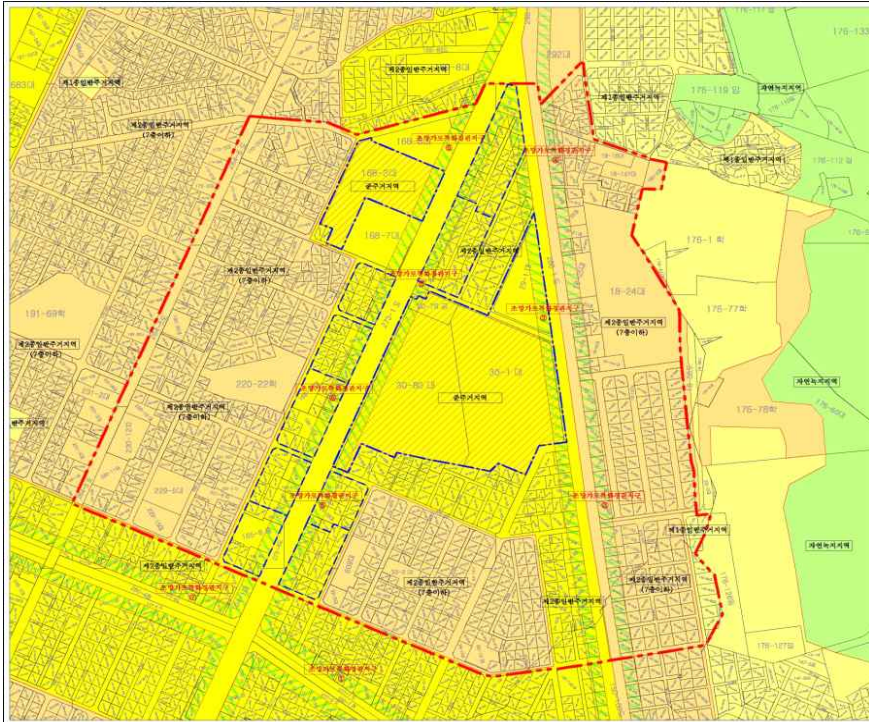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중곡역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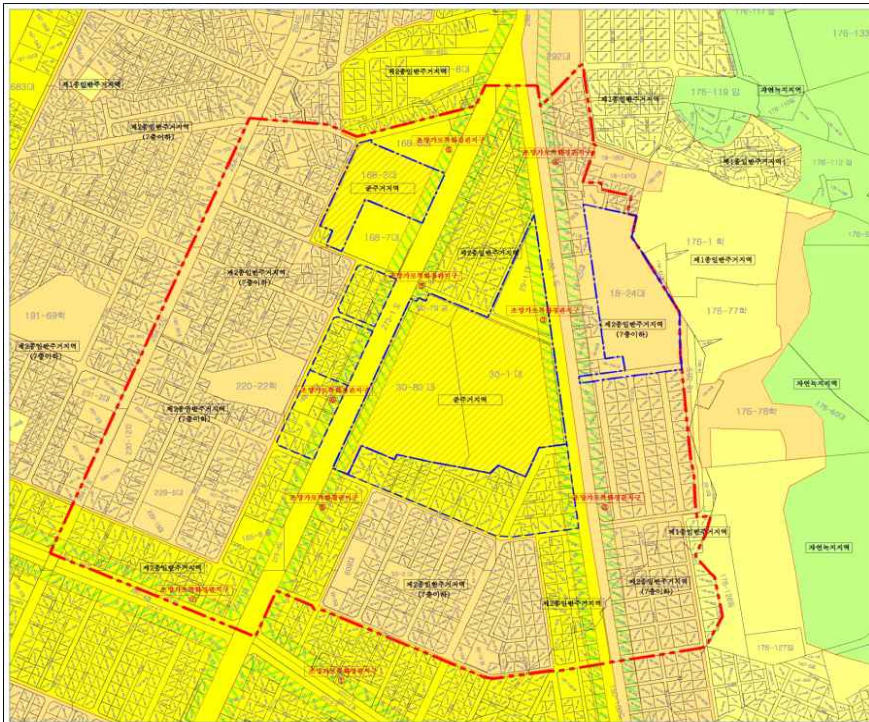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가능지역
- 지정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단독)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농촌지역
- 자연녹지지역
- 조망가로특별정원지구

0 25 75 125m

N

■ 중곡역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가능지역
- 지정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단독)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농촌지역
- 자연녹지지역
- 조망가로특별정원지구

0 25 75 125m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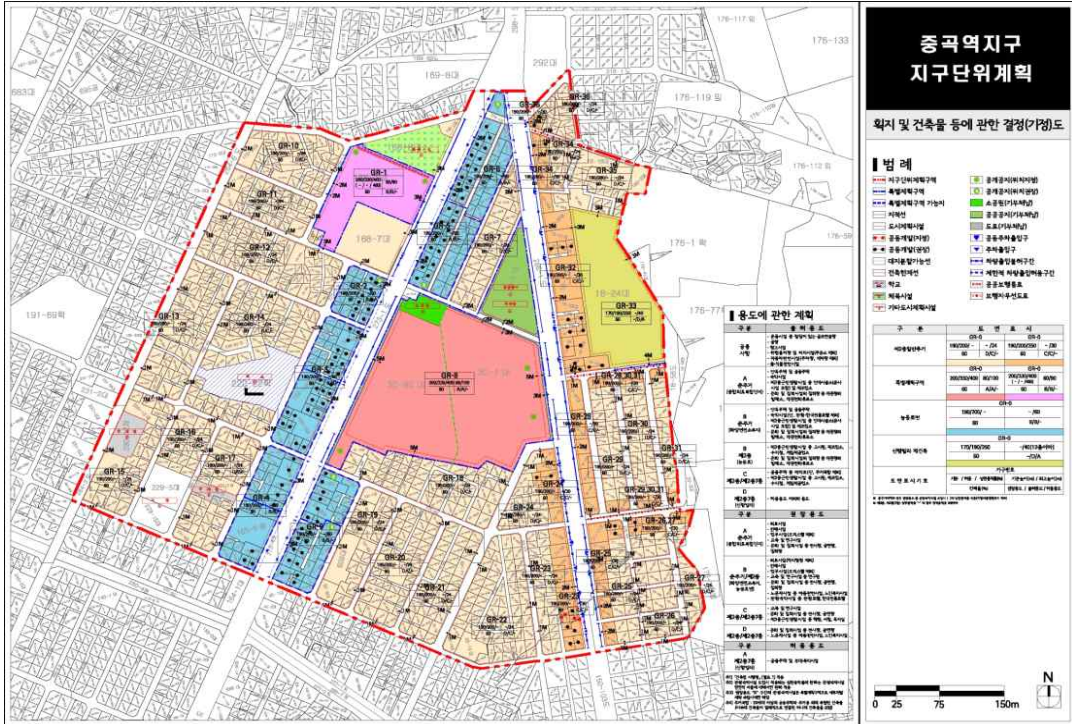
■ 중곡역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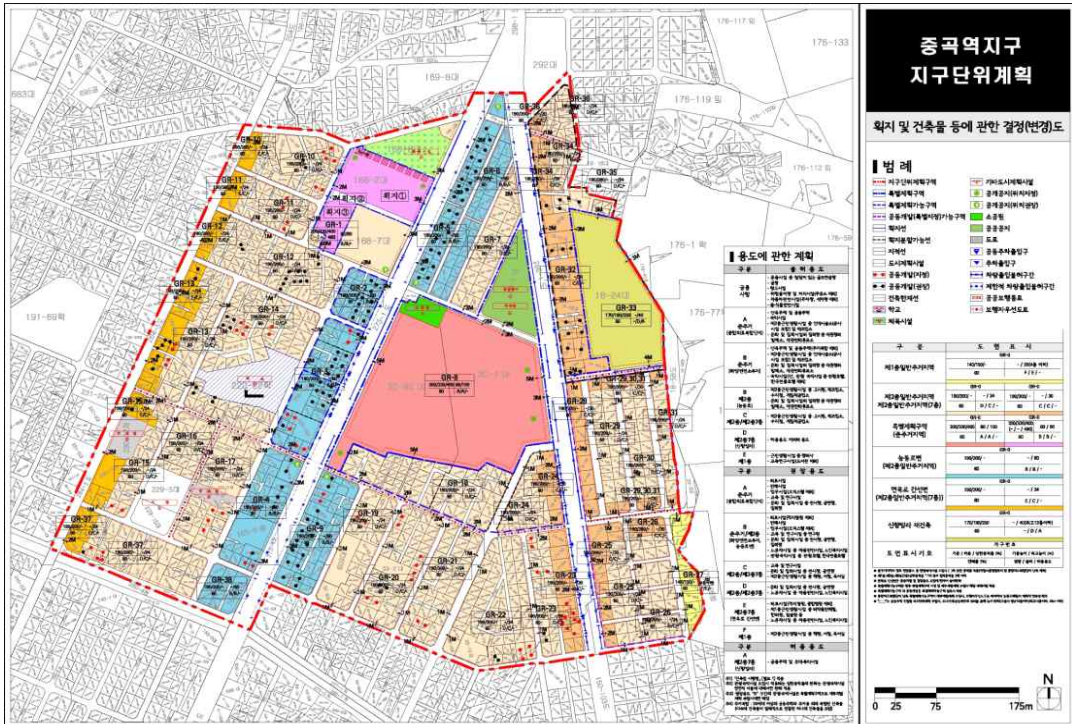
■ 중곡역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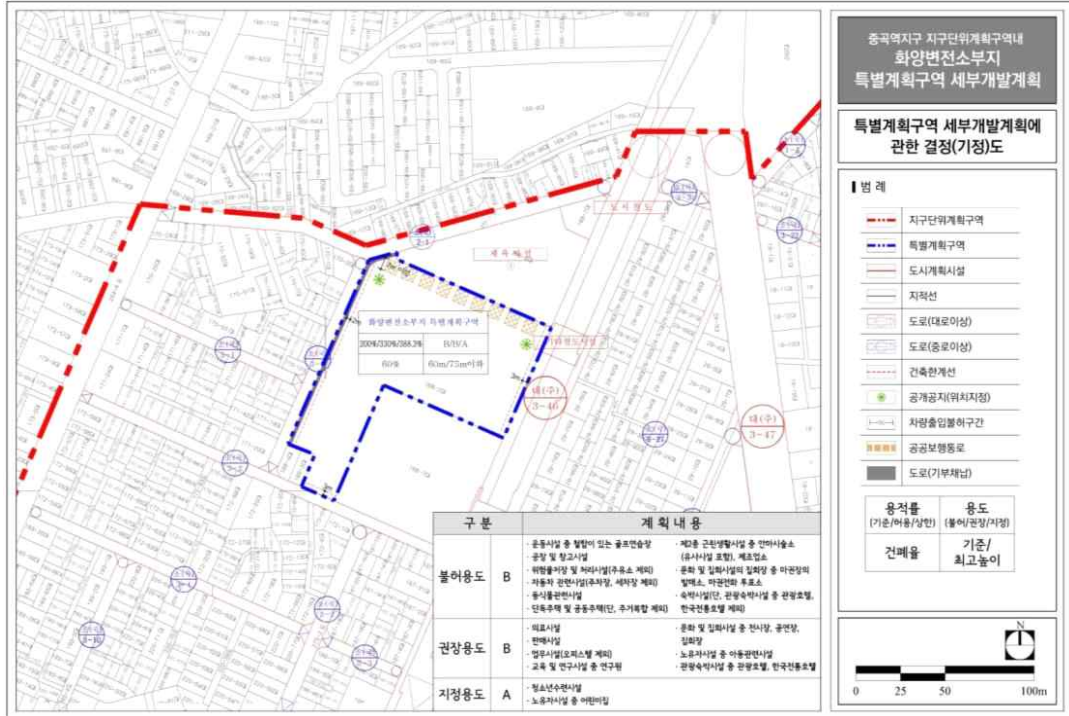
■ 중곡역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중곡역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도(기정)



■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호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정비구역 변경(구역세분조정)지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1985.05.13.)로 사업완료(1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1·2 구역 통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8차(2023.11.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순화동 195-1일대 및 의주로1가 1일대	80,752.4	-	80,752.4	-

나. 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7,274.0	16,316.6	957.4	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	-
변경	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7,273.4	16,316.0	957.4	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	-

■ 지구 지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 사업시행 지구면적 - 면적 감소 : 17,274.0㎡ → 17,273.4㎡ - 획지면적 - 면적 감소 : 16,316.6㎡ → 16,316.0㎡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변경

I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0,752.4	-	80,752.4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24,093.3	증) 0.6	24,093.9	29.8	-
	도로	19,723.3	증) 0.6	19,723.9	24.4	-
	공원	3,141.5	-	3,141.5	3.9	-
	공공공지	1,228.5	-	1,228.5	1.5	-
획지	소계	56,659.1	감) 0.6	56,658.5	70.2	-
	일반정비지구	1지구	감) 0.6	16,316.0	-	시행지구
		1-1지구	-	3,717.4	-	완료
		2-1지구	-	2,636.0	-	완료
		2-2지구	-	3,016.5	-	시행지구
		3지구	-	1,657.5	-	완료
		4지구	-	5,885.8	-	완료
		5지구	-	4,104.2	-	완료
		5-1지구	-	3,218.4	-	완료
		6-1지구	-	2,722.8	-	완료
		6-2지구	-	2,401.7	-	완료
		7지구	-	3,391.8	-	완료
		9지구	-	1,920.7	-	완료
		10지구	-	2,732.2	-	완료
		11지구	-	1,828.4	-	완료
	소단위 정비형 (소단위 관리지구)	4-1지구	-	133.2	-	-
		4-2지구	-	167.6	-	-
		4-3지구	-	508.1	-	-
		4-4지구	-	300.2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0,752.4	-	80,752.4	100.0	
일반상업지역	80,439.8 (17,274.0)	- (감) 0.6	80,439.8 (17,273.4)	99.6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9	-	105.9	0.1	
준주거지역	206.7	-	206.7	0.3	

※ ()는 제1지구 면적임

※ 금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의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8,040.0 (335.4)	-	
기정	②	방화지구	서대문~서울역앞간	12,720.0 (5,732.8)	-	
기정	③	방화지구	태평로2가~아현동간	28,980.0 (453.6)	-	
기정	④	방화지구	서대문구 서소문, 순화동, 중구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각 일부지역	101,000.0 (48,058.9)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변경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선형 조정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72	의주로1가 29-3번지	충정로1가 85번지	-	-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32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45	순화동 7-2번지	봉래동1가 25-7번지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4	순화동 66-2번지	봉래동1가 25-1번지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3	의주로1가 25-11번지	의주로1가 3번지	-	건설부고시 제429호 ('79.1.6)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3	순화동 215-4번지	의주로1가 44-2번지	-	서울시고시 제379호 ('87.6.4)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6	순화동 214-2번지	순화동 1-171번지	-	건설부고시 제429호 ('79.1.6)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9	순화동 1-185번지	순화동 1-171번지	-	서울시고시 제379호 ('87.6.4)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2	순화동 1-101번지	순화동 1-173번지	-	건설부고시 제429호 ('79.1.6)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01	중로1-201	도로선형 일부조정 - 순화동 84-33번지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일부 도로선형을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Ⅲ.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274.0	감) 0.6	17,273.4	100.0	
정비기반시설	도로	957.4	-	957.4	5.5	
획지	대지	16,316.6	감) 0.6	16,316.0	94.5	

■ 변경사유 :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변경 [순화동 1-137, 순화동 84-3]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274.0	감) 0.6	17,273.4	100.0	
일반상업지역	17,274.0	감) 0.6	17,273.4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반상업지역	사업시행 지구면적 - 면적 감소 ; 17,274.0㎡ → 17,273.4㎡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④	방화지구	서대문구 서소문, 순화동, 중구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각 일부지역	101,000.0 (17,273.4)	-	

※ ()는 제1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정비사업비(추산액)

구분	금액	산출근거
소요비용 계	2,304,321,141천원	
토지비(종전 토지 등의 금액)	961,746,523천원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종전자산(추산액)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 무상양도 국공유지 제외]
조사측량, 실사비	12,639,277천원	1식
건축설계비/인허가	45,156,316천원	1식
감리비	16,706,186천원	1식

구분		금액	산출근거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104,409,195천원	철거공사비, 1식
	건축시설공사비	932,139,749천원	1식
	정비기반시설공사비	-	기타 공사비
	기타공사비	31,101,585천원	예비비, 1식
보상비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	12,460,000천원	기부채납 부지 매입비
	기타 보상비	-	명도 보상비 등
사업관리비		-	AM, PM 수수료 등
제세공과금		70,123,951천원	취등록세,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79,451천원	1식
신탁 및 각종 수수료		-	
자본조달비용		-	
기타사업비		2,140,933천원	미술장식품, 판매비 등
부가세		115,436,974천원	

※ 상기 정비사업비는 추산액으로 사업추진일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개략적인 개별 부담금 산출

1) 부담금 산출 관련 주요 항목

구분		정비사업비(추산액)	비고
종전평가금액	종전 토지 및 건물 평가액	961,746,523천원	
종후평가금액	정비사업비(추산액)	2,304,321,141천원	
	종후 대지 평가액	1,259,123,141천원	감정평가금액 기준 추산
	신축건물 시설평가액	1,045,198,000천원	평당건축비 기준 추산
대지조성비		104,490,195천원	

2) 개략적인 개별 부담금 산출(예시) : 종전평가금액 1,000,000천원인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시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계약 ㎡당)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개별부담금	비고
업무 및 판매 일괄 계약 100㎡	12,705천원	1,270,500천원	1,200,558천원	+ 69,942천원	지급

※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 업무 및 판매시설 계약면적 기준 ㎡당 금액 (매각 평당가 4,200만원 가정)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 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에는 개별 부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함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변경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선형 조정
기정	중로	2	232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45	순화동 7-2번지	봉래동1가 25-7번지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01	중로1-201	도로선형 일부조정 - 순화동 84-33번지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일부 도로선형을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5.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변경)

구분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토지) 부담률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기정	1지구	17,274.0	16,316.6	957.4	-	-	-	5.54	-	5.54	
변경	1지구	17,273.4	16,316.0	957.4	-	-	-	5.54	-	5.54	

※ 기정 : 획지 내 국공유지 2개 필지[순화동 1-137, 순화동 84-3] 중 일부(5.1㎡)는 유상매입

변경 : 획지 내 국공유지 2개 필지[순화동 1-211, 순화동 84-33] 전체(4.5㎡)는 유상매입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1개 필지[순화동 164-27] 중 기획재정부 지분(35.0㎡)은 유상매입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957.4	-	957.4	100.0	
토지	소계	957.4	-	957.4	100.0	
	도로	957.4	-	957.4	100.0	

※ 부담률 = 순부담 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에 따라 미확보된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2.02.))를 통해 부담률(5.54%) 확정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서울역-서대문	80,752.4	제1지구	16,316.6	순화동 7번지 일대	1	-	-	1	-	
변경	1·2구역			16,316.0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서울역-서대문 1·2구역	80,752.4	제1지구	16,316.6	순화동 7번지 일대	업무시설	70 이하 ¹⁾	861.0 이하	90 이하	-																																	
변경			제1지구	16,316.0	순화동 7번지 일대	업무시설	50 이하	1,040.2 이하	195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기정	• 용적률 : ① + ② + ③ = 861.0%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table><tr><th>목표</th><th colspan="2">인센티브 완화 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tr><td rowspan="3">친환경 개발</td><td colspan="2">녹색건축물 인증(그린1등급)</td><td rowspan="3">정량부여</td><td rowspan="3">100%</td></tr><tr><td colspan="2">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00(kWh/㎡·y)이하)</td></tr><tr><td colspan="2">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td></tr><tr><td>생활SOC 문화인프라</td><td colspan="2">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도입 시</td><td>정률부여</td><td>50%</td></tr><tr><td rowspan="2">보행가로 활성화</td><td colspan="2" rowspan="2">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무장애도시 조성</td><td rowspan="2">정량부여</td><td rowspan="2">50%</td></tr><tr><td></td></tr></table> ③ 상한용적률 : 61%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완화량</th></tr><tr><td>공공시설 (도로 무상귀속) 기부채납</td><td>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td><td>800%×1.3×0.0587 (α=957.4/16,316.6)</td><td>61.0%</td></tr></table>								목표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0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도입 시		정률부여	5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무장애도시 조성		정량부여	50%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 (도로 무상귀속)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 α (α =부담면적/대지면적)	800%×1.3×0.0587 (α =957.4/16,316.6)	61.0%
			목표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0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도입 시		정률부여	5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무장애도시 조성		정량부여	50%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 (도로 무상귀속)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 α (α =부담면적/대지면적)	800%×1.3×0.0587 (α =957.4/16,316.6)	61.0%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40.2%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 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 설치 시		정률부여	100%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부여	30%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인무사항 1/2이상 초과설치시		정량부여	20%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부여	50%			
		③ 상한용적률 : 240.21% → 240.2%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		800㎡×1.3×0.0587 (α=957.4㎡/16,316.0㎡)		61.02%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		800㎡×3,654.6㎡/16,316.0㎡		179.19%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신설	• 최고높이 : 202.3m(기준높이 90m+20m+82.3m+10m) → 195m 이하 적용								
		구분	내용					적용량		
		①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확보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확보에 따른 높이					20m		
		②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초과 확보에 따른 높이	= 적정건폐율50%×(기준높이+20m)/(80%-개방형녹지율) = 50%×(90m+20m)/(80%-51.4%)					192.3m (82.3m)		
		②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높이 완화	= 기준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 90m×(3,654.6㎡×1/2÷16,316.0㎡)					10.0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 통일로2길, 세종대로7길변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변 3층 초과 8m								
	변경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 통일로2길, 세종대로7길변 3m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기정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판매시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정	• 대지 내 공지 : 간선도로변(서소문로, 통일로)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정 배치								
	변경	• 대지 내 공지 : 간선도로변(서소문로, 통일로), 세종대로7길변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정 배치 • 개방형녹지 :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 일반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공간으로 조성								

7.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토량과 성토량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형변동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재난방지	•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설치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9.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준년도 2023년, 목표연도 2028년

IV.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	구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7,274.0	16,316.6	957.4	
변경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7,273.4	16,316.0	957.4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274.0	감) 0.6	17,273.4	100.0	
일반상업지역	17,274.0	감) 0.6	17,273.4	100.0	

2) 용도지구(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④	방화지구	서대문구, 서소문, 순화동, 중구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각 일부지역	101,000.0 (17,273.4)	-	

※ ()는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내 면적임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변경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선형 조정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01	중로1-201	• 도로선형 일부조정 - 순화동 84-33번지	•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일부 도로선형을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선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1지구	16,316.6	감) 0.6	16,316.0	100.0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허용용도	제1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도

※ 주용도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상 선택 적용

-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1지구	• 70%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0%까지 완화 가능)	
변경	제1지구	• 5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1지구	• 600% / 800% / 861% 이하	
변경	제1지구	• 600% / 800% / 1,040.2%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1지구)

구분	계획내용	완화량	비고
녹지생태공간	• 개방형녹지 조성	100%	-
친환경 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 전기차충전소 설치	20%	
문화인프라	• 공연장	50%	
합 계		200% 적용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1지구)

구분	계획내용	완화량	비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토지(도로) 기부채납 : 957.4㎡	61.02%	-
공개공지 초과조성	• 법정 공개공지 면적 : 1,631.6㎡ • 초과 공개공지 면적 : 3,654.6㎡	179.19%	
합 계		240.21% ▶ 240.2% 적용	

다) 높이 계획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1지구	• 90m 이하	
변경	제1지구	• 195m 이하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 통일로2길, 세종대로7길변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변 3층 초과 8m	
변경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 통일로2길, 세종대로7길변 3m (삭제)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서소문로, 통일로)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정 배치	
변경	• 간선도로변(서소문로, 통일로), 세종대로7길변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정 배치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제1지구	8,388.83㎡	• 조성계획 : 지구 동측, 서측, 남측, 북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방형녹지 면적 산정 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등) 제외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개방형녹지(공개공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V.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23년 제18차('23.11.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 수정가결 '

▶ 수정사항

- 건축배치계획 관련 지상3층은 공연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공연장 지원시설 용도를 집적 배치토록 수정

▶ 조건사항

- 금회 상정안의 개방형녹지계획은 도로 연접 4면을 모두 계획하였으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정 높이계획 변경(90m→202.3m)은 대상지가 서소문고가에서 볼 때 서울도심 진입부에 입지한 바, 대상지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측면에서 상기한 개방형녹지계획 축소와 연계하여 건축물 층고를 포함하여 최대한 높이를 하향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콘서트홀은 지상 9층까지 계획한 바,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건축계획 관련 건축물 외관은 환경 친화적이고 미려한 건축물이 되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교통처리계획 관련 서소문로변 북서측 각각부 일정 구간의 횡단구성계획 상 완화차로계획은 차량 통행상 문제가 없도록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V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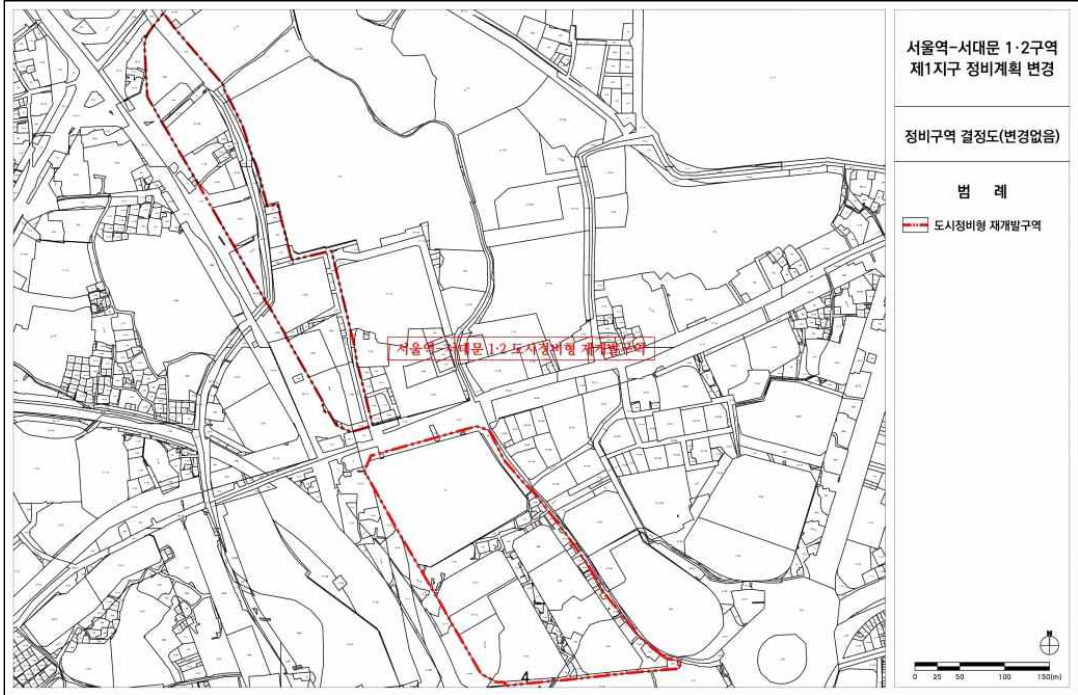
VI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36)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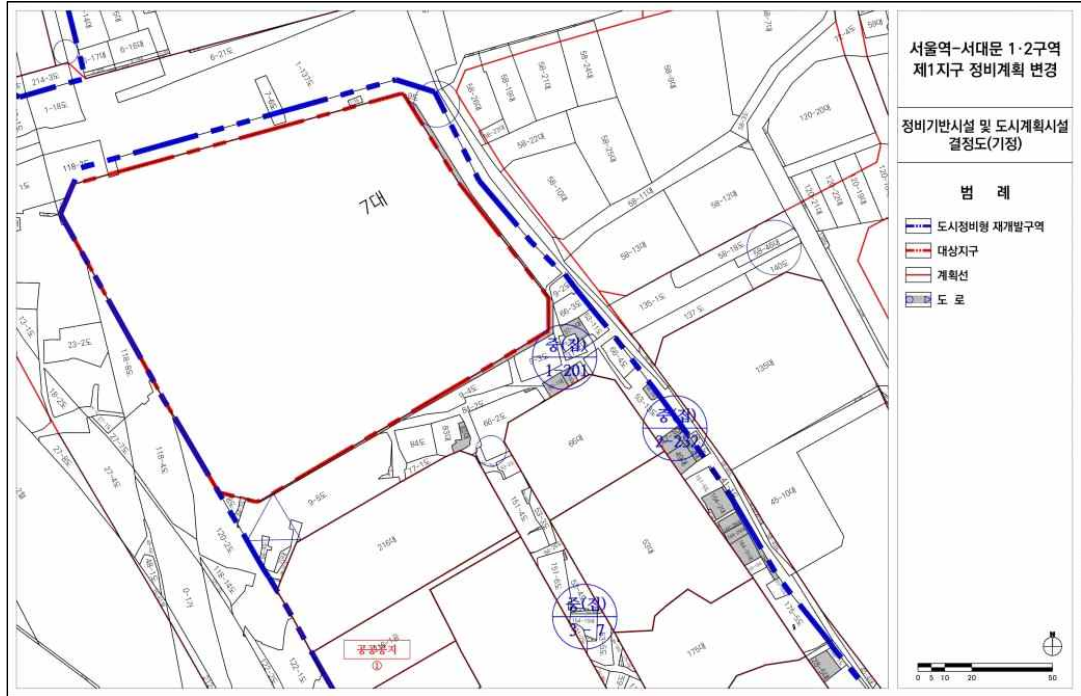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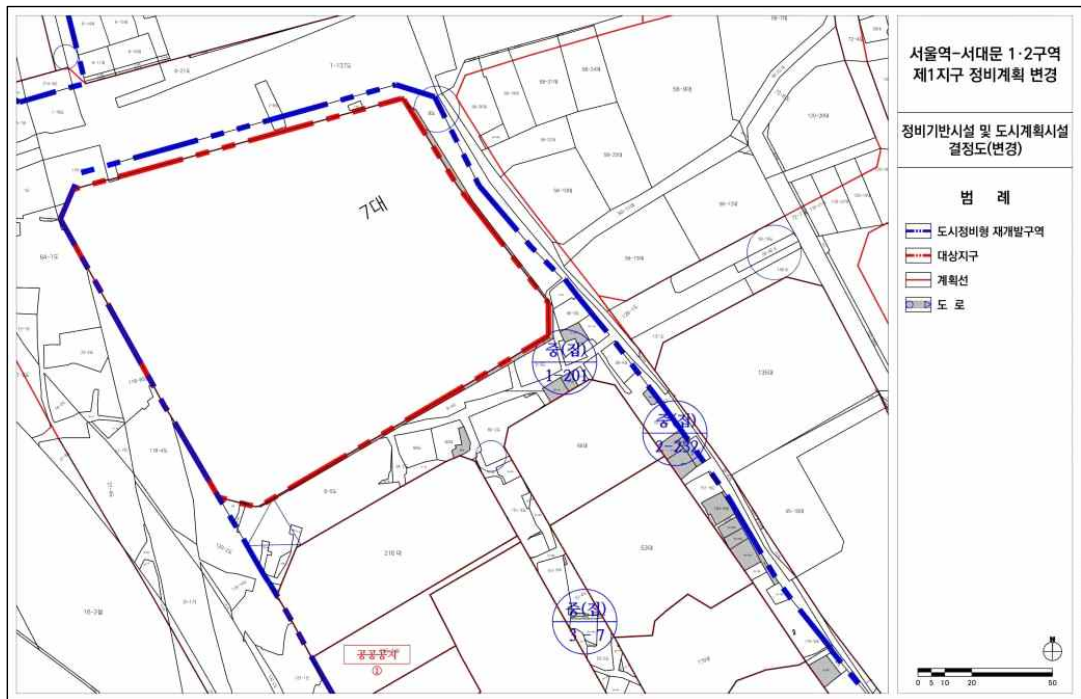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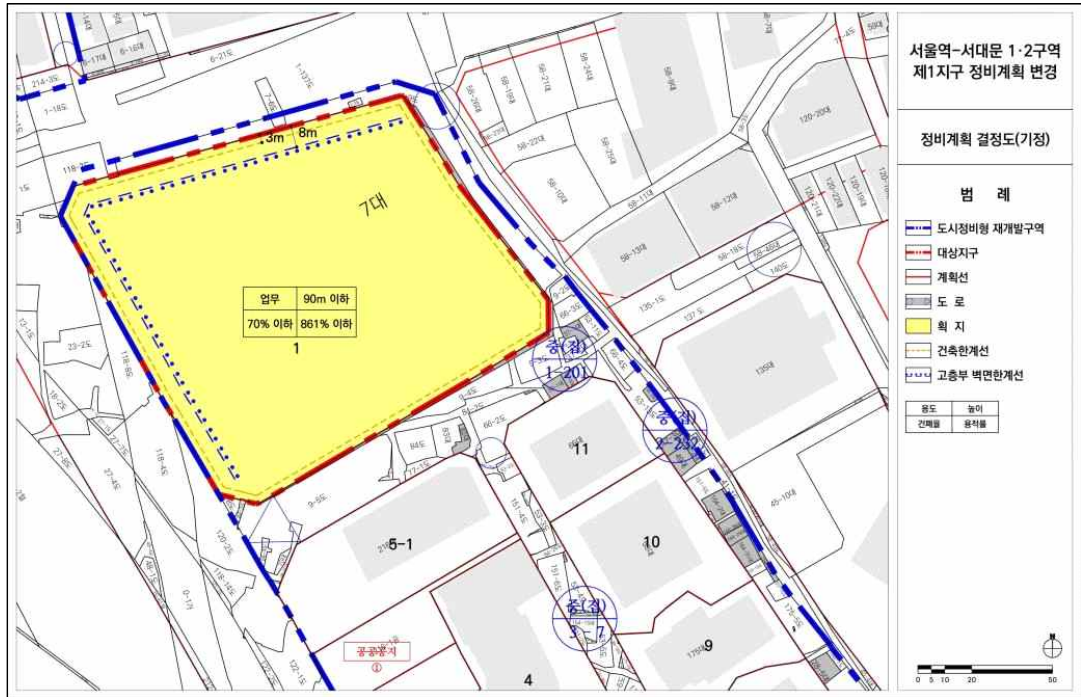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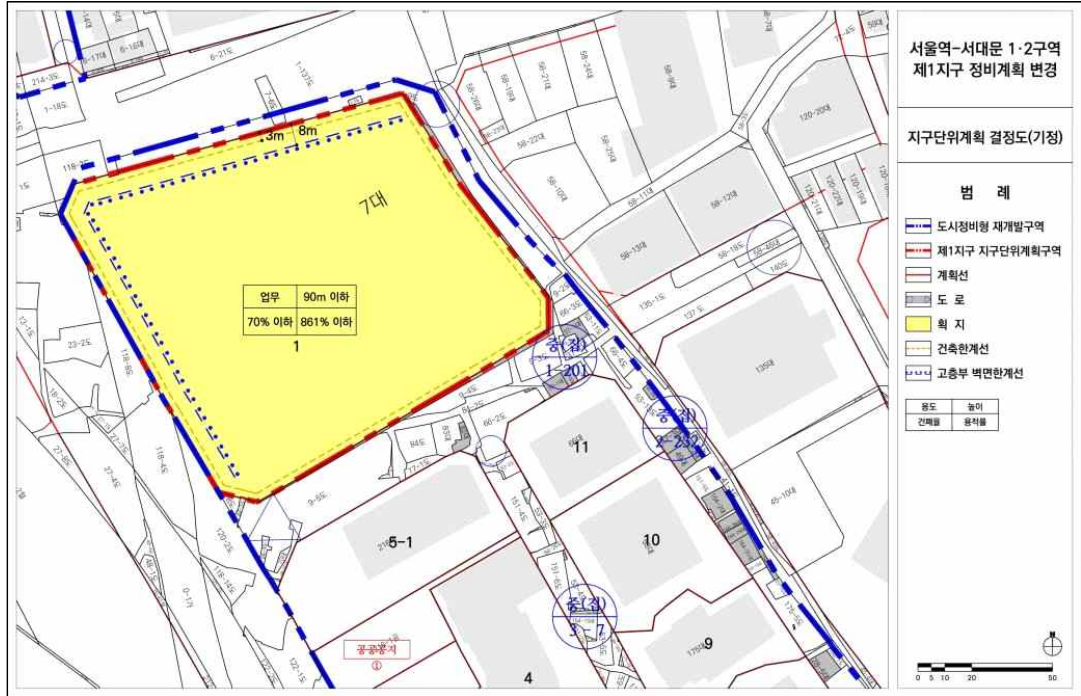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265호(2023.6.29.)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능동근린공원 후문 진입로의 단순한 보행동선을 지역 거점 열린광장 및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선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후문진입로 내 진입문화·휴게 광장, 쉼터 조성 등
2.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3. 면 적 : 560,552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공원 조성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8)
 -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02-2133-2036)

농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광진구 능동 1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등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등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계	560,552.00	221,497.46	72	24,263.76	52,670.05	667	560,552.00	222,426.24	72	24,263.76	52,670.05	667	
어린이 대공원지구	536,088.50	211,903.82	60	22,664.09	49,646.42	663	536,088.50	212,832.60	60	22,664.09	49,646.42	663	시설면적 증 928.78㎡
어린이 화관지구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시설율 (법정40%)	(221,497.46 / 560,552.00) × 100 = 39.51 %						(222,426.24 / 560,552.00) × 100 = 39.68 %						증 0.17%
건폐율 (법정10%)	(24,263.76 / 560,552.00) × 100 = 4.33 %						(24,263.76 / 560,552.00) × 100 = 4.33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합 계	560,552.00	221,497.46	72	24,263.76	52,670.05	667	560,552.00	222,426.24	72	24,263.76	52,670.05	667	시설면적 증 928.78㎡
기 반 시 설	소 계	64,747.18					65,177.02	65,177.02					증 429.84㎡
	도 로	51,757.32					50,753.10	50,753.10					감 1,004.22㎡
	광 장	12,989.86					14,423.92	14,423.92					증 1,434.06㎡
조경시설	17,331.29	17,331.29				5	18,146.54	18,146.54				5	증 815.25㎡
휴양시설	1,594.04	1,594.04	4	236.56	236.56		1,893.09	1,893.09	4	236.56	236.56		증 299.05㎡
유흥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감 609.36㎡
운동시설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교양시설	59,447.65	59,447.65	31	17,220.41	41,556.09	26	59,441.65	59,441.65	31	17,220.41	41,556.09	26	감 6.00㎡
편익시설	22,566.51	22,566.51	15	3,183.44	4,846.07	26	22,566.51	22,566.51	15	3,183.44	4,846.07	26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39,054.54						338,125.76						감 928.78㎡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2.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대공원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536,088.50	211,903.82	60	22,664.09	49,646.42	663	536,088.50	212,832.60	60	22,664.09	49,646.42	663	시설면적 증 928.78㎡
기반 시설		소 계	63,150.65					63,508.49	63,508.49					증 429.84㎡
		도 로	50,160.79					49,156.57	49,156.57					감 1,004.22㎡
		광 장	12,989.86					14,423.92	14,423.92					증 1,434.06㎡
조경시설		17,267.39	17,267.39				5	18,082.64	18,082.64				5	증 815.25㎡
휴양시설		1,579.84	1,579.84	4	236.56	236.56		1,878.89	1,878.89	4	236.56	236.56		증 299.05㎡
유흥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감 609.36㎡
운동시설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비담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비담면적 (㎡)		연 면 적 (㎡)	
교양시설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1.47	25	58,937.03	58,937.03	27	16,715.79	41,051.47	25	감 6.00㎡
편익시설	22,566.51	22,566.51	15	3,183.44	4,846.07	26	22,566.51	22,566.51	15	3,183.44	4,846.07	26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24,184.68						323,255.90						감 928.78㎡
그밖의 시설 (운동·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3. 시설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관 사 설	계			63,150.65	63,150.65													증 429.84㎡
	도로	가	능동 18	42,642.52	42,642.52													감 2,855.65㎡
	산책로	나	"	7,518.27	7,518.27													증 1,851.43㎡
	광장	다	"	12,989.86	12,989.86													증 1,434.06㎡
	전입광장	다-1	"	(4,427.00)	(4,427.00)													
	빛의광장	다-2	"	(4,445.38)	(4,445.38)													
	판타지플라자	다-3	"	(1,465.58)	(1,465.58)													
	육각정광장	다-4	"	(2,281.90)	(2,281.90)													
	아외음악당광장	다-5	"	(370.00)	(370.00)													
	후문광장-1																	증 588.19㎡
조 경 시 설	후문광장-2																	증 394.03㎡
	후문광장-3																	증 451.84㎡
	계			17,267.39	17,267.39					5							5	증 815.25㎡
	화단	라	능동 18	1,400.25	1,400.25													증 815.25㎡
	실개천		"	524.41	524.41													누락 부호 기입
	연못	①	"	14,382.78	14,382.78					3							3	
	- 환경연못	①-1	"	(5,061.78)	(5,061.78)					(1)							(1)	
	- 생태연못	①-2	"	(8,700.00)	(8,700.00)					(1)							(1)	
	- 생태계류	①-3	"	(621.00)	(621.00)					(1)							(1)	
	분수대	②	"	959.95	959.95					2							2	
- 혼합형조형분수	②-1	"	(706.50)	(706.50)					(1)							(1)	시설명 기입 (조성계획도와 일치)	
- 터널분수	②-3	"	(253.45)	(253.45)					(1)							(1)	시설명 기입 (조성계획도와 일치)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하양시 설	계			1,579.84	1,579.84		4	236.56	236.56				1,878.89	1,878.89		4	236.56	236.56	증 299.05㎡	
	육각정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223.34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223.34		
	- 육각정 1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2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3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군자정	2	"	39.00	39.00	R.C	1	13.22	13.22		2	"	39.00	39.00	R.C	1	13.22	13.22		
	섬 터		"	135.84	135.84						자	"	135.84	135.84					누락 부호 기입	
	아영장		"	960.00	960.00						야	"	960.00	960.00					누락 부호 기입	
	휴게쉼터-1										버	"	180.71	180.71					증 180.71㎡	
	휴게쉼터-2										스	"	72.87	72.87					증 72.87㎡	
휴게쉼터-3										휴	"	45.47	45.47					증 45.47㎡		
안 회 시 설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계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감 609.36㎡	
	소 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매 표 소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과학오락관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 과학오락관	7-1	"	(225.66)	(225.66)			(225.66)	(225.66)		7-1		(225.66)	(225.66)			(225.66)	(225.66)		
	- 입체영상관	7-2	"	(225.66)	(225.66)			(225.66)	(171.01)		7-2		(225.66)	(225.66)			(225.66)	(171.01)		
	- 화정실 3	7-3	"	(62.23)	(62.23)			(62.23)	(168.49)		7-3		(62.23)	(62.23)			(62.23)	(168.49)		
	사무실	8	"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유형의나라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쉼터(아와 무대)	46	"	584.71	584.71						46	"	584.71	584.7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유형시설물	소 계	소계		22,518.22	22,518.22							합 757.19㎡
	스윙거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회전목마	⑨	"	86.55	86.55	철골						
	회전컵	⑩	"	66.44	66.44	철골						
	키다리타 (미니카)	⑪	"	176.00	176.00	철골						
	탱크전차	⑫	"	757.19	757.19	철골						합 757.19㎡
	범 퍼 카	⑬	"	254.34	254.34	철골						
	디노기차	⑭	"	392.24	392.24	철골						
	카니발 코너	⑮	"	69.75	69.75	철골						
	모노레일	⑯	"	762.54	762.54	레일						
	기차여행	⑰	"	157.50	157.50	레일						
	스페이스화이터	⑱	"	86.59	86.59	철골						
	뮤직익스프레스	⑲	"	346.70	346.70	철골						
	트릭스테이션	⑳	"	87.92	87.92	철골						
	몬도딩고 (판하우스)	㉑	"	82.68	82.68	철골						
	전자사격장	㉒	"	40.00	40.00	철골						
	서스펜디드패미 리코스터	㉓	"	2,377.89	2,377.89	철골						
	드롭타워	㉔	"	178.69	178.69	철골						
	웨이브스윙	㉕	"	422.42	422.42	철골						
	슈퍼점퍼	㉖	"	285.27	285.27	철골						
	후롤라이드	㉗	"	1,658.65	1,658.65	철골						
	슈퍼버킹	㉘	"	264.87	264.87	철골						
	계구리점프	㉙	"	61.83	61.83	철골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조면적 (㎡)	연면적	공작물 (기)	
안원시정	컨터키	㉔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스랭베어	㉕	"	106.80	106.80	철골						
	크레이지마우스	㉖	"	343	343	철골						
	크레이지댄스	㉗	"	255	255	철골						
	아쿠아포드	㉘	"	358	358	콘크리트						
	미니버이킹	㉙	"	12.34	12.34	철골						
	기 타		"	12,425.36	12,425.36							
	소 계			5,962.29	5,962.29							증 147.83㎡
	문수놀이마당	11	능동 18	1,660.76	1,660.76							
	감성놀이마당	12	"	4,301.53	4,301.53							
안원시정	바다놀이마당											증 147.83㎡
	계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67.00	1	
	축구장	13	능동 18	8,392.31	8,392.31		1	167.00	167.00	167.00	1	누락 시설 기입
	축구장	13-1	"	(8,212.00)	(8,212.00)				(8,212.00)			
	탁구실 및 샤워실	13-2	"	(180.31)	(180.31)	R.C	1	(167.00)	(167.00)	(167.00)	1	누락 시설 기입
	헬스파크	14	"	4,317.54	4,317.54				4,317.54			
	- 헬스파크1	14-1	"	(3,545.54)	(3,545.54)				(3,545.54)			
	- 헬스파크2	14-2	"	(227.00)	(227.00)				(227.00)			
	- 헬스파크3	14-3	"	(320.00)	(320.00)				(320.00)			
	- 헬스파크4	14-4	"	(225.00)	(225.00)				(225.00)			
안원시정	미니축구장	15	"	750.00	750.00				750.00			
	실내테니스장	43	"	809.25	809.25		1	809.25	809.25	809.25		누락 시설 기입
	실외테니스장	44	"	1,588.44	1,588.44				1,588.44			
	실외테니스장-1	44-1	"	(794.22)	(794.22)				(794.22)			시설명 조정(실내→실외)
	실외테니스장-2	44-2	"	(794.22)	(794.22)				(794.22)			시설명 조정(실내→실외)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건조물(㎡)	연면적	공작물 (기)	공작물 (기)	
	계	계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1.47	25	25	25	감 6.00㎡
	소 계	소 계		58,240.67	58,240.67	27	16,715.79	41,051.47	4	4	4	감 6.00㎡
	아외음악당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철골	4	1,664.99	2,193.28			
	아외음악당	16-1	"	(7,327.60)	(7,327.60)	RC+철골	(1)	(1,395.05)	(1,926.10)			
	옥외화장실 1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2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3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식물원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동물사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2.46	2	2	2	
	열대동물사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물새장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어린이동물원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226.20)			
	대동물관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원숭이동산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소맹수사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맹금사	18-7	"	(184.75)	(184.75)	"	"	-	-	(1)	(1)	
	조식수사파리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서식전시장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수서동물사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조식전시장	18-11	"	(1,500.00)	(1,500.00)							
	공연장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2.41)			시설명 변경 (동물원공연장 → 공연장)
	동물원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기타(관람동포)	18-14	"	(9,407.59)	(9,407.59)					(1)	(1)	
	낙타사육장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시민안전체험관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1	
	인형전시장	20	"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표 양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기초면적 (㎡)	연면적	기초면적 (㎡)	연면적	구조	
	숙채시험장	21	능동 18	707.08	707.08							
	숙채시험시설	22	"	1,063.69	1,063.69							
	전시장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전시벽	㉔	"	6.00	6.00							감 6.00㎡ (현행반영)
	유강원	24	"	424.56	424.56							
	어린이교통체험관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서울키즈센터	36	"	6,600.00	6,600.00	RC+철골	1	3,367.18	19,543.44			
	아리수홍보관	37	"	3,350.77	3,350.77	RC+철골	1	679.10	887.50			
	소 계	소계		702.36	702.36							21
	동 상	㉔	능동18	579.36	579.36							12
	기념비	㉔	"	123.00	123.00							9
	계	계		22,566.51	22,566.51							26
	소 계	소계		22,493.71	22,493.71							20
	판매시설	25	능동 18	1,955.37	1,955.37							
	- 카페테리아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383.89)		
	-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340.14)		
	홀내음카페테리아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216.00)		
	- 북카페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636.50		
	안내센터	27	"	1,688.34	1,688.34							
	화장실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95.12)		
	- 화장실 1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34.71)		
	- 화장실 2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94.02)		
	- 화장실 3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69.30)		
	- 화장실 4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70.71)		
	- 화장실 5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65.86)		
	- 화장실 6	27-7	"	(145.50)	(145.50)	R.C	(1)	(90.76)	(90.76)	(90.76)		
	- 화장실 7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관리시설	- 화장실 8	27-8	능동 18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49.59)	(49.59)	시설명 변경 (조성계획도와 일치)
	- 복합화장실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188.58)		
	- 코제리화장실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141.36)	(141.36)		
	팔각당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주차장	29	"	17,488	17,488						4	
	- 정문	29-1	"	(5,159.00)	(5,159.00)			(5,159.00)	(5,159.00)		(2)	
	- 후문	29-2	"	(7,155.00)	(7,155.00)			(7,155.00)	(7,155.00)		(1)	
	- 구의문	29-3	"	(5,174.00)	(5,174.00)			(5,174.00)	(5,174.00)		(1)	
	간이판매시설(정문)		"	(31.36)	(31.36)			(31.36)	(31.36)		8	
	간이판매시설(후문)		"	(31.36)	(31.36)			(31.36)	(31.36)		8	
	공작물	소계		72.80	72.80						6	
	음수대	㉔	"	72.80	72.80						6	
관리시설	공중전화	㉕	"	(9.70)	(9.70)			(9.70)	(9.70)		(1)	
	의자	㉖	"	(1,952.00)	(1,952.00)			(1,952.00)	(1,952.00)		(1)	
	휴지통	㉗	"	(300.00)	(300.00)			(300.00)	(300.00)		(1)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1,784.60	606	
	소계			1,704.60	1,704.60		8	1,488.60	1,704.60	1,704.60		
	정문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432.00		
	후문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31.92		
	구의문	32	"	31.92	31.92		1	31.92	31.92	31.92		
	특고압 변전실	33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396.00		
	영선반창고	34	"	420.00	420.00	경량철골	1	420.00	420.00	420.00		
	수목관리실	36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320.67		부호 변경 (조성계획도와 일치)
	수처리시설	37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59.13		부호 변경 (조성계획도와 일치)
	공원초소(능동문)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12.9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증감 (기)
관리 시설	공 작 물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올타리 담장		능동 18							1	능동 18								1	
	안 내 관		"							140	"								140	
	가 로 등		"							460	"								460	
	고압변전실	㉔	"	94.60	94.60					4	㉔	"	94.60	94.60					4	
녹 지 및 기 타	음악분수제어실	38	"	80.00	80.00			80.00	80.00	1	㉕	"	80.00	80.00			80.00	80.00	1	부호 조정 (조성계획도와 일치)
	계			324,184.68									323,255.90							감 928.78㎡
	잔 디 밭	마	능동18	50,836.45							마	능동18	50,836.45							
	녹 지 대	바	"	81,044.60							바	"	80,115.82							감 928.78㎡
	수 림 대	사	"	192,303.63							사	"	192,303.63							
그 밖 의 시설	동물 놀이터		능동18	747.00	747.00						등	능동18	747.00	747.00						누락 부호 기입

※ 조성계획도와 조성계획결정조서 간 내용 일치를 위하여 시설구분, 시설명 순서 조정됨

4. 도로조서 (어린이대공원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합 계				8,820.93	50,160.79				감 1,004.22㎡
변경					9,102.51	49,156.57				
당초		소 계			684.00	14,889.38				감 4,864.62㎡
변경					393.00	10,024.76				
당초	대로	3	1	25~61	562.00	10,746.79	후문진입로	판타지 플라자	후문지구계	
변경		3	1	25~61	271.00	5,882.17	후문진입로	판타지 플라자	후문	감 4,864.62㎡
당초		3	2	24~50	122.00	4,142.59	정문진입로	정 문	빛의광장	
당초		소 계			4,848.79	27,753.14				증 2,008.97㎡
변경					5,085.37	29,762.11				
당초	소로	2	1	8	443.20	3,545.60	중앙로	빛의광장	팔각당	
당초		3	1	6	684.80	4,458.00	놀이마당, 외곽순환	빛의광장	판타지플라자	
당초		3	2	6	916.10	5,523.93	생태연못, 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당초		3	3	4	633.00	2,532.00	숲속체험장 순환	축구장	동물원	
당초		3	4	6	74.00	444.00	대동물관	팔각당	대동물관 동쪽	
당초		3	5	5	138.02	690.10	동물원, 카페테리아	어린이 동물원	동물공연장	
당초		3	6	6	474.00	2,844.0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당초		3	7	6	75.00	450.00	농동문 진입로	주차장	놀이마당	
당초		3	8	5	240.00	1,200.00	구의문 진입로	구의문	사슴전시장	
당초		3	9	5	232.00	1,160.00	동물공연장	광나루길	동물공연장	
당초		2	3	10	125.00	1,250.00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당초		3	10	5	93.00	465.00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당초		3	11	5	232.00	1,160.00	관리동선	후문주차장	후문진입로	
당초		3	12	4	123.02	453.41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당초		3	13	4	57.00	228.00	카페테리아	식물원	카페테리아	
당초		3	14	4	143.00	572.00	놀이마당	중앙로	생태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15	4	45.00	180.00	영선반창고	중앙로	영선반창고	
당초		3	16	6	57.25	343.50	야외음악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7	4	26.60	106.40	야외음악당	김동인동상	김동인동상	
당초		4	18	4	36.80	147.20	야외음악당	분수놀이마당	김동인동상	
신규		4	27	6~10	236.58	2,008.97	후문진입로	후문	아차산역	증 2,008.97㎡
당초		소 계			3,095.14	7,518.27				증 1,851.43㎡
변경					3,624.14	9,369.70				
당초	산책로	4	1	3	150.00	450.00	산책로	중앙로	숫대원	
당초		4	2	2.3	140.70	323.61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3	1.5~3	305.01	983.53	산책로	전시장	팔각당	
당초		4	4	3	214.00	642.00	산책로	숫대원	어린이동물원	
당초		4	5	3	150.00	450.00	산책로	화장실	조만식동상	
당초		4	6	3	120.00	360.00	산책로	흙내음 카페테리아	조만식동상	
당초		4	7	3	124.02	372.06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8	3	75.03	225.09	산책로	놀이마당	중앙로	
당초		4	9	3	87.00	261.00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10	3	54.00	162.00	산책로	분수놀이 마당	생태계류	
당초		4	11	2.3	68.20	156.86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2	2	70.91	141.82	산책로	전시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3	2	65.69	96.08	산책로	육각정	녹지	
당초		4	14	2	42.00	84.00	산책로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당초		4	15	2	28.20	56.40	산책로	부지외곽	외곽순환로	
당초		4	16	2	22.30	44.60	산책로	부지외곽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7	1.8	168.07	302.53	산책로		외곽순환로	
당초		4	18	1.8	44.99	80.98	산책로	생태숲산책로	생태숲산책로	
당초		4	19	1.8	24.24	43.63	산책로	부지외곽	생태숲산책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	20	1.5	95.30	142.9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0	1.5	28.83	43.25	산책로	산책로	아리수홍보관	
당초		4	21	1~2	392	427.48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당초		4	22	1	50.80	50.8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3	4	96.40	385.60	산책로	김동인동상	야외공연장	
당초		4	24	4	71.30	285.20	산책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25	2	49.15	98.30	산책로	환경연못	육각정	
당초		4	26	1.5~3	357.00	848.5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신규		4	28	3~4.5	233.00	931.91	산책로	후문	아차산역	증 931.91㎡
신규		4	29	1.5~3	296.00	919.52	산책로	후문	아차산역	증 919.52㎡

5.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회관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기반시설	1,596.53	1,596.53					1,596.53	1,596.53					
조경시설	63.90	63.90					63.90	63.90					
휴양시설	14.20	14.20					14.20	14.20					
운동시설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교양시설	504.62	504.62	4	504.62	504.62	1	504.62	504.62	4	504.62	504.62	1	
녹지,기타	14,869.86						14,869.86						

6. 시설조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1,596.53	1,596.53								1,596.53	1,596.53						
	도 로	가	능동8	1,450.74	1,450.74						가	능동8	1,450.74	1,450.74						
	산책로	나	"	145.79	145.79						나	"	145.79	145.79						
조 경 시설	계	계		63.90	63.90						계		63.90	63.90						
	벽 천	소계	능동8	63.90	63.90						소계	능동8	63.90	63.90						
휴 양 시설	계	계		14.20	14.20						계		14.20	14.20						
	기로휴게공간	소계	능동8	14.20	14.20						소계	능동8	14.20	14.20						
안 내 시설	계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건 축 물)	소계	능동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소계	능동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탈 의 실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관 리 실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안 내 시설	매 점 1	3	"	82.31	82.31	벽조	1	82.31	82.31		3	"	82.31	82.31	벽조	1	82.31	82.31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매 점 2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매 점 3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식 당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화 장 실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창 고	8	"	9.92	9.92	목조	1	9.92	9.92		8	"	9.92	9.92	목조	1	9.92	9.92		
	(공 작 물)	소계			6,319.34	6,319.34				3 소계			6,319.34	6,319.34					3	
	수 영 장 1	①	"	3,421.04	3,421.04	-	-	-	-		①	"	3,421.04	3,421.04	-	-	-	-		
	수 영 장 2	②	"	798.3	798.3	-	-	-	-		②	"	798.3	798.3	-	-	-	-		
	슬라이딩	③	"	-	-	FRP	-	-	-	1 ③	"	-	-	-	FRP	-	-	-	1	
	휴 게 소	④	"	100.0	100.0	조립	-	-	-	1 ④	"	100.0	100.0	조립	-	-	-	-	1	
	후 문	⑤	"	-	-	철제	-	-	-	1 ⑤	"	-	-	철제	-	-	-	-	1	
	쉴메보드장	⑦	"	2,000.0	2,000.0	-	-	-	-		⑦	"	2,000.0	2,000.0	-	-	-	-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계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건 축 물)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근화원본채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행랑채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별 당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정 자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공 작 물)	소계							1	소계								1		
	근화교	⑥	"	-	-	R.C	-	-	-	1	⑥	"	-	-	R.C	-	-	-	1	
	녹지 및 기타		능동18	14,869.86								능동18	14,869.86							

7. 도로조서(어린이회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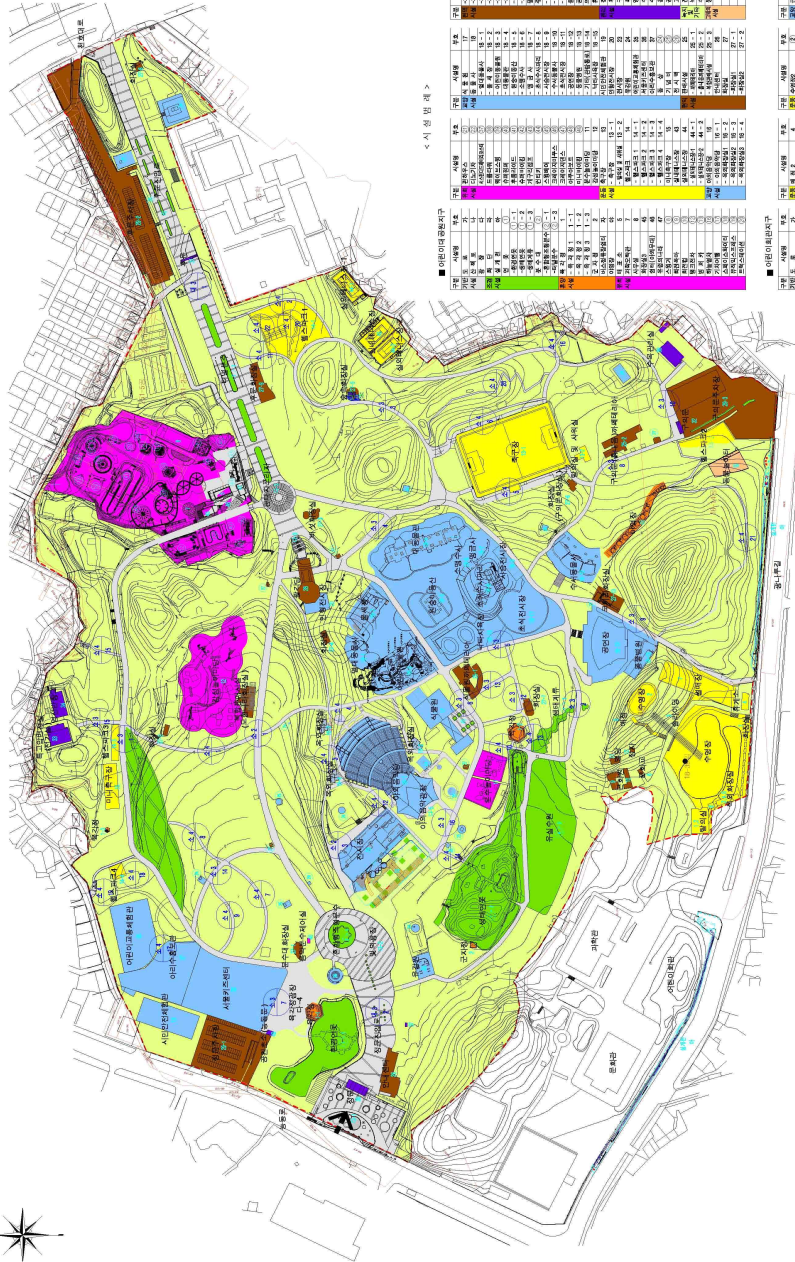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79.41	1,596.53				
변경					279.41	1,596.53				
당초	소로	소 계			242.96	1,450.74				
변경					242.96	1,450.74				
당초		3	가	6	242.96	1,450.74	어린이회관, 수영장, 내부도로	어린이회관	수영장 후문	
당초	산책로	소 계			36.45	145.79				
변경					36.45	145.79				
당초		3	나	4	36.45	145.79	수영장 내부 도로	수영장 1	수영장 2	

조성계획도

범 경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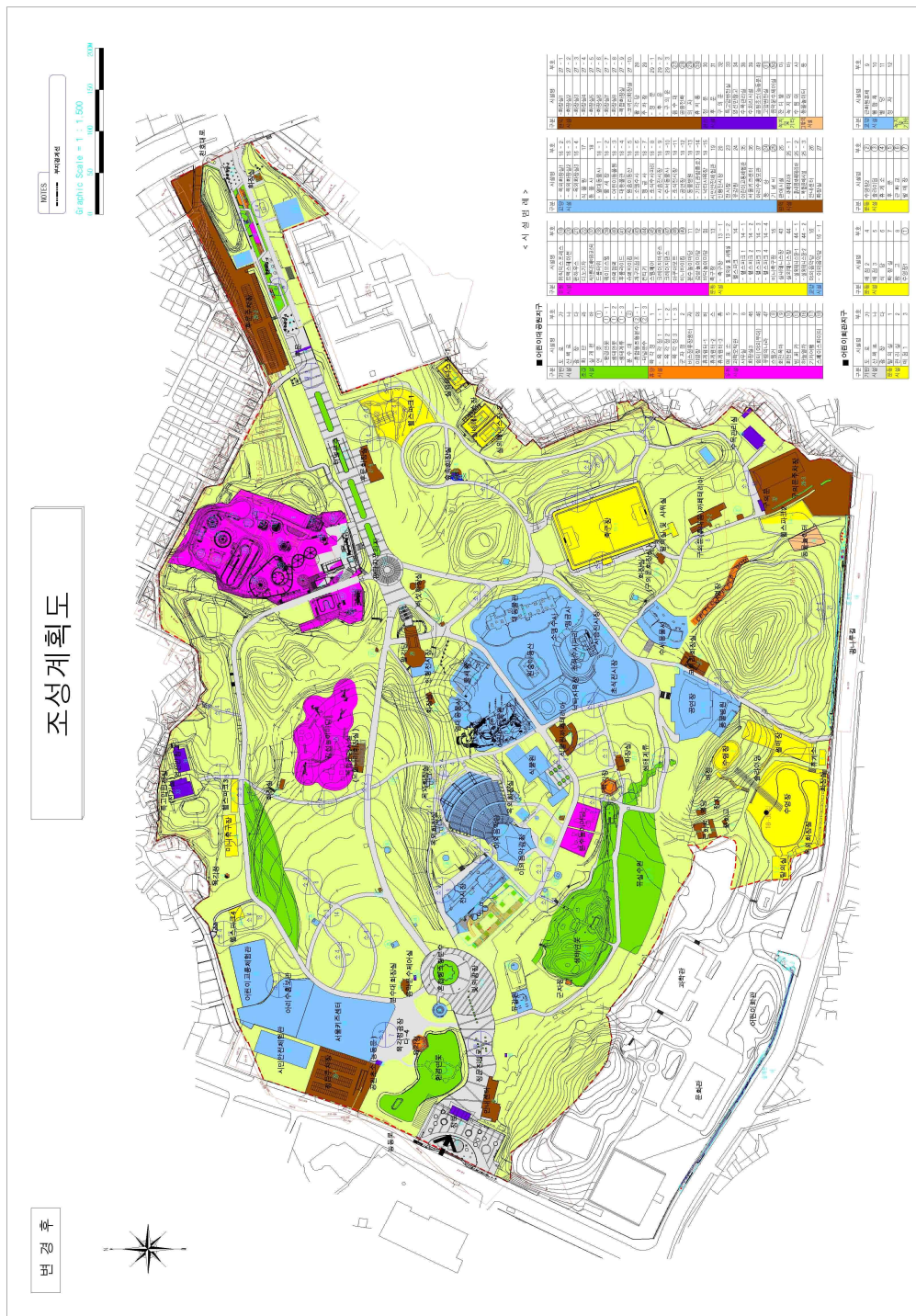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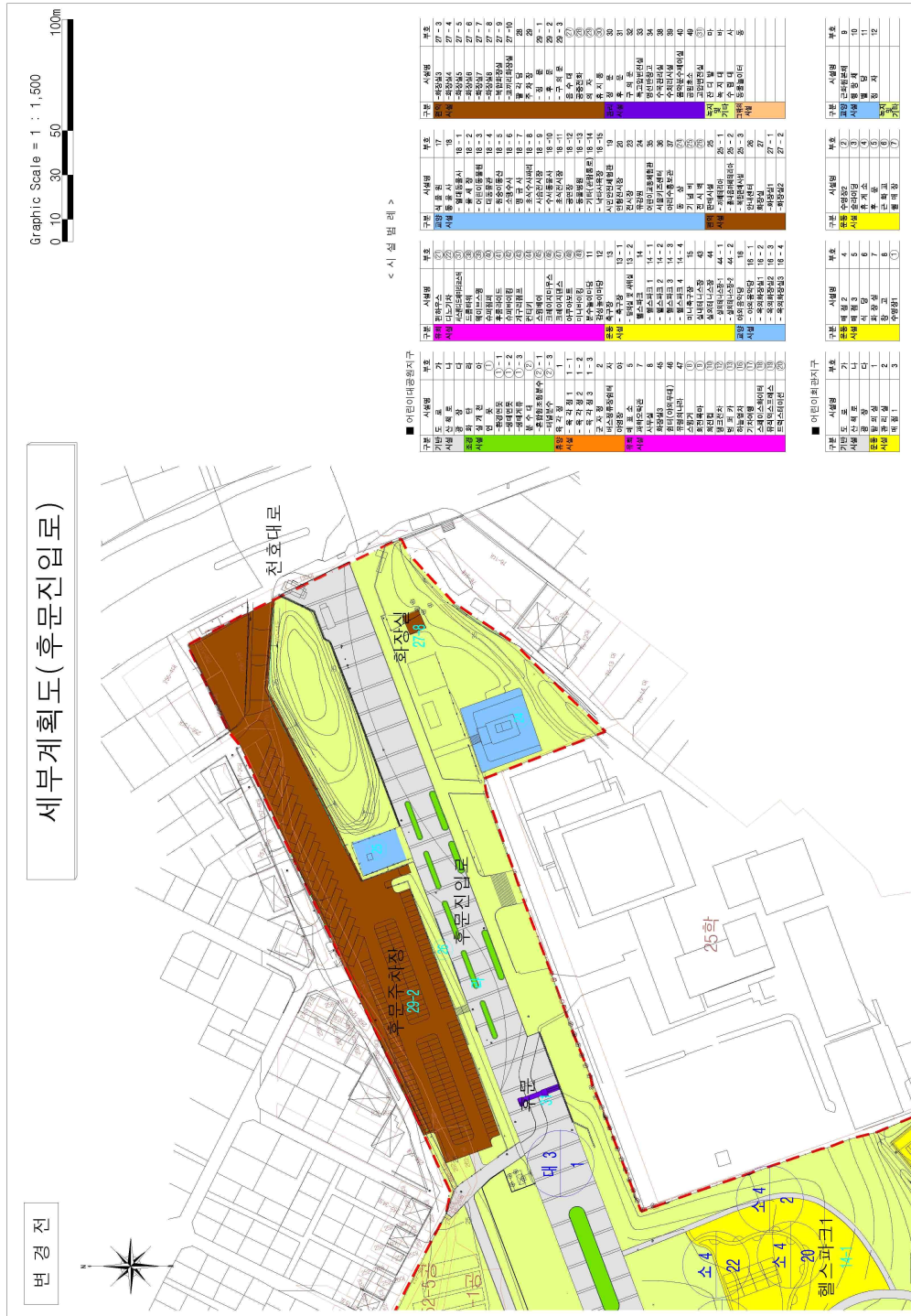
NOTES
 Original Scale = 1 : 1,500
 0 50 100 150 200m



<식생 분례>

구분	식생명	면적	비율
1. 자연식생	자연식생	1,234	12.3%
2. 인공식생	인공식생	5,678	56.8%
3. 혼합식생	혼합식생	3,456	34.6%
4. 기타	기타	123	1.3%
합계		10,000	100%





세부계획도(후방진입)

하
0
5



< 180 60 120 90 45 0 0 45 90 120 180

■ 어린이대공원		
구분	소재형	부호
1. 일반	가	나
2. 상·하로	1	2
3. 동·서로	3	4
4. 동·서로	5	6
5. 동·서로	7	8
6. 동·서로	9	10
7. 동·서로	11	12
8. 동·서로	13	14
9. 동·서로	15	16
10. 동·서로	17	18
11. 동·서로	19	20
12. 동·서로	21	22
13. 동·서로	23	24
14. 동·서로	25	26
15. 동·서로	27	28
16. 동·서로	29	30
17. 동·서로	31	32
18. 동·서로	33	34
19. 동·서로	35	36
20. 동·서로	37	38
21. 동·서로	39	40
22. 동·서로	41	42
23. 동·서로	43	44
24. 동·서로	45	46
25. 동·서로	47	48
26. 동·서로	49	50
27. 동·서로	51	52
28. 동·서로	53	54
29. 동·서로	55	56
30. 동·서로	57	58
31. 동·서로	59	60
32. 동·서로	61	62
33. 동·서로	63	64
34. 동·서로	65	66
35. 동·서로	67	68
36. 동·서로	69	70
37. 동·서로	71	72
38. 동·서로	73	74
39. 동·서로	75	76
40. 동·서로	77	78
41. 동·서로	79	80
42. 동·서로	81	82
43. 동·서로	83	84
44. 동·서로	85	86
45. 동·서로	87	88
46. 동·서로	89	90
47. 동·서로	91	92
48. 동·서로	93	94
49. 동·서로	95	96
50. 동·서로	97	98
51. 동·서로	99	100
52. 동·서로	101	102
53. 동·서로	103	104
54. 동·서로	105	106
55. 동·서로	107	108
56. 동·서로	109	110
57. 동·서로	111	112
58. 동·서로	113	114
59. 동·서로	115	116
60. 동·서로	117	118
61. 동·서로	119	120
62. 동·서로	121	122
63. 동·서로	123	124
64. 동·서로	125	126
65. 동·서로	127	128
66. 동·서로	129	130
67. 동·서로	131	132
68. 동·서로	133	134
69. 동·서로	135	136
70. 동·서로	137	138
71. 동·서로	139	140
72. 동·서로	141	142
73. 동·서로	143	144
74. 동·서로	145	146
75. 동·서로	147	148
76. 동·서로	149	150
77. 동·서로	151	152
78. 동·서로	153	154
79. 동·서로	155	156
80. 동·서로	157	158
81. 동·서로	159	160
82. 동·서로	161	162
83. 동·서로	163	164
84. 동·서로	165	166
85. 동·서로	167	168
86. 동·서로	169	170
87. 동·서로	171	172
88. 동·서로	173	174
89. 동·서로	175	176
90. 동·서로	177	178
91. 동·서로	179	180
92. 동·서로	181	182
93. 동·서로	183	184
94. 동·서로	185	186
95. 동·서로	187	188
96. 동·서로	189	190
97. 동·서로	191	192
98. 동·서로	193	194
99. 동·서로	195	196
100. 동·서로	197	198
101. 동·서로	199	200
102. 동·서로	201	202
103. 동·서로	203	204
104. 동·서로	205	206
105. 동·서로	207	208
106. 동·서로	209	210
107. 동·서로	211	212
108. 동·서로	213	214
109. 동·서로	215	216
110. 동·서로	217	218
111. 동·서로	219	220
112. 동·서로	221	222
113. 동·서로	223	224
114. 동·서로	225	226
115. 동·서로	227	228
116. 동·서로	229	230
117. 동·서로	231	232
118. 동·서로	233	234
119. 동·서로	235	236
120. 동·서로	237	238
121. 동·서로	239	240
122. 동·서로	241	242
123. 동·서로	243	244
124. 동·서로	245	246
125. 동·서로	247	248
126. 동·서로	249	250
127. 동·서로	251	252
128. 동·서로	253	254
129. 동·서로	255	256
130. 동·서로	257	258
131. 동·서로	259	260
132. 동·서로	261	262
133. 동·서로	263	264
134. 동·서로	265	266
135. 동·서로	267	268
136. 동·서로	269	270
137. 동·서로	271	272
138. 동·서로	273	274
139. 동·서로	275	276
140. 동·서로	277	278
141. 동·서로	279	280
142. 동·서로	281	282
143. 동·서로	283	284
144. 동·서로	285	286
145. 동·서로	287	288
146. 동·서로	289	290
147. 동·서로	291	292
148. 동·서로	293	294
149. 동·서로	295	296
150. 동·서로	297	298
151. 동·서로	299	300
152. 동·서로	301	302
153. 동·서로	303	304
154. 동·서로	305	306
155. 동·서로	307	308
156. 동·서로	309	310
157. 동·서로	311	312
158. 동·서로	313	314
159. 동·서로	315	316
160. 동·서로	317	318
161. 동·서로	319	320
162. 동·서로	321	322
163. 동·서로	323	324
164. 동·서로	325	326
165. 동·서로	327	328
166. 동·서로	329	330
167. 동·서로	331	332
168. 동·서로	333	334
169. 동·서로	335	336
170. 동·서로	337	338
171. 동·서로	339	340
172. 동·서로	341	342
173. 동·서로	343	344
174. 동·서로	345	346
175. 동·서로	347	348
176. 동·서로	349	350
177. 동·서로	351	352
178. 동·서로	353	354
179. 동·서로	355	356
180. 동·서로	357	358
181. 동·서로	359	360
182. 동·서로	361	362
183. 동·서로	363	364
184. 동·서로	365	366
185. 동·서로	367	368
186. 동·서로	369	370
187. 동·서로	371	372
188. 동·서로	373	374
189. 동·서로	375	376
190. 동·서로	377	378
191. 동·서로	379	380
192. 동·서로	381	382
193. 동·서로	383	384
194. 동·서로	385	386
195. 동·서로	387	388
196. 동·서로	389	390
197. 동·서로	391	392
198. 동·서로	393	394
199. 동·서로	395	396
200. 동·서로	397	398
201. 동·서로	399	400
202. 동·서로	401	402
203. 동·서로	403	404
204. 동·서로	405	406
205. 동·서로	407	408
206. 동·서로	409	410
207. 동·서로	411	412
208. 동·서로	413	414
209. 동·서로	415	416
210. 동·서로	417	418
211. 동·서로	419	420
212. 동·서로	421	422
213. 동·서로	423	424
214. 동·서로	425	426
215. 동·서로	427	428
216. 동·서로	429	430
217. 동·서로	431	432
218. 동·서로	433	434
219. 동·서로	435	436
220. 동·서로	437	438
221. 동·서로	439	440
222. 동·서로	441	442
223. 동·서로	443	444
224. 동·서로	445	446
225. 동·서로	447	448
226. 동·서로	449	450
227. 동·서로	451	452
228. 동·서로	453	454
229. 동·서로	455	456
230. 동·서로	457	458
231. 동·서로	459	460
232. 동·서로	461	462
233. 동·서로	463	464
234. 동·서로	465	466
235. 동·서로	467	468
236. 동·서로	469	470
237. 동·서로	471	472
238. 동·서로	473	474
239. 동·서로	475	476
240. 동·서로	477	478
241. 동·서로	479	480
242. 동·서로	481	482
243. 동·서로	483	484
244. 동·서로	485	486
245. 동·서로	487	488
246. 동·서로	489	490
247. 동·서로	491	492
248. 동·서로	493	494
249. 동·서로	495	496
250. 동·서로	497	498
251. 동·서로	499	500
252. 동·서로	501	502
253. 동·서로	503	504
254. 동·서로	505	506
255. 동·서로	507	508
256. 동·서로	509	510
257. 동·서로	511	512
258. 동·서로	513	514
259. 동·서로	515	516
260. 동·서로	517	518
261. 동·서로	519	520
262. 동·서로	521	522
263. 동·서로	523	524
264. 동·서로	525	526
265. 동·서로	527	528
266. 동·서로	529	530
267. 동·서로	531	532
268. 동·서로	533	534
269. 동·서로	535	536
270. 동·서로	537	538
271. 동·서로	539	540
272. 동·서로	541	542
273. 동·서로	543	544
274. 동·서로	545	546
275. 동·서로	547	548
276. 동·서로	549	550
277. 동·서로	551	552
278. 동·서로	553	554
279. 동·서로	555	556
280. 동·서로	557	558
281. 동·서로	559	560
282. 동·서로	561	562
283. 동·서로	563	564
284. 동·서로	565	566
285. 동·서로	567	568
286. 동·서로	569	570
287. 동·서로	571	572
288. 동·서로	573	574
289. 동·서로	575	576
290. 동·서로	577	578
291. 동·서로	579	580
292. 동·서로	581	582
293. 동·서로	583	584
294. 동·서로	585	586
295. 동·서로	587	588
296. 동·서로	589	590
297. 동·서로	591	592
298. 동·서로	593	594
299. 동·서로	595	596
300. 동·서로	597	598
301. 동·서로	599	600
302. 동·서로	601	602
303. 동·서로	603	604
304. 동·서로	605	606
305. 동·서로	607	608
306. 동·서로	609	610
307. 동·서로	611	612
308. 동·서로	613	614
309. 동·서로	615	616
310. 동·서로	617	618
311. 동·서로	619	620
312. 동·서로	621	622
313. 동·서로	623	624
314. 동·서로	625	626
315. 동·서로	627	628
316. 동·서로	629	630
317. 동·서로	631	632
318. 동·서로	633	634
319. 동·서로	635	636
320. 동·서로	637	638
321. 동·서로	639	640
322. 동·서로	641	642
323. 동·서로	643	644
324. 동·서로	645	646
325. 동·서로	647	648
326. 동·서로	649	650
327. 동·서로	651	652
328. 동·서로	653	654
329. 동·서로	655	656
330. 동·서로	657	658
331. 동·서로	659	660
332. 동·서로	661	662
333. 동·서로	663	664
334. 동·서로	665	666
335. 동·서로	667	668
336. 동·서로	669	670
337. 동·서로	671	672
338. 동·서로	673	674
339. 동·서로	675	676
340. 동·서로	677	678
341. 동·서로	679	680
342. 동·서로	681	682
343. 동·서로	683	684
344. 동·서로	685	686
345. 동·서로	687	688
346. 동·서로	689	690
347. 동·서로	691	692
348. 동·서로	693	694
349. 동·서로	695	696
350. 동·서로	697	698
351. 동·서로	699	700
352. 동·서로	701	702
353. 동·서로	703	704
354. 동·서로	705	706
355. 동·서로	707	708
356. 동·서로	709	710
357. 동·서로	711	712
358. 동·서로	713	714
359. 동·서로	715	716
360. 동·서로	717	718
361. 동·서로	719	720
362. 동·서로	721	722
363. 동·서로	723	724
364. 동·서로	725	726
365. 동·서로	727	728
366. 동·서로	729	730
367. 동·서로	731	732
368. 동·서로	733	734
369. 동·서로	735	736
370. 동·서로	737	738
371. 동·서로	739	740
372. 동·서로	741	742
373. 동·서로	743	744
374. 동·서로	745	746
375. 동·서로	747	748
376. 동·서로	749	750
377. 동·서로	751	752
378. 동·서로	753	754
379. 동·서로	755	756
380. 동·서로	757	758
381. 동·서로	759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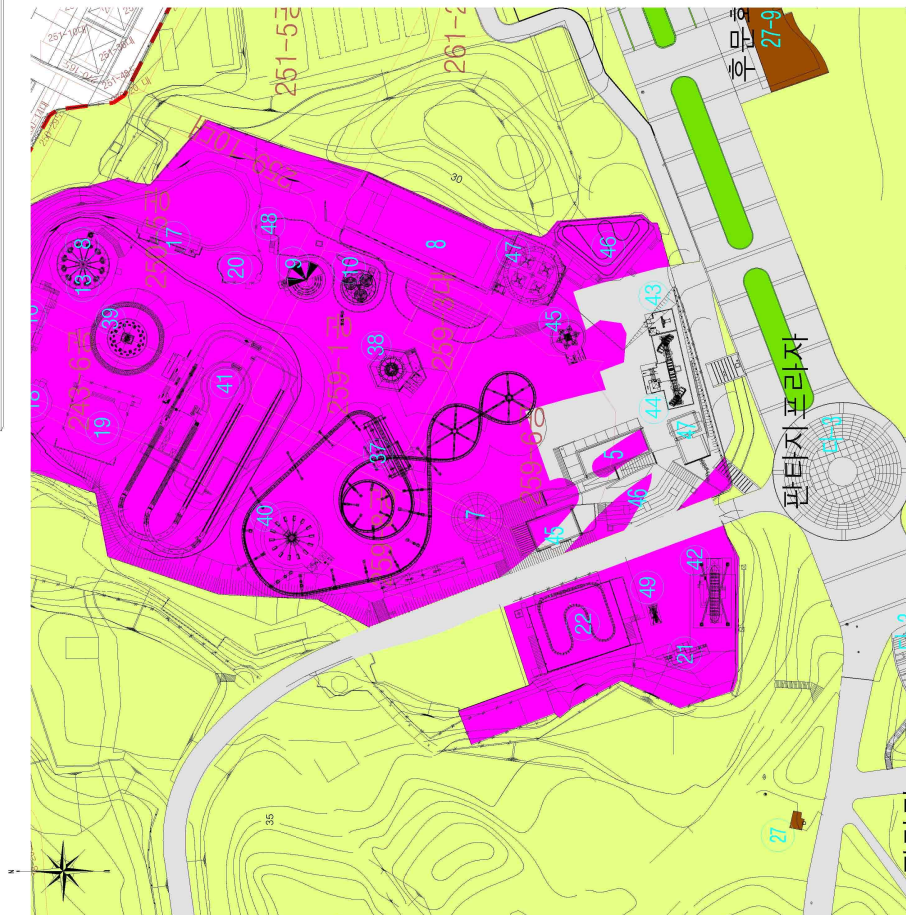
구분	시열명	부호
민간	도로	가
시설	산책로	나
	광장	다
공공	광의실	1
시설	관리실	2
	매점	3

■ 어린이 회원 안내									
구분	비고	프로그램	회차	시간	장소	비고	비고	비고	비고
유아반	3세 이하	유아반	2회	4	유아반	유아반	유아반	유아반	유아반
초등반	4~6세	초등반	3회	5	초등반	초등반	초등반	초등반	초등반
중등반	7~9세	중등반	4회	6	중등반	중등반	중등반	중등반	중등반
고등반	10~12세	고등반	5회	7	고등반	고등반	고등반	고등반	고등반
대학반	13~18세	대학반	3회	8	대학반	대학반	대학반	대학반	대학반
대학1	19~24세	대학1	4회	9	대학1	대학1	대학1	대학1	대학1
대학2	25~30세	대학2	5회	10	대학2	대학2	대학2	대학2	대학2
대학3	31~36세	대학3	6회	11	대학3	대학3	대학3	대학3	대학3
대학4	37~42세	대학4	7회	12	대학4	대학4	대학4	대학4	대학4
대학5	43~48세	대학5	8회	13	대학5	대학5	대학5	대학5	대학5
대학6	49~54세	대학6	9회	14	대학6	대학6	대학6	대학6	대학6
대학7	55~60세	대학7	10회	15	대학7	대학7	대학7	대학7	대학7
대학8	61~66세	대학8	11회	16	대학8	대학8	대학8	대학8	대학8
대학9	67~72세	대학9	12회	17	대학9	대학9	대학9	대학9	대학9
대학10	73~78세	대학10	13회	18	대학10	대학10	대학10	대학10	대학10
대학11	79~84세	대학11	14회	19	대학11	대학11	대학11	대학11	대학11
대학12	85~90세	대학12	15회	20	대학12	대학12	대학12	대학12	대학12
대학13	91~96세	대학13	16회	21	대학13	대학13	대학13	대학13	대학13
대학14	97~100세	대학14	17회	22	대학14	대학14	대학14	대학14	대학14
대학15	101~104세	대학15	18회	23	대학15	대학15	대학15	대학15	대학15
대학16	105~108세	대학16	19회	24	대학16	대학16	대학16	대학16	대학16
대학17	109~112세	대학17	20회	25	대학17	대학17	대학17	대학17	대학17
대학18	113~116세	대학18	21회	26	대학18	대학18	대학18	대학18	대학18
대학19	117~120세	대학19	22회	27	대학19	대학19	대학19	대학19	대학19
대학20	121~124세	대학20	23회	28	대학20	대학20	대학20	대학20	대학20
대학21	125~128세	대학21	24회	29	대학21	대학21	대학21	대학21	대학21
대학22	129~132세	대학22	25회	30	대학22	대학22	대학22	대학22	대학22
대학23	133~136세	대학23	26회	31	대학23	대학23	대학23	대학23	대학23
대학24	137~140세	대학24	27회	32	대학24	대학24	대학24	대학24	대학24
대학25	141~144세	대학25	28회	33	대학25	대학25	대학25	대학25	대학25
대학26	145~148세	대학26	29회	34	대학26	대학26	대학26	대학26	대학26
대학27	149~152세	대학27	30회	35	대학27	대학27	대학27	대학27	대학27
대학28	153~156세	대학28	31회	36	대학28	대학28	대학28	대학28	대학28
대학29	157~160세	대학29	32회	37	대학29	대학29	대학29	대학29	대학29
대학30	161~164세	대학30	33회	38	대학30	대학30	대학30	대학30	대학30
대학31	165~168세	대학31	34회	39	대학31	대학31	대학31	대학31	대학31
대학32	169~172세	대학32	35회	40	대학32	대학32	대학32	대학32	대학32
대학33	173~176세	대학33	36회	41	대학33	대학33	대학33	대학33	대학33
대학34	177~180세	대학34	37회	42	대학34	대학34	대학34	대학34	대학34
대학35	181~184세	대학35	38회	43	대학35	대학35	대학35	대학35	대학35
대학36	185~188세	대학36	39회	44	대학36	대학36	대학36	대학36	대학36
대학37	189~192세	대학37	40회	45	대학37	대학37	대학37	대학37	대학37
대학38	193~196세	대학38	41회	46	대학38	대학38	대학38	대학38	대학38
대학39	197~200세	대학39	42회	47	대학39	대학39	대학39	대학39	대학39
대학40	201~204세	대학40	43회	48	대학40	대학40			

세부계획도(탱크전차부지)

Graphic Scale = 1 : 1,000

0	10	30	50m
---	----	----	-----


$$\frac{1}{2} \leq \frac{1}{2} \leq \frac{1}{2}$$

■ 2차원 이차원 구조				
행 번호	열 번호	행 이름	열 이름	행 번호
1	1	수리	수리	1
2	1	수리	수리	2
3	1	수리	수리	3
4	1	수리	수리	4
5	1	수리	수리	5
6	1	수리	수리	6
7	1	수리	수리	7
8	1	수리	수리	8
9	1	수리	수리	9
10	1	수리	수리	10
11	1	수리	수리	11
12	1	수리	수리	12
13	1	수리	수리	13
14	1	수리	수리	14
15	1	수리	수리	15
16	1	수리	수리	16
17	1	수리	수리	17
18	1	수리	수리	18
19	1	수리	수리	19
20	1	수리	수리	20
21	1	수리	수리	21
22	1	수리	수리	22
23	1	수리	수리	23
24	1	수리	수리	24
25	1	수리	수리	25
26	1	수리	수리	26
27	1	수리	수리	27
28	1	수리	수리	28
29	1	수리	수리	29
30	1	수리	수리	30
31	1	수리	수리	31
32	1	수리	수리	32
33	1	수리	수리	33
34	1	수리	수리	34
35	1	수리	수리	35
36	1	수리	수리	36
37	1	수리	수리	37
38	1	수리	수리	38
39	1	수리	수리	39
40	1	수리	수리	40
41	1	수리	수리	41
42	1	수리	수리	42
43	1	수리	수리	43
44	1	수리	수리	44
45	1	수리	수리	45
46	1	수리	수리	46
47	1	수리	수리	47
48	1	수리	수리	48
49	1	수리	수리	49
50	1	수리	수리	50
51	1	수리	수리	51
52	1	수리	수리	52
53	1	수리	수리	53
54	1	수리	수리	54
55	1	수리	수리	55
56	1	수리	수리	56
57	1	수리	수리	57
58	1	수리	수리	58
59	1	수리	수리	59
60	1	수리	수리	60

■ 어린이의 발달과구									
구분	대상	연령	목적	구분	대상	연령	목적	구분	대상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4	44	44	44	44	44	44	44	44	44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53	53	53	5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6호(2007.11.15.)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1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여의도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550,734.4	감) 147,262.5	403,471.9	1976.8.21. 건고(131)

2.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여의도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면적변경 (550,734.4㎡ → 403,471.9㎡)	도시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변경(제척)함 (금번 아파트지구 제척 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구역은 존치)

II.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나.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2.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550,734.4	100.0	403,471.9	100.0	감) 147,262.5
주거 용지	소 계	363,208.5	65.9	363,208.5	90.0	-
	주택용지	363,208.5	65.9	363,208.5	90.0	가) 목화아파트 삼부아파트 대교아파트 화랑아파트 장미아파트 한양아파트 시범아파트 삼익아파트 은하아파트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여의도동 38-1) 미성아파트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17,927.4	3.3	10,816.40	2.7	감) 7,111.0
	주구중심	17,641.1	3.2	10,530.1	2.6	감) 7,111.0
	분구중심	286.3	0.1	286.3	0.1	-
도시계획 시설용지 및 기타	소 계	164,798.5	29.9	24,647.0	6.1	감) 140,151.5
	도 로	57,211.5	10.4	2,962.0	0.7	감) 54,249.5
	공 원	21,685.0	3.9	21,685.0	5.4	-
	학 교	84,870.0	15.4	-	-	감) 84,870.0
	공공청사	1,032.0	0.2	-	-	감) 1,032.0
기타	소 계	4,800.0	0.9	4,800.0	1.2	-
	공공이용시설	4,800.0	0.9	4,800.0	1.2	-

※ 존치 대상 단지의 재건축사업구역 내 건축물도 함께 존치함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8,784.5	100.0	74,204.9	100.0	감) 24,579.6
주거 용지	소 계	68,857.9	69.7	68,857.9	92.8	-
	주택용지	68,857.9	69.7	68,857.9	92.8	-
중심 시설 용지	소계	1,445.0	1.5	1,445.0	1.9	-
	주구중심	1,445.0	1.5	1,445.0	1.9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28,481.6	28.8	3,902.0	5.3	감) 24,579.6
	도 로	7,706.6	7.8	2,962.0	4.0	감) 4,744.6
	공 원	940.0	1.0	940.0	1.3	-
	학교용지	19,835.0	20.1	-	-	감) 19,835.0

■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53,896.2	100.0	89,223.0	100.0	감) 64,673.2
주거 용지	소 계	84,456.7	54.9	84,456.7	94.7	-
	주택용지	84,456.7	54.9	84,456.7	94.7	-
중심 시설 용지	소계	5,083.3	3.3	286.3	0.3	감) 4,797.0
	주구중심	4,797.0	3.1	-	-	감) 4,797.0
	분구중심	286.3	0.2	286.3	0.3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64,356.2	41.8	4,480.0	5.0	감) 59,876.2
	도 로	20,415.2	13.3	-	-	감) 20,415.2
	공 원	4,480.0	2.9	4,480.0	5.0	-
	학교용지	39,461.0	25.6	-	-	감) 39,461.0

■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62,444.4	100.0	145,953.0	100.0	감) 16,491.4
주거 용지	소 계	126,004.7	77.6	126,004.7	86.3	-
	주택용지	126,004.7	77.6	126,004.7	86.3	-
중심 시설 용지	소계	5,622.3	3.5	3,308.3	2.3	감) 2,314.0
	주구중심	5,622.3	3.5	3,308.3	2.3	감) 2,314.0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26,017.4	16.0	11,840.0	8.1	감) 14,177.4
	도 로	14,177.4	8.7	-	-	감) 14,177.4
	공 원	11,840.0	7.3	11,840.0	8.1	-
기타	소 계	4,800.0	3.0	4,800.0	3.3	-
	공공이용시설	4,800.0	3.0	4,800.0	3.3	-

■ 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35,609.3	100.0	94,091.0	100	감) 41,518.3
주거 용지	소 계	83,889.2	61.9	83,889.2	89.2	-
	주택용지	83,889.2	61.9	83,889.2	89.2	-
중심 시설 용지	소계	5,776.8	4.3	5,776.8	6.1	-
	주구중심	5,776.8	4.3	5,776.8	6.1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45,943.3	33.9	4,425.0	4.7	감) 41,518.3
	도 로	14,912.3	11.0	-	-	감) 14,912.3
	공 원	4,425.0	3.3	4,425.0	4.7	-
	학교용지	25,574.0	18.9	-	-	감) 25,574.0
	공공청사	1,032.0	0.8	-	-	감) 1,032.0

나. 용도지역·지구 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0,734.4	감) 147,262.5	403,471.9	100.0	지구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9,980.0	-	9,980.0	2.5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12,298.8	감) 107,298.2	5,000.6	1.2	
제3종일반주거지역	407,769.1	감) 32,350.70	375,418.4	93.0	
일반상업지역	20,686.5	감) 7,613.6	13,072.9	3.2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연장 (m)	비고
				기점	종점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강일동 579일대	47,400 (173.8)	밤섬정차장 (여의나루역)
기정	②						5호선

※ () 안은 지구내 연장임

2)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31	25-45	주간선도로	1,380 (500)	여의도남 단	여의도북 단	일반도 로	70.3.26. (건고143)	

※ () 안은 지구내 연장임

3)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광장	교통 광장	원효대교 남단	22,569 (12,686.72)	-	22,569 (684.6)	78.10.20. (건고313)	아파트지구에서 일부 제척

※ ()는 지구 내 면적임

4)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배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여의도동 30-3 일원	940.0	-	940.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②		소공원	여의도동 40일원	680.0	-	680.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③		소공원	여의도동 40-4일원	470.0	-	470.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④	-	소공원	여의도동 38-1 일원	510.0	-	510.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①	자유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0-3	4,630.0	-	4,630.0	71.3.22. (건고147)	
기정	②	평화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0-2	5,350.0	-	5,350.0	71.3.22. (건고147)	
기정	③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41 일원	1,585.0	-	1,585.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④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42 일원	1,745.0	-	1,745.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⑤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1,52일원	1,860.0	-	1,860.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⑥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37 일원	1,760.0	-	1,760.0	06.1.12. (서고2006-21)	
기정	⑦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28 일원	2,155.0	-	2,155.0	06.1.12. (서고2006-21)	

5)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6)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 금회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라. 건축규제 계획(변경)

※ 금회 아파트지구 변경(제척) 후 존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함

1) 용도

구분	건 축 범 위		비 고
	기정	변경	
주택 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변경없음	
주구 중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종교집회장	변경없음	
분구 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변경없음	-
공원 용지	관련법·령·규칙 및 조례에 의한 시설	변경없음	
도로 용지	관련법·령·규칙 및 조례에 의한 시설	변경없음	
공공 이용 시설	주민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별도의 지침을 따름	변경없음	-

※ 주구중심내 건축물의 용도는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건축허용 범위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경비계획)상의 건축범위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건폐율 및 높이계획

구분	건폐율	높이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중심시설, 공공이용시설	50% 이하	5층 이하	주구중심, 분구중심 공공이용시설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3) 용적률

구분	계획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층수제한 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 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text{상한용적률}(\%) = (1 + 1.3 \times \alpha) \times \text{계획(기준)용적률}(\%) \text{ 이내}$$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및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용지

※ 1주구 삼부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내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사업승인시 승인권자(영등포구청장)가 서울시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허용용적률을 결정하도록 별도지침으로 구분함

4) 세대밀도

구분	세대밀도(세대수/ha)	비고
고층아파트	150 ~ 400	주택용지 + 중심시설용지

5) 건축선계획

구분	지정목적	비고
건축한계선	인도확폭 및 보행통로 확보	· 학교와 아파트경계부 6m 지정 · 도로변 6m 지정
벽면한계선	보행통로 확보	3주구내 6m 지정

6)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7) 건축물 배치

- 한강 인접부 탑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간선도로변 탑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8)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조경면적 확보

- 단지 내 녹도(기부채납 대상이 아님)는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 내에서 공원 등과 연결되도록 직선형 또는 곡선형의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

9)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 관계법령에 따름

마. 중심시설계획

1) 주구중심시설

■ 기정

구 분	주구면적	주구중심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위치	면적(㎡)	비율(%)				
1주구	98,784.5	여의도동 30-3	1,445.0	1.5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50% 이하	5층 이하	각 단지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주구중심시설면적과 기정상가의 토지지분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주구중심 면적을 기정상가의 토지지분 면적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2주구	153,896.2	여의도동 42-1	1,484.0	1.0				
		여의도동 41-2	1,650.0	1.1				
		여의도동 41-1	1,663.0	1.1				
		소계	4,797.0	3.1				
3주구	162,444.4	여의도동 50	3,308.3	2.1				
		여의도동 50-1	2,314.0	1.4				
		소계	5,622.3	3.5				
4주구	135,609.3	여의도동 37	5,776.8	4.3				
합계	550,734.4	합계	17,641.1	3.2				

■ 변경

구 분	주구면적	주구중심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위치	면적(㎡)	비율(%)				
1주구	74,204.9	여의도동 30-3	1,445.0	1.9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50% 이하	5층 이하	각 단지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주구중심시설면적과

구 분	주구면적	주구중심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위치	면적(㎡)	비율(%)				
2주구	89,223.0	-	-	-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목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기정상가의 토지지분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주구중심 면적을 기정상가의 토지지분 면적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파트지구에서 일부 제척
3주구	145,953.0	여의도동 50	3,308.3	2.3				
4주구	94,091.0	여의도동 37	5,776.8	6.1				
합계	403,471.9	합계	10,530.1	2.6				

2) 분구중심시설

■ 기 정

구 분	주구면적	분구중심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위치	면적(㎡)	비율(%)				
1주구	98,784.5	-	-	-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50% 이하	5층 이하	각 단지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분구중심시설면적과 기정상가의 토지지분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분구중심 면적을 기정상가의 토지지분면적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2주구	153,896.2	여의도동 40	286.3	0.2				
3주구	162,444.4	-	-	-				
4주구	135,609.3	-	-	-				
합계	550,734.4	합계	286.3	0.1				

■ 변 경

구 분	주구면적	분구중심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위치	면적(㎡)	비율(%)				
1주구	74,204.9	-	-	-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50% 이하	5층 이하	각 단지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분구중심시설면적과 기정상가의 토지지분면적이

구 분	주구면적	분구중심			용도	건폐율	층수	비고
		위치	면적(㎡)	비율(%)				
2주구	89,223.0	여의도동 40	286.3	0.3	한합)			상이할 경우에는 분구중심 면적을 기정상가의 토지지분면적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3주구	145,953.0	-	-	-				
4주구	94,091.0	-	-	-				
합계	403,471.9	합계	286.3	0.1				

바.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존건축물은 관련법 규정 및 개발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처리

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존치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내 기존 주택용지, 중심시설용지 등의 개발은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항 각호 중 본 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향후 시행단위별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한다.

※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할 사항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구중심 등 기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별표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존치되는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를 개별 제척함. 다만, 별도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없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구역은 향후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 제척(폐지)하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이후 서울시에서 일괄 폐지.

나.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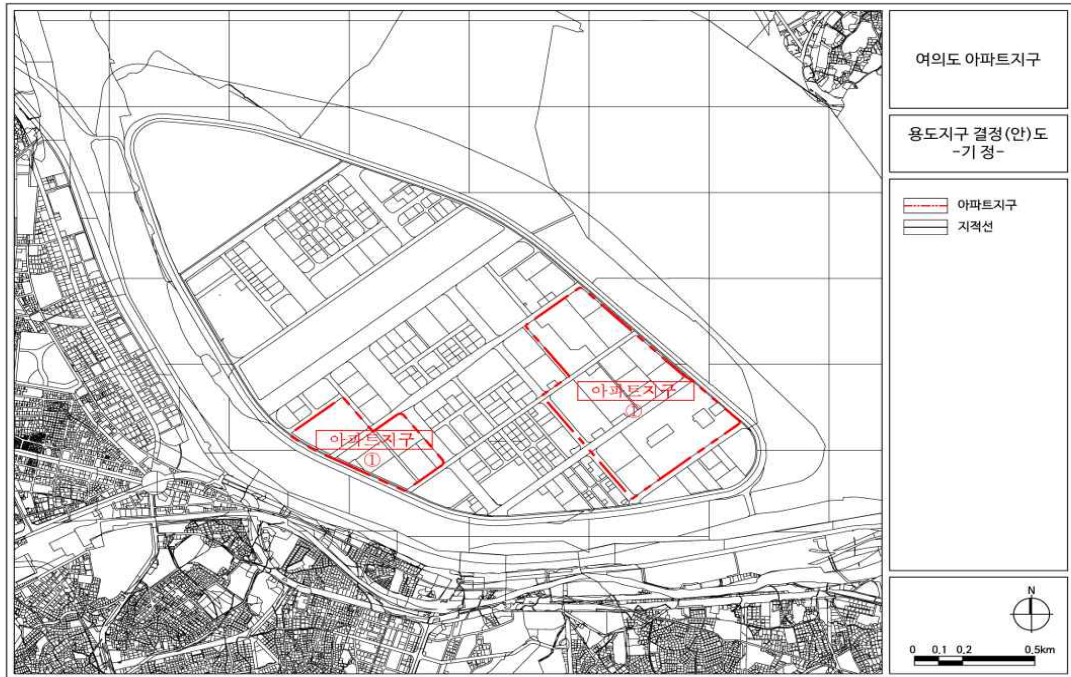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543) 및 도시계획과 (☎02-2670-353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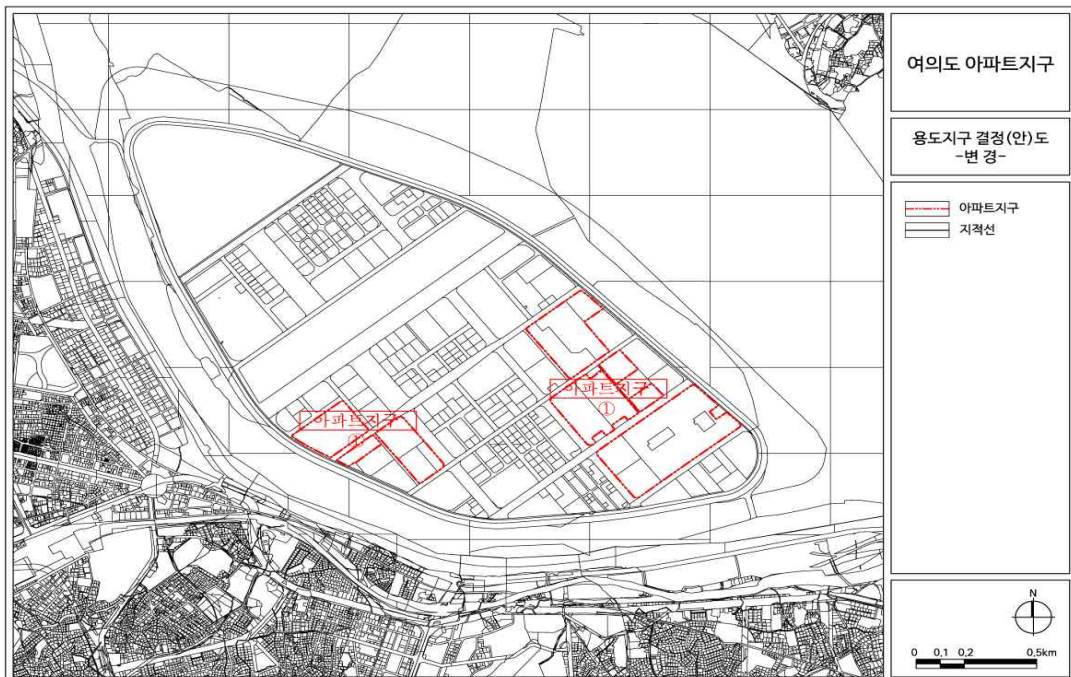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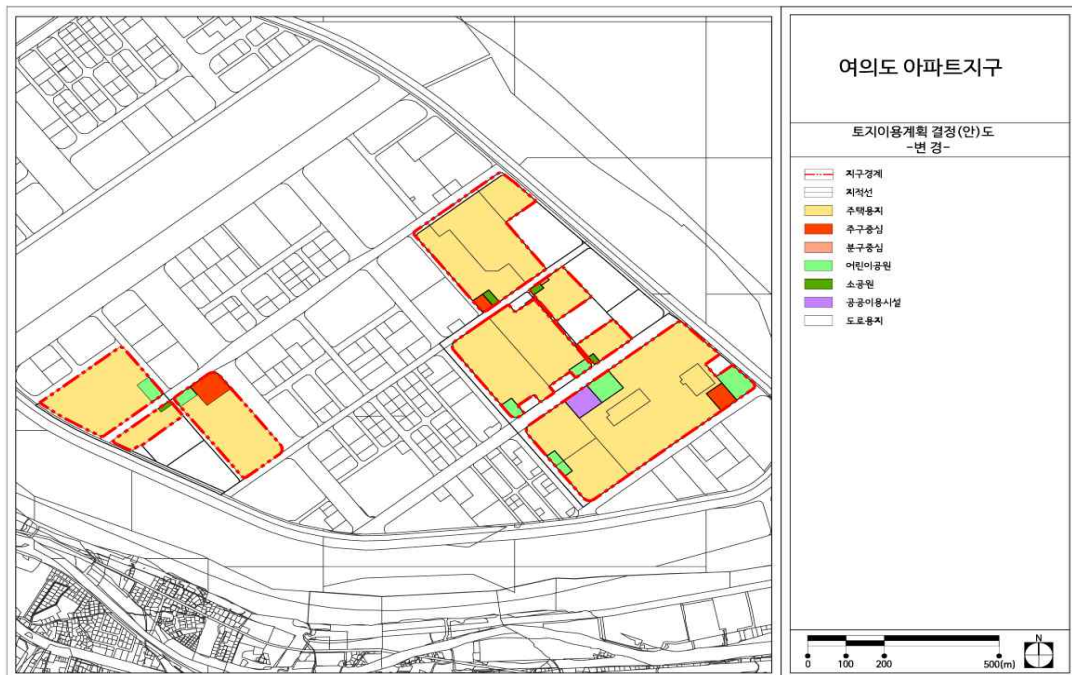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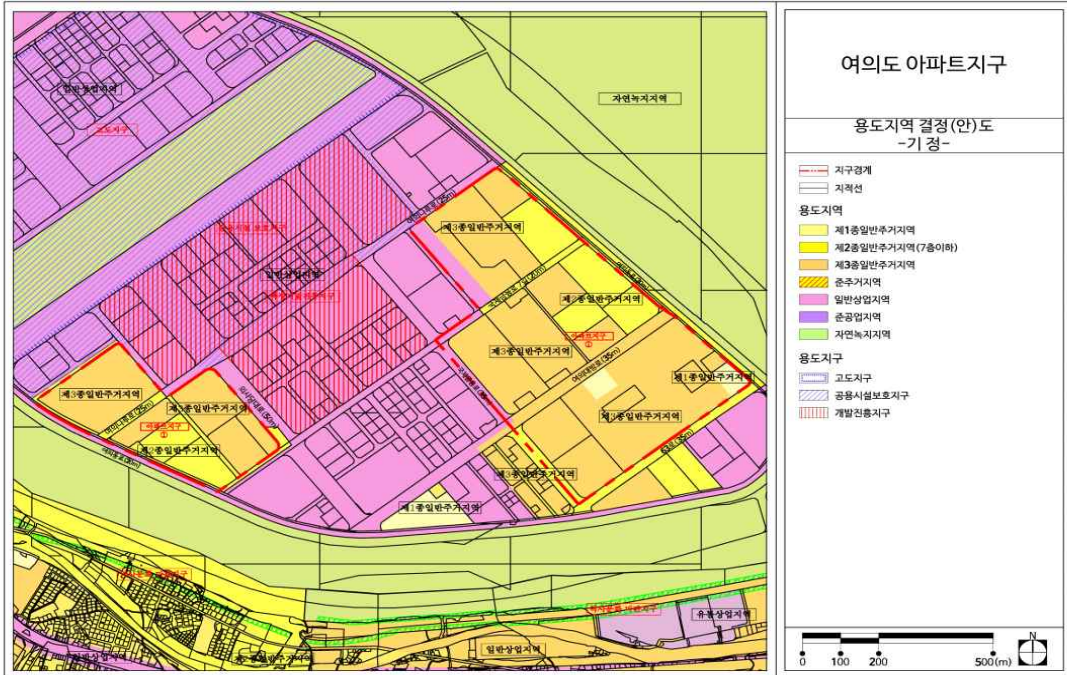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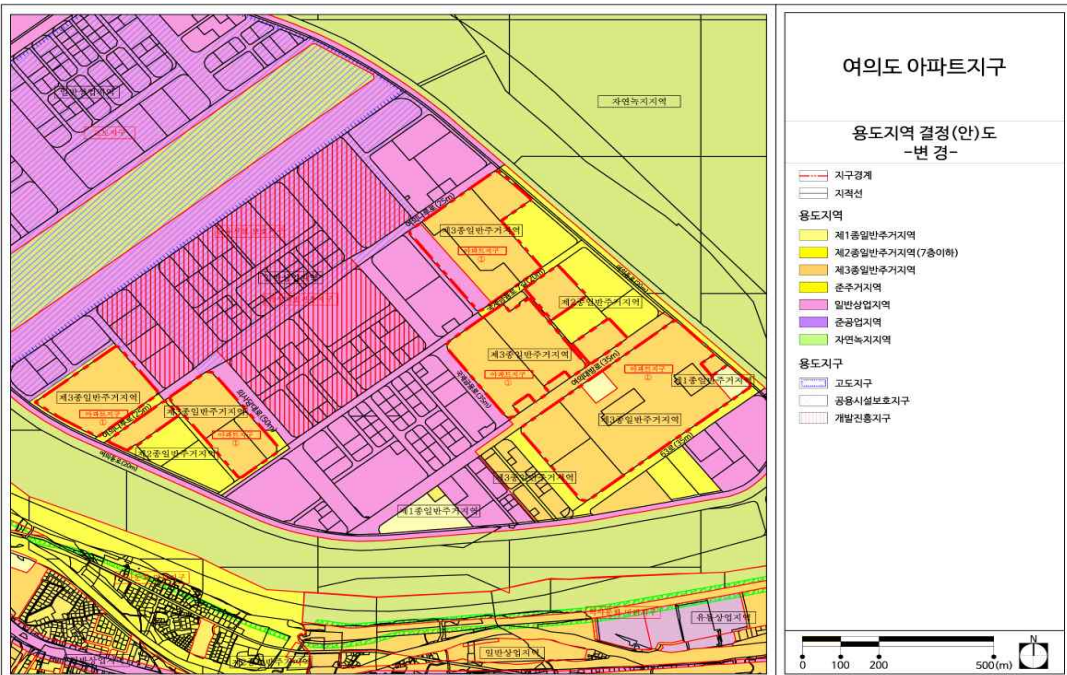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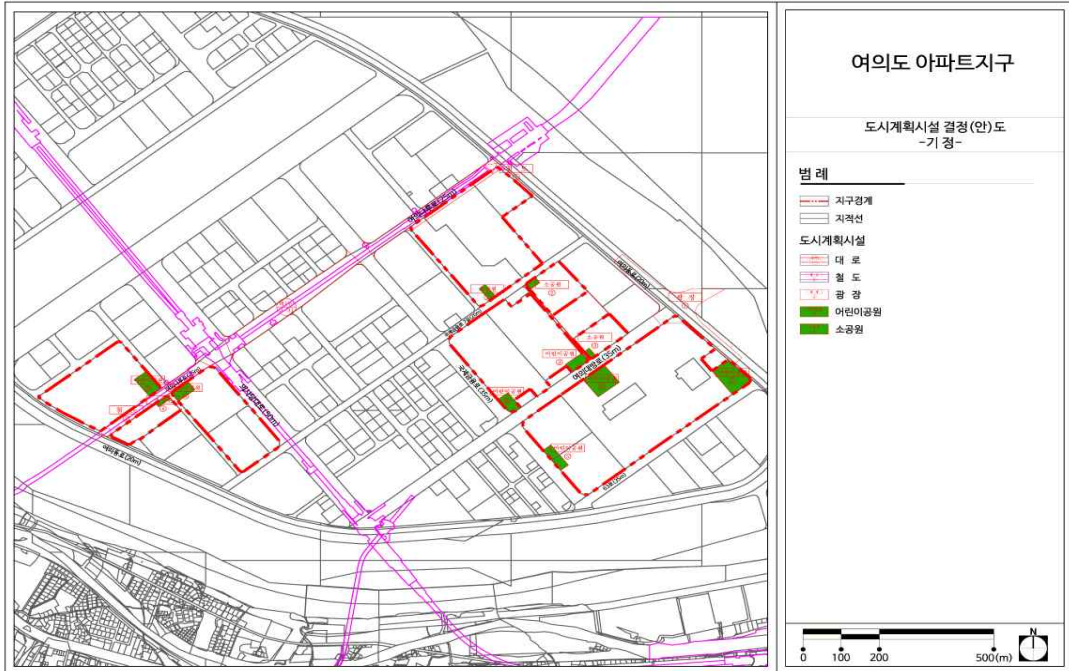


■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6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2.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	증) 599,795.1	599,795.1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 599,795.1	599,795.1	- 대규모 주거단지 재건축에 따른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사업” 등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여의도로 및 하천 포함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99,795.1	100.0	-
주거지역	소계	549,620.3	91.6	-
	제1종일반주거지역	9,955.1	1.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1,389.2	2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408,276.0	68.1	-
상업지역	소계	24,531.7	4.1	-
	일반상업지역	24,531.7	4.1	-
녹지지역	소계	25,643.1	4.3	-
	자연녹지지역	25,643.1	4.3	-

※ 용도지역 면적은 Auto CAD 상 면적으로 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여의도)	여의도동 일원	403,471.9	-	건고 제1976-131호 (1976.8.21.)	여의도지구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1,015 (2,270)	3	9,055 (1,770)	-	-	3	1,960 (500)
대로	2	2,367 (1,014)	1	987 (514)	-	-	1	1,380 (500)
중로	3	8,368 (1,256)	2	8,068 (1,256)	-	-	1	300
소로	1	280	-	-	-	-	1	280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도로 결정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기정	대로	1	30	35	주간선도로	987 (514)	여의동로	의사당대로	일반도로	-	-
2	기정	대로	3	31	25~45	주간선도로	1,380 (500)	여의도 남단	여의도 북단	일반도로	건고 제143호 (1970.3.26.)	-
3	기정	중로	1	131	20	보조간선도로	1,195 (336)	여의동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
4	기정	중로	1	132	20~30	보조간선도로	6,873 (920)	여의도남단	여의도북단	일반도로	-	-
5	기정	중로	3	-	12	집산도로	300	여의나루길	여의길	일반도로	서고 제21호 (2006.1.12.)	-
6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280	여의길	용호로	일반도로	서고 제21호 (2006.1.12.)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2) 철도 : 변경없음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 일대	강동구 강일동 579 일대	-	47,400	건고 제695호 (1990.10.19.)	범섬정차장 (여의나루역)
기정	②								5호선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교통광장	원효대교 남단	22,569 (12,569.2)	건고 제313호 (1978.10.20.)	-

※ () 안은 구역내 해당사항임

2)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0-2	5,385.0	-	5,385.0	건고 제147호 (1971.3.22.)	평화공원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0-3	4,595.0	-	4,595.0	건고 제147호 (1971.3.22.)	자유공원
기정	③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41 일대	1,585.0	-	1,585.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④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42 일대	1,745.0	-	1,745.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⑤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1,52 일대	1,860.0	-	1,860.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⑥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37 일대	1,760.0	-	1,760.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⑦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28 일대	2,155.0	-	2,155.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⑧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30-3 일대	940.0	-	940.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⑨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40 일대	680.0	-	680.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기정	⑩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40-4 일대	470.0	-	470.0	서고 제2006-21호 (2006.1.12.)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고등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여의도동 30-1	19,835.0	-	19,835.0	서고 제88호 (1976.4.22.)	-
기정	②	학교	중학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동 40-1	17,478.0	-	17,478.0	서고 제88호 (1976.4.22.)	-
기정	③	학교	고등학교	여의도 여자 고등학교	여의도동 40-2	10,413.0	-	10,413.0	서고 제460호 (1978.9.8.)	-
기정	④	학교	초등학교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동 40-3	11,570.0	-	11,570.0	서고 제88호 (1976.4.22.)	-
기정	⑤	학교	초등학교	윤중 초등학교	여의도동 38	11,978.0	-	11,978.0	서고 제88호 (1976.4.22.)	-
기정	⑥	학교	중학교	윤중 중학교	여의도동 38-2	13,596.0	-	13,596.0	서고 제88호 (1976.4.22.)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교통 사업소	여의도동 38-3	1,032.0	-	1,032.0	서고 제152호 (1978.4.11.)	강서도로 교통사업소

라.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하천 (한강,갯강)	국가하천	여의도동 85 일대	40,747,864 (25,643.1)	-	40,747,864 (25,643.1)	대통령령 제6583호 (1973.3.21.)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비고
가구		8m 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6개소
획지	획지	- 정비계획 등으로 기 결정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계획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 - 단일 건축물로서 대지가 다수의 필지로 된 경우	23개소
	공동개발(권장)	-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 목화아파트, 삼부아파트 - 장미아파트, 화랑아파트, 대교아파트, 대교상가	2개소

나.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A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94,039.9	-
B	영등포구 여의도동 40번지 일대	135,200.0	가구 내 도로 포함 (여의도동 4-1도 : 1,719㎡)
C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148,267.0	-
D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43,042.0	-
E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40,882.0	-
F	영등포구 여의도동 38번지 일대	36,773.0	-

다.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획지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신설	A	A1	여의도동	30대	11,570.0	11,570.0	목화아파트	공동개발 (권장)
		A2	여의도동	30-2대	35,507.9	62,634.9	삼부아파트	
				30-3대	27,127.0			
		A3	여의도동	30-1학	19,835.0	19,835.0	여의도고등학교	
신설	B	B1	여의도동	40대	13,250.0	13,250.0	장미아파트	공동개발 (권장)
		B2	여의도동	40-4대	9,395.0	9,395.0	화랑아파트	
		B3	여의도동	41대	31,699.0	31,699.0	대교아파트	
		B4	여의도동	41-1대	1,663.0	1,663.0	대교B상가	
		B5	여의도동	41-2대	1,650.0	1,650.0	대교A상가	
		B6	여의도동	42대	34,879.0	34,879.0	한양아파트	
		B7	여의도동	42-1대	1,484.0	1,484.0	한양상가	
		B8	여의도동	40-1학	17,478.0	17,478.0	여의도중학교	
		B9	여의도동	40-2학	10,413.0	10,413.0	여의도여자고등학교	
		B10	여의도동	40-3학	11,570.0	11,570.0	여의도초등학교	
신설	C	C1	여의도동	50대	98,843.0	108,823.0	시범아파트 평화공원, 자유공원 포함	
				50-2공	4,595.0			
				50-3공	5,385.0			
		C2	여의도동	51대	18,565.0	18,565.0	삼익아파트	
		C3	여의도동	52대	18,565.0	18,565.0	은하아파트	
		C4	여의도동	50-1대	2,314.0	2,314.0	여의도성당	
신설	D	D1	여의도동	28대	43,042.0	43,042.0	광장아파트(28번지)	
신설	E	E1	여의도동	37대	20,935.0	40,882.0	미성아파트	
				37-1대	6,011.0			
				37-2대	13,936.0			
신설	F	F1	여의도동	38-1대	10,167.0	10,167.0	광장아파트(38-1번지)	
		F2	여의도동	38-3대	1,032.0	1,032.0	강서도로교통사업소	
		F3	여의도동	38학	11,978.0	11,978.0	윤중초등학교	
		F4	여의도동	38-2학	13,596.0	13,596.0	윤중중학교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등 결정된 부분은 획지에서 제외

라. 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 공동개발 결정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 면적(㎡)	계획내용	비고
A	94,039.9	여의도동	30대	11,570.0	74,204.9	공동개발 (권장)	목화아파트 삼부아파트
			30-2대	35,507.9			
			30-3대	27,127.0			
B	135,200.0	여의도동	40대	13,250.0	59,376.0	공동개발 (권장)	장미아파트 화랑아파트 대교아파트 대교상가
			41대	31,699.0			
			41-1대	1,663.0			
			41-2대	1,650.0			
			40-4대	9,395.0			
			4-1도	1,719.0			

※ 공동개발 면적에 기부채납되는 도로 포함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가. 허용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층	비고
허용 용도	A	종교시설	-
	B	공공청사	-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나. 불허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층	비고
불허 용도	A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 적용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은 개별 고시 내용을 따름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확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적용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은 개별 고시 내용을 따름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다.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유형	구분(획지번호)	높이		비고
		기준	최고	
종교시설	C4	32m 이하	40m 이하	-
공공청사	F2	32m 이하	4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기준 주택단지는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최고높이 200m 이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학교시설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별도 지침 또는 기준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여의대방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 광역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적용 ※ 단,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5m,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 3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여의나루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적용 ※ 단,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3m,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 3m	
		국제금융로7길		
		63로		
		여의동로3길		
		공원 및 이면도로 연접부	대지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 ~ 3m	
		여의동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15m ※ 공공청사(F2)는 획지의 크기 및 형상과 도시계획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학교 연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국제금융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의사당대로		
	벽면한계선	여의대방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광역/ 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적용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		
		63로		
		여의동로3길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조성 (대지경계로부터 폭 3m 구간) - 건축한계선 6m 구간에 대하여 대지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전면공지는 보행공간·조경 공간(4m)으로 조성 - 조경공간 내에는 가로수, 벤치, 카페테라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가로정원으로 계획하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후퇴하여 설치 - 단, 판매를 위한 시설물 설치 불허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되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단지 내	- 폭 8m 내외 및 24시간 개방 - 수변과 보행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보행공간 조성 ※ 생활공유가로(권장) : - 폭 15m 내외 및 24시간 개방 - 생활공유가로 주변 부대복리시설 배치로 커뮤니티 가로 조성 - 도로,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되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기존 주택단지	•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변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의 경우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20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주변 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범위 결정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 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특별계획구역 1 ~ 9
	부대 및 복리시설	기존 주택단지	•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특별계획구역 1 ~ 9
	배치구간	생활공유 가로변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조성여치는 결정도를 따름
		가로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배치 유도 • 저층부(2층 이하)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입체보행 연결구간	• 입체보행연결구간은 도로 위·아래 구조물로 된 통로로서 입체보행연결구간이 지정된 위치는 24시간 상시 일반인의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폭 8m 이상의 보행통로를 조성 • 수변문화공간의 공공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건축물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한강과의 입체적 연결을 고려하여 조성	
기타 외관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 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 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1	1-1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	증) 11,570.0	11,570.0	목화아파트
		1-2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번지 일대	-	증) 62,634.9	62,634.9	삼부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 2	2-1	영등포구 여의도동 40번지 일대	-	증) 13,250.0	13,250.0	장미아파트
		2-2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번지 일대	-	증) 9,395.0	9,395.0	화랑아파트
		2-3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	증) 36,731.0	36,731.0	대교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	증) 36,363.0	36,363.0	한양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	증) 108,823.0	108,823.0	시범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 5		영등포구 여의도동 51번지 일대	-	증) 18,565.0	18,565.0	삼익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 6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일대	-	증) 18,565.0	18,565.0	은하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 7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	증) 43,042.0	43,042.0	광장아파트 28번지
신설	특별계획구역 8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번지	-	증) 10,167.0	10,167.0	광장아파트 38-1번지
신설	특별계획구역 9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	증) 40,882.0	40,882.0	미성아파트

※ 특별계획구역 2는 공동개발 이행 시 여의도동 4-1도(1,719㎡)를 포함하여 개발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74,204.9	• 공공시설용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특별계획구역 2	59,376.0	• 공공시설용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특별계획구역 3	36,363.0	•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 연접부로 상업 업무 지원기능의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4	108,823.0	• 공공시설용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특별계획구역 5	18,565.0	•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된 상업 업무 지원기능의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6	18,565.0	•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된 상업 업무 지원기능의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7	43,042.0	•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 연접부로 상업 업무 지원기능의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8	10,167.0	• 금융중심 특별개발진흥지구 연접부로 도심주거 유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특별계획구역 9	40,882.0	• 여의도역 역세권으로 도심 기능강화 및 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공동개발 이행 시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 : 특별계획구역 1-1, 1-2 공동개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 삼부 아파트
구역면적	• 74,204.9㎡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A1 : 공공시설용지 / 획지 A2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내 시설 등 조성(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기존 주구중심(1,445㎡))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4,621㎡ 확보) : 여의나루로변 약 3m 확보(833.3㎡), 여의나루로6길변 약 11m 확보(3,193.4㎡), 국제금융로7길변 약 3m 확보(594.3㎡) -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 현재 목화 아파트 부지 상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등 확보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용지 내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전시, 회의공간, 문화공간 등 조성 -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수변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시설 등 설치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 문화(체육)시설, 한강 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A 1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복지시설(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시설용지				
		획지A 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복합개발용지				
	권장 용도	획지A 2	<table><thead><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head><tbody><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body></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 용도	획지A 1,A2	허용용도 이외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존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42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 : 5m - 학교, 공공시설용지 연결부 : 6m - 여의나루로 6길 연결부 : 3m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 등 주변지역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8m 내외)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중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단지와외의 소통 및단시간 보행 트워크연계를 위한 15m내외의 보차혼용 통로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 입체보행시설 - 공공시설용지를 통해 한강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체 보행시설 설치 등 접근성 향상 방향 제시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그 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지정위치는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 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축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축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2 : 특별계획구역 2-1, 2-2, 2-3 공동개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40번지 일대	장미, 화랑, 대교 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 59,376.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B1, 획지 B3 : 복합용지 / 획지 B2 : 공공시설용지 • 획지 B4, 획지 B5 : 중심시설용지(인근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15% 이상 -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내 시설 등 조성(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기존 주구중심 (1,663㎡ / 1,650㎡) / 기존 분구중심 286.3㎡)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3,474.2㎡확보) : 국제금융로7길변 약 3m확보 (장미아파트 : 339.2㎡ / 대교아파트 : 229㎡), 대교~한양아파트 사이 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대교아파트 내 약 10.5m 확보 : 2,906㎡)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동개발 이행 시 국제금융로7가길은 구역에 포함하고,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용지 내 별도 진출입로 조성 -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 현재 화랑 아파트 부지 상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등 확보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락육성 용도 (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락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B1,B3, B4,B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획지B2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복지시설(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권장 용도	전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저층부(1~2층)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 용도	획지 B1~5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280% 이하 - 상한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대방로 연결부 : 10m - 국제금융로7길 연결부 : 5m - 학교 연결부 : 6m - 이면도로 연결부 : 3m - 단, 광역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은 5m,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대방로, 국제금융로7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확보를 위해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외관요소		- 가 후퇴 - 광역통경축확보를 위해 여의대방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 · 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2) 개별 개발 시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1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목화아파트	
구역면적		• 11,57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A1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한강변 및 샹강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구역 경계 확대를 통한 수변공간 조성방안 등 검토 가능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235.4㎡ 확보) : 여의나루로변 약 3m 확보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수변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시설 등 설치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 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입체보행시설을 주변 횡단보도, 주변 지형의 고저차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A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권장 용도	획지 A1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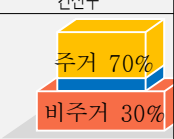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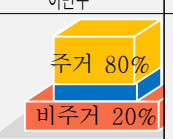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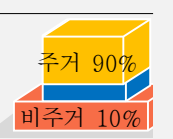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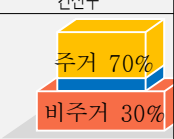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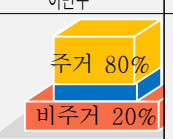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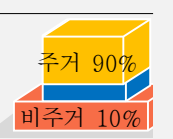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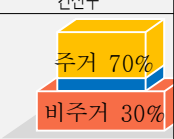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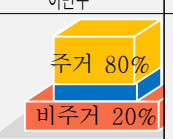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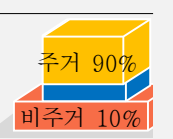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 용도	획지 A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동로연접부(한강변) : 15m - 여의나루로 : 5m - 학교 연접부 : 6m - 공원 연접부 : 3m ※ 단, 지구통계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나루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 등 주변지역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형조정은 가능 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이내 에서 변경 가능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 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시간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 입체보행시설 - 입체보행연결구간이 지정된 위치에 공공시설 계획과 연계를 통해 한강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시설(폭8m 내외) 설치 등 접근성 향상 방향 제시 ※ 입체보행시설을 주변 횡단보도, 주변 지형의 고저차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검토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지하철출입구 - 도시철도 여의나루역(5호선)과 연계를 고려하여 침상형공지 또는 실내공개공간등의 형태로 대지내에 지하철 출입구 조성 권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20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단, 대지의 폭 등을 고려 2열 배치가 어려워 건축배치에 한계가 있다고 해당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5층 이상 배치 가능)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확보를 위해 여의나루로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한강변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여의동로 15m 건축선을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급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1-2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3번지	삼부아파트
구역면적	62,634.9㎡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A2 : 복합용지 - 획지 A1과 공동개발(권장)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기존 주구중심(1,445㎡))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4,385.6㎡확보) : 여의나루로변 약 3m 확보(598㎡), 여의나루로6길변 약 11m 확보(3,193.4㎡), 국제금융로7길변 약 3m 확보(594.3㎡) -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조성(9,564.7㎡,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 검토 ※ 공원 등 기반시설 : 위치 및 조성지침준수,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공동개발 등 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와 획지 A1과 토지교환 고려 (다만, 개발시기가 맞지 않아 토지교환이 어려울 경우 위치 및 규모 등 조정 가능)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외국인학교,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수변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시설 등 설치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락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역을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락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A 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권장 용도	획지A 2	<table><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발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발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발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 용도	획지A 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중심시설용지 개별 재건축 시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단, 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 <table><tr><th>구 분</th><th>유형1</th><th>유형2</th><th>유형3</th></tr><tr><td>입지 기준</td><td>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td><td>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td><td>유형1,2외의 지역</td></tr><tr><td></td><td></td><td></td><td></td></tr><tr><td>비주거 비율</td><td>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r><tr><td>공공 기여</td><td colspan="3">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 미만 5%, 5,000㎡ 이상~10,000㎡ 미만 5%~10%미만, 10,000㎡ 이상 10% • (예시)대지면적 3천㎡, 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td></tr></table>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외의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 미만 5%, 5,000㎡ 이상~10,000㎡ 미만 5%~10%미만, 10,000㎡ 이상 10% • (예시)대지면적 3천㎡, 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외의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 미만 5%, 5,000㎡ 이상~10,000㎡ 미만 5%~10%미만, 10,000㎡ 이상 10% • (예시)대지면적 3천㎡, 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합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률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존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42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 : 5m - 학교 연결부 : 6m - 여의나루로 6길, 공원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 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폭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기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 입체보행시설 - 공공시설용지를 통해 한강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시설 설치 등 접근성 향상 방향 제시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외관요소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기존 중심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택용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상향검토 가능	-

■ 특별계획구역 2-1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40번지	장미 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 13,250.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B1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15% 이상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별도 이행(기존 분구중심 286.3㎡)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339.2㎡확보) : 국제금융로7길변 약 3m 확보 - 공원 : 각각부 소공원 조성(660.6㎡)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확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외국인학교,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B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권장 용도	획지 B1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불허 용도	획지 B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280% 이하 - 상한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7길 : 5m - 학교 연결부 : 6m - 이면도로, 공원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국제금융로7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접한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 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2-2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번지	화랑 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9,395.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사업방식 등 추진여건에 따라 용도지역 유지 가능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계획			• 획지 B2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15% 이상 • 토지 기부채납 시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외국인학교,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 (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B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권장 용도	획지 B2	<table><thead><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head><tbody><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body></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 용도	획지 B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대방로 연결부 : 10m - 학교 연결부 : 6m - 이면도로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대방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광역통경축 확보를 위해 여의대방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 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케시틀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비상 주차 급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개발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해당 법 및 지침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2-3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대교 아파트, 대교상가
특별계획구역면적	36,731.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B3 : 복합용지 - B4, B5 : 기존 중심시설용지(인근 단지외 통합 재건축) ※ B4, B5는 관련법 상 허용할 경우 공동주택과 공동개발 가능 ※ B3, B4, B5는 별도의 획지로 개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분할가능선 계획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15% 이상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기존 주구중심 (1,663㎡ / 1,650㎡))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3,861.4㎡ 확보) : 국제금융로7길변 약 3m확보(229㎡), 대교~한양아파트 사이 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대교아파트 내 약 10.5m 확보 : 2,906㎡), 국제금융로7가길변 약 3m 확보(726.4㎡) - 공원(1,928.0㎡)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 검토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외국인학교,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침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 (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 분할가능선으로 개별 재건축 시 기반시설의 위치 준수하여 계획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B3,B4, B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권장 용도	획지 B3,B4, B5	<table><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 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 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 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층·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B3,B4, B5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중심시설용지 개별 재건축 시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단, 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 <table><tr><th>구 분</th><th>유형1</th><th>유형2</th><th>유형3</th></tr><tr><td>입지 기준</td><td>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td><td>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td><td>유형1,2이외 지역</td></tr><tr><td></td><td></td><td></td><td></td></tr><tr><td>비주거 비율</td><td>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r><tr><td>공공 기여</td><td colspan="3">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td></tr></table>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대지면적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률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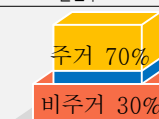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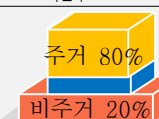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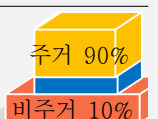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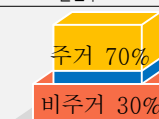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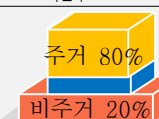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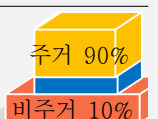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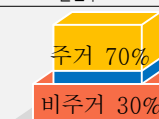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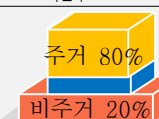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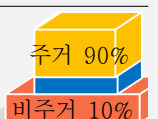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거용도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280% 이하 • 상한용적률 : 400% 이하 ※ 분할가능선으로 개별 재건축 시 B4, B5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기준 적용 / 종상향 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름	
밀도 계획	높이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지침도에 따름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 분할가능선으로 개별 재건축 시 B4, B5는 기준높이 32m 이하, 최고높이 40m 이하 단, 공동주택 통합개발 시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7길 연결부 : 5m - 여의대방로 연결부 : 10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결부 : 3m ※ 단, 광역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은 5m,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대방로, 국제금융로7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시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광역통경축 확보를 위해 여의대방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 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B4, B5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중심시설용지를 별도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침 마련 • 기존 중심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택용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상향검토 가능	

■ 특별계획구역 3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한양아파트, 한양상가
특별계획구역면적	• 36,363.0㎡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B6 : 복합용지 • 획지 B7 : 기존 중심시설용지(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 ※ B6, B7은 신속통합기획 수립 완료 ※ B6, B7은 별도의 획지로 개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분할가능선 계획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기존 주구중심 (1,484㎡))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3,261.3㎡ 확보) : 국제금융로7길 약 3m확보(283.6㎡), 대교~한양아파트 사이 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한양아파트 내 약 9.5m 확보 : 2,668㎡), 여의대방로변약 3m 확보(309.7㎡) - 공공공지 : 여의대방로와 국제금융로 각각부 공공공지 조성(1,900.1㎡) - 생활공유가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펜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락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락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 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기준면적 이상 확보 ※ 분할가능선으로 개별 재건축 시 기반시설의 위치 준수하여 계획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B6, B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권장 용도	획지 B6, B7	<table><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용 도	획지 B6, B7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중심시설용지 개별 재건축 시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단, 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 <table><tr><th>구 분</th><th>유형1</th><th>유형2</th><th>유형3</th></tr><tr><td>임지 기준</td><td>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td><td>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td><td>유형1,2이외 지역</td></tr><tr><td></td><td></td><td></td><td></td></tr><tr><td>비주거 비율</td><td>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r><tr><td>공공 기여</td><td colspan="3">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td></tr></table>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을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임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임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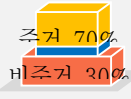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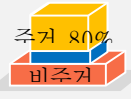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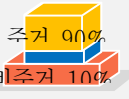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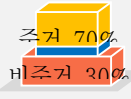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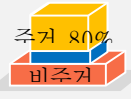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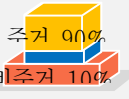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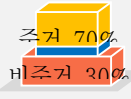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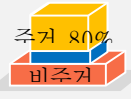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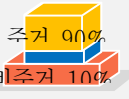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분할가능선으로 개별 재건축 시 B7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기준 적용 / 종상향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름	
높이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 분할가능선으로 개별 재건축 시 B7은 기준높이 32m 이하, 최고높이 40m 이하 단, 공동주택 통합개발 시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지침도에 따름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확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 연결부 : 6m - 국제금융로7길 연결부 : 5m - 여의대방로 연결부 : 10m - 이면도로 및 공공공지 연결부 : 3m ※ 단, 광역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은 5m,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지구통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대방로, 국제금융로7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 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광역통경축 확보를 위해 여의대방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국제금융로변으로 6m 건축선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처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 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 · 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정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B7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중심시설용지를 별도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침 마련 - 기존 중심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택용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상향검토 가능	

■ 특별계획구역 4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시범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108,823.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획지 C1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15% 이상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기존 주구중심(3,308㎡)) ※ 한강변 및 셋강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구역 경계 확대를 통한 수변공간 조성방안 등 검토 가능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2,586.4㎡ 확보) : 지구차원의 교통체계 구축 및 단지 접근을 위해 삼익·은하 아파트 인접부3차선 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시범아파트 내 약 8.5m 확보 : 2,586.4㎡) - 대지내 공공시설과 한강공원 연계를 위한 특수도로(임체보행로) 1개소 신설 - 여의대방로는 자전거도를 포함하여 재조성 - 공원 : 한강변으로 문화공원 조성 및 기존 영등포구 소유 공원과 통합 (17,502.3㎡ / 기존 영등포구 소유 공원 : 9,980.0㎡) ※ 사유지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입지에 따른 미결정 시설 환원 및 현황 반영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용지 내 시설은 복합문화공연시설, 복합도서관, 다목적체육시설 시설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설 및 규모 결정 - 핀테크 자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63로변으로 한강사업본부 여의도 안내센터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수변으로 연결되는 임체보행시설 등 설치	지침도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 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C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권장 용도	획지 C1	<table><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 용도	획지 C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중심시설용지 개별 재건축 시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단, 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																		
		<table><tr><th>구 분</th><th>유형1</th><th>유형2</th><th>유형3</th></tr><tr><td>입지 기준</td><td>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td><td>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td><td>유형1,2이외 지역</td></tr><tr><td></td><td></td><td></td></tr><tr><td>비주거 비율</td><td>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r><tr><td>공공 기여</td><td colspan="3">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 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 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td></tr></table>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 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 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 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 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을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280% 이하 • 상한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대방로, 여의동로연접부 : 10m - 63로 연접부 : 5m - 천주교 여의도성당 연접부 : 6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접부 : 3m ※ 단, 광역동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은 5m,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지구동경축변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 벽면한계선 - 여의대방로, 63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 하여 시중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 입체 보행시설 - 공공시설용지를 통해 한강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체 보행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공시설용지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63로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광역통경축확보를 위해 여의대방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경관의 창출과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기존 중심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택용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상향검토 가능	

■ 특별계획구역 5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1번지	삼익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 18,565.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C2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1,963.8㎡ 확보) : 여의대방로변 약 3m확보(338.2㎡), 시범아파트 인접부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삼익아파트내 약 11.5m 확보 : 1,625.6㎡) - 공원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원 조성(1,400㎡)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확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역을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 (시설)의 경우 상한용역을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기결정된 도로 우선 설치 (지침도 참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용도 계획	허용용 도	획지 C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권장 용도	획지 C2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재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용 도	획지 C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연접부 : 6m - 여의대방로연접부 : 10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접부 : 3m ※ 단, 광역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후퇴 • 벽면한계선 - 여의대방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광역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광역통경축확보를 위해 여의대방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국제금융로변으로 6m 건축선 후퇴 - 주거지로서의 충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 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6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은하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18,565.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획지 C3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1,624.5㎡ 확보) : 시범아파트 인접부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은하아파트 내 약 11.5m 확보 : 1,624.5㎡) - 공원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원 조성(1,400㎡)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확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락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기결정된 도로 우선 설치 (지침도 참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 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용도 계획	허용용 도	획지 C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권장 용도	획지 C3	전층	저층부(1~2층)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용 도	획지 C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 연결부 : 6m - 63로 연결부 : 5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후퇴 • 벽면한계선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63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 하여 시중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에 따름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63로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국제금융로변으로 6m 건축선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 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정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7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광장아파트 (28번지)
특별계획구역면적	• 43,042.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D1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한강변 및 샛강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구역 경계 확대를 통한 수변공간 조성방안 등 검토 가능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797.7㎡ 확보) : 여의도로1길변 약 3m 확보 - 공원 : 여의나루로 변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조성(4,562.2㎡)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 검토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결정된 도로 우선 설치 (지침도 참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여의대로2길변으로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 (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 (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용도 계획	허용용도	획지 D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권장용도	A	<table><thead><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head><tbody><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 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body></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 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 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확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도로 : 10m - 이면도로 및 공원연접부 : 3m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셋강변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여의동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비상 주차 가급적 지양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 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8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번지	광장아파트 (38-1번지)
특별계획구역면적	• 10,167.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F1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한강변 및 샛강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구역 경계 확대를 통한 수변공간 조성방안 등 검토 가능 • 토지 기부채납 시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락육성 용도 (시설)의	기결정된 도로 우선 설치 (지침도 참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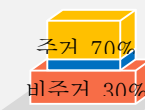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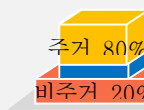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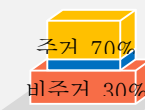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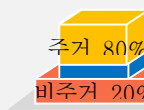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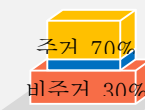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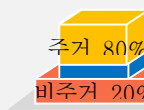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 (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F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권장 용도	획지 F1	전층	저층부(1~2층)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1~2층) 권장용도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 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 허용도	획지 F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준용)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여의나루로 연결부 : 5m - 학교 연결부 : 6m - 여의동로 연결부 : 10m - 이면도로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후퇴 • 벽면한계선 - 여의나루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 된 보행공간 조성 • 공개공지 -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기능연계 및 보행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확보를 위해 여의나루로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셋방변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여의동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 계획 수립 시 반영	-

■ 특별계획구역 9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미성아파트
특별계획구역면적	• 40,882.0㎡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 획지 E1 :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기존 중심시설용지 : 주거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기존 주구중심(5,776.8㎡)) • 토지 기부채납 시 - 도로(362.9㎡) : 여의동로3길변 약 3m 확보 - 공원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2,044.1㎡)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 기부채납 시 - 의사당대로변으로 핀테크 자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지침도 참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락육성 용도 (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락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면적 이상 확보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E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권장 용도	획지 E1	<table><tr><th>전층</th><th>저층부(1~2층)</th></tr><tr><td>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td><t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td></tr></table>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1~2층)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불허용 도	획지 E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중심시설용지 개별 재건축 시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단, 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table><tr><th colspan="4">[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th></tr><tr><th>구 분</th><th>유형1</th><th>유형2</th><th>유형3</th></tr><tr><td>입지 기준</td><td>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td><td>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td><td>유형1,2이외 지역</td></tr><tr><td></td><td></td><td></td><td></td></tr><tr><td>비주거 비율</td><td>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d>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td></tr><tr><td>공공 기여</td><td colspan="3">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td></tr></table>	[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별표1] 공동주택용도 허용에 따른 운영기준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 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이외 지역																									
																												
비주거 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10%이상)																									
공공 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대지면적 3천㎡,주거비율 70% 허용시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을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의사당대로 연결부 : 6m - 여의나루로 연결부 : 5m - 여의동로 3길 연결부 : 5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후퇴 • 벽면한계선 - 여의나루로변, 여의동로 3길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지하철출입구 - 도심철도 여의도역(5호선)과 연계를 고려하여 침상형공지또는 실내 공개공간 등의 형태로 대지내에 지하철 출입구 조성 권장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확보를 위해 여의나루로 변으로 5m건축선을 후퇴하고,여의나루로 변으로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 라인 및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각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비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기존 중심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택용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상향검토 가능	-

가) 다. 인센티브계획 결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일반지역 기준용적률(210%)보다 20% 더 높은 기준용적률(230%)을 적용하는 대신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행위 의무화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계획 등 반영 검토/필수 이행항목(의무이행) 중 이행하지 않은 항목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에 적용 가능

■ 필수 이행항목(의무이행)

구분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량		비고
			일반상업	준주거	
의무이행	우수디자인	우수디자인	15%p	15%p	-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p	10%p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중복적용불가
	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6%p	6%p	ZEB인증시 불인정 법정의무화 시 기준의무 등급초과 달성시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보존과 중복적용불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	3%p	3%p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p	3%p	최대 20%p (이행하지 않은 항목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에 적용가능)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20%초과	3%p	3%p	
		20%이하 ~ 15%초과	2%p	2%p	
		15%이하 ~ 10%초과	1%p	1%p	ZEB인증시 불인정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15%p	15%p	
		2등급	12%p	12%p	-
		3등급	9%p	9%p	
		4등급	6%p	6%p	-
	역사문화 보전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옛길 / 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p	5%p	
	공공보행 통로	주변 가로망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 (지역권*설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15%p 이내	15%p 이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공동주택건립형 인센티브항목 (2023.3.개정) 추가 적용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5%p	

구분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량		비고	
			일반상업	준주거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 a ※a=1이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5%p 이내		
의무 이행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제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돌봄시설의 의무시설 면적 적용 제외	5%p	5%p	최대 20%p (이행하지 않은 항목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에 적용가능)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공동주택건립형 인센티브항목 (2023.3.개정) 추가 적용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 문을 통해 적용	5%p	5%p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복리시설 제외	10%p 이내 (합산)	10%p 이내 (합산)		

(이 하 여 백)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량		비고
				일반사업	준주거	
계획 유도	친환경 요소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4	12%p	12%p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 법정 의무화 시 기준의무 등급 초과 달성시
			zeb 5	11%p	11%p	
			25% 이상	5%p	5%p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20% 이상	4%p	4%p	
			15% 이상	3%p	3%p	
			한강, 샛강 수변 연결성강화	한강 연결통로 조성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p	5%p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관련규정 충족시	10%p	10%p	장수명주택과 중복적용 불가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인무량의 20% 초과설치 및 개방	6%p	4%p	-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인무량의 15% 초과설치 및 개방	5%p	3%p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인무량의5% 초과설치 및 개방	3%p	2%p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기준용적률× (추가 조성면적/대지면적)×0.5 - 개방형녹지20% 이상 초과 설치 시 (민간대지내 20%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단, 주변 공원녹지체계 등을 고려한 특화된 생태도심녹지계획에대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산식에 따름 최대10%p	산식에 따름 최대10%p	-
		생태면적률	기준용적률× 생태면적률인정면적/대지면적)×0.2 -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산식에 따름 최대10%p	산식에 따름 최대10%p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기준 (녹색건축물 인증 및 자연지반보존과 중복 적용불가)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산식에 따름 최대10%p	산식에 따름 최대10%p	최소 5% 이상 자연지반보존시 (녹색건축물 인증 및 생태면적률과 중복 적용불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0.04 - 빗물 저류탱크 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의무설치용량 초과 적용	9.2%p	9.2%p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는 제외
	공동개발	공공개발 관장 이행	70%p	30%p (3개소)	삼부-목화 및 회랑-장미-대교만 해당	
				15%p (2개소)		
	무장애 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우수등급 인증시	최우수	8%p	5%p	예> 우수등급(4%) 확보에 지능형건축물4등급(6%)의 2/3 수준 비용 소요
우수			6%p	4%p		
단지내 소통 공간 조성	비주거시설 생활공유가로배치(주 민공동시설 제외)	지상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 비주거시설 총량의 1/2 이상 생활공유가로 배치(도로와 생활공유가로가 접하는 모서리에 배치한 경우도 인정)	10%p	5%p	의무이행 열린단지 항목과 중복 불가	

구분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량		비고	
				일반상업	준주거		
계획 유도	공공 공간 확보	공개공지 법적의무면적 초과조성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산식에 따름 최대 20%p	산식에 따름 최대 10%p	필로티구조: α = 0.5 개방형구조 : α = 1.0 의무이행 공개공지 항목과 중복 불가	
		전면공지 추가 조성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5 -대지경계선에서 3m(비주거동 배치면 6m) 이상 초과 후퇴한 전면공지만 인정 ※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식에 따름 최대 10%p	산식에 따름 최대 5%p	-	
		지하연결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조성	기준용적률 × 0.05	11.5%p	11.5%p	-	
	시설 공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외부 개방	노유자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0% 개방	8%p	5%p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주민공동시설의무설치면적 의 20~40% 이상 추가조성 및 외부 개방시 특별건축구역은 특별건축구역 기준 적용 의무이행 돌봄시설 항목과 중복 불가/ 향후 외부 개방시설 건축물대장 명기	
			노유자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0% 개방	10%p	7%p		
			노유자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0% 개방	15%p	10%p		
	주택 안정	세대구분형 (분리형)주택	전용면적 85㎡이상인 세대수30%이상 도입	9%p	6%p	10, 20, 30%의 중간 비율 조성 시 인센티브량은 직선보간 산정	
			전용면적 85㎡이상인 세대수20%이상 도입	6%p	4%p		
			전용면적 85㎡이상인 세대수10%이상 도입	3%p	2%p		
		민간 임대 주택	10년이상민간임 대주택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세대수의 20%이상 확보	25%p	15%p	10, 15, 20%의 중간 비율 조성 시 인센티브량은 직선보간 산정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세대수의 15%이상 확보	15%p	10%p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세대수의 10%이상 확보	7%p	5%p	
			20년이상민간임 대주택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30%p	20%p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세대수의 15% 이상 확보	25%p	15%p	
	도심 지원	업무공간 확보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제외), 사무소(제2종 근생) 등 설치 시 (업무공간지원,회의실·세미나·라운지 등 공간) -기준용적률× (지상 조성면적/지상층비주거면적)×0.3 ※업무전용빌딩과 동일용도 인센티브중복 적용 불가 ※공공기여시설 중복 적용 불가	산식에 따름 최대 10%p	-	비주거시설 지상층 면적의 14.5%를 업무공간 조성 시 인센티브율 10%	
업무전용빌딩 조성		업무전용용도(업무시설,사무소(제2종 근생)/ 주거형오피스텔 제외)동(棟)의 50% 이상 집적 설치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50% 이상 확보시) -기준용적률 × (업무빌딩 업무시설 연면적/전체 연면적) × 0.5 ※업무공간 확보와 동일용도 인센티브 중복적용 불가 ※공공기여시설 중복 적용 불가	산식에 따름 최대 10%p	-	전체 연면적의 8.7% 업무전용빌딩 조성 시 인센티브율 10%		

Ⅳ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진출입구 주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해제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택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 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 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공동주택	- 학교 ·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생활공유가로는 도시계획도로, 보차혼용도로,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의 입안) 제4항 제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조정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계계획(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에 한함)의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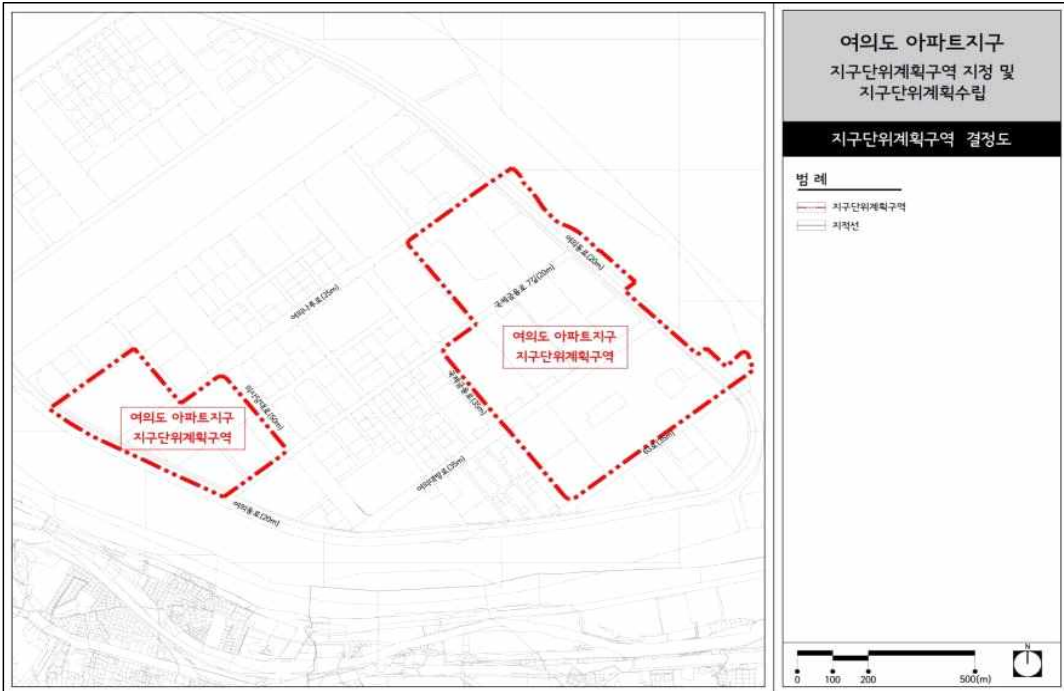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33) 및 주거사업과(☎02-2670-354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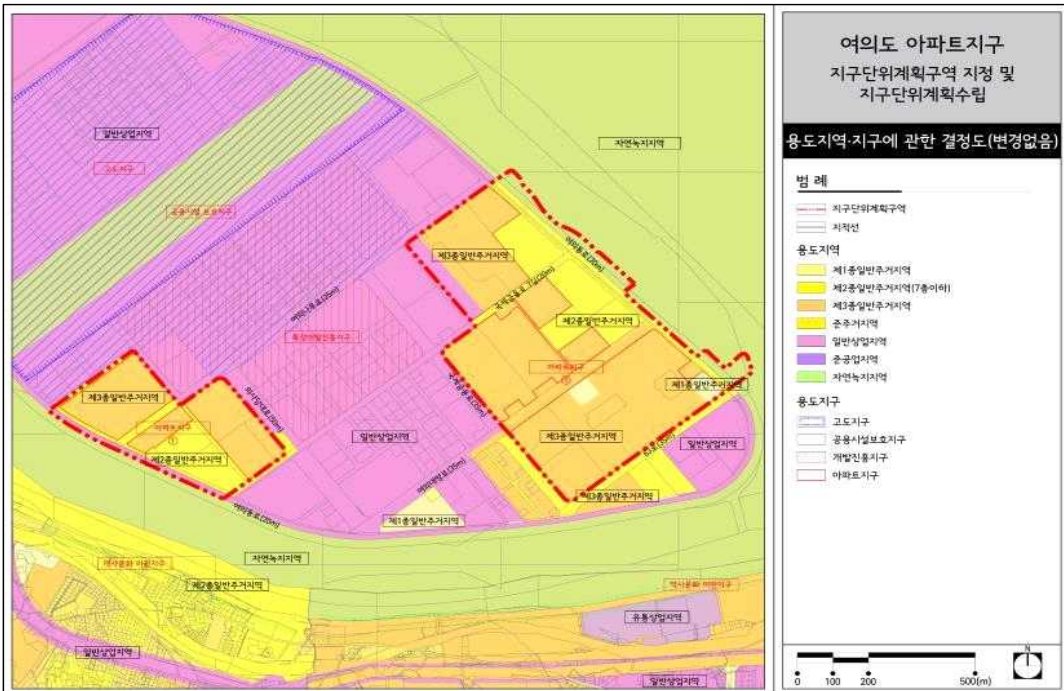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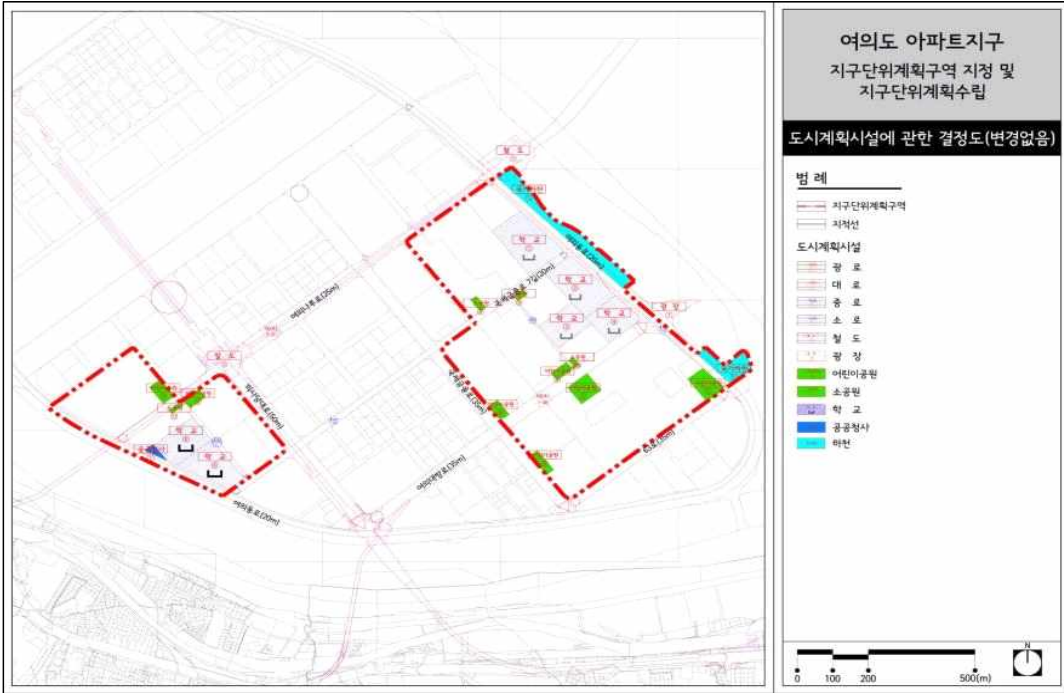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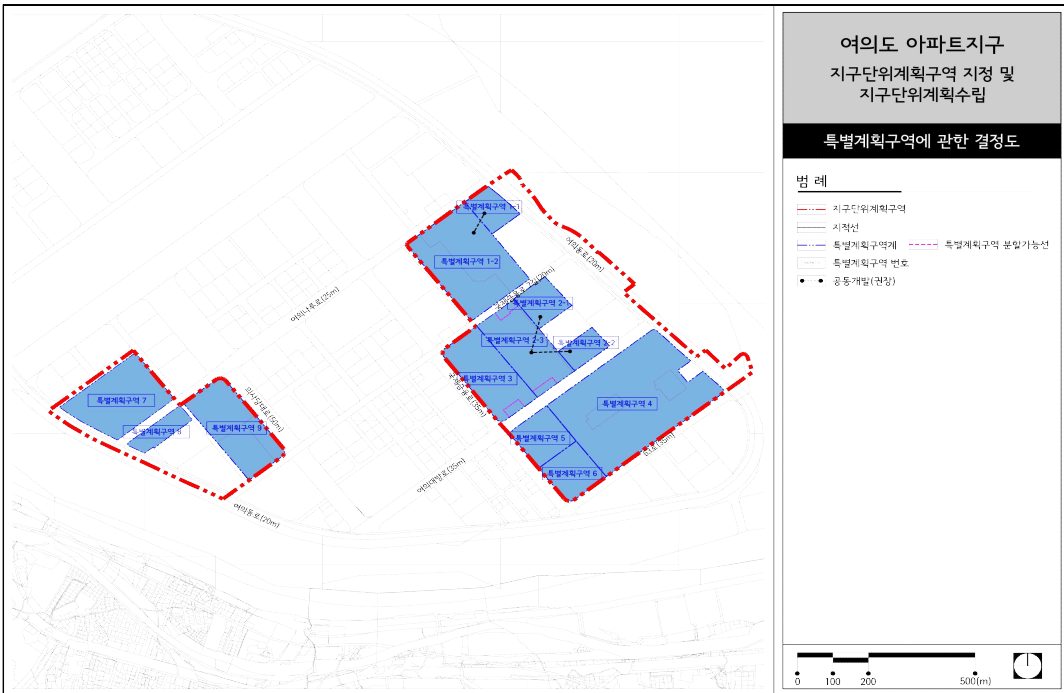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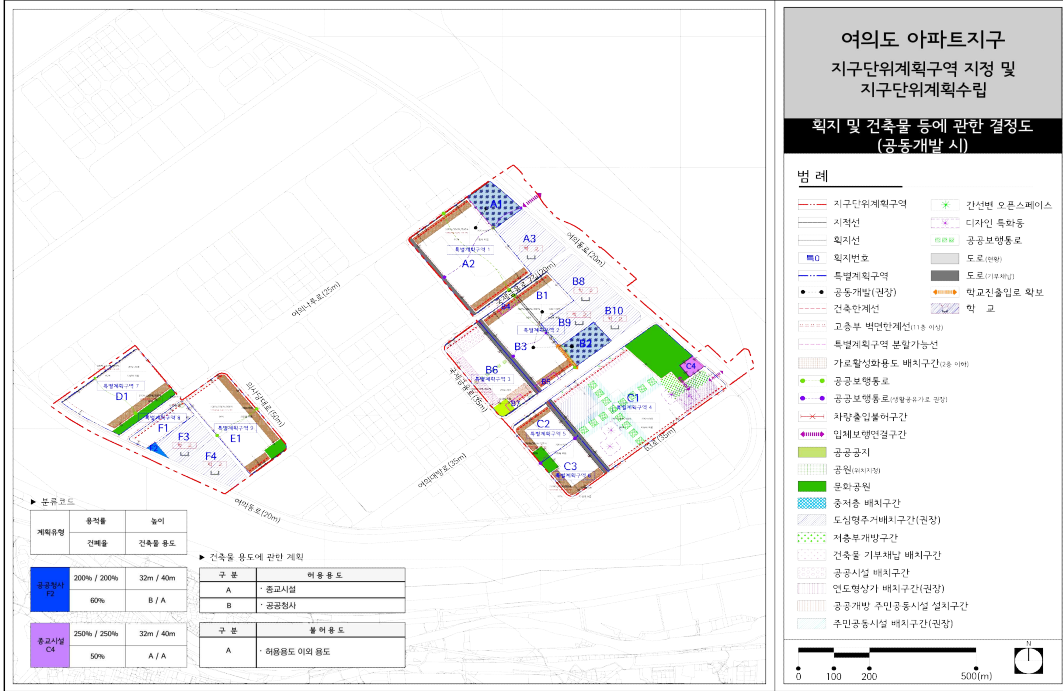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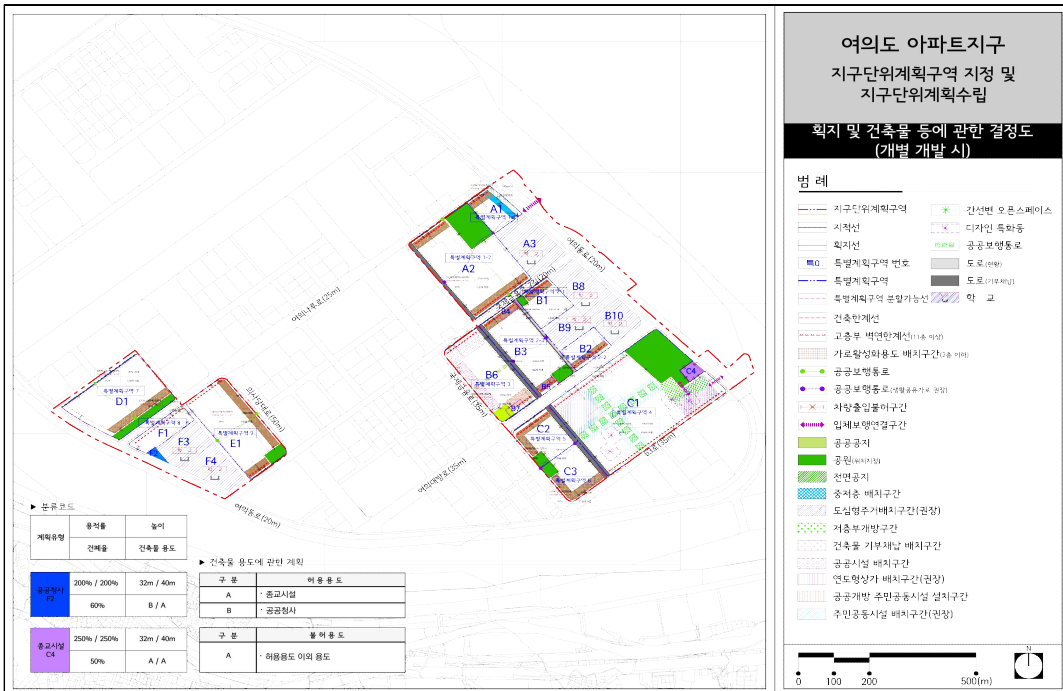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공동개발 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개별 개발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7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변경)

구 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강북구	미아동 791-2882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140,696㎡	·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구역계 변경 · 증가(△3,090㎡) 및 감소(▽2,583㎡)면적 반영
변경	강북구	미아동 791-2882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141,203㎡	

2. 권리산정기준일(변경)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면 적(㎡)	비 고
기정	2022. 1. 28.	140,696㎡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없음 · 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 추가 적용 · 제척된 필지는 해제
변경	2022. 1. 28.(기존구역) 2024. 2. 1.(편입구역)	141,203㎡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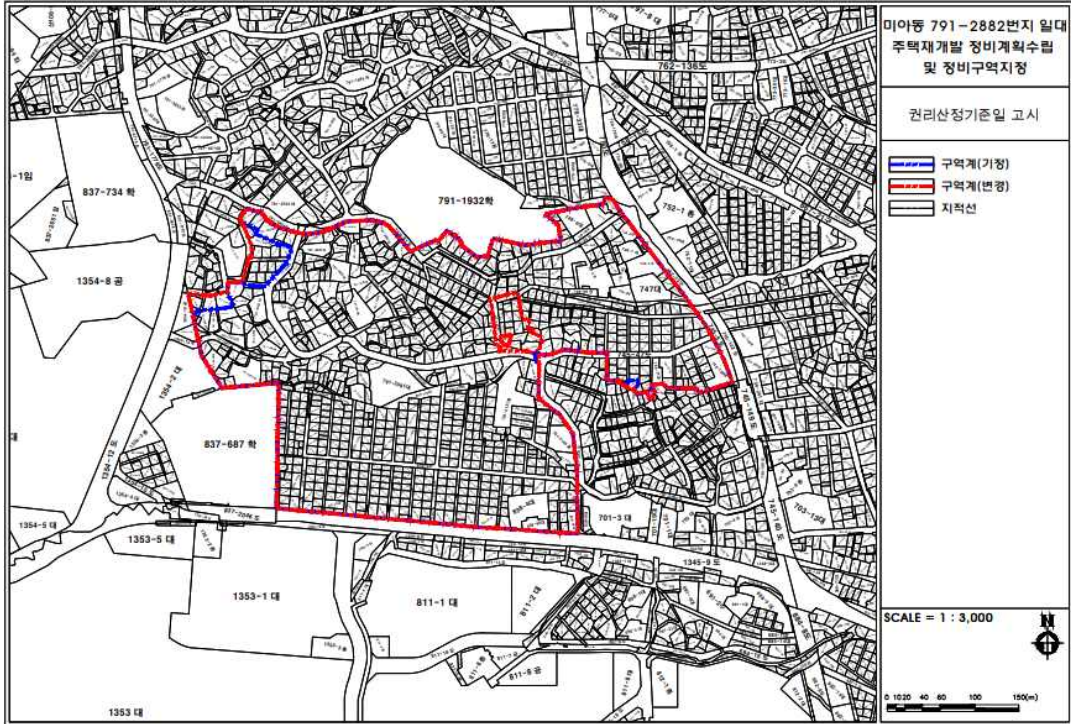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3) 및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8호
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3호(2010.10.1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57호(2014.04.30.)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72호(2018.05.16.)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173호(2018.12.12.)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21-165(2021.09.15.)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18	홍제동	104-41	2.7ha	210%	50%	-	1	단독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7,281.6	-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281.6	-	27,281.6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3,163.1	-	3,163.1	11.6	조성 후 기부채납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로	1,729.1	-	1,729.1	6.3	
	소공원	1,434.0	-	1,434.0	5.3	공원 위치 변경
	소 계	24,118.5	-	24,118.5	88.4	
획 지	획 지1	22,863.1	-	22,863.1	8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1,255.4	-	1,255.4	4.6	종교용지 위치 변경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7,281.6	-	27,281.6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281.6	-	27,281.6	100.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7	35~38	보조간선 도로	일반 도로	3,600	서대문광장	홍제동			-
기정	중로	2	1	18~21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0	홍제동 105-110	홍제동 12-145			-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①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3	홍제동 102-3	홍제동 19-16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	홍제동 105-76	홍제동 105-86			-

※ ①은 임시번호임.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홍제동 104-1번지 일대	1,434.0	-	1,434.0	서고시 제2010-353호 (2010.10.1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소공원	• 위치변경	• 구역 내 획지 및 기반시설의 토지 활용성 제고에 따른 공원 위치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 복리 시설	주민 공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획 지	992.82	감)162.82	830.00	
		경로당	획 지	238.85	증)1.15	240.00	
		작은도서관	획 지	250.00	-	250.00	문고
		어린이집	획 지	341.25	감)1.25	340.00	보육시설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민운동시설	획 지	872.58	-	872.58	
		기타공동시설	획 지	-	증)1,230.00	1,230.00	
	합 계			2,695.50	증)1,067.08	3,762.58	
	관리사무소		획 지	216.00	증)24.00	240.00	
	근린생활시설		획 지	4,975.91	감)2,703.91	2,272.00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변 경	변경후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7,281.6	-	27,281.6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69	-	-	69	-	

8.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홍제3 주택재건축정비 구역	27,281.6	획지1	22,863.1	홍제동 104-41번지일 대	공동 주택 용지	30이하	225.21이하	277.95이하	70이하 (최고23층)
			획지2	1,255.4	홍제동 104-1번지일대	종교 용지	관계법령에 의함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홍제3 주택재건축정비 구역	27,281.6	획지1	22,863.1	홍제동 104-41번지일 대	공동 주택 용지	30이하	225.21이하	277.95이하	70이하 (최고23층)
			획지2	1,255.4	홍제동 19-27번지일대	종교 용지	관계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비 고			
		계	634(78)	감)14 (증2)	620(80)	100.0%	()는 공공주택 세대수			
		60㎡이하	343(78)	감)126 (감4)	217(74)	35.0%				
		60~85㎡이하	265(-)	증)115 (증6)	380(6)	61.3%				
		85㎡초과	26(-)	감)3 (-)	23(-)	3.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 : 95.9% → 94.2% (감 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통일로변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									

■ 용적률계획

○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27,281.6㎡	22,863.1㎡	3,163.1㎡	370.6㎡	1,957.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 3,163.1㎡ - 370.6㎡ - 1,957.4㎡ = 835.1㎡ (구역대비 3.06%) •순부담율 = $\frac{\text{계획기반시설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text{사업구역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 \times 100$ = 3.3%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210% + 5% = 215%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α) = 215% $\times$ (1+1.3 $\times$ 0.03653) = 225.21%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35.1㎡ / 22,863.1㎡ = 0.03653 β = 세입자주거대책으로 인한 허용용적률 5% 적용 •정비계획용적률 : 225.21%이하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77.95%)				

○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27,281.6㎡	22,863.1㎡	3,163.1㎡	270.6㎡	2,057.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 3,163.1㎡ - 270.6㎡ - 2,057.4㎡ = 835.1㎡ (구역대비 3.06%) •순부담율 = $\frac{\text{계획기반시설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text{사업구역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 \times 100$ = 3.3%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210% + 5% = 215%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α) = 215% $\times$ (1+1.3 $\times$ 0.03653) = 225.21%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35.1㎡ / 22,863.1㎡ = 0.03653 β = 세입자주거대책으로 인한 허용용적률 5% 적용 •정비계획용적률 : 225.21%이하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77.95%)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건축법에 따른 상한용적률 : 277.95%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77.95%												
	정비계획용적률	225.21%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277.95% - 225.21%) x 50% = 52.74% x 50% = 26.37%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x 26.37% = 22,863.1 x 26.37% = 6,029.0㎡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table border="1"><thead><tr><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공급면적</th></tr></thead><tbody><tr><td>합 계</td><td>78</td><td>6,070.12㎡</td></tr><tr><td>49.98㎡</td><td>26</td><td>1,790.10㎡</td></tr><tr><td>59.97㎡</td><td>52</td><td>4,280.02㎡</td></tr></tbody></table> - 소형주택 공급면적 = 6,070.12㎡(26.55%) > 6,029.0㎡(26.37%)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합 계	78	6,070.12㎡	49.98㎡	26	1,790.10㎡	59.97㎡	52	4,280.02㎡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합 계	78	6,070.12㎡												
49.98㎡	26	1,790.10㎡												
59.97㎡	52	4,280.02㎡												
변경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건축법에 따른 상한용적률 : 277.95%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77.95%												
	정비계획용적률	225.21%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 공공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277.95% - 225.21%) x 50% = 52.74% x 50% = 26.37% 이상 - 공공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x 26.37% = 22,863.1 x 26.37% = 6,029.0㎡	-											

구 분		내 용	비 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 주택규모	-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 주택 활용																		
		<table><tr><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공급면적</th></tr><tr><td>합 계</td><td>80</td><td>6,039.43㎡</td></tr><tr><td>50.98㎡</td><td>57</td><td>3,975.82㎡</td></tr><tr><td>59.98㎡</td><td>17</td><td>1,398.28㎡</td></tr><tr><td>77.98㎡</td><td>3</td><td>318.67㎡</td></tr><tr><td>84.98㎡</td><td>3</td><td>346.66㎡</td></tr></table>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합 계	80	6,039.43㎡	50.98㎡	57	3,975.82㎡	59.98㎡	17	1,398.28㎡	77.98㎡	3	318.67㎡	84.98㎡	3	346.66㎡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합 계		80	6,039.43㎡																
		50.98㎡		57	3,975.82㎡																
		59.98㎡		17	1,398.28㎡																
		77.98㎡		3	318.67㎡																
		84.98㎡		3	346.66㎡																
• 공공주택 공급면적 = 6,039.31㎡(26.42%) > 6,029.0㎡(26.37%)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36.31%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전면투수성 포장 적용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I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함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비율 20%미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6m이상의 절성토고 발생 안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5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정북방향으로 주거지역, 아파트 위치	수인한도 만족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조절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WNW(서북서풍)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	
	경관	Skyline보전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가로녹지율 35%	○	녹지율 35%이상 확보계획	조경계획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일부구간 보행전용도로 설치	
추가	대기질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년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사업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물순환(수질)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설치 녹지공간조성	

10.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권리자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구역지정고시 후 4년 이내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492세대 계획 : 634세대 (증) 142세대	해당사항 없음	서고시 제2014-57호 2014.04.30.
변경	주택재건축	구역지정고시 후 4년 이내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492세대 계획 : 620세대 (증) 128세대	해당사항 없음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기회 차단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7,281.6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7,281.6	-	27,281.6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281.6	-	27,281.6	100.0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7	35~38	보조간선 도로	일반 도로	3,600	서대문광장	홍제동			-
기정	중로	2	1	18~21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0	홍제동 105-110	홍제동 12-145			-
기정	중로	3	①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3	홍제동 102-3	홍제동 19-16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	홍제동 105-76	홍제동 105-86			-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홍제동 104-1번지 일대	1,434.0	-	1,434.0	서고시 제2010-353호 (2010.10.1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소공원	• 위치변경	• 구역 내 획지 및 기반시설의 토지 활용성 제고에 따른 공원 위치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1	1	24,118.5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2,863.1	공동주택용지
2			홍제동 104-1번지 일대	1,255.4	종교용지

○ 변경

구분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1	1	24,118.5	홍제동 104-1번지 일대	22,863.1	공동주택용지
2			홍제동 19-27번지 일대	1,255.4	종교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 고
1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이외 용도는 불허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 용적률	
기정	210% 이하	215% 이하	225.21% 이하	277.95%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세입자 주거대책	
기정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호, 2019.04.25.)	총 5%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10.21%	52.74%	총 62.95%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최고층수)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70m이하 (최고 23층)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통일로변 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통일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36.31%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전면투수성 포장 적용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I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함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비율 20%미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6m이상의 절성토고 발생 안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5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정북방향으로 주거지역, 아파트 위치	·수인한도 만족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조절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WNW(서북서풍)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
	경관	Skyline보전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가로녹지율 35%	○	·녹지율 35%이상 확보계획	·조경계획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일부구간 보행전용도로 설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추가	대기질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사업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물순환(수질)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설치 녹지공간조성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비율(%)	
				계	공공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기정	합 계	634	100.0	78	78	12.3	100.0
	60㎡이하	343	54.1	78	78	12.3	100.0
	60㎡초과~ 85㎡이하	265	41.8	-	-	-	-
	85㎡초과	26	4.1	-	-	-	-
변경	합 계	620	100.0	80	80	12.9	100.0
	60㎡이하	217	35.0	74	74	11.9	92.5
	60㎡초과~ 85㎡이하	380	61.3	6	6	1.0	7.5
	85㎡초과	23	3.7	-	-	-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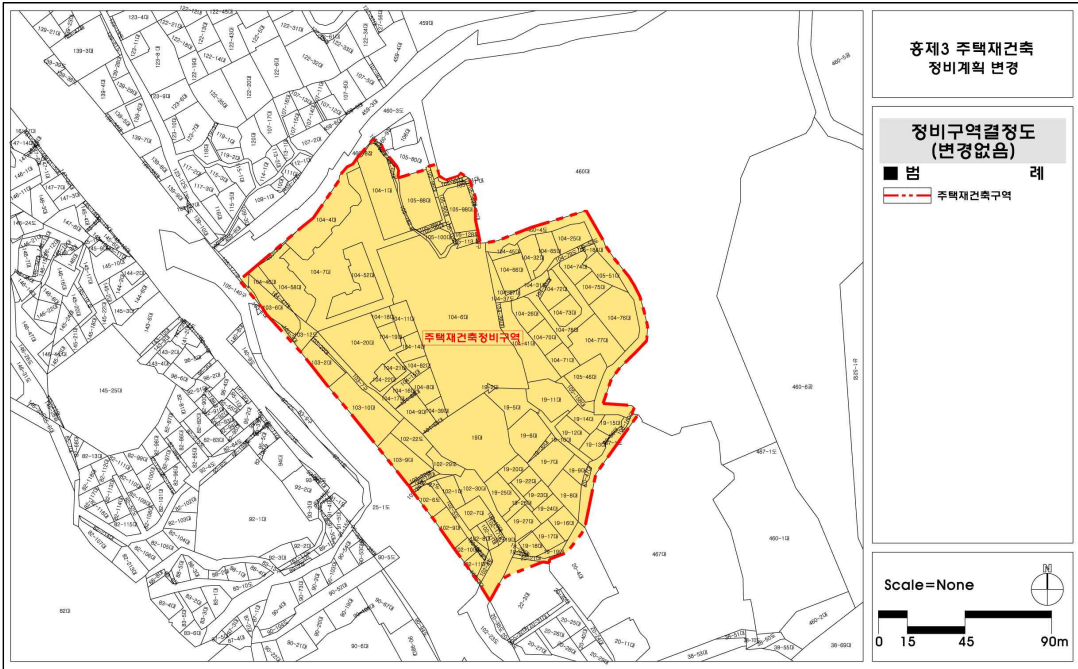
IV.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3),
서대문구청 신통개발과(☎02-330-153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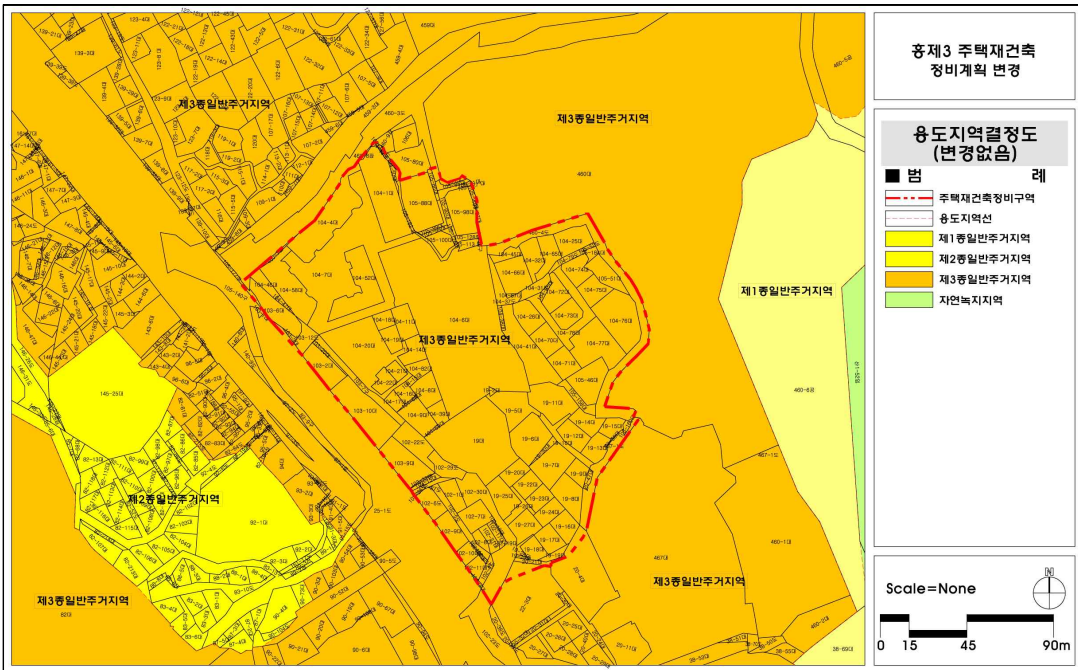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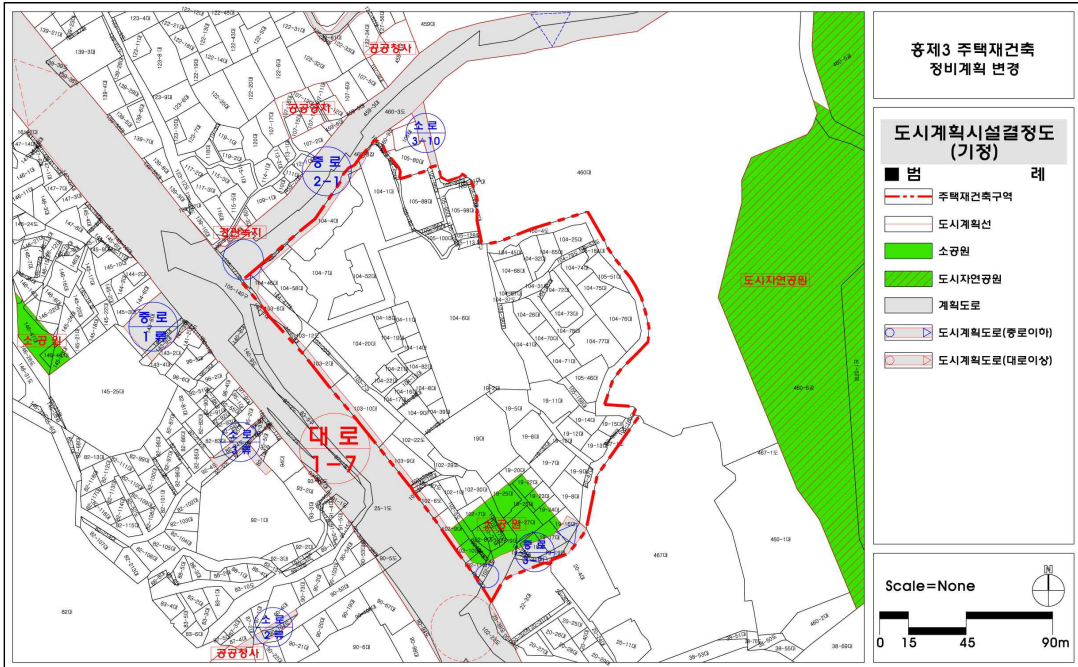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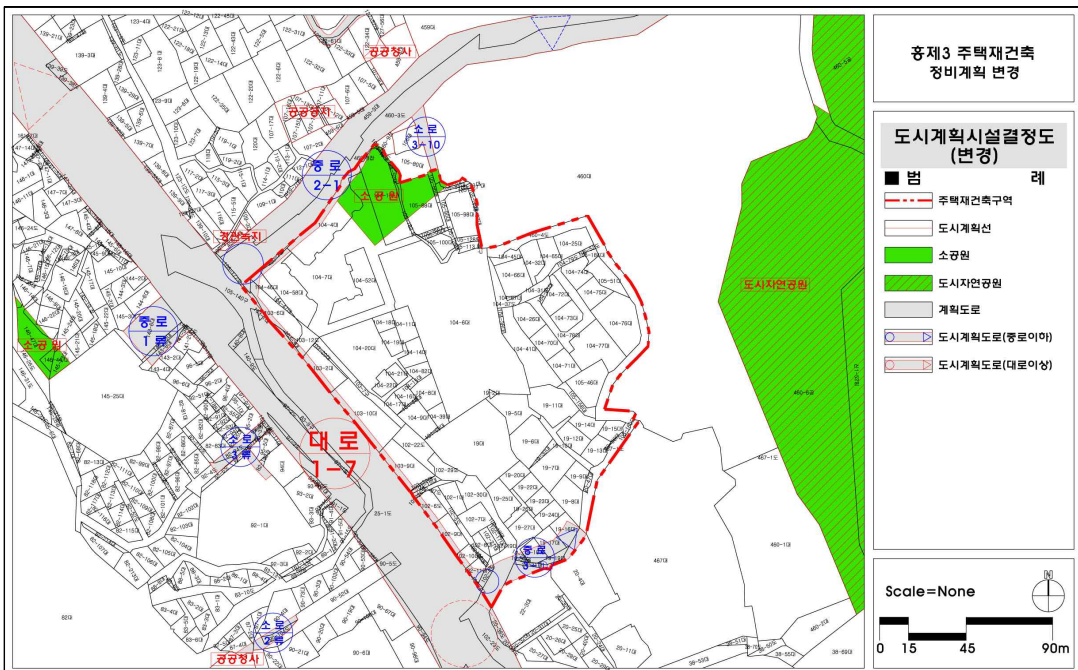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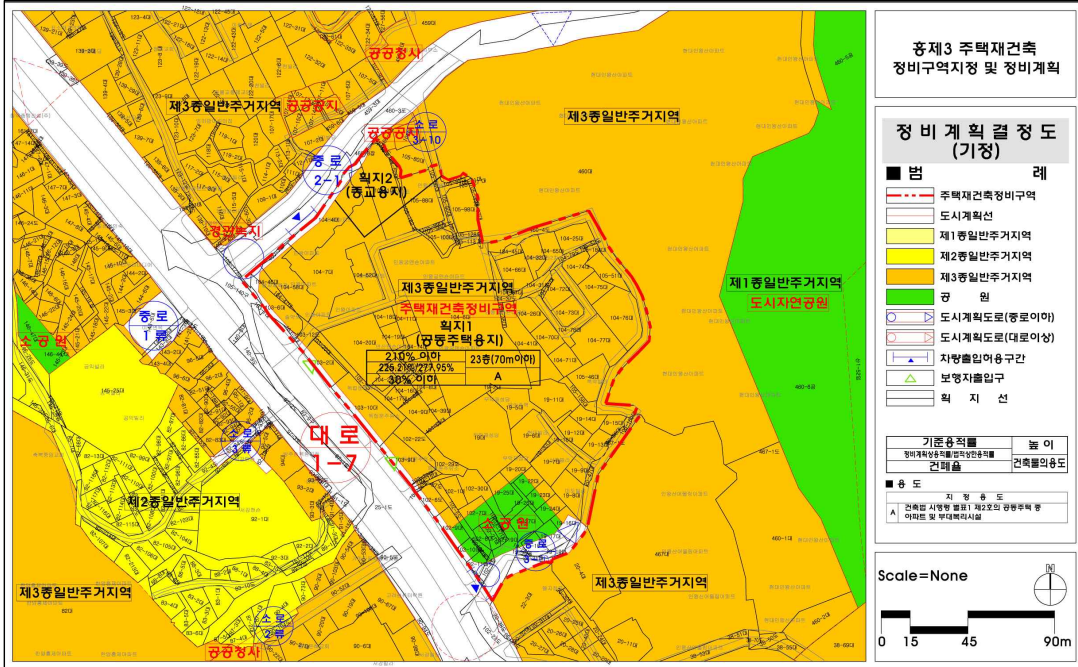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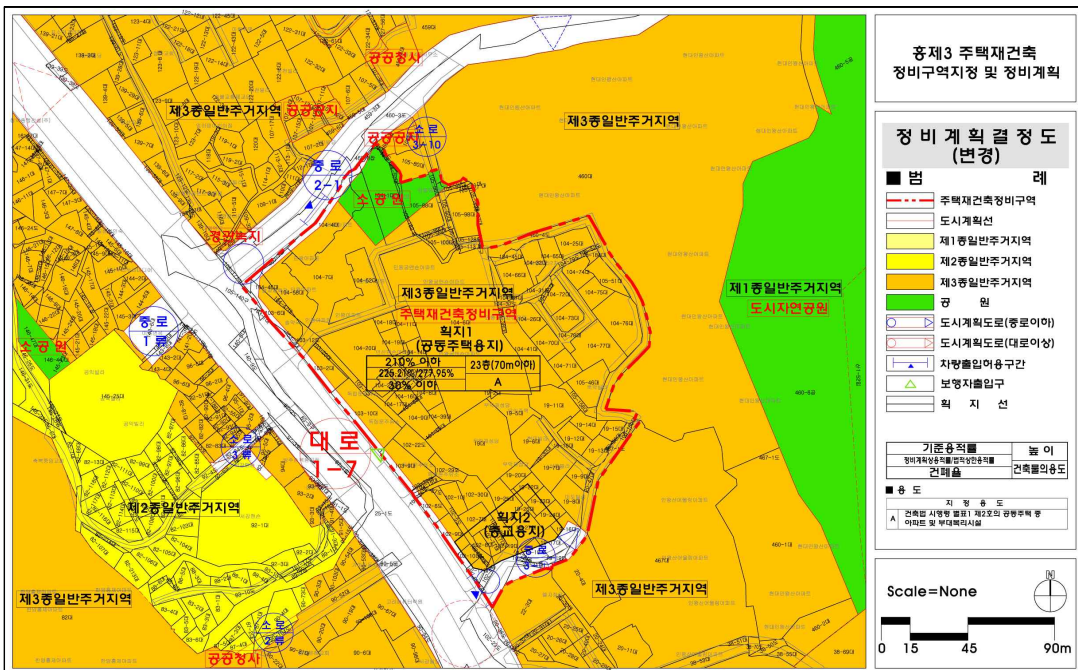
- 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 변경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명칭(가칭)	위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고
1	영등포구	도림동26-21	도림동26-21일대	102,366	2021.12.30.	정정
2	도봉구	창3동470	창동470일대	135,145	2023.10.12.	신규

※ 도림동26-21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8호('22.8.26.)]의 권리산정기준일 2020.9.21.에서 2021.12.30.로 정정됨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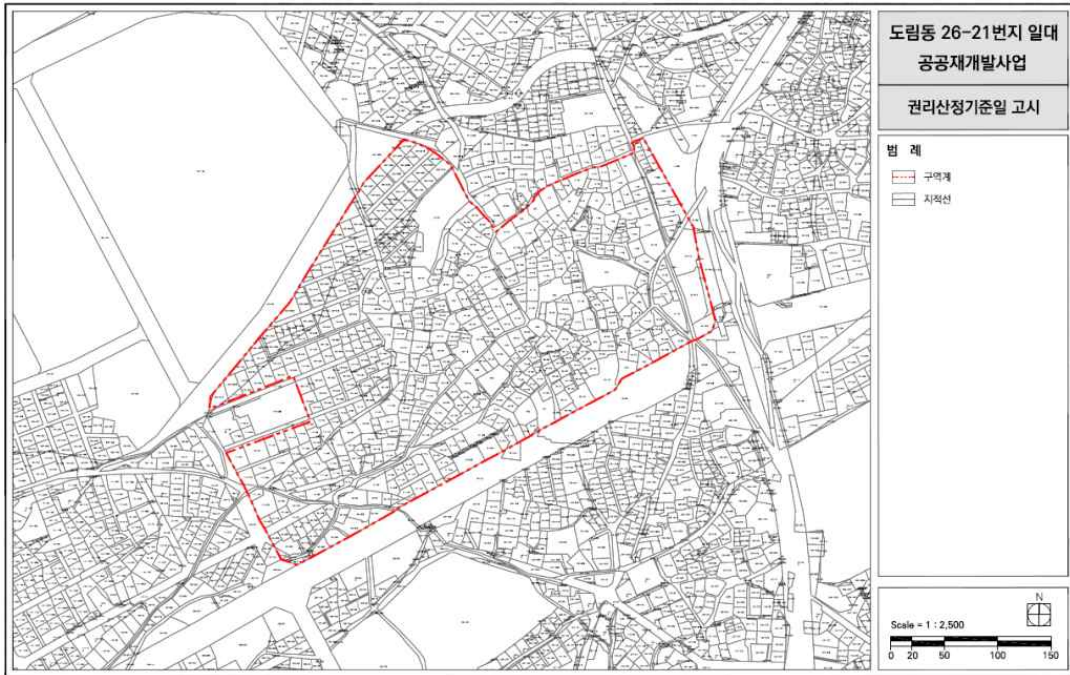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535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4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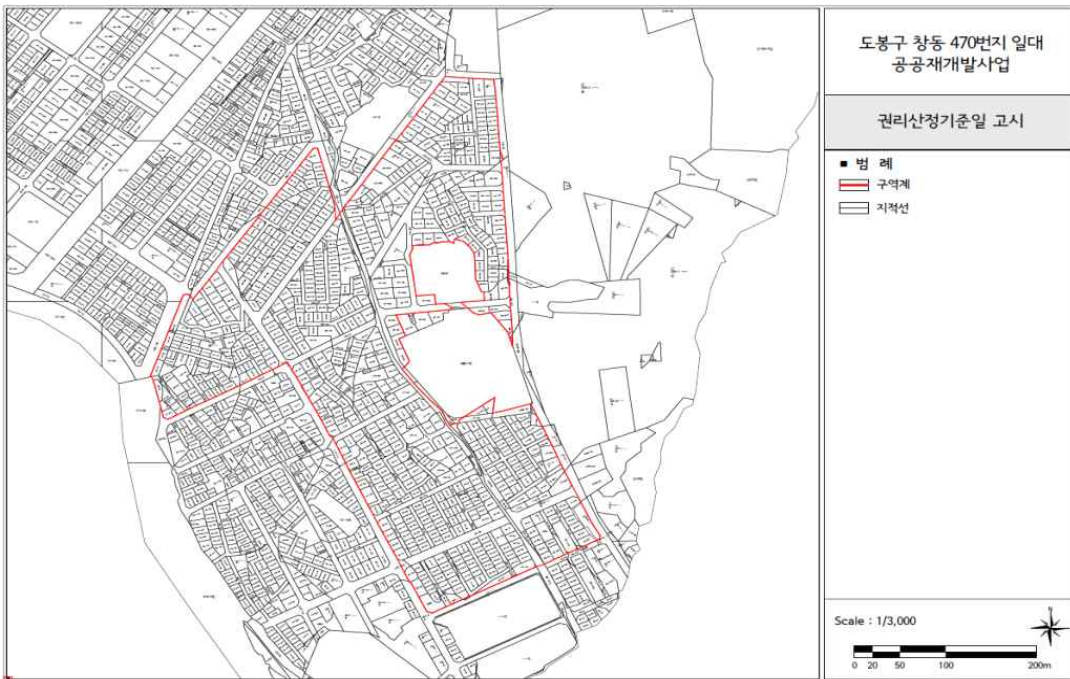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일대)



○ 창동470번지 일대 (도봉구 창동470번지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호

서울공예박물관 자료구입공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료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구입대상 자료

주제 번호	세 부 내 역
1	○ 개항 이후 광복 이전까지 제작된 근대공예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대한제국 황실 관련 자료 및 근대공예 관련 기관 (한성미술품제작소, 공업전습소, 중앙시험소, 백화점-미츠코시·화신 등, 통영철공주식회사·통영칠기제작소, 나전칠기제작소, 조선나전사, 각 지역 형무소 등)에서 제작·판매된 근대공예 작품 및 동 제작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사진·엽서 자료) -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개최한 박람회(파리·시카고만국박람회 등) 및 전람회(조선물산공진회, 조선박람회, 조선미술전람회 등)에 출품된 공예 작품 및 관련 자료 - 근대 주요 공예가와 그들이 그린 도안 등 아카이브 자료 · 건칠분야 : 강창원(또는 강창규) · 나전칠공예 : 엄성봉, 엄항주, 박정수, 박목수, 전성규, 김봉룡, 송주안, 심부길, 김진갑, 장기명, 김기주, 김영주, 김홍주, 엄맹운, 조기준, 박철주, 이세영, 박영희, 홍순태, 김태희, 민종태, 강기홍, 이형규 등 · 목공예 : 문봉호 · 도자공예 : 최창성, 김원배, 유근형, 황인춘, 최면재, 기타 조선에서 청자 재현작업을 한 일본인 공예가들 · 금속공예 : 강형선, 박덕인, 최창성, 정대근, 이남이, 이학응, 김정섭 등 · 지공예 : 이만승·노영원(지승공예), 김만엽(한지 부채) 등 · 직물공예 : 정태용(복식), 정해영·박을복·이문정·신태화·박여옥·장옥순·김자선·윤봉숙·장선희·임의순·현진애·전명자(자수), 김환배·조재규(珠簾), 김순희·최복녀·이현숙·유의순·김재석·정문희(편물) 등 · 초경공예 : 임계창·한봉수(강화 화문석), 권태로 등 · 유리공예 : 김환배 등 · 가죽공예 : 정인호(모자 제작) 등 · 석 공예 : 이병수·이중수(돌술 제작), 김현반·원희정·유택운·이영학·이수방·김병현·김병하·김관만·박영준·송지욱·김현수·최치범·고유건·김홍갑·김영복(벼루 제작) 등 ○ 근대 경성과 지방(부산·평양·개성·통영·대구·부산·전주 등) 지도 및 지리풍속 관련 문헌자료 중 공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자료 - 「조선미술전람회」 1, 7, 9, 11, 12, 15, 19, 20, 21, 22, 23회 도록 및 관련 자료

주제 번호	세 부 내 역
2	○ 전통공예의 기술이나 예술적 특성을 계승한 전승공예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의 대표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3	○ 1950년대 이후의 현대공예 혹은 동시대 공예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공예 1, 2세대 작가의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김재석 · 강수화 (도자), 김기린 · 유운진 · 권길중(금속), 백태원(목공), 유충희 · 김태숙(섬유) 등 현대 공예 1세대 작가의 작품 및 관련 연구자료 － 국내외 공모전·비엔날레·공예트렌드페어 수상작 및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공예 관련 전시에 참여하여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의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4	○ 3D 프린팅,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공예의 제작방식을 확장하는 작품 － 과학기술과 공예의 융복합 협업 및 적정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예 재료, 소재, 기술의 연구 성과물, 작품(전시수상, 이력 등 우대) 등 ○ 20세기 이전 불교자수·가사(袈裟)·지화(紙花)·연등(燃燈) 등 불교공예 혹은 사원 수공업 관련 유물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작가 등

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 매도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

제3조(매도신청)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다. 최종선정 후 계약 시 계약자명과 매도신청자명, 통장명의를 일치해야 합니다.

3. 매도신청 접수 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4월 8일(월)까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중 택일

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우편번호 03061)

② 방문시간 : 10:00~11:30, 13:00~17:00(토, 일, 공휴일 제외)

③ 우편접수 시 ‘자료매도신청서 재중’ 명기, 우편물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 사용
나. 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첨부하여 keepintouch@seoul.go.kr로 송부

다. 매도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 ①, ②, ③번 서식을 작성 후, 자료사진과 함께 제출

① 자료매도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매도신청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하단에 매도신청자료 목록을 작성합니다.

- 서명란에는 매도신청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② 매도신청자료명세서(소정양식) 1부

- 명세서 서식에 따라 매도신청자료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자료의 명칭, 시대,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출처, 내용, 수량, 매도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내용란에는 형태상의 특징(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특기사항, 보존상태 등)과 제작자, 작품이력, 각종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명세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③ 소장 내력서(소정양식) 1부

④ 자료사진(파일)

- 매도신청자료를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 혹은 디지털 사진이미지 파일을 제출합니다.

- 반드시 매도신청자료 1점당 4매 이상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매도신청자료명세서의 연번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 파일 개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합니다.

- 파일형식 : JPG, PNG(1매당 용량 5MB 이하)

나. 현대공예 분야: ① ~ ④번 서식을 작성 후, ⑤ ~ ⑧번과 함께 제출 ※ 작가 본인이 매도신청하는 경우

① 자료매도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매도신청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하단에 매도신청자료 목록을 작성합니다.

- 서명란에는 매도신청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 ② 매도신청자료명세서(소정양식) 1부
 - 명세서 서식에 따라 매도신청자료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자료의 명칭, 시대,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출처, 내용, 수량, 매도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내용란에는 형태상의 특징(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특기사항, 보존상태 등)과 제작자, 작품이력, 각종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명세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 ③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④ 작가이력서(소정양식) 1부
 - ⑤ 자료사진(파일)
 - 매도신청자료를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 혹은 디지털 사진이미지 파일을 제출합니다.
 - 반드시 매도신청자료 1점당 4매 이상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매도신청자료명세서의 연번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 파일 개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합니다.
 - 파일형식 : JPG, PNG(1매당 용량 5MB 이하)
 - ⑥ 수상이력 증빙자료 1부
 - 수상을 증빙할 수 있는 상장, 증빙서류, 도록, 사진 등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⑦ 진품보증서 1부
 - 작품명, 작품정보(제작연도, 재료, 크기 등), 작가날인 등을 포함한 자유양식을 제출합니다.
 - ⑧ 작품매도경력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작가이력서에 기재한 작품매도경력 중 주요 매도경력(2~3건)의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 발행기관 소정양식 제출, 매도가격 및 작품기본정보 반드시 포함)
6. 실물접수 : 서류심사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한해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실물접수함
- 가. 실물접수 시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매매업자 :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 자료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 1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나. 실물접수는 실물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공개구입의 절차 중 하나이며, 구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다. 실물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매도신청자에게 반환을 통보하게 되며, 매도신청자는 반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직접 되찾아가야 합니다. 반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7. 자료구입 가격 : 자료평가위원회 평가금액에 의함

8. 구입 결정

가. 자료평가위원회 및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입대상을 선정합니다.

나. 선정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불법취득(도난문화재) 여부를 검증합니다.

※ 현대공예 분야는 작품 특징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시: 작가 본인 작품)

다. 검증된 자료에 한해 평가금액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9. 매도신청 후 구입 관련 절차

가.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심의(서류심사) → 실물접수 →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심의(실물평가) →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인터넷 공개) →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최종심의) → 자료 구입 계약

나. 매도신청 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종 계약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다. 심의결과 및 상세일정은 개별 안내합니다.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소유권 이전 및 저작권 사용 관련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구입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울공예박물관으로 귀속되며, 서울공예박물관은 해당 자료를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도자료가 매도자 본인의 작품인 경우 ‘공예(작)품 저작권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나. 매도신청 시 제출한 서류(신청서, 명세서, 사진)의 정보가 사실에 위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서울공예박물관 매도계약이 불가합니다.

다. 자료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세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02-6450-7053)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공통]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E-mail)	

매도신청자료 목록

연번	명칭	수량 (점)	매도신청액(원)	비고
계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매도를 신청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
는 만·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소장 내력서

1. 연번 및 명칭:
2. 입수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작 성 일 :

[서식 4-현대공예 분야] ※ 본 서식은 매도신청자료 1점당 1매 작성

작 품 설 명 서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연도		매도희망가격 (단위: 원)	
재료 및 기법		규 격 (단위: cm)	높이(H) x 폭(W) x 깊이(D)
비고(에디션)			
작품 출처	☐ 작가본인 ☐ 구입 ☐ 증여 ☐ 전속작가 ☐ 기타 ()	상 태	☐ 양호 ☐ 보통 ☐ 손상 내용 :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작품 이미지 삽입 (이미지삽입 또는 사진부착)			
< 작품 설명 > ※ 해당 작품에 대한 작가노트 작성 권장 그 외 전시 도록, 잡지 등에 실린 글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기재			
본 작품의 전시 이력	※ 전시관명-전시명-위치(전시기간) 순으로 작성 예시) ○○미술관, <초대전>, 서울(1980.3.24. ~ 3.29.)		

[서식 5-현대공예 분야]

작가 이 력 서

작가명		호 (※해당시 기재)		생몰연도	성별	국적
(국문)	(영문)	(한글)	(한자)			

※ 아래 사항은 해당 사항만 기재 바랍니다.

1. 학력

예시) 2004 ○○대학교 ○○대학 ○○학부 ○○전공 졸업

2. 개인전 (최근연도 순, 주요 전시이력 기재)

예시) 2016 전시명, ○○미술관, 바젤, 스위스

3. 단체전, 기획전, 경력 (최근연도 순, 주요 전시이력 기재)

예시) 2016 전시명, ○○미술관, 바젤, 스위스

4. 작품매도 경력 (연도, 매도처, 매도작품명(제작연도), 작품규격(cm), 재료 및 기법, 매도금액)

예시) 2014 서울시립미술관, <작품명>(제작연도), 규격cm, 흑단, 느티나무, 총2점, 10,000,000원(일천만원)

※ 국공립미술관, 갤러리 등 주요 매도경력 위주로 기재 (증빙자료 별도 제출)

5. 수상경력 (연도, 수상명, 기관)

예시) 2016년, 32회 ○○비엔날레 “금속 부분 1등 상”

6. 기타 (주요박물관, 미술관 작품소장 등)

예시) 2017년 기증,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명>(제작연도), 규격cm, 재질 등

※ 기재 내용 초과시 이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2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공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용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2. 용자대상 및 조건

- 용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용자 및 상환조건

용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사용·용도

용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3. 제외대상

- ☐ 휴/폐업 중인 업소
-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 수와 무관)
-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4.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무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민성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107 2201동 4**호	위반일시: 2023-11-06 06:59 위반장소: 서대문구 남가좌동 286-1 모래내시장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7.9t, 초과값:5.9t 서울06나564*)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2-26 납기일: 2024-02-29
이영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35 208동 11**호	위반일시: 2023-11-08 13:52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72 하늘공원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97m, 초과값:0.47m 서울98바729*)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2-26 납기일: 2024-02-29
박대희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111동 22**호	위반일시: 2023-12-01 09:38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6 난지공원 위반내용: 차량의 축 하중 초과(실측값:11.2t, 초과값:1.2t 006나998*)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2-26 납기일: 2024-02-29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전영배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1303동 6**호	위반일시: 2023-10-05 21:11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은동 217-2 홍제교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6.6t, 초과값:4.2t 006다787*)	과태료: 7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신현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진미로 54번길 6*	위반일시: 2023-10-05 06:13 위반장소: 용산구 한남동 산 10-212 한남2고가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0.2t, 초과값:10.2t 경남82아281*)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이장복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6 116동 1600*호	위반일시: 2023-09-11 14:45 위반장소: 용산구 한남동 산 10-212 한남2고가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m, 초과값:0.2m 인천86아27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박병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0*	위반일시: 2023-09-09 14:39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옥천복개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9.7t, 초과값:7.7t 경기06모150*)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5.(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응사유	납부 기한
	54건																
1	20222071	02가1655	K7	000047339214201 20231225003283	북정역	0001:32	2023-11-26	13:11	2023-11-26	14:43	3,200	3,200	0	함0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폐문부재	2024-02-07
2	20222200	02도3479	그랜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31225003260	종묘	0002:14	2023-11-04	19:27	2023-11-04	21:41	5,200	5,200	0	강0아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88번길 27	폐문부재	2024-02-07
3	20222337	06가4009	BMW 520i Luxury	000047339214201 20231225003124	마포유수지	0003:45	2023-11-20	17:23	2023-11-20	21:13	4,900	4,900	0	홍0용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136번길 9	폐문부재	2024-02-07
4	20222006	06도5669	G4 럭셔리	000047339214201 20231225003100	동대문	0002:13	2023-11-17	14:20	2023-11-17	16:33	9,700	9,700	0	김0림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110	폐문부재	2024-02-07
5	20222055	06초7642	SM7	000047339214201 20231225003092	마포유수지	0001:38	2023-11-23	11:20	2023-11-23	12:58	400	400	0	이0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신로 183	폐문부재	2024-02-07
6	20222240	08초7972	INFINITI Q60	000047339214201 20231225003085	동대문	0000:35	2023-11-26	20:56	2023-11-26	21:31	500	500	0	양0호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	폐문부재	2024-02-07
7	20222032	10도9205	트랙스 1.4	000047339214201 20231225003055	용산주차빌딩	0004:10	2023-11-18	13:25	2023-11-18	17:35	15,000	15,000	0	정0민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89번길	폐문부재	2024-02-07
8	20222039	10호8869	니로 EV	000047339214201 20231225002961	계화산역	0002:46	2023-11-12	23:38	2023-11-13	02:24	2,800	2,800	0	주식회사 00000 빌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은사로114길	수취인 불명	2024-02-07
9	20222044	129H7044	제네시스 쿠파(GENESIS Coupe)	000047339214201 20231225002878	서울도보본센터	0000:11	2023-11-15	12:05	2023-11-15	12:16	2,100	2,100	0	SAMBU U 00000 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앙로9길 40	폐문부재	2024-02-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응사유	납부 기한
10	20222218	12다2248	스파크 1.0	000047339214201 20231225002848	종묘	0004:09	2023-11-16	08:51	2023-11-16	13:00	10,000	10,000	0	문0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신로8길 8	폐문부채	2024-02-07
11	20222068	140다6961	스포티지	000047339214201 20231225002763	천왕역	0000:56	2023-11-28	18:49	2023-11-28	19:45	2,000	2,000	0	김0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가길	폐문부채	2024-02-07
12	20222040	140도1643	SM6	000047339214201 20231225002756	마포유수지	0004:35	2023-11-13	17:47	2023-11-13	22:22	12,100	12,100	0	이0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5길	폐문부채	2024-02-07
13	20222047	140다2558	그랜저 (GRANDEUR)	000047339214201 20231225002749	한강진역	0000:33	2023-11-17	18:05	2023-11-17	18:38	2,800	2,800	0	김0양	경기도 시흥시 해송삼리로 472-11	폐문부채	2024-02-07
14	20222155	14라0585	INFINITI Q50S Hybrid	000047339214201 20231225002664	한강진역	0001:35	2023-11-14	16:23	2023-11-14	17:58	8,000	8,000	0	김0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3길 32-13	폐문부채	2024-02-07
15	20222206	15다1591	E220 CDI	000047339214201 20231225002496	종묘	0000:35	2023-11-09	14:39	2023-11-09	15:14	2,800	2,800	0	박0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7	폐문부채	2024-02-07
16	20222272	160다9748	볼보 XC60B5 AWD	000047339214201 20231225002442	북정역	0001:55	2023-11-05	12:30	2023-11-05	14:25	3,900	3,900	0	우0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폐문부채	2024-02-07
17	20222009	16라6258	SM3	000047339214201 20231225002380	동대문	0000:34	2023-11-17	16:11	2023-11-17	16:45	2,500	2,500	0	김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95	폐문부채	2024-02-07
18	20222065	186다9444	K5	000047339214201 20231225002238	신설동	0000:27	2023-11-27	11:40	2023-11-27	12:07	300	300	0	최0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03	폐문부채	2024-02-07
19	20222045	19라5642	BMW 528i	000047339214201 20231225002053	신설동	0002:52	2023-11-15	15:13	2023-11-15	18:05	4,400	4,400	0	이0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188	폐문부채	2024-02-07
20	20222125	19조2611	그랜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31225002009	구파발역	0013:43	2023-11-20	06:49	2023-11-20	20:32	4,300	4,300	0	박0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46-6	폐문부채	2024-02-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 기한
21	20222236	20C45918	쏘렌토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31225001999	동대문	0000:50	2023-11-14	18:53	2023- 11-14	19:43	1,800	1,800	0	현O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파신로 46	폐문부채	2024- 02-07
22	20222225	21두6571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31225001969	종로	0001:27	2023-11-21	18:37	2023- 11-21	20:04	7,200	7,200	0	정O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4길 42	폐문부채	2024- 02-07
23	20222059	223L9331	레이전로버 스포츠 3.0D	000047339214201 20231225001922	한강진역	0002:29	2023-11-25	14:01	2023- 11-25	16:30	12,000	12,000	0	영O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17-3	폐문부채	2024- 02-07
24	20222421	223L9331	레이전로버 스포츠 3.0D	000047339214201 20231225003339	한강진역	0006:49	2023-11-24	11:14	2023- 11-24	18:03	32,800	32,800	0	영O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17-3	폐문부채	2024- 02-07
25	20222046	22소5466	볼보 XC70D5	000047339214201 20231225001908	마포유수지	0001:05	2023-11-15	19:02	2023- 11-15	20:07	200	200	0	이O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16	폐문부채	2024- 02-07
26	20222343	25포6669	레이	000047339214201 20231225001791	수서역	0000:46	2023-11-24	19:15	2023- 11-24	20:01	1,400	1,400	0	박O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폐문부채	2024- 02-07
27	20222275	26H4534	투싼(TUCSON)	000047339214201 20231225001761	북정역	0004:12	2023-11-24	10:14	2023- 11-24	14:26	500	500	0	장O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폐문부채	2024- 02-07
28	20222304	26포0616	제규어 XE 2.0D	000047339214201 20231225001747	잠실역	0004:49	2023-11-18	16:40	2023- 11-18	21:29	23,200	23,200	0	김O오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폐문부채	2024- 02-07
29	20221984	274H8801	BMW 320d	000047339214201 20231225001700	잠실역	0001:38	2023-11-11	16:44	2023- 11-11	18:22	8,000	8,000	0	CHYMB AI UULU 00000 0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3길 9-20	폐문부채	2024- 02-07
30	20222088	298포3577	BMW 630i xDrive	000047339214201 20231225001502	마포유수지	0002:06	2023-11-30	18:28	2023- 11-30	20:34	5,700	5,700	0	고O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31	폐문부채	2024- 02-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 기한
31	20222157	29구8324	GLC220 d 4Matic	000047339214201 20231225001494	한강진역	0000:34	2023-11-15	12:56	2023- 11-15	13:30	2,800	2,800	0	박O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용로18길	수취인불 명	2024- 02-07
32	20222246	32주7143	트렉스 1.4	000047339214201 20231225001358	훈원공영원	0001:46	2023-11-09	15:38	2023- 11-09	17:24	12,100	12,100	0	김O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배거리로 93	폐문부재	2024- 02-07
33	20222080	331두8615	쏘렌토	000047339214201 20231225001341	북정역	0006:10	2023-11-27	13:24	2023- 11-27	19:34	6,200	6,200	0	인O섭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39번길 54	폐문부재	2024- 02-07
34	20222166	358노3470	스파크 1.0	000047339214201 20231225001197	등대문	0001:11	2023-11-04	20:16	2023- 11-04	21:27	2,700	2,700	0	임O정	경기도 화성시 등탄대로12길 64	폐문부재	2024- 02-07
35	20222207	37보2175	코루즈 1.4 터보	000047339214201 20231225001074	종묘	0000:28	2023-11-10	16:08	2023- 11-10	16:36	2,400	2,400	0	이O영	경기도 포천시 근내면 호곡로 1536-10	폐문부재	2024- 02-07
36	20222298	385호8322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31225001051	잠실역	0003:25	2023-11-12	13:24	2023- 11-12	16:49	8,200	8,200	0	이O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응암버루개길	폐문부재	2024- 02-07
37	20222235	43나8270	K7	000047339214201 20231225000873	등대문	0002:46	2023-11-13	22:37	2023- 11-14	01:23	6,100	6,100	0	유O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7	폐문부재	2024- 02-07
38	20222061	46다5651	E300	000047339214201 20231225000837	신설동	0000:16	2023-11-25	16:32	2023- 11-25	16:48	1,000	1,000	0	이O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현릉로890번길	주소불명	2024- 02-07
39	20222116	47루7059	투싼(TUCSON)	000047339214201 20231225000820	천왕역	0001:07	2023-11-02	13:39	2023- 11-02	14:46	2,300	2,300	0	최O정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대인3길	폐문부재	2024- 02-07
40	20222174	47마3402	모닝	000047339214201 20231225000813	등대문	0005:01	2023-11-12	22:04	2023- 11-13	03:05	10,800	10,800	0	정O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112	폐문부재	2024- 02-07
41	20222238	47마3402	모닝	000047339214201 20231225000806	등대문	0002:30	2023-11-21	22:57	2023- 11-22	01:27	5,400	5,400	0	정O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112	폐문부재	2024- 02-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응사유	납부 기한
42	20222097	49두4638	모닝	000047339214201 20231225000798	도동산역	0007:06	2023-11-25	09:47	2023- 11-25	16:53	7,300	7,300	0	박0주	경기도 의정부시 임서로70번길 26	폐문부재	2024- 02-07
43	20222145	49바1074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31225000781	천호역	0002:45	2023-11-22	12:21	2023- 11-22	15:06	8,500	8,500	0	유0우	경기도 광주시 마두들길 251	폐문부재	2024- 02-07
44	20222029	51너7804	Model 3 Long Range	000047339214201 20231225000675	종묘	0002:44	2023-11-18	14:53	2023- 11-18	17:37	6,600	6,600	0	김0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134	폐문부재	2024- 02-07
45	20222067	54무6714	Model Y Long Range	000047339214201 20231225000509	종묘	0004:22	2023-11-28	15:01	2023- 11-28	19:23	8,200	8,200	0	장0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령로53길 45	폐문부재	2024- 02-07
46	20222329	56보0866	BMW 520d xDrive	000047339214201 20231225000461	마포유수지	0005:08	2023-11-09	11:42	2023- 11-09	16:50	13,600	13,600	0	김0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00	폐문부재	2024- 02-07
47	20222159	59나5069	E220 CDI	000047339214201 20231225000392	한강진역	0002:04	2023-11-19	13:39	2023- 11-19	15:43	10,000	10,000	0	이0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27길	폐문부재	2024- 02-07
48	20222118	59부1870	K7	000047339214201 20231225000378	천왕역	0024:16	2023-11-12	12:33	2023- 11-13	12:49	24,800	24,800	0	임0민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97	폐문부재	2024- 02-07
49	20222010	60너1731	BMW X3 xDrive20d	000047339214201 20231225000382	동대문	0000:16	2023-11-17	15:01	2023- 11-17	15:17	1,400	1,400	0	김0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3길 11	폐문부재	2024- 02-07
50	20222289	61저0459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 20231225000325	구로디지털단 지역	0005:56	2023-11-24	19:16	2023- 11-25	01:12	18,700	18,700	0	윤0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기5로 66	폐문부재	2024- 02-07
51	20222035	813나7028	포터 II 냉동탑차 (PORTER II)	000047339214201 20231225000134	구로디지털단 지역	0000:25	2023-11-16	11:02	2023- 11-16	11:27	1,300	1,300	0	강0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587길 20	폐문부재	2024- 02-07
52	20221992	92라5305	MASADA 2번	000047339214201 20231225000110	계화산역	0001:42	2023-11-15	00:09	2023- 11-15	01:51	700	700	0	강0희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96번길 58	폐문부재	2024- 02-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 기한
53	20222324	서울32사1708	니로 EV	000047339214201 20231225000058	동구로	0001:02	2023-11-27	00:44	2023- 11-27	01:46	100	100	0	최0승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곡로38길 37	폐문부재	2024- 02-07
54	20222027	서울34라9295	아반떼	000047339214201 20231225000035	학여울역	0001:29	2023-11-18	10:44	2023- 11-18	12:13	4,600	4,600	0	정0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1길 54-8	폐문부재	2024- 02-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1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39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01조1175	㈜*송지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0-01 23:22	용산03_강변북로(일산)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2	02오7854	황*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0-01 14:48	중랑03_망우리고개 1차로	"	"
3	19러1375	변*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01 08:24	용산02_강변북로(구리) 3차로	"	"
4	48수4454	문*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03 19:51	강서02_개화역 1차로	"	"
5	01나4449	함*욱	서울특별시 중구	2023-10-05 17:11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1차로	"	"
6	40오8541	㈜*렌트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0-05 17:47	강남11_밤고개로 3차로	"	"
7	04구4213	마*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06 14:35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8	75부3592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3-10-08 16:14	구로06_개봉교후방 1차로	"	"
9	55나9536	김*응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10-12 12:21	강남07_삼성역 1차로	"	"
10	90루6225	박*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0-13 10:26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 순환로) 4차로	"	"
11	03부9655	황*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10-14 12:21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2차로	"	"
12	09모4838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0-14 10:18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	"
13	33다7898	최*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0-14 15:53	서초04_사당IC진출로 1차로	"	"
14	46조3302	황*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0-16 12:19	금천03_시흥대로(시흥IC) 4차로	"	"
15	09누7635	조*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10-17 00:29	용산02_강변북로(구리) 3차로	"	"
16	03모9273	김*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0-18 12:48	서초01_올림픽대로(공향) 5차로	"	"
17	70어1538	김*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21 17:40	금천07_호암로 2차로	"	"
18	04너7024	해*에이치아이에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10-22 17:42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3차로	"	"
19	92어5352	김*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10-22 01:19	서초05_양재IC 4차로	"	"
20	04교636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23 15:34	마포03_성산로(연희C) 1차로	"	"
21	47너8070	양*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24 16:09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	"
22	05주4134	이 *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10-26 12:31	강남08_수서IC 2차로	"	"
23	65주5572	임*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0-26 12:19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서C) 1차로	"	"
24	93구4072	백*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26 12:54	은평04_구기터널(진흥로) 2차로	"	"
25	03보6592	주*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0-27 13:10	관악02_남부순환로(낙성대역)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6	70도5219	주-*리에프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10-28 17:56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27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28 14:41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	"
28	02부8957	윤*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0-29 13:17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1차로	"	"
29	06구1063	장*혁(장*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0-29 17:44	용산02_강변북로(구리) 4차로	"	"
30	39다1060	쥬파*컴인프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29 20:08	강남11_밤고개로 3차로	"	"
31	70머2310	정*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0-29 17:55	중랑01_북부간선도로 1차로	"	"
32	38다5060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0-30 12:06	마포01_강변북로(서울) 5차로	"	"
33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3-10-31 16:22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34	03버6346	이*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0-31 12:56	노원02_덕릉로(당고개) 2차로	"	"
35	05너7304	정*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10-31 15:11	강동05_상일IC 3차로	"	"
36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31 08:22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37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0-31 09:21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호평동방면 1차로	"	"
38	52소5164	C*1 MEIYIN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0-31 16:12	용산03_강변북로(일산) 4차로	"	"
39	80로5380	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10-31 22:43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4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끝.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차량번호)	()	생년월일	
	주소	()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부과일자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16	24. 1. 23.	주식회사 광야 이선주 110111-873684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39-13, 3층(양재동)
2	203917	24. 1. 23.	주식회사 한성이앤씨 한상일 110111-55075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95, 영진빌딩 4층(석촌동)
3	203918	24. 1. 23.	주식회사 수운 김치래 110111-78740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18, 우리빌딩 1,2층(서초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자	202833	주식회사 아센디오 한승일 110111-02539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마스터스빌딩 8층(논현동)	24. 1. 23.	분할
	양수자	-	주식회사 수호이미지랩스 김법준 110111-882147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909-10, 912호(가산동, 가산더블유센터)		
2	양도자	203370	주식회사 디비메탈 김경덕 110111-3836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디비금융센터)	24. 1. 23.	분할
	양수자	-	주식회사 디비월드건설 김경진 110111-8820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33층(대치동, 디비금융센터)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9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 사유 : ' 24. 1. 17. 일상경비 관인 분실에 따른 직인 재등록

2. 직인 등록 일자 : ' 24. 1. .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01. .	신규 등록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1.10.09.	분실(폐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후 재산(부동산)압류 통지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50433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12 인우빌딩	수도요금	2022.12 등 7납기	7회	15,874,36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12 토지 및 건물(101호,501호,601호)	윤석근 박정미	481115-1***** 541125-2***** (등기번호110500156622 1 / 110500243845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115동 301호	15,874,360원	2024. 1. 4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3146-35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4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

가. 표석 설치 개요 : 신설 7건, 이설 및 문안수정 1건

연번	구분	표석명	표석 설치 위치	토지 소유자	형태 및 규격(cm)
1	신설	김성옥 의사 순국지	- 설치지 : 종로구 효제동 21도 (종로5가, 효제동, 김성옥 의거터 버스정류장) - 유적지 : 종로구 효제동 73, 74, 75	국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2	신설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	- 설치지 : 종로구 와룡동 139-4도 (이화회관 빌딩 옆 주차장 인근) - 유적지 : 종로구 윤니동 24-1	시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50×50 내외 재질 : 오석
3	신설	조선민족대동단 만세 시위지:안국동 광장	- 설치지 : 종로구 송현동 49-14도 (열린송현 녹지광장 옆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일대	시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4	신설	조선민족대동단 이신애 활동 터	- 설치지 : 종로구 인사동 4-1도 (인사 샤프점 입구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인사동 7	구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50×50 내외 재질 : 오석
5	신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황애시덕 활동 터	- 설치지 : 종로구6가 15-11도 (서울게임아카데미 앞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종로6가 20-3	시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50×50 내외 재질 : 오석
6	신설	3.1운동을 추진한 학생단 거점	- 설치지 : 종로구 관수동 144-2도 (송암빌딩 앞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관수동 144	시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50×50 내외 재질 : 오석
7	신설	조선청년회연합회 회관 터	- 설치지 : 종로구 신문로1가 5-4도 (오피시아빌딩 앞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신문로1가 163	시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8	이설 문안 수정	복수천	- 현위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4학 - 이전 설치지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6 (복수천 약수터 옆) - 유적지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6 (이화여자대학교 법인행정동 내)	학교 법인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나. 설치 사유

- (신설) 서울 소재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에 표석을 신규 설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며 항일독립운동 중심지로서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설 및 문안 수정) 시민들에게 유적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당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다. 세부 설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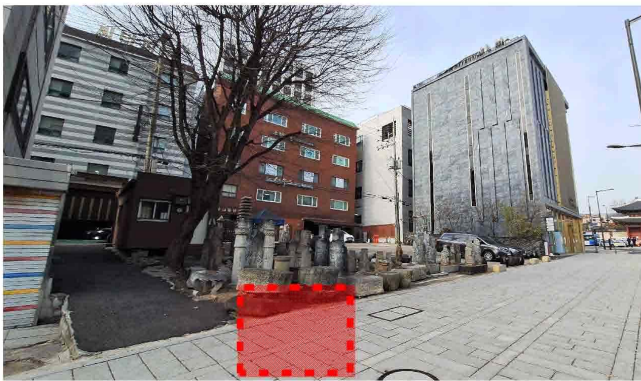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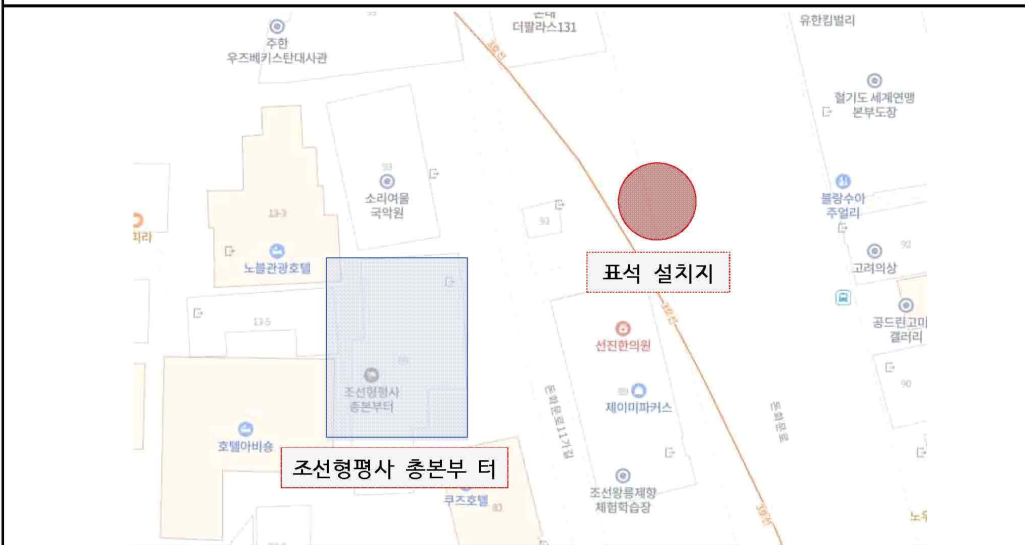
① [신설] <김상옥 의사 순국지>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김상옥 의사 순국지 金相玉義士殉國址 Site of Kim Sangohk's Martyrdom
문 안	독립운동가 김상옥(1889~1923) 의사가 순국한 곳이다.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 의거를 일으킨 김상옥 의사는 2차 의거를 모색하다가 일본 경찰의 포위가 좁혀 오자 효제동으로 은신하였다. 1월 22일 이곳에서 일본 경찰 등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순국하였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효제동 21도 (종로5가, 효제동, 김상옥 의거터 버스정류장) ○ 유적지 : 종로구 효제동 73, 74, 75 ○ 규격 : 35(W)×70(H)×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② [신설]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 朝鮮衡平社總本部址 Site of Joseon Hyeongpyeongsa (Korean Equalization Society) Headquarters
문 안	1926년부터 1933년 4월까지 조선형평사의 본부가 있던 곳이다. 1923년 진주에서 결성된 조선형평사는 소위 백정의 신분 해방과 권익 옹호, 공평한 사회 건설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형평 운동을 혁신하고자 서울로 본부를 이전한 형평사는 1937년 5월 일제의 압력으로 해체될 때까지 형평 운동을 이끌었다.

설치 위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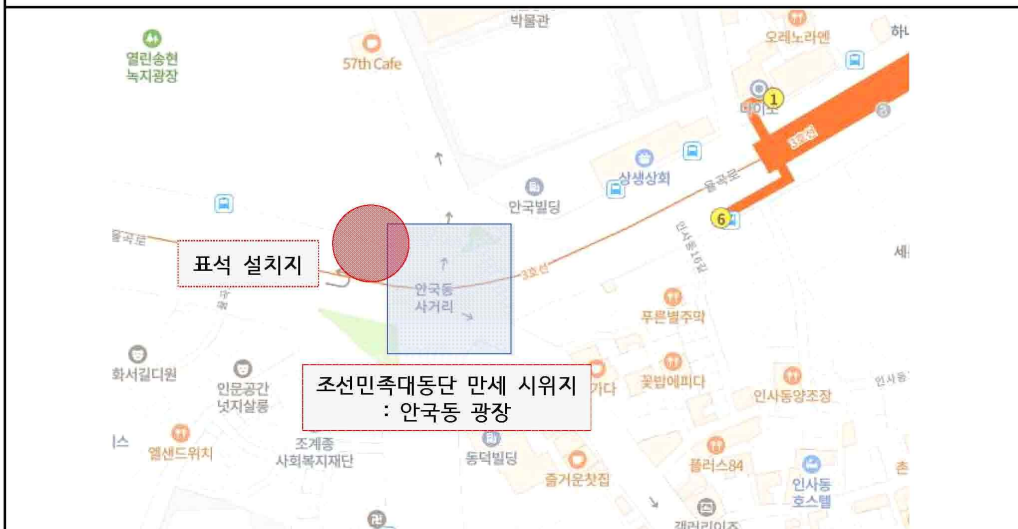
- 설치지 : 종로구 와룡동 139-4도 (이화회관 빌딩 옆 주차장 인근)
- 유적지 : 종로구 운니동 24-1

- 규격 : 50(W)×50(H)cm
- 재질 : 오석

③ [신설] <조선민족대동단 만세 시위지 : 안국동 광장>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조선민족대동단 만세 시위지 : 안국동 광장 朝鮮民族大同團萬歲示威址 : 安國洞廣場 Site of Joseon Minjok Daedongda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Independence Demonstration at Anguk-dong Square
문 안	1919년 11월 28일 조선민족대동단이 주도한 서울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이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연계하여 조직한 조선민족대동단의 단원들은 이곳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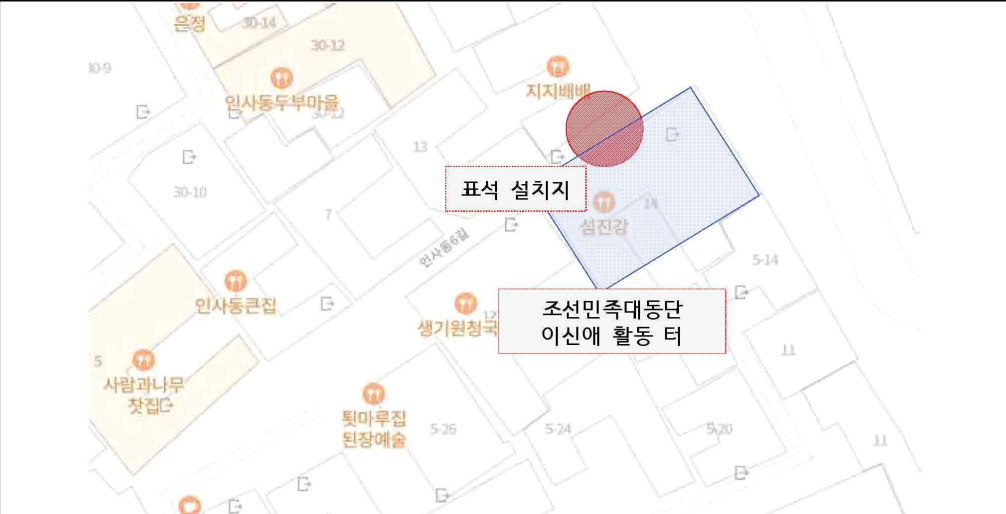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송현동49-14도(열린송현 녹지광장 옆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일대

- 규격 : 35(W)×70(H)×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④ [신설] <조선민족대동단 이신애 활동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조선민족대동단 이신애 활동 터 朝鮮民族大同團 李信愛活動址 Site of Joseon Minjok Daedongda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Lee Sin-ae's Patriotic Deed
문 안	1919년에 조선민족대동단의 여성 대표 이신애(1891~1982)가 활동하던 곳이다. 박정선, 한일호 등의 동지를 규합하여 '부인단'을 구성한 이신애는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 깃발 등을 제작하여 같은 해 11월 28일 안국동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인사동 4-1도 (인사 샤프트정 입구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인사동 7 ○ 규격 : 50(W)×50(H)cm ○ 재질 : 오석	

⑤ [신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황애시덕 활동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황애시덕 활동 터 大韓民國愛國婦人會 黃愛施德活動址 Site of Daehan Aeguk Buinhoe (Korean Patriotic Women's Society): Hwang Esther's Patriotic Deed
문 안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활동을 주도한 황애시덕(에스터, 1892~1971)이 거주하던 곳이다. 1919년 여성 독립운동 단체 결성에 힘쓰다 고초를 겪은 황애시덕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총무 겸 편집인으로서 부인회를 이끄는 한편,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 청년 단체와 연계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설치 위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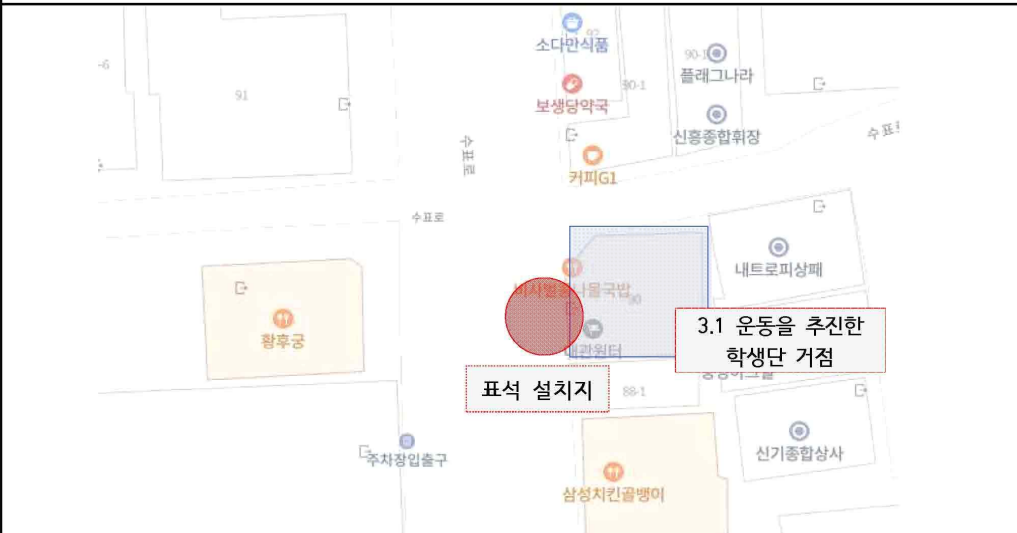
- 설치지 : 종로구 종로6가 15-11도 (서울게임아카데미 앞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종로6가 20-3

- 규격 : 50(W)×50(H)cm
- 재질 : 오석

⑥ [신설] <3.1운동을 추진한 학생단 거점>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3.1 운동을 추진한 학생단 거점 三一運動推進學生團據點 Site of Student-Led March 1st Movement Meetings
문 안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 모인 서울 시내 학생 대표의 회합 장소다. 1월 말 이곳 대관원(大觀園)에 모인 학생 대표들은 세계 정세와 파리 강화 회의 상황 등을 논의하며 독립운동 사전 조직을 만들어 3·1 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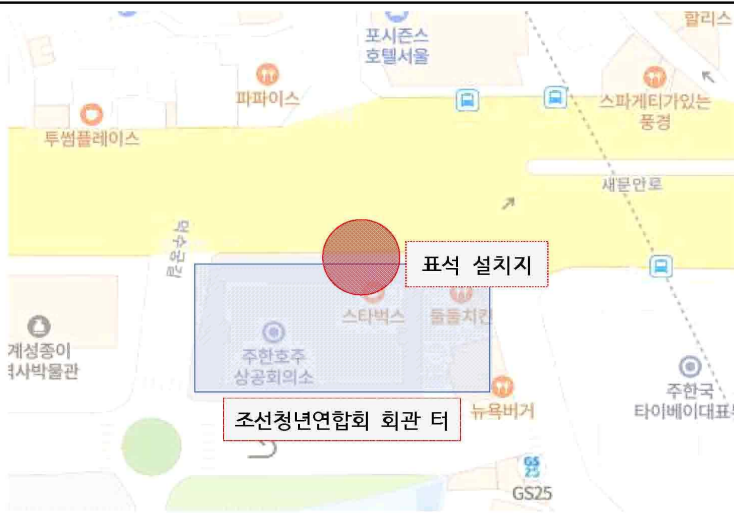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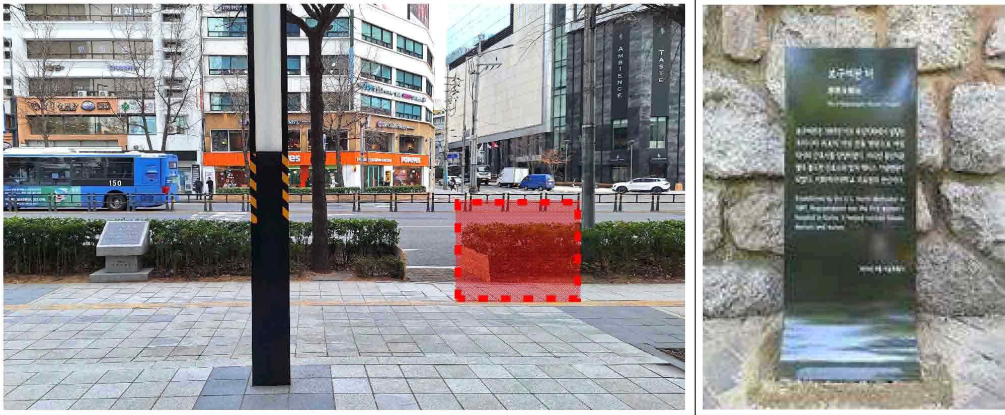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관수동 144-2도 (송암빌딩 앞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관수동 144

- 규격 : 50(W)×50(H)cm
- 재질 : 오석

7 [신설] <조선청년연합회 회관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조선청년회연합회 회관 터 朝鮮靑年會聯合會會館址 Site of Joseon Cheongnyeonghoe Yeonhaphoe (Korean Youth League)
문 안	1920년 12월 최초의 전국적 청년 단체로 결성된 조선청년회연합회의 본부가 있던 자리다. 연합회는 3·1 운동 이후 각지에 설립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전국적 단일 조직이었다. 사회의 혁신, 산업의 진흥 등을 지향하고, 기관지 『아성』을 발행하며 1924년 4월까지 청년 운동을 이끌었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신문로1가 5-4도 (오피시아빌딩 앞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신문로1가 163 ○ 규격 : 35(W)×70(H)×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⑧ [이설, 문안수정] 〈복수천〉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변경 전	복주우물 福主井 Bokju Well
	변경 후	복수천 福壽泉 Boksucheon Spring
문안	변경 전	복주우물은 복주 즉, 귀인(貴人)이 이용하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 우물 뒤쪽의 금화산은 공기와 물이 많아 장수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래서 복수산(福壽山)이라고도 하였는데 후에 음이 와전되어 복주산으로 불렸다. 이에 따라 산 아랫마을을 복주산동, 그 마을의 우물을 복주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변경 후	복수천은 인간의 오복(五福) 중 하나인 수(壽)를 돕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복주천(福主泉)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현재 복수천 약수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인행정동 아래 묻혀있는 복수천에 배관을 연결하여 새롭게 조성한 약수터이다.
설치 위치 및 형태		
		
변경 전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4학	○ 규격 : 35(W)×70(H)×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변경 후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6 (복수천 약수터 내)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21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표식 설치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대 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 화 번 호	
	주 소			
의견제출 내용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4.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4. 2. 15. ~ 2024. 2. 28.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4. 2. 15. ~ 2024. 4. 14.(60일간)
 -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F A X: 02-2133-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과테료

부과일자 2024-01-01 / 납기일자 2024-02-29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1	1078832819399	기타	5602**-*****	최*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7길 18-26	이동상인	150,000	2023-08-14 14:37
2	1078832819400	기타	5602**-*****	최*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7길 18-26	이동상인	150,000	2023-08-14 14:55
3	1078832819401	기타	5602**-*****	최*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7길 18-26	이동상인	150,000	2023-08-21 14:37
4	1078832819337	이사불명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150,000	2023-08-15 10:30
5	1078832819338	이사불명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150,000	2023-08-15 14:00
6	1078832819339	이사불명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150,000	2023-08-02 13:44
7	1078832819340	이사불명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150,000	2023-08-11 11:22
8	107883281934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08-16 12:47
9	107883281934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08-15 16:45
10	107883281934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1 11:26
11	107883281934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4 10:55
12	107883281934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7 10:43
13	107883281934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11 14:02
14	107883281934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15 11:0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15	107883281934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2 10:40
16	107883281935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4 10:51
17	1078832819351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5 10:36
18	1078832819352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9 13:33
19	1078832819353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30 10:40
20	107883281935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31 11:06
21	107883281935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12 10:48
22	107883281935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2 13:05
23	107883281935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1 13:40
24	107883281935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2 10:32
25	107883281935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2 13:07
26	107883281936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4 11:56
27	1078832819361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6 10:45
28	1078832819362	기타	4811**--*****	김*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8-29 11:09
29	1078832819363	기타	4811**--*****	김*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8-17 12:55
30	1078832819364	기타	4811**--*****	김*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8-27 10:5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31	1078832819365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10 14:13
32	1078832819366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11 10:40
33	1078832819367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16 12:46
34	1078832819368	기타	5200*-*****	김*호	서울특별시 용대문구 외대역동로 12가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8 12:26
35	1078832819369	주소불명	6502*-*****	김*민	서울 관악구 동천8동	기부양정	150,000	2020-08-20 09:28
36	1078832819370	기타	6701*-*****	남*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18번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05 16:18
37	1078832819371	기타	6501*-*****	박*일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64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0 10:23
38	1078832819372	기타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이동상인	150,000	2023-08-20 11:28
39	1078832819373	기타	6105*-*****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7-3	이동상인	150,000	2023-08-29 10:13
40	1078832819374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3-08-22 10:18
41	1078832819375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3-08-01 10:40
42	1078832819376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3-08-30 11:08
43	1078832819377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3-08-17 11:11
44	1078832819378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3-08-22 12:21
45	1078832819379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이동상인	150,000	2023-08-22 12:44
46	1078832819380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08-21 10:29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47	1078832819381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08-29 10:02
48	1078832819382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08-15 13:06
49	1078832819383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08-25 11:12
50	1078832819384	기타	6202**--*****	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기부요청	150,000	2023-08-30 17:55
51	1078832819385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14 13:25
52	1078832819386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16 12:25
53	1078832819387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16 13:09
54	1078832819388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17 12:00
55	1078832819389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19 11:12
56	1078832819390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21 13:49
57	1078832819391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22 13:53
58	1078832819392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24 12:02
59	1078832819393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04 12:11
60	1078832819394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07 11:09
61	1078832819395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8-10 12:13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2133-4350 FAX : 02-2133-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6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독촉고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4. (14일간)
 - 과태료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 3%가 부과되었으며, 증가산금 1.2%씩(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2024년 1월 독촉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1	1078832840619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2023-06-30 12:35
2	1078832840621	폐문부제	2024-01-18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2023-06-21 11:08
3	1078832840622	폐문부제	2024-01-18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2023-06-08 12:24
4	1078832840623	폐문부제	2024-01-18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2023-06-15 09:41
5	1078832840624	폐문부제	2024-01-18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2023-06-15 11:19
6	1078832840625	폐문부제	2024-01-18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2023-06-10 15:34
7	1078832840626	기타	2024-01-18 11:01	7511**-*****	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로길 24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3-06-19 11:50
8	1078832840627	기타	2024-01-18 11:01	7511**-*****	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로길 24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3-06-24 14:38
9	1078832840628	기타	2024-01-18 09:51	6202**-*****	이*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기부요청	2023-06-10 09:16
10	1078832840629	기타	2024-01-18 06:17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정승배기로27길	기부요청	2023-06-12 09:32
11	1078832840630	폐문부제	2024-01-18 13:51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2023-06-01 11:39
12	1078832840631	폐문부제	2024-01-18 13:51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2023-06-03 10:34
13	1078832840632	폐문부제	2024-01-18 13:51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2023-06-03 13:19
14	1078832840633	폐문부제	2024-01-18 13:51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2023-06-03 14:04
15	1078832840634	폐문부제	2024-01-18 13:51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2023-06-17 14:47
16	1078832840635	폐문부제	2024-01-18 13:51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2023-06-05 10:55
17	1078832840636	기타	2024-01-18 13:50	7201**-*****	임*환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81번길 37 B동	이동상인	2023-06-12 10:5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판일시
18	1078832840640	주소불명	2024-01-12 08:21	4810**-*****	정*복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4동	이동상인	2023-06-20 12:38
19	1078832840641	주소불명	2024-01-12 08:21	4810**-*****	정*복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4동	이동상인	2023-06-08 10:33
20	1078832840290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4 11:00
21	1078832840287	기타	2024-01-18 11:01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2023-06-20 18:06
22	1078832840286	기타	2024-01-18 11:01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2023-06-14 16:39
23	1078832840288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27 10:25
24	1078832840289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6 10:32
25	1078832840291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3 10:29
26	1078832840643	주소불명	2024-01-12 10:08	4408**-*****	정*수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69길	이동상인	2023-06-30 12:52
27	1078832840644	기타	2024-01-18 08:57	5602**-*****	최*숙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7길	이동상인	2023-06-15 14:02
28	1078832840572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0 09:36
29	1078832840573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06 11:07
30	1078832840574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07 10:56
31	1078832840575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07 12:15
32	1078832840576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08 12:10
33	1078832840649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05 10:52
34	1078832840646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25 14:29
35	1078832840647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27 10:5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36	1078832840648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28 11:07
37	1078832840650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07 10:46
38	1078832840651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07 11:54
39	1078832840577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3 11:29
40	1078832840578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3 13:20
41	1078832840579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4 12:22
42	1078832840580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4 12:46
43	1078832840581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09 12:37
44	1078832840652	이사불명	2024-01-11 13:01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55	이동상인	2023-07-14 10:57
45	1078832840582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01 10:27
46	1078832840583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12 11:08
47	1078832840584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20 10:42
48	1078832840585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21 13:24
49	1078832840586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22 10:26
50	1078832840587	기타	2024-01-18 08:5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2023-06-27 13:33
51	1078832840588	수취거절	2024-01-12 11:54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2023-06-21 10:27
52	1078832840589	수취거절	2024-01-12 11:54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2023-06-17 09:45
53	1078832840590	수취거절	2024-01-12 11:54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2023-06-15 10:1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54	1078832840591	수취거절	2024-01-12 11:54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2023-06-14 10:32
55	1078832840592	수취거절	2024-01-12 11:54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2023-06-10 10:30
56	1078832840593	수취거절	2024-01-12 11:54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2023-06-25 11:00
57	1078832840594	기타	2024-01-18 10:1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64	이동상인	2023-06-17 11:21
58	1078832840595	기타	2024-01-18 10:1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64	이동상인	2023-06-10 13:57
59	1078832840596	기타	2024-01-18 10:1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64	이동상인	2026-06-08 10:55
60	1078832840597	기타	2024-01-18 10:1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64	이동상인	2023-06-17 11:10
61	1078832840598	기타	2024-01-18 10:1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64	이동상인	2023-06-29 13:51
62	1078832840600	기타	2024-01-18 09:28	6610*-*****	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20길	이동상인	2023-06-05 10:12
63	1078832840674	기타	2024-01-18 09:51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길 36-5	이동상인	2023-07-03 11:56
64	1078832840675	기타	2024-01-18 09:51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길 36-5	이동상인	2023-07-05 13:54
65	1078832840676	기타	2024-01-18 09:51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길 36-5	이동상인	2023-07-05 14:45
66	1078832840605	폐문부재	2024-01-18 10:25	5108*-*****	배*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0-5	이동상인	2023-06-28 10:55
67	1078832840677	기타	2024-01-18 09:51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길 36-5	이동상인	2023-07-12 10:42
68	1078832840607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2023-06-01 10:57
69	1078832840608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2023-06-02 13:03
70	1078832840609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2023-06-03 10:40
71	1078832840610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2023-06-03 10:4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발견명	위반일시
72	1078832940611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19 10:48
73	1078832940612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09 11:28
74	1078832940613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21 13:38
75	1078832940614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22 10:11
76	1078832940615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23 10:11
77	1078832940616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27 10:49
78	1078832940617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27 12:08
79	1078832940618	기타	2024-01-18 08:51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성인	2023-06-28 10:14
80	1078832940599	기타	2024-01-17 18:00	5206**-*****	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대역 동로 12가길	이동성인	2023-06-07 12:3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9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 24.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 24.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산업입지와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4.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산업입지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산업입지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산업입지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4.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폐 기 일 자	비 고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략산업기반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4.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략산업기반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전략산업기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전략산업기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동 ****호(용현동)	일시: 2023-11-27 15:05 장소: 고강지하차도 입구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1. 2.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2. 29.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 ***동 ****호(산곡동)	일시: 2023-11-29 10:5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상행) 내용: 운행제한 높이 0.31m 초과	처분일: 2024. 1. 2.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24. 2. 29.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쥬티*이* 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 제***호 중 *호(마전동)	일시: 2023-08-31 10:22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1.44t 초과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12. 31.
문*기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51번길 ****(원종동)	일시: 2023-09-18 08:17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2.42t 초과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23. 12. 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경	경기도 오산시 궤동로69번길 **, ***호(궤동)	일시: 2023-09-21 10:39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상행)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9m 초과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15만 원 납기일: 2023. 12. 31.

4. 공고기간: 2024. 2. 1.~2024. 2. 14.

5. 납부기한: 2024. 2. 29.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삼강행실 효자도 (三綱行實 孝子圖)	1책	33.2×21	조선 성종 연간	서울시 동대문구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사월 (史鉞)	2책	24.6×14.8	조선 성종 연간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소보우공주의 (少保于公奏議)	12책	33.4×21.2	1520년 (중종 1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고열녀전(언해) (古烈女傳(諺解))	1책	31.5×20.2	1543년 (중종 38)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삼강행실도(언해) (三綱行實圖(諺解))	1책	39.5×21.8	조선 선조 연간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서궁일기 (西宮日記)	3책	34×25	1846~1847년 (헌종 12~13)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수선총도 (首善總圖)	1점	76.7×84.3	19세기 중반 추정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재

【삼강행실 효자도(三綱行實 孝子圖)】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세종 16)에 직제학(直提學) 설순(楔循 ?-1435) 등이 세종의 명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물 가운데 부위자강(父爲子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의 삼강(三綱) 즉 효·충·열에 모범이 될 만한 효자·충신·열녀 각 110인을 가려 뽑아 그림과 글로써 엮은 책이다. 이 중 <효자도>는 조선에서 유교의 근본 강령인 ‘효행(孝行)’을 교화 학습시킬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효행 사례를 발굴하여 편찬한 국민윤리에 관한 교육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 교화서적이다. 이 책은 권수에 세종이 내린 교지(教旨), 그다음에 맹사성(孟思誠)의 진전문(進箋文), 권채(權採)의 서문(序文), 효자도의 총목과 세부 목록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세종 14(1432)년에 정초(鄭招)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 대상본은 표지는 근래 새로 개장되어 있으나, 권수의 진전문과 서문을 비롯하여 도상과 본문, 그리고 권말의 발문까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삼강행실 효자도>는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다시 복각한 중간본이다.

조사 대상본이 비록 원간본을 복각 간행한 중간본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원간본의 원형을 살필 수 있다는 점과 국내에 그 전존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한문학 연구, 미술사 연구의 자료로 평가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월(史劒)】

『사월(史劒)』은 중국 명대 안벽(晏璧)이 편찬한 책으로, 역사의 주벌(誅罰)이라는 의미로 『춘추』에서 붓으로 주벌한다는 “필주(筆誅)”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중국 역대 역사 인물을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간략히 평가한 인물고(人物考)의 성격을 지닌 책이다. 이 책은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은 권1~10까지의 권차가 구분되어 있으나, 하권은 권차의 구분이 없이 각도(道)를 구분하고 도 내에서 내용의 항목만 구분하였다. 권수(卷首)에는 1398년에 작성된 동륜(董倫)의 서문과 1410년에 작성된 안벽(晏璧)의 서문이 있고 장차의 구분 없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의 내용은 삼강 중에 첫 번째인 군위신강(君爲臣綱)에 해당하는 군도(君道)와 신도(臣道)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성종 15년(1484)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진자(甲辰字) 소자(小字)를 사용하여 인출한 책이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하였으며 제침 없이 표지 서명을 필사하였다. 이 책은 조선 전기 금속활자인 갑진자의 소자로만 본문을 인쇄한 책으로 인쇄사적 가치가 있다. 갑진자의 인본은 여러 종류가 전래되고 있지만, 이 책처럼 모두 소자로 간행한 책의 전래는 드물어서 희귀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 현전본이 비교적 여러 소장처에 완질과 낙질로 전해지고 있음이 확인되나, 지정 신청 자료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는 중국 명나라의 무장 우겸(于兼, 1398~1457)의 주의류(奏議類) 글 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모두 10권 12책이다. 존경각 소장 조사대상본은 내사기가 있는 금속활자본으로 1520년경에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표지 서명은 ‘우공주의(于公奏議)’이다. 10권으로 구성된 주의(奏議) 내용은 권1~2가 북벌류(北伐類), 권3~4가 남정류(南征類), 권5~10이 잡행류(雜行類)이다.

존경각 소장 『소보우공주의』는 1520년 8월에 당시 예문관 검열이었던 김연(金緣, 1487~1544)에게 반사한 책으로 안동의 오천 광산김씨 종가에서 소장했던 전적이라는 것을 장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책은 본문에 결락된 것이 없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권4의 표지에 약간의 결락이 있으나 원형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소보우공주의』는 국내에 현 전본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고려대 만송문고에 권1-3의 3책이 낱질로 남아 있고, 국외에는 일본의 호사분코(蓬左文庫)에 완질이 전해진다. 현존하는 판본이 매우 희귀함에 따라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어문학, 군사학, 서지학 연구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열녀전(언해)(古列女傳(諺解))】

<고열녀전(언해)(古列女傳(諺解))>는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劉向, 기원전 77년~6년)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을 조선 중종 38년(1543) 말에서 중종 39년(1544) 사이에 한글로 번역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비록 권4 한 권만 남아 있는 영본(零本)이지만, 「중종실록」 및 어숙권의 『패관잡기』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국내 유일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현존하는 한글 번역본이 모두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필사본임에 비해 조사 대상본 만이 유일하게 그림과 한문 원문 및 언해문을 갖춘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종 대의 출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의 삽화를 조선 전기 대표적인 인물 화가인 이상좌가 그렸다는 사실은 회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의 언해문은 국어사적으로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傍點)과 ‘△’, ‘○’의 잔존, 타 문헌에서 찾기 힘든 한자들의 한자음 등이 반영되어 있어 16세기 언어 사실을 살피는 데에 유용한 자료적 가치도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본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유일한 간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내용을 줄여서 상단에 한글로 번역문을 붙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것이 초기 언해본으로 추정된다. 효자, 충신, 열녀 중 각 35명을 간주려 뽑아 105명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효자편에는 각 주인공의 효행 사례를 도상으로 그려서 앞쪽에 수록하고, 다음에 한자를 사용하여 효행 사실을 본문으로 넣고 이어서 시(詩)와 찬(贊)을 배치했다. 상변란 위쪽 서미(書眉)에 언해(국한문혼용)하였다. 시(詩) 부분은 명 초에 간행된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수록된 칠언절구 2수를 옮겨 실었고, 찬(贊)이 없는 경우는 시까지만 수록하고 있다. 본문과 시, 찬은 모두 읽기 쉽게 백권점(白圈點)으로 표점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언해>는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언해본 1권으로 간추려 편찬하고, 이 판을 저본으로 1580년경 전라남도 곡성현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해 중간본이다. 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동일판본이 매우 희귀하다. 또한 이 자료에는 방점 표기의 혼란 및 음운 표기, 문법 등에서 16세기 한글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한글 변천사 뿐만 아니라, 서지학 및 판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 및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서궁일기(西宮日記)】

『서궁일기』는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와 그 아들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실기문학(實記文學)이다. 『계툑일기』라고도 불리는 이 필사본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실 여성의 삶과 당시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현재 남아 있는 이본 중 원본에 가장 가깝고 필사 시기가 빠르다. 2권 본문 안에 병오년(1846) 및 3권에 정미년(1847)의 필사기가 있다. 원본에 가까운 또 다른 이본인 낙선재본 『계툑일기』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영인된 것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본 『서궁일기』는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읽기가 활발해지는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여성사적인 가치가 매우 큰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필사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처로 표기했지만) 여성사적인 가치가 크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읽기, 글쓰기와 의식 성장, 여성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알려주는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수선총도(首善總圖)】

『수선총도』는 목판본(일부 채색) 서울지도로 목판 인쇄된 부분과 필사된 부분이 혼합된 것으로 서울지도에는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의 사산(四山)과 도성 내부는 목판으로 인쇄하였고 서대문과 남대문 외부 지역은 필사하여 그려 넣었다. 목판 인쇄된 부분에는 일부 채색을 가미하였다. 용산역사박물관본에는 서울역사박물관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한양도성의 서대문과 남대문 바깥 지역을 그려 넣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성저십리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거주민도 많은 곳이다. 지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조선시대 서울의 난전(亂廛)인 칠패(七牌)가 남대문 밖에 표시되어 있고 서소문 밖으로는 초물전(草物廛), 어물전(魚物廛), 상전(床廛), 미전(米廛)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용산역사박물관 『수선총도』는 목판본 서울지도에 도성의 서부, 남부 지역을 필사하여 보완한 서울지도로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희귀성을 지니고 있다. 현존하는 목판본 『수선총도』(서울역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소장)와 동일 판본이지만 수정되기 이전의 초판을 인쇄한 점에서 『수선총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의 내용으로 볼 때 목판본 『수선총도』 제작 시기보다 후대인 19세기 중반경에 필사 보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난전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서울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평가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 ① 전화 : (02) 2133-2630
 -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삼강행실 효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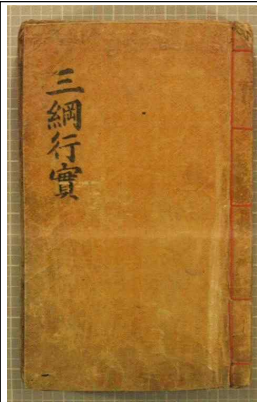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삼강행실 효자도 (三綱行實 孝子圖)
수 량	1 책	규 격 (cm)	33.2×21
재 료	종이	소유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시 대	조선 성종 연간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관 수장고)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세종 16)에 직제학(直提學) 설순(僉循 ?-1435) 등이 세종의 명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물 가운데 부위자강(父爲子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의 삼강(三綱) 즉 효·충·열에 모범이 될 만한 효자·충신·열녀 각 110인을 가려 뽑아 그림과 글로써 엮은 책이다. 이 중 <효자도>는 조선에서 유교의 근본 강령인 ‘효행(孝行)’을 교화 학습시킬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효행 사례를 발굴하여 편찬한 국민윤리에 관한 교육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 교화서적이다. - 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효자도(孝子圖)의 편찬에는 중국의 인물이 87명, 한국의 인물은 신라 2명, 백제 2명, 고려 7명, 본국(朝鮮) 12명 등 23명을 포함하여 모두 110인의 효행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인물은 한(漢)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당(唐) 11명, 송(宋) 10명, 원(元) 10명 순이다. - 이 책은 일반적으로 권수에 세종이 내린 교지(教旨), 그 다음에 맹사성(孟思誠)의 진전문(進箋文), 권채(權採)의 서문(序文), 효자도의 총목과 세부 목록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 목록에 이어 ‘三綱行實 孝子圖’라는 권수제(卷首題) 다음에 <순제대효(舜帝大孝)>라는 항목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어 110인의 효행 사례가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권말에는 세종 14(1432)년에 정초(鄭招)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 편성 체제는 먼저 주인공의 효행 사례를 도상으로 그려서 맨 앞쪽에 수록하고 다음에 효행의 내용을 한문으로 기술하고 시(詩)와 찬(贊)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인 전도후문(前圖後文)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詩)부분은 명초에 간행된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수록된 칠언절구(2수)를 옮겨 실었고, 찬(贊)의 내용은 고려에서 편찬된 『효행록(孝行錄)』에 실린 이제현(李齊賢)의 찬을 전재한 것이다. 이 두 책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는 편찬에 참여한 집현전의 학사들이 분담 찬문하였다. 본문과 시, 찬은 모두 읽기 쉽게 백권점(白圈點)으로 표점해 두어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 현재 <효자도> 판본은 국내에 원간본인 덕원당, 고려대, 유탁일 소장본 3점과, 중간본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 1점 등 모두 4점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덕원당 소장본은 2011년에 보물 제1717호로 지정되었다. - 이 중 이번 조사 대상본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지정 신청한 중간본이다. 중간본은 원간본(原刊本)에 비해 장방형 자체(字體)의 정밀함이 없어지고 도상(圖像)에서도 둔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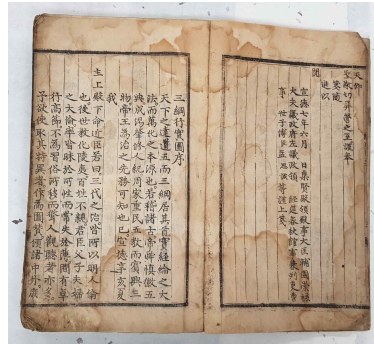
	느낌을 보이고 있어 원간본을 저본으로 재차 번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간본의 판식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판면에는 계선(界線)이 보이고 있다. 광곽의 크기는 세로 26.0cm×17.0cm이다. 행자수는 반엽을 기준으로 13행이며, 매 행은 22자씩 배자되어 있어 조밀한 느낌을 준다. 판심의 상하에는 대흑구(大黑口)가 보이고 있으며, 어미는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미 사이에 ‘孝子圖’라는 판심제가 보이고 있고, 그 아래에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 이번 조사 대상본은 비록 중간본에 해당되지만, 표지가 다시 개장(改裝)된 것을 제외하고 전체 내용이 완전한 상태이다. 이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덕원당본(보물 1717)이 본문 4장의 발문이 일실되어 있기 때문에 원간본의 일실된 부분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2. 판화 부분 - 『삼강행실도』의 판화는 조선 초기의 화가 안견(安堅)이 밑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고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에 기록되어 있고, 김원용 교수 이하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안견의 작품이 극히 드문 현 상황에서 『삼강행실도』의 판화는 회화사에서 주목받아 왔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삼강행실도』(효자도)의 판화는 중간본으로써 안견의 원화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 구도나 화면 구성방식, 그리고 건물의 표현 등에서는 안견의 회화적 특징을 보이나 가장 중요한 인물표현에서는 중간본의 성격이 역력히 확인된다. - 즉 아마도 초간본이 보유하였던 섬세한 표현(특히 안면부)이 직선화되어 이목구비는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또 판화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刻手가 동원되어 표현방식과 수준이 다른 것이 확인된다. 판화의 印出 時에도 잘 된 것과 못된 것, 진한 것과 흐린 것, 실수로 먹이 백면에 묻은 것 등이 확인된다. 또 오염된 부분과 훼손된 부분도 여러 곳 확인된다. 3. 원형 유지 정도 - 조사 대상본은 표지가 근래 새로 개장되어 있으나, 권수의 진전문과 서문을 비롯하여 도상과 본문, 그리고 권말의 발문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조사 결과	4. 문화재 지정 여부 : 가 - 금번 지정 신청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사 대상본은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다시 복각한 중간본이다. - 조사 대상본이 비록 원간본을 복각 간행한 중간본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원간본의 원형을 살필 수 있다는 점과 국내에 그 전존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한문학 연구, 미술사 연구의 자료로 평가되어 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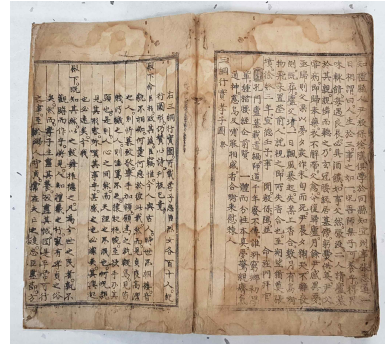
문화재 이미지



조사대상본



권수



권말

조사대상본

권수



본문



본문 판화 일부

【사월】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	-------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사월(史劔)
수 량	2책	규 격 (cm)	24.6×14.8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조선 성종 연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사월(史劔)』은 중국 명대 안벽(晏璧)이 편찬한 책으로, 역사의 주벌(誅罰)이라는 의미로 서명이 정해졌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벌준다는 의미의 주벌은 『춘추』에서 붓으로 주벌한다는 “필주(筆誅)”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중국 역대 역사인물을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간략히 평가한 인물고(人物考)의 성격을 지닌 책이다. 조사대상 『사월(史劔)』 2책은 조선 성종 연간에 주조한 갑진자 소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서적이다.
 - 안벽은 명대 초기에 활동한 인물로서 자는 언문(彦文)이고 강서성 여릉(廬陵, 지금의吉安市) 출신이다. 명나라 영락 2년(1404)에 산동안사사첨사(山東按察司僉事)를 지냈고 시를 잘 짓기로 유명했다. 그는 『사월(史劔)』의 서문에서 군신, 부자, 남녀의 관계를 규정한 삼강(三綱)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임을 전제하고 이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의 『춘추』에 이어 사마천, 반고 등의 기전체 정사와 사마광의 『자치통감』, 주희의 『통감강목』이 편찬되었지만 이들 역사책은 위로 삼황오제, 아래로는 송원(宋元)의 사적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또 편질이 방대하여 쉽게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사월(史劔)』은 명대 이전의 모든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유교 사상에 따라, 『춘추』의 필주를 구현한 책으로 볼 수 있다.
 - 조사대상인 『사월』은 상·하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권은 권1~10까지의 권차가 구분되어 있으나, 하권은 권차의 구분이 없이 각 도(道)를 구분하고 도 내에서 내용의 항목만 구분하였다. 동일한 내용으로 1548년에 간행된 중국본에는 20권으로 권차를 구분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 권수(卷首)에는 1398년에 작성된 동륜(董倫)의 서문과 1410년에 작성된 안벽(晏璧)의 서문이 있고 장차의 구분 없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의 내용은 삼강 중에 첫 번째인 군위신강(君爲臣綱)에 해당하는 군도(君道)와 신도(臣道)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도는 6항목으로 성군(聖君), 현군(賢君), 용군(庸君), 망국(亡國), 폭학(暴虐), 찬역(篡逆)으로 구분하였다. 신도는 21항목으로 열국(列國), 성현(聖賢), 현신(賢臣), 문신(文臣), 고절(高節), 충의(忠義), 강직(剛直), 염결(廉潔), 혹학(酷虐), 유마(諛馬), 간사(姦邪), 반역(反逆), 오호(五胡), 외번(外藩), 참위(僭僞), 위이적(爲夷狄), 외척(外戚), 중흥(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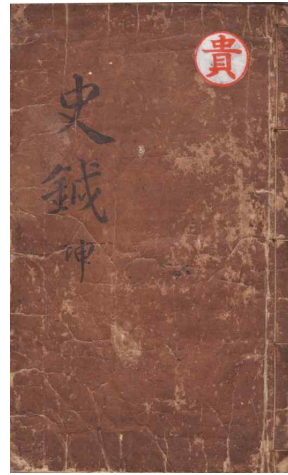
	興), 여화(女禍), 옹폐(雍蔽), 당화(黨禍) 등이다. 나머지는 자도(子道), 제도(弟道), 우도(友道), 후도(后道), 모도(母道), 부도(婦道), 외도(外道) 등이 본문 10장 정도의 분량이다. 전체 140장 중에 군도와 신도의 130장에 비해 매우 적은 분량이다. 각 항목의 제목 상단 서미(書眉)에는 제목을 필사하여 두었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5침안 선장으로 표지 서명은 '사월(史鉞)'이다. 각 인물이 바뀔 때마다 주색(朱色)과 묵색(墨色)의 필사로 격임 표시를 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적으로 책의 권차가 끝나면 장을 바꾸어 새로 시작하지만 이 책은 계속 이어서 조판하여 책의 형태적 분량을 줄이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내용 중에는 글자의 오식(誤植)이 더러 나타나기도 한다. - 국내에 알려진 것으로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도서관에 완질본이 남아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내각문고본이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낙질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계명대, 고려대 화산문고, 성암고서박물관, 화봉문고 등이 알려져 있다. - 조사대상본은 성종 15년(1484)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진자(甲辰字) 소자(小字)를 사용하여 인출한 책이다. 판식의 변란은 본문 제1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1.0cm 가로 12.1cm이다. 본문은 19행 19자로 매우 조밀하다. 크기는 세로 24.6cm 가로 14.8cm로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된 책이다. 판심제는 없으며 판심의 어미는 권상의 권7 이후부터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지만, 권6 이전까지는 흑구 없이 작은 크기의 상하내향흑어미이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하였으며 제침없이 표지 서명을 필사하였다. 표지 이면에는 후대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사 기록이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 조사대상 책은 표지를 후대에 개장하였으며, 서문과 함께 본문이 거의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 있다.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문에 누습으로 얼룩진 흔적이 있으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가 - 조사 대상본은 중국 명대 안벽(晏璧)이 편찬한 책으로 중국 역대 인물 연구에 활용할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조선 전기 금속활자인 갑진자의 소자로만 본문을 인쇄한 책으로 인쇄사적 가치가 있다. 갑진자의 인본은 여러 종류가 전래되고 있지만, 이 책처럼 모두 소자로 간행한 책의 전래는 드물어서 희귀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 현전본이 비교적 여러 소장처에 완질과 낙질로 전해지고 있음이 확인되나, 지정 신청 자료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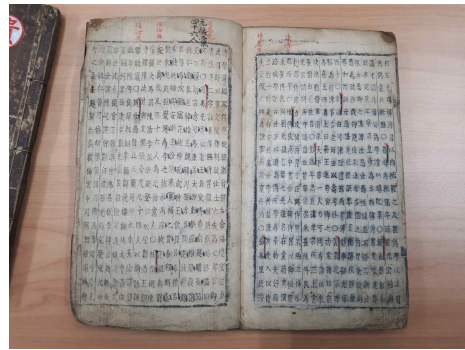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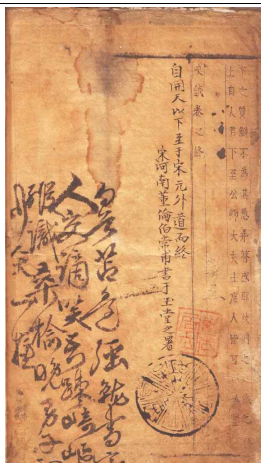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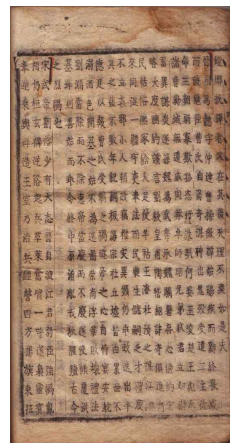
본문 첫장



본문 내용



마지막장



본문 내용

【소보우공주의】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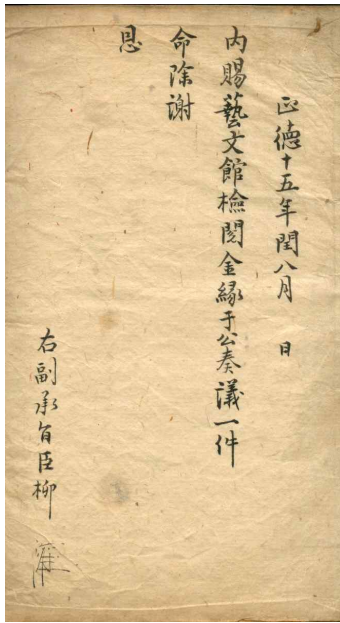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소보우공주의 (少保于公奏議)
수 량	12책	규 격 (cm)	33.4×21.2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520년(중종 15)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는 중국 명나라의 무장 우겸(于兼, 1398~1457)의 주의(奏議)를 편찬한 책이다. ○ 우겸(于兼)은 전당(錢塘, 절강성 향주) 사람으로 자는 정익(廷益),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 산서 순무(山西巡撫), 하남 순무(河南巡撫) 등을 지냈다. 시호는 숙민(肅愍)인데 나중에 충숙(忠肅)으로 바뀌었다. 명 황제 영종(英宗)이 몽골의 오이라트(瓦剌)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토목변(土木變)이 발생했을 때, 천도를 반대하고 항전(抗戰)을 주장하여 병부상서로서 군대를 이끌고 몽골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나중에 포로가 되었던 영종이 다시 즉위하자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저서로 『우충숙집(于忠肅集)』 등이 있다. ○ 조사대상인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는 우겸이 작성해서 올린 주의류(奏議類) 글 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모두 10권 12책이다. 권3과 권4를 상·하로 각각 구분하여 1책씩 만들었기 때문에 12책의 분량이 되었다. 권수(卷首)에는 이빈(李賓)이 1476년에 작성한 「소보우공주의서(小保于公奏議序)」가 있고 이어서 목록이 수록되었다. 표지 서명은 ‘우공주의(于公奏議)’이다. 10권으로 구성된 주의(奏議) 내용은 권1~2가 북벌류(北伐類), 권3~4가 남정류(南征類), 권5~10이 잡행류(雜行類)이다. ○ 조사대상본은 내사기가 있는 금속활자본으로 1520년경에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판식의 변란은 본문 제1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3.6cm 가로 16.5cm이다. 계선이 있고, 본문은 10행 18자, 책의 크기는 세로 33.4cm 가로 21.2cm이다. 표지는 처음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판심의 어미는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이고, 판심제는 ‘奏議’이다. 표지 이면에는 “正德十五年(1520)八月日 內賜藝文館檢閱金緣于公奏議一件 命除謝恩 左副承旨臣柳手決”이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으며, 서문 첫 장에는 내사인(內賜印) “宣賜之記”와 함께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이라는 오천 광산 김씨가 소장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표지는 연당초무늬의 능화판 문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로 제첩을 만들고 표지 서명을 적었다. 제1책에 이빈(李賓)이 쓴 서문과 목록이 있고, 권말에는 별다른 발문이나 간기가 없이 본문이 끝난다.

	○ 조사대상본은 1520년 8월에 당시 예문관 검열이었던 김연(金緣, 1487~1544)에게 반사한 책으로 안동의 오천 광산김씨 종가에서 소장했던 전적이라는 것을 장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연은 조선 중종 때 활동한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적(子迪) 또는 자유(子裕), 호는 운암(雲巖)이다. 할아버지는 김회(金淮)이고, 아버지는 생원 김효로(金孝盧)이며 어머니는 이지(李持)의 딸이다. 자식으로는 장남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 1516~1577)과 차남 읍청정(挹淸亭) 김부의(金富儀, 1525~1582)가 있다. 김연의 장서는 차자인 김부의의 장서인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김부의가 아버지인 김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서에 주로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중종 연간에 간행되었던 『삼국유사』, 『전한서』, 『명신언행록』,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 등의 책이 김연이 아들에게 물려준 장서로 확인된 바 있고, 그 밖에도 김부의·김부필 형제의 장서가 안동의 광산김씨 종가에 다량으로 전해져서 일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 조사 대상인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는 국내에 현전본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고려대 만송문고에 권1-3의 3책이 낙질로 남아 있고, 국외에는 일본의 호사분코(蓬左文庫)에 완질이 전해진다. ○ 최세진, 유대용, 어숙권 등에 의해서 편찬된 『이문집람(吏文輯覽)』, 『박고집람(駁稿輯覽)』, 『이문속집집람(吏文續集輯覽)』, 『주의택고집람(奏議擇稿輯覽)』, 『비부초의집람(比部招議輯覽)』 등과 함께 『우공주의집람(于公奏議輯覽)』도 간행된 바 있다. 풀이가 까다로운 한자어들을 한자, 언문, 이두 등으로 풀이하거나 대역하여 집람(輯覽)의 형식으로 편찬하는데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원형 유지 정도 ○ 조사대상 책은 본문에 결락된 것이 없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권4의 표지에 약간의 결락이 있으나 원형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가 ○ 조사대상본은 중국 명나라의 무장 우겸(于兼, 1398~1457)의 주의(奏議)를 분류하여 편찬한 책이다. 명대 초기의 군사 요직에 있던 우겸의 주의를 모은 것으로 그 내용이 당시 군사적인 상황과 정책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이다. 조선 전기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간행하고 김연(金緣, 1487~1544)에게 반사한 책이며, 현전본으로 매우 희소한 편이다. ○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안동의 오천 광산 김씨 장서로서 의미도 있다. ○ 현존하는 판본이 매우 희귀함에 따라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어문학, 군사학, 서지학 연구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첫장



표지



장서인



본문 첫장

【고열녀전(언해)】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	-------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고열녀전(언해) (古列女傳(諺解))
수 량	1책	규 격 (cm)	31.5×20.2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국립한글박물관
시 대	1543년(중종 38)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고열녀전(古列女傳)』은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劉向, 기원전 77년~6년)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을 중종 연간에 한글로 번역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한 『고열녀전』 언해본이다. 여기서 ‘열녀(列女)’는 “여러 여성”을 뜻하는데, 실제 유향이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실려 있는 현비(賢妃)와 정부(貞婦)들뿐만 아니라, 황제의 충애를 입고서도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망하게 한 요부(妖婦)들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찾고 정리하여 8편의 책을 만들었기에 『열녀전』은 ‘여자들의 전기’로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편찬된, 여자들의 생활 규범을 저술한 교과서인 셈이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열녀전』은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본 『열녀전』은 조선 태종 4년(1404)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을 통하여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고금열녀전』 110부+500부=610부가 유입되어 전국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배포되었으나,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상당수가 사라져 중종 연간에는 『고금열녀전』을 임금께 바친 일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유통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종의 왕명에 따라 이를 번역하고 간행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1517년), 마침내 1543년~1544년 경에야 목판본으로 간행되기에 이른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고열녀전(古列女傳)』 언해본 1책은 바로 이 때에 간행된 책의 실물 일부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 중종 대에 이루어진 『열녀전』의 번역 및 간행과 관련하여 여러 기록들이 전하고 있다. 먼저 『열녀전』의 번역에 관한 왕명은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1517) 6월 27일자 기사에 있는데, 홍문관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생활 규범을 정하고 있는 『소학』, 『열녀전』 등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할 것을 바라는 주청을 중종이 받아들이어 해당 부서에서 시행토록 지시한 것이다. 이 왕명에 따라 다음 해인 1518년에 『번역소학』 1,300질을 바로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나, 『열녀전』의 간행은 이보다 훨씬 늦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1543) 11월 6일자 기사에 이르러서 비로소 『고열녀전』 언해본 간행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록으로 미루어 『고열녀전』 언해본의 간행은 1543년 말에서 1544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
-------	--

다. 그 구체적인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관이었던 어숙권(魚叔權, ?~?)의 『패관잡기(裨官雜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가정(嘉靖) 계묘년(1543)에 중종 임금께서 유항의 『열녀전』을 내주며 예조(禮曹)로 하여금 언문(諺文)으로 번역케 하였다. 예조는 임금께 아뢰어 신정(申琨), 유항(柳沆)에게 번역케 하였고, 유이손(柳耳孫)으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 하였다. 구본(舊本)은 본래 고개지(顧愷之)의 그림이었지만 세월이 오래되자 새김이 이지러져 필치의 격조를 상당히 잃었다. 그러자 이상좌(李上佐, ?~?)에게 옛 그림을 대략 모방하여 다시 그리게 하였다. 그림이 완성되었는데 잘못해서 구본에 따라 매권의 앞에 ‘한유향찬(漢劉向撰) 진고개지도화(晉顧愷之圖畫)’라 썼다. 이는 마치 반고(班固)가 『한서(漢書)』를 저술할 때 사마천 『사기(史記)』의 구절을 잘못 인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책이 후대에 전해지면 그것이 이상좌의 그림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

- 조사 대상 『고열녀전(古列女傳)』 인쇄본은 권4 1책의 영본(零本)이다. 1543~1544년 간본은 모두 8권 8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의 권4 한 책만 남은 것이다. 이 책은 목판본이며, 목록 1장과 본문 43장의 총 44장으로 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31.5×20.2cm이고,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은 25.8×16.2cm이다. 한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반장당 13행, 매행당 22자이다. 표지는 최근에 개장하였으며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판심은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는데, 이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주로 보이는 판식이다. 표지의 제목은 ‘열녀전(烈女傳)’이며, 표지는 푸른색 물을 들인 종이를 사용하였는데, 책 첫 면의 아래와 마지막 면의 훼손이 심한 데 비해 표지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후대에 개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록의 첫 면 첫 번째 줄에 ‘고열녀전목록(古列女傳目錄)’이라 적혀 있고, 둘째 줄과 셋째 줄에는 편자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항(劉向)’과 ‘고개지(顧愷之)’로 되어 있다. 넷째 줄에는 권차가 ‘제사권(第四卷)’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어서 권4 「정순전(貞順傳)」의 소서(小序)와 이에 대한 언해문, 15개의 이야기 제목이 실려 있다. 권4에 실린 15개의 이야기는 그림, 한문으로 된 ‘전(傳)’과 ‘송(頌)’, 언해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언해문은 한문 원문보다 한 칸 낮추어 표기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편찬되었던 언해류 문헌에서 많이 쓰이던 방식이다. 언해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음과 함께 성조가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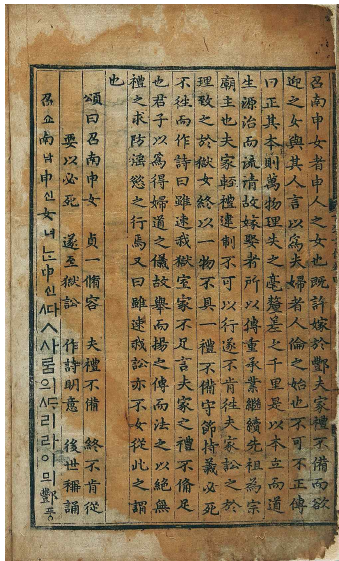
2. 원형 유지 정도

- 조사 대상 책은 일부 훼손 또는 결락된 곳이 있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먼저 부분적으로 훼손된 곳은 첫 장(목록 1ㄱ)과 마지막 장(본문 43ㄱ)의 좌하부(左下部)인데, 첫 장 좌하부에는 부분적으로 보사(補寫)되어 있다. 다음으로 결락된 곳은 본문 6ㄱ ‘위선부인(衛宣夫人)’ 이야기와 16ㄱ ‘식군부인(息君夫人)’ 이야기에 해당되는 그림이 없어진 것인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림을 잘라낸 흔적이 보인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인쇄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가 ○ 『고열녀전(古列女傳)』 언해본은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劉向, 기원전 77년~6년)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을 증중 38년(1543) 말에서 증중 39년(1544) 사이에 한글로 번역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비록 권4 한 권만 남아 있는 영본(零本)이지만, 「중종실록」 및 어숙권의 『패관잡기』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국내 유일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한글 번역본, 즉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고열녀전』(8권 4책), 국립중앙도서관 및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고열녀전』(1책) 등은 모두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필사본임에 비해 조사 대상본만이 유일하게 그림과 한문 원문 및 언해문을 갖춘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 우선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조선본 『열녀전』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증중 대의 출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왕명으로 관(官) 주도 하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책을 간행함으로써 그림과 한문, 언문으로 된 번역문이 공존하는 체제로서 그만큼 당시의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공력이 어우러진 출판 문화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책의 삽화를 조선 전기 대표적인 인물 화가인 이상좌가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회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재 전하는 이상좌의 그림이 드문 상황에서 중국본 『열녀전』에 실린 삽화나 안건이 그린 『삼강행실도』 삽화와 비교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의 회화 세계를 연구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이 책의 언해문은 국어사적으로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傍點)과 ‘△’, ‘○’의 잔존, 타 문헌에서 찾기 힘든 한자들의 한자음 등이 반영되어 있어 16세기 언어 사실을 살피는 데에 유용한 자료적 가치도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본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유일한 간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	---

참고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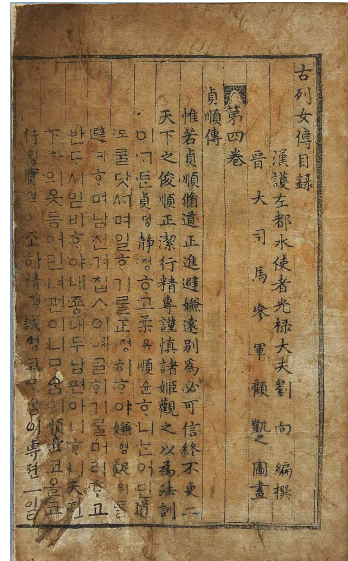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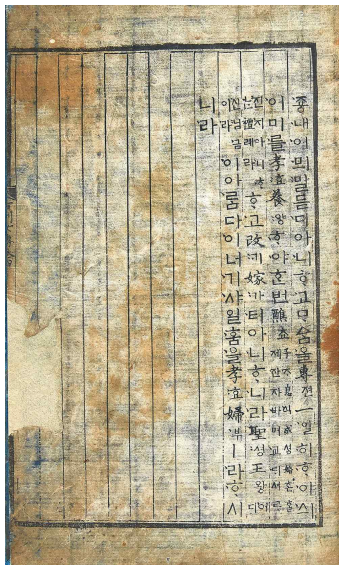
본문 1ㄴ



본문 1ㄱ



목록 1ㄱ



본문 43ㄱ



본문 16ㄱ(그림 결락 부분)



본문 6ㄱ(그림 결락 부분)

【삼강행실도(언해)】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	-------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삼강행실도(언해) (三綱行實圖(諺解))
수 량	1 책	규 격 (cm)	39.5×21.8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국립한글박물관
시 대	조선 선조 연간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1428년 경상도 진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계기로 세종은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역대 문헌에서 행실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림과 함께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삼강(三綱)의 효자도(孝子圖, 110명), 충신도(忠臣圖, 110명), 열녀도(烈女圖, 110명)의 3권 3책으로 세종 16(1434)년에 설순 등이 참여하여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내용을 줄여서 상단에 한글로 번역문을 붙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것이 초기 언해본으로 추정된다. 효자, 충신, 열녀 중 각 35명을 간추려 뽑아 105명을 수록하였다. 삼강행실도는 성종 연간에 언해본을 편찬하는 등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 보급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윤리서라 할 수 있다. - 신청대상본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성종 연간에 편찬한 원간본 계통을 복각한 중간본으로 1580년경 전라도 곡성현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대상본의 편성 체제는 효자편에는 각 주인공의 효행 사례를 도상으로 그려서 앞쪽에 수록하고, 다음에 한자를 사용하여 효행 사실을 본문으로 넣고 이어서 시(詩)와 찬(贊)을 배치했다. 상변란 위쪽 서미(書眉)에 언해(國한문혼용)하였다. 시(詩) 부분은 명 초에 간행된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수록된 칠언절구 2수를 옮겨 실었고, 찬(贊)이 없는 경우는 시까지만 수록하고 있다. 본문과 시, 찬은 모두 읽기 쉽게 백권점(白圈點)으로 표점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 신청대상본의 표지 서명은 ‘삼강행실 전(三綱行實 全)’이라 책차와 함께 묵서되어 있다. 전통적인 선장본의 오침안정법(五針眼定法)으로 장책되어 있으며, 앞표지를 넘기면 ‘三綱行實目錄’이 기록되어 있고 줄을 바꾸어 두 자를 내려서 ‘효자’라 하고 또 줄을 바꾸어 효자보다 한자를 내려서 간추린 35명의 효자 목록이 2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측 변란 밖에 ‘庚辰年/昌平’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그 위쪽으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인문을 확인할 수 없다. 장을 바꾸어 도상 우측 변란에 ‘三綱行實孝子圖’라 하고 도상 안에는 해당 효자가 직사각형 안에 양각으로 도상과 함께 인쇄되고 상변란 서미에는 국한문혼용으로 풀이되어 있다. 뒷장에는 본문 내용이 이어서 한 글자 내려서 시와 찬이 나오는데 찬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본문과 시, 찬 읽고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백권점이 있
-------	--

- 다. 연해에는 16세기 이전에 사용했던 방점이 있는 한글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글이 서너 장 나오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이후에 보판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대상본의 형태 서지적 사항은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표지는 연당초문의 능화문 표지를 사용했고, 광곽은 사주단변이며, 반엽의 크기는 25.1 × 16.5 cm, 계선이 있고, 향자수는 13행 22자이며, 판심 부분은 대흑구로 접지표는 내향흑어미이며, 책 크기는 39.5 × 21.8 cm이고, 판심제는 ‘孝子圖’, ‘忠臣圖’, ‘烈女圖’가 보이고, 판심제 아래에 장차가 기술되어 있다. 권말제로 ‘三綱行實烈女圖 終’이라 인쇄되어 있다.
 - 신청대상본은 1580년경 전라도 곡성현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한다. 특히 일본 고마자와대(駒澤大學)에서 동일 판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책은 방점 표기의 혼란 및 음운 표기, 문법 등에서 16세기의 언어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국어사 연구자료일 뿐만 아니라 서지학 및 관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다. 관련 자료로 1581년 중간본 계통의 후쇄본(부산대 소장)은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1726년 평안도 감영 간행본(한솔제지 소장)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삼강행실도 이본 소장처

이본 종류	연도	소장처
원간본	15세기말	성암고서박물관, 김영중, 런던 대영도서관
중간본(원간본 계통복각본)	16세기 이후	고려대 만송문고, 일본국회도서관, 서울대 심약문고, 서울대 일서문고, 고려대도서관, 이점로, 양산 안종석, 성암고서박물관, 김길, 일본駒澤大學, 일본동경대학 법학부 법제사자료실, 일본국립공문서관 内閣文庫
중간본(선조판 계통)	1581년(선조 14년) 이후	일본동경대도서관, 일본早稻田大도서관
중간본(선조판 계통)	1653년(효종 4년) 이전	성균관대 도서관
중간본(선조판 계통)	1727년(영조 3년)	전남대 도서관
중간본(선조판 계통)	1882년(고종 19년)	서울대 상백문고
중간본(영조판 계통, 평안감영판)	1726년(영조 2년)	성균관대 도서관
중간본(영조판 계통, 강원감영판)	1730년(영조 6년)	서울대 규장각
중간본(영조판 계통, 황해감영판)	1730년(영조 6년)	고려대 도서관
중간본(영조판 계통, 황해감영판)	1730년(영조 6년)	일본 天理大學 이화여대 도서관

〈출처〉 네이버

한편 위의 두 종에 이어 문화재로 지정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2종은 양산시립박물관 소장본(경상남도 유형문화재)과 대전시립박물관 소장본(대전시 문화재자료)이 있다. 관련 자료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개인 소장 《삼강행실효자도》(덕원당본)가 있다.

○ 삼강행실도 변천 과정

서명	연대	특징
삼강행실도 한문본	1431(세종13)	
삼강행실도 언해본(諺解本)	1481(성종12)	
삼강행실도 중간(重刊)	1511(중종6)	
속삼강행실도 (續三綱行實圖)	1514(중종9)	번역본에 빠진 효자 36인, 충신 5인, 열녀 28인을 추가. 각각 칠언절구(七言絶句) 한시(漢詩) 2수씩을 붙여 그 행실(行實)을 기림.
속삼강행실도 중간(重刊)	1606(선조39)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광해9)	목판본. 효자도(孝子圖)8책·열녀도(烈女圖)9책·충신도(忠臣圖)1책. 임란 중 모범 희생자들을 수록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1598(중종13)	활자본 5권5책. 왕명으로 이병모(李秉模) 등이 편찬. 오륜(五倫)에 출중한 150인의 행적 수록. 김홍도의 그림을 덧붙임.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정조21)	

〈출처〉 네이버

2. 원형 유지 정도

- 신청 대상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원형 그대로 표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도상과 본문, 그리고 한글 언해 및 권말제 등 완전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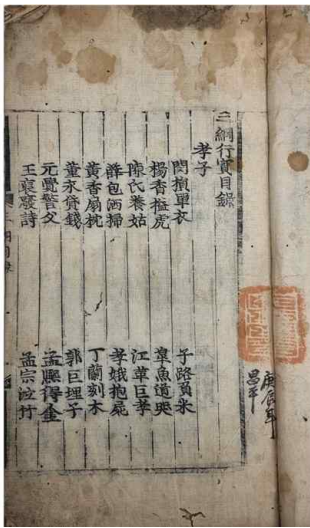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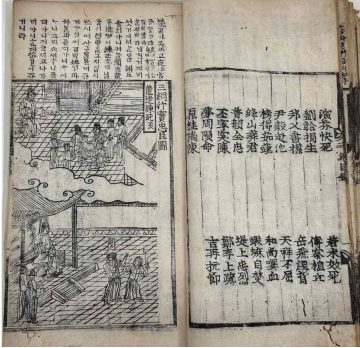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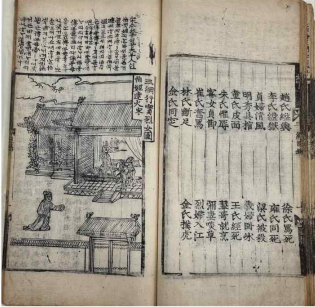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가

- 금번 지정 신청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언해본 1권으로 간추려 편찬하고, 이 판을 저본으로 1580년경 전라남도 곡성현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해 중간본이다.
- 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동일판본이 매우 희귀하다. 또한 이 자료에는 방점 표기의 혼란 및 음운 표기, 문법 등에서 16세기 한글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한글 변천사 뿐만 아니라, 서지학 및 판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 및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표지	목록	호자도
		
충신도	열녀도	권말
		

【서궁일기】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	-------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서궁일기(西宮日記)
수 량	3책	규 격 (cm)	34×25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국립한글박물관
시 대	1846~1847년 (헌종 12~13)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서궁일기』는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와 그 아들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실기문학(實記文學)이다. 인목왕후가 폐비가 되어 서궁에 유배되고,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한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기록하고 있다. 『계룡일기』라고도 불리는 이 필사본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실 여성의 삶과 당시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시대 정치사 및 여성사, 국어사 및 국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이 책은 3책으로, 1846년과 1847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이다. 인목왕후 폐비 사건이 시작되었던 1613년(계축년, 광해군 5)을 기점으로 하여 일어난 궁중의 비사(秘事)를 인조반정 뒤 왕후의 측근 나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기록한 수필 형식의 글을 베껴 쓴 것이다. 이 책의 작자에 대하여는 종래의 통설인 왕후의 측근 나인이라는 설 외에 왕후 자작설과 딸인 정명공주(貞明公主)와 그의 나인들의 합작이라는 설이 있다. 이 책의 필사본으로는 낙선재본(樂善齋本) 「계룡일기」와 홍기원본(洪起元本) 「서궁일기(西宮日記)」의 두 가지가 전해 왔는데, 두 책 모두 원본이 아니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전에 원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작품 내용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목왕후는 김제남(金悌男)의 딸로 19세 때인 선조 35년에 51세인 선조의 계비(繼妃)가 되어, 선조 36년에 정명공주를 낳고, 39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았다. 선조의 첫째 왕후 박씨(朴氏)에게서는 자식이 없었다. 선조는 후궁 소생의 자녀를 여럿 두었지만, 공빈 김씨(恭嬪 金氏) 소생인 둘째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서자였던 광해군은 항상 영창대군을 의식하였고, 선조가 57세로 죽자 광해군이 즉위하였다. 왕권의 정통성이 미약함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 광해군은 친형 임해군(臨海君)을 죽였다. 그 뒤 무옥사건(誣獄事件)은 계속 일어났고, 광해군의 의심은 더욱 심해 갔다. 계축년에 서양갑(徐羊甲) 등 당시 명문가의 서자들이 천대받음에 반항하여 무리를 모아 폭력단을 만들어 재물을 빼앗다가 포도청에 잡혔다. 이때, 이이첨(李爾瞻)이 그 무리 중의 한 사람인 박응서(朴應犀)를 피어서 인목

왕후의 아버지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런 조작극으로 김제남 부자와 영창대군은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인목왕후는 폐비가 되어 서궁인 경운궁(慶運宮)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 뒤 인목왕후는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다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복위되었다.

○ 의의와 평가

『서궁일기』의 문학적 가치는 『한중록(恨中錄)』·『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더불어 궁중문학으로서 소설 문학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시 슬픈 역사적 운명에 처해 있던 왕실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또한 다양한 궁중 비사가 그려져 있어 당시 정치적 상황과 왕실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도 있다.

이 작품은 16세기 말~17세기 초 궁중에서 전개되는 인정·풍속·생활상을 우리말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중후하고 법도에 맞는 궁중어와 문체를 후세에 남겨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또한, 소설보다는 팩트(Fact)에 픽션(fiction)이 가미된 사실적 기록인 만큼 기록문학 또는 수기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 본 책의 주인공인 인목왕후(1584~1632)는 실존 인물로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의 계비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과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 노씨의 딸이다. 선조가 사망한 후 대비로서 언문 교지를 내려 광해군이 즉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613년(광해 5)에 7명의 서자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하였다는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살해되었고, 아버지 김제남과 형제들도 사사되었다. 인목왕후는 폐위가 되어 정명궁주와 함께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

광해군이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왕후를 폐위시키고 서궁에 유폐한 폐모살제(廢母殺弟)는 유교적 패륜 행위로 결국 10년 후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인목왕후는 서궁 유폐 생활 10년째인 1623년 3월 13일 밤, 인조가 반정을 끝내고 신하를 보내 즉위 승인을 요청했으나,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인조가 직접 서궁으로 가서 승인을 간청하자, 인목왕후는 광해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받고 나서야 인조를 왕으로 임명한다는 의지(懿旨)를 내려주었다. 이 때문에 즉위식이 늦어지자 인조는 인현왕후가 머물고 있던 경운궁 즉조당에서 즉위하였다. 인목왕후는 대왕대비로 복권된 후 가끔 국정에 관심을 표명하여 한글로 교서를 내리기도 하였다. 해서체로 쓴 족자인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와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친필로 쓴 『보문경(普門經)』의 일부가 전하고, 인목왕후 필적(仁穆王后筆跡) 첩(帖)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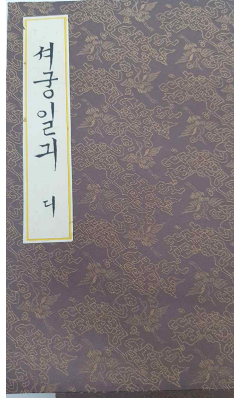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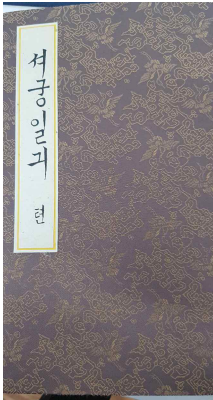
- 조사대상본은 필사본으로 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서궁일기』(홍기원 소장본)로 불리는 현재 남아 있는 이본 중 원본에 가장 가깝고 필사 시기가 빠르다. 2권 본문 안에 병오년(1846) 및 3권에 정미년(1847)의 필사기가 있다. 원본에 가까운 또 다른 이본인 낙선재본 『계록일기』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영인된 것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서궁일기』는 『한중록』 『인현왕후전』과 더불어 조선의 3대 궁중문학으로 평가받는 귀중한 한글 자료이다.

이 책은 필사한 연도를 기록하고 있어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필사한 인물이 적혀 있는 점도 특이하다. 19세기 중엽 여성들의 소설 읽기, 글 읽기 등을 통한 의식 성장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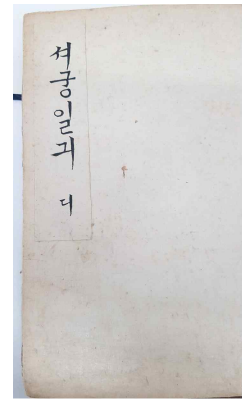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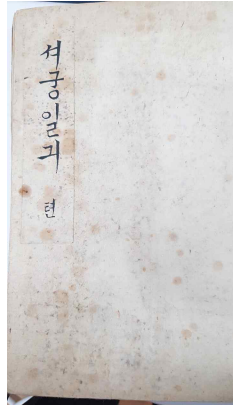
	2. 원형 유지 정도 ○ 본 조사대상 『서궁일기』는 본문에 결락된 것이 없고,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이 책의 종이는 질 좋은 종이는 아닌 듯하다. 표지는 개장하였으며 첫 앞장은 후에 보완한 것 같다. 필사 상태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그러나 종이는 재활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특히 1권의 경우 속 이면에는 출납 장부로 보이는 기록들과 도장이 남아 있다. 재활용한 종이는 다소 낡은 점이 있어 아쉽지만, 또 다른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책·3책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 한편 본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필체가 보이는데, 한 책을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려가며 필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1책의 경우 여러 번 읽어서인지 책 모서리가 다소 낡았고,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다. 보관 과정에서 종이가 변색된 부분도 다소 있다. (문화재 이미지 참고)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가 ○ 『서궁일기』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조선 중기 역사적 사실을 다룬 역사 소설로서 의미가 충분하며, 또 인쇄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그것을 필사해 유지해 온 의미가 매우 크다. 현존하는 필사본에 대한 연구 가치도 매우 높은 책이다. 필사자는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 책을 필사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여성들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변화 상황을 알 수 있다. ○ 본 『서궁일기』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필사 시기를 대략 알 수 있다. 1권(툰)에는 필사 시기가 없지만, 2권(지)은 병오년(1846), 3권(인)은 정미년(1847)에 필사된 것을 명기하고 있다. 누가 필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점은 좀 더 추적해 나가면 이를 필사한 여성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필사본은 중간 중간에 글씨체가 달라지고 있고, 심지어 같은 장에서도 글씨체가 달라진 것이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필사하거나 아니면 글씨체를 바꿔가며 필사해간 것을 알 수 있다. ○ 본 『서궁일기』는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읽기가 활발해지는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여성사적인 가치가 매우 큰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필사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처로 표기했지만) 여성사적인 가치가 크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읽기, 글쓰기와 의식 성장, 여성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알려주는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 따라서 본 조사 대상본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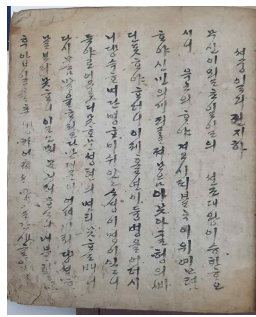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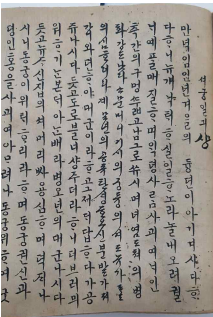
3책 '인' 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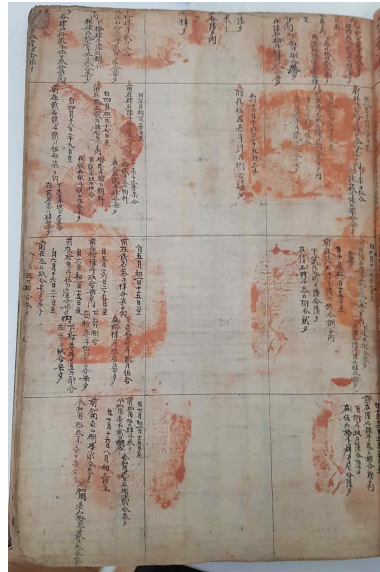
3책 '인' 도 있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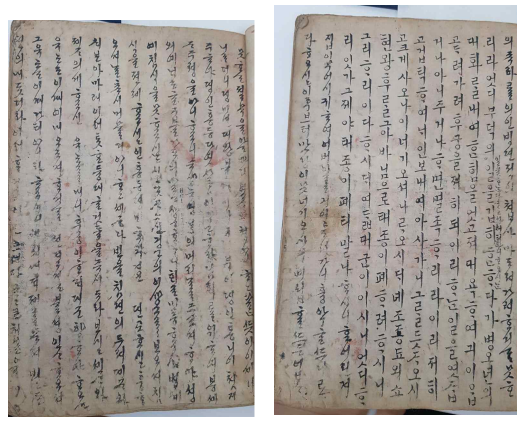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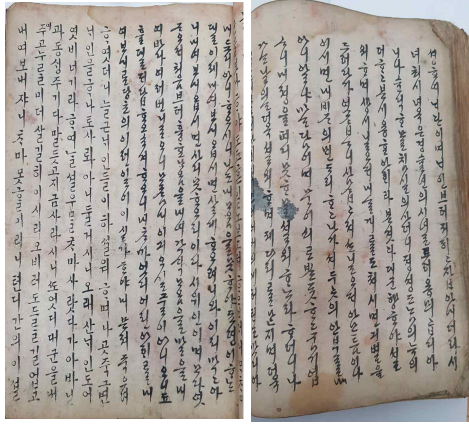
속지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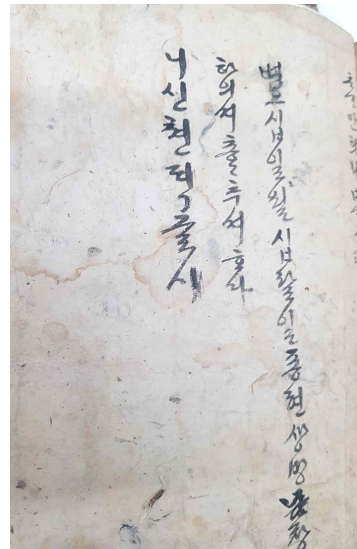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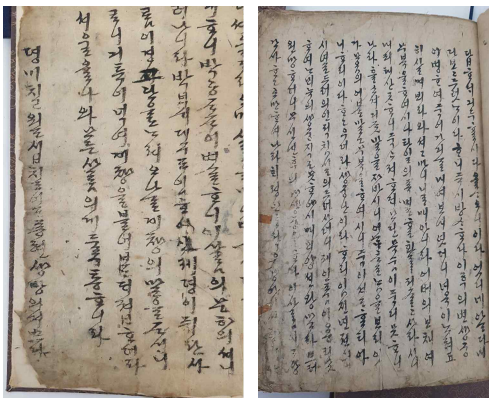


1책 본문 이면지



본문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수선총도】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	-------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수선총도(首善總圖)
수 량	1점	규 격 (cm)	76.7×84.3
재 료	한지(韓紙)	소유자	용산역사박물관
시 대	19세기 중반 추정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길 35-29 용산역사박물관

- 조사 내용**
- 1. 문화재 현황**
- 『수선총도』는 목판본(일부 채색) 서울지도로 제목의 ‘수선(首善)’은 『사기(史記)』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나오는 ‘으뜸가는 선을 세우는 것은 경사(京師, 서울)에서 시작한다[建首善自京師始]’는 문장에서 나온 것으로 서울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지도는 목판 인쇄된 부분과 필사된 부분이 혼합된 것으로 서울지도에는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의 사산(四山)과 도성 내부는 목판으로 인쇄하였고 서대문과 남대문 외부 지역은 필사하여 그려 넣었다. 목판 인쇄된 부분에는 일부 채색을 가미하였다.
 - 지도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일 판본의 지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일 판본의 지도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목판본 『수선총도』가 남아 있다. 지도의 내용과 형태를 비교해 보면 동일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목판본 『수선총도』를 보면, 인왕산 아래쪽에 선희궁(宣禧宮)이 표시되어 있다. 선희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사당으로 1764년 처음으로 세워지고 의열묘(義烈廟)라 했는데, 1788년 선희궁으로 개칭했다. 따라서 지도의 제작 시기는 최소한 178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목판 인쇄된 부분에는 1824년 건립된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사당인 경우궁(景祐宮)이 없다. 따라서 목판본 『수선총도』의 제작 시기는 1788년에서 1824년 사이로 볼 수 있다.
 - 용산역사박물관 소장의 『수선총도』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목판본 『수선총도』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용산역사박물관 소장의 『수선총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수선총도』에 없는 경우궁이 표기되어 있다. 창덕궁 서쪽 회동(灰洞) 근처에 경우궁(景祐宮)이 필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최소한 1824년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870년에 육상궁(毓祥宮)에 합사된 선희궁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때, 1824년에서 1870년 사이에 필사하여 그려 넣

은 것으로 추정된다.

- 용산역사박물관 소장의 『수선총도』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수선총도』와 자세히 비교해 보면 목판 인쇄본에서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같은 판본의 기원을 지니지만 서울역사박물관본은 수정본에 해당하고 용산역사박물관본은 원본이라 볼 수 있다. 경복궁 부분을 보면 두 지도 모두 경복궁 복원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용산역사박물관본에는 경회루 안에 ‘석주사십팔(石柱四十八)’가 있는 반면에 서울역사박물관본에는 이것이 지워져 있다. 이는 당시 경회루가 누각이 사라지고 돌기둥만 남아 있던 상황을 표시한 것인데, 서울역사박물관본에는 이러한 정보를 삭제했다. 아울러 지형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백악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봉우리의 표현을 서울역사박물관본에서는 볼 수가 없다. 또한 삼청동으로 내려오는 맥세가 용산역사박물관본에서는 네 개의 봉우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서울역사박물관본에서는 두 개의 봉우리로 표현되었다. 마찬가지로 휴암과 응암에서 내려오는 맥세 표현에서 봉우리들이 하나씩 적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것은 산지의 표현을 좀 더 간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일부 지명의 판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산역사박물관본에서는 경모궁(景慕宮), 함춘원(含春苑), 남별궁(南別宮), 선혜창(宣惠倉), 상림원(上林苑) 등과 같은 일부 지명은 음각으로 표기하였는데, 서울역사박물관본에서는 글자 부분만 남기고 배경 부분은 파내어 양각으로 처리하였다. 용산역사박물관본에서는 균역창(均役倉), 남별영(南別營) 등의 지명에 외곽선이 있지만 서울역사박물관본에서는 삭제했다. 이는 지명 표기 형식을 통일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수선총도』는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수선전도』보다도 각종 궁궐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며, 지형과 하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냈다. 『수선전도』에서는 八 형태를 연결하여 산을 표현한 반면, 『수선총도』에서는 산체를 하나로 그려 표현했다. 『수선전도』에서는 하천을 쌍선으로 그려 도로와 구분하였는데, 이 지도에서는 하천을 굵은 선으로 그려 도로와 구분했다. 특히 종로에 들어서 있던 시전(市廛)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적이다. 우산전(雨傘廛), 생선전(生鮮廛), 어물전(魚物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면포전(綿布廛), 사기전(沙器廛) 등의 다양한 상점을 자세하게 표시했다.
- 용산역사박물관본에는 서울역사박물관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한양 도성의 서대문과 남대문 바깥 지역을 그려 넣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성저십리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거주민도 많은 곳이다. 지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조선시대 서울의 난전(亂廛)인 칠패(七牌)가 남대문 밖에 표시되어 있고 서소문 밖으로는 초물전(草物廛), 어물전(魚物廛), 상전(床廛), 미전(米廛)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남대문 안쪽 지역에도 선혜창이 생기면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용산역사박물관본에는 서울역사박물관본에는 없는 미전(米廛), 상전(床廛)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2. 보존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지도가 접혔던 자리가 훼손되어 있다. 지도는 유리 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차후 보존처리를 거쳐 유리를 걷어내고 족자나 낱장으로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可 ○ 목판본 서울지도에 도성의 서부, 남부 지역을 필사하여 보완한 서울지도로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희귀성을 지니고 있다. ○ 현존하는 목판본 『수선총도』(서울역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소장)와 동일 판본이지만 수정되기 이전의 초판을 인쇄한 점에서 『수선총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 지도의 내용으로 볼 때 목판본 『수선총도』 제작 시기보다 후대인 19세기 중반경에 필사 보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남전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서울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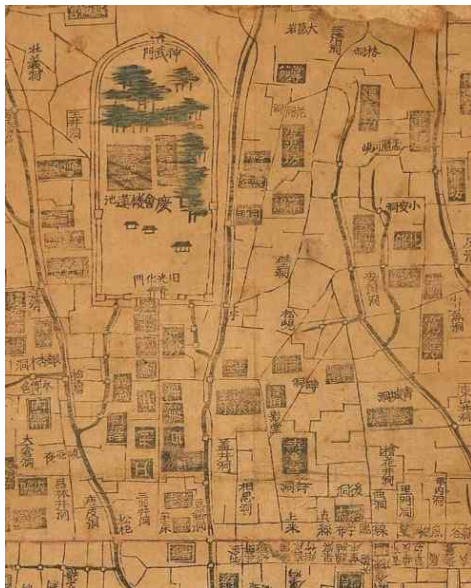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수선총도』의 전체 모습



『수선총도』의 도성 내부



『수선총도』의 필사한 부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3446006	영등포구 대림로33길 4 1층(대림동)	상하수도요금	21.8~23.10	8	2,976,35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영등포구 대림로33길 4	주식회사 타이거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3, 704호-바09(죽전동)	2,976,350	'23.12.21.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전지호(☎02-3146-4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7728244	동작구 신대방14가길 62-4 5층 주계량기	상하수도요금	23.02~23.10	5	141,45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동작구 신대방14가길 62-4, 302호	성길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6길 11-5(신림동)	141,450	'23.12.15.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전지호(☎02-3146-4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2호

도시관리계획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398호(1979.11.07.)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51 일대 가락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2.27.,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22호로 주민 의견청취(2020.11.20.~ 2020.12.03.)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송파동 151 일대	-	증) 117,715.5	117,715.5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 1	송파동 119 일대	-	증) 46,729.0	46,729.0	-
특별계획구역 2	송파동 151 일대	-	증) 62,370.3	62,370.3	-

2.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4.02.02. ~ 2024.02.15.)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
 -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주택사업과(☎02-2147-2896), 도시계획과(☎02-2147-2992)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3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 2. 2. ~ 2024. 2. 15.)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담당관 (☎02-2133-7623)

다.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	증)20,810	20,810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810	-	20,810	100.0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0,810	-	20,810	100.0	-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① 이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20,810	-	성수동2가 333-16 성수동2가 333-86 성수동2가 333-131 성수동2가 333-132 성수동2가 333-133	20,810	-

※ 가구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

2) 건축물의 용도 결정 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 불허용도 결정 조서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고
A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 권장용도 결정 조서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고
B	(가칭) 성수미래융합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인 미래융합산업 업종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또는 1,000㎡ 이상 설치 시 인정 ※ 시설의 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주차장면적	-

1) 세부업종은 (가칭)성수미래융합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이 고시한 업종에 따르며 고시 이전에는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권장업종을 따름

3)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 건폐율계획 결정 조서

위치	건폐율	비 고
성수동2가 333-16 일대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 용적률계획 결정 조서

위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①	②	
성수동2가 333-16 일대	400%	400%	560%	허용용적률의 2배 이하	-

※ 상한용적률① 인센티브 항목 중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 80%는 2023년 제4차 도시건축 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40%를 부여하며 [인센티브 최대 용적률 (80%)의 50%],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대 76% 이하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생략 (열람장소에 도서 비치)

■ 건축물 높이 결정 조서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 고
준공업지역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116m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건축물 배치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	성수동2가 333-16 일대	건축한계선	• 뚝섬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8m	-
			• 서측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4m	-
-	성수동2가 333-16 일대	벽면한계선	• 서측 이면도로변 일부 지정	5층 이하 적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 내 공지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전면공지	차도형	• 뚝섬로: 건축한계선을 통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5~8m)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통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8m) 조성	-
공개공지		• 뚝섬로변 1개소 위치 지정	-

■ 차량동선 결정 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부 (독섬로)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신설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이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20,810	-

5.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라. 관계도서: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 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02-2133-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5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915호(2023.10.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62)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02-3423-6104)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원	-	증) 11,839.7㎡	11,839.7㎡	-

2)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②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	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	증) 10,362.5㎡	10,362.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362.5	-	10,362.5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385.4	감) 8,385.4	-	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7.1	증) 8,385.4	10,362.5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해당없음

3)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5.(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 2. 16. ~ 2024. 2. 29.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납부기한 : 2024. 2. 29.
 -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반송물 별첨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김*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2길 16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1-17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조*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24-7, C동 303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1-18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원*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2길 7-10, 601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1-18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1	이*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18길 17, 903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1-17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58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7조
3. 대 상

연번	상호(대표)	취소예정 영업표지	등록번호	송 달 주 소	반송 사유
1	해피마루 (대표 홍○○)	행복은간장밥	2021359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2다길11-3	수취인불명
2	파티아이디어 (대표 홍○○)	잇츠그린 (it's green), 케이빙수 (k-빙수)	20211508, 20211554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2길11	기타
3	타이거글로벌(주) (대표 조○○)	어남선생	20214357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업로18	기타
4	키즈룸(주) (대표 ○○ DAVIDNORTHAM)	바다나무 잉글리시	20201912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00	수취인불명
5	키바글로벌 에듀(주) (대표 권○○)	키바시 바독카페	20211208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31길20	수취인불명
6	영계푸드1988옛날통닭 (대표 김○○)	영계푸드1988'옛날통닭	20201523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59길26	기타

연번	상호(대표)	취소예정 영업표지	등록번호	송 달 주 소	반송 사유
7	엘에스리테일 (대표 임○○)	국보미역, 우스블랑	20214394, 20214396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51길10	수취인불명
8	에프앤에스코퍼레이션(주) (대표 박○○)	위퍼스트 스터디카페	20215036	경기도이천시중리천로97번길27	폐문 부재
9	에스와이씨(SYC) (대표 송○○)	올리브 스터디카페	20214535	서울특별시중구왕십리로415	주소불명
10	쓴다치킨 영등포점 (대표 송○○)	쓴다치킨	20214237	충청북도진천군합목3길61	주소불명
11	서울김바비 (대표 유○○)	서울김바비	20214630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91길13	수취인불명
12	삼성혈컴퍼니 (대표 김○○)	삼성혈 해물탕	20214979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길39	수취인불명
13	블랙모티브커피(대표 황○○)	블랙모티브 커피	2022147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18길3	기타
14	부밀리앤 파트너스(주) (대표 전○○)	부밀리	20211302	인천광역시연수구해송로70	수취인불명
15	베러덴와플 협동조합 (대표 이○○)	베러덴와플	20190326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수취인불명
16	먼치오케이 (대표 김○○)	먼치오케이 샐러드클럽	20220245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1길65	이사 불명
17	쥬해야 (대표 이○○)	골돌	20230184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9길32	기타
18	쥬햇픽 (대표 전○○)	1974냉면, 수유감자탕, 만두판	20211644, 20212710, 20221096	서울특별시강북구4.19로45	기타
19	쥬한마음마트 (대표 김○○)	빅스버(VIXBER), 베리베리	20212148, 20214588	충청남도서산시충의로1839	폐문 부재
20	쥬피자꾼 (대표 강○○, 이○○)	피자꾼	20160287	서울특별시노원구섬밭로134	수취인불명
21	쥬포레스타 (대표 정○○)	포레스타	2021489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70길25	기타

연번	상호(대표)	취소예정 영업표지	등록번호	송 달 주 소	반송 사유
22	쥬티오디 코퍼레이션 (대표 강○○)	닭,쳐!	20214398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34(연무동)	기타
23	쥬티랩 (대표 박○○)	티랩스튜디오	20212084	경기도하남시신장로38번길9(천현동)	기타
24	쥬테리애프앤비 (대표 유○○)	홍심당	20211856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8길13	수취인불명
25	쥬천년종가집 (대표 최○○, 정○○)	천년종가, 배달천국	20214469, 20214470	서울특별시강서구초목마을로8	기타
26	쥬종로디앤씨 (대표 이○○)	종로할머니칼국수 수(手)	20120100277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1길29	이사 불명
27	쥬제이케이 파트너스그룹 (대표 김○○)	위드맘, 청담오마카세, 위드파티, 위드카페	20213016, 20213180, 20213182, 2021318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9길6	수취인불명
28	쥬전성애프앤비 (대표 전○○)	북경상회	2021094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3길11	수취인불명
29	쥬전락과실행 (대표 홍○○)	닭가슴살마트	20211818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나길4	폐문 부재
30	쥬유씨컴퍼니 (대표 조○○)	크루아상148	20212711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울로67번길	수취인불명
31	쥬우리집 (대표 유○○)	우리집	20230113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29	수취인불명
32	쥬요기독강아지랑고양이랑 강남본점 (대표 신○○)	요기독	20220861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4길	이사불명
33	쥬에프티프렌즈 (대표 정○○, 박○○)	제주가정식초밥, 에프티프렌즈파머스테이블	20213392, 20210074	경기도과천시부림로2,	수취인불명
34	쥬에니스타 애프앤씨 (대표 노○○)	핑크래빗 (PINK RABBIT)	20211834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91길13	수취인불명
35	쥬승승장구 홀딩스 (대표 최○○)	닭찬들	20212709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34	이사 불명
36	쥬스마일 푸드센터 (대표 백○○)	미닭 (미친국물닭발)	2021308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길	이사 불명

연번	상호(대표)	취소예정 영업표지	등록번호	송 달 주 소	반송 사유
37	쥬셀핀다 (대표 정○○)	Cellpinda(셀핀다), 발효가바김치찌개	20213393, 20213769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127	폐문 부재
38	쥬비케이푸드 (대표 김○○)	폴초롱맛술사	20214399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2가길16	이사 불명
39	쥬비비앤 (대표 김○○)	도니버거	20130317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10길61	수취인불명
40	쥬모앤에프앤씨 (대표 한○○)	뉴트로치킨	20211557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5길10	기타
41	쥬마음에프앤씨 (대표 송○○)	마음한줄	20201835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400	수취인불명
42	쥬마스터 에프앤비 (대표 박○○)	터키즈피자, HOT치킨, 가화만사성, 평화국수, 토픽카츠, 푸닭발, 10000족발, 커브웨이, 불고기찜닭	20213940, 20213946, 20213947, 20213948, 20213942, 20213949, 20213943, 20213944, 20213941	경상북도구미시옥계북로69	기타
43	쥬리틀마운틴 (대표 김○○)	리틀마운틴	20201593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24	기타
44	쥬라프라스 (대표 최○○)	라프라스	2019126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로62	기타
45	쥬디팻츠 (대표 김○○)	엘리자바스 (ElizaBath)	20214978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35길32-7	수취인불명
46	쥬굿맨브랜드컴퍼니 (대표 주○○)	폰더샐러드 (PONDERSALAD)	20210272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23길14	수취인불명
47	쥬공유영웅 (대표 최○○)	마라영웅	20211503	서울특별시양천구은행정로7길10	기타
48	쥬강남로하스 (대표 신○○)	설송원	20220478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3길40	기타

4. 기 간: 2024. 2. 1. ~ 2. 15.(15일간)

5. 내 용

- 가. 위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또는 180일)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걸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
- 나. 아울러, 위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2. 1. ~ 2. 26.(26일간)

나.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붙임-의견제출서 참고),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팀)
- 제출방법: 이메일 jdw10004ok@seoul.go.kr / 팩스 02-768-8852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팀 ☎02-2133-5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6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정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1432265	동작구 만양로14다길 17	수도요금	2021. 8. 28납기	29회	3,576,02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동작구 만양로14다길 17 (노량진동 211-35)	김덕진	390401-***** (사망주소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6, 106동 1201호	3,576,020원	2024. 2.1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와 김세영(☎02-3146-11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조례안 (8건)	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서울특별시 학술융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4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인사과)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동의안 (7건)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 · 본부 · 국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5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개발사업단)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7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권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의견 청취안 (7건)	1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3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국체육대학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강서구 오정로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강서구 벌말로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9호선 양천향교역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 나.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 (창의행정)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
- (학습활동)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적용

라. 제안의 제출과 접수(안 제4조)

- (제출) 연중 수시 제출, 유사한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 우선
- (기여도) 제안 공동 제출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 제안자로 결정

마. 창의행정상 선정과 시상(안 제5조)

-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창의행정상 시상
- 선정절차·시상분야·선정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

바. 의견 조회(안 제6조)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부상 및 우수제안 추천(안 제7조, 제9조)

- (부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
- (우수제안) 우수한 채택제안을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 추천 가능

아. 실비 보상(안 제8조)

- 전시 등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음

자.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안 제10조~12조)

- 분야별·수준별 제안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하여야 하며, 채택제안 실시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 할 수 있음

차. 제안 활성화 노력(안 제13조)

-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협조

카. 학습활동 지원(안 제14조)

-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11. 9. ~ 11. 2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권빛나 (☎2133-776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행정”이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제안”이란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실행하기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학습활동”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공무원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5조(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창의행정상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창의성
- 2. 실현가능성
- 3. 효율성 및 효과성
- 4. 적용범위
- 5. 계속성

- ② 시장은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창의행정상의 시상분야, 선정인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

다.

제9조(우수제안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관리) 시장은 공무원의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수준별로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자 등의 참여) 시장은 채택제안이 업무담당 기관에서 실행될 경우 그 과정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의 평가)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활성화 노력) 시장은 공무원이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활동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창의상(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포함한다)을 수상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5조에서 제9조까지에 따른 창의행정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앞쪽)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창의상이 창의행정상으로 개편됨에 따라 포상금 및 홍보비용·부서 지원비용 등 필요
- 학습활동 지원 근거 규정 신설로 운영비용 소요

제5조(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학습활동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22년까지 연 1회 서울창의상을 시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조례 개정으로 시상횟수 증가 및 포상금 기준이 변경되어 비용추계에 포함
 - 창의행정상 선정절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 공무원 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모호하여 市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왔으며, 조례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비용 추계에 포함
- ※ 24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지방세 수입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소계(a)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구분	세출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950,000
	창의행정 활성화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학습조직 운영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	-	-	-	-	-
	지방세수입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구분	시비						
	세외수입	-	-	-	-	-	-
구분	지방채 등						
	민간	-	-	-	-	-	-
구분	기타						
	합계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권빛나(☎ 02-2133-776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4년 예산 편성안 기준)**1.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190,000천원**

- 창의제안상 포상금 = 145,000천원
- 창의실행상 포상금 = 45,000천원

2. 창의행정 활성화 : 90,000천원

- 창의행정 부서 활성화 지원 등 = 12,000천원
- 상장 제작비 및 자료인쇄 등 = 6,800천원
-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 30,000천원
- 업무매뉴얼 제작 = 21,200천원
- 창의행정 홍보 = 20,000천원

3. 학습조직 운영 지원 : 100,000천원

- 학습조직 운영 지원 = 100,000천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협의를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16. ~ 12.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노현아 (☎2133-674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 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담당관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6항	
	나. 정기 검사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4항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바.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생활용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생활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대부업법 제12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대부업법 제13조	
	마. 실태조사 등	○ 대부업법 제16조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 대부업법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대부업법 제21조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6.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 대학교총장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전략산업기반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다.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업무 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구청장

□ 복지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구청장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마.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1. 차량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 나목, 제15호가목, 나목, 제16호가목, 제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94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택시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다. 등록의 거부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마. 변경등록의 처리 바. 이전등록의 처리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차. 압류등록의 처리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7조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제4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자동차관리법」제10조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6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 ○「자동차관리법」제14조 ○「자동차관리법」제16조 ○「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관리법」제28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 여객자동차법 제16조제2항,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구청장
물류정책과	1.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4.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같은 법 제5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직속기관외장, 사업소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통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 제10조 ○ 석유사업법 제11조 ○ 석유사업법 제12조 ○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 석유사업법 제30조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 청 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 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신고필증 발급 다. 취소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 ○ 석유사업법 제33조 ○ 석유사업법 제34조 ○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 제3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6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 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 제4항제12호, 제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5조 ○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 제3호, 제2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108조	구청장
	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공사업법」 제27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구청장
	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구청장
	대기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사. 청 문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다. 등록취소시 청문 라. 과태료 부과 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 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라. 등록취소시 청문 마. 과태료 부과 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 ○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 ○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 ○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 ○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70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1.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다. 과징금의 처분 등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 건설폐기물법 제23조 ○ 건설폐기물법 제26조 ○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아. 청문의 실시 자. 과태료 부과·징수 2.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건설폐기물법 제31조 ○ 건설폐기물법 제57조 ○ 건설폐기물법 제66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생활환경과	1. 소음·진동규제의 별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구청장 미래한강본부장, 관할 공원이가센터소장 구청장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화정책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구청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 체육시설법 제14조 ○ 체육시설법 제17조 ○ 체육시설법 제19조 ○ 체육시설법 제27조 ○ 체육시설법 제28조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체육시설법 제36조 ○ 체육시설법 제40조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종합병원·병원등의 변경 허가 다.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 「의료법」 제59조제1항	구청장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구청장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출입·검사와 수거 나.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 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 조 ○ 「약사법」 제69조 ○ 「약사법」 제71조 ○ 「약사법」 제73조 ○ 「약사법」 제74조 ○ 「약사법」 제76조의2 ○ 「약사법」 제81조 ○ 「약사법」 제98조	구청장
	5.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 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 법 시행규칙」 제51조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구청장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illegible]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업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해당기관(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2.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3.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당해 보조기관의장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 재난안전관리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갱정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구청장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감사의 최고 다. 감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구청장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72조 ○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공공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	1.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구청장
	2.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4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검 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	구청장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가. 연수교육 실시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구청장 구청장

□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31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구청장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 공원녹지법 제38조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 공원녹지법 제12조 ○ 공원녹지법 제13조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구청장 구청장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 제2항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 록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시설변경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다. 등록증 재발급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 「사료관리법」 제25조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26조	
	바. 업무감독	○ 「사료관리법」 제27조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아. 승계신고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자. 폐기 등의 조치	○ 「사료관리법」 제24조	
	차. 청문	○ 「사료관리법」 제30조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 「하천법」 제5조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 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 「하천법」 제15조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 「하천법」 제14조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2조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30조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 「하천법」 제30조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 「하천법」 제33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인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여.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 「하천법」 제36조 ○ 「하천법」 제38조 ○ 「하천법」 제68조 ○ 「하천법」 제69조 ○ 「하천법」 제70조 ○ 「하천법」 제72조 ○ 「하천법」 제90조 ○ 「하천법」 제47조 ○ 「하천법」 제48조 ○ 「하천법」 제76조 ○ 「하천법」 제77조 ○ 「하천법」 제78조 ○ 「하천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 「하천법」 제91조 ○ 「하천법」 제98조 ○ 「하천법」 제2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67조 ○ 「하천법」 제46조	구청장(다만 한강은 미래한강본부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가)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 치는 하수도 제외)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 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6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4조,「하수도법 시 행령」제19조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7조,「하수도법 시 행령」제22조	물재생센터 소 장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3조,「하수도법 시 행령」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7조,「하수도법 시행 규칙」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8.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32 조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31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소방시설법 제32조 ○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 ○ 소방시설법 제3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소방서장 구청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창의 행정 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 대학교 총장

□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조직담 당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원 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 련한 다음의 사무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 고대상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 리권역으로 하는 폐기 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5 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자원 순환과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13 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원 순환과 자원회수 시설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4호와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원 순환과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 또는 정신병원 (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들" 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종합병원·병원등의 변경 허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 생태과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 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88호) 부 칙 제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88호) 부 칙 제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노현아(☎ 2133-6744)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토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

2.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3조 2항)
 - 위원 임명,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 나.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6조 3항)
 -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 임명,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11. 16. ~ 12. 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2133-78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제10조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시장 또는”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을 “심의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3항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의”를 “심의회 회의”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의회에”를 “시의회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u> <u>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u> <u>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u> <u>관리·감독 등을 위하여</u> <u>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u> <u>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1. (생략) 2. 외부위원 : <u>시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 3. (생략) <u>제3조의2 (생략)</u> <u>제4조(기능) <신설></u>	<u>제4조(구성) <삭제></u> ----- ----- <u>성별을</u> <u>고려하여 임명</u> ----- -----. 1. (현행과 같음) 2. -----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u> ----- ----- ----- ----- 3. (현행과 같음) <u>제7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u> <u>제3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각</u> <u>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u> <u>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u> <u>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u>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 략)

<신 설>

제6조(회의) ①·② (생 략)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
는 심의회의 -----

제10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조-----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 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 략)

제7조(위원장)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임기)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9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3.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

1. 제14조제3항-----

2.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u>제14조의2</u> (생 략) <u>제15조</u>(회의록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u>의회</u>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u>제16조</u>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17조</u>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u>제18조</u>(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의회에</u> ----- -----. <u>제19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부서명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주무관(2133-782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종료('23. 8. 31.)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지도·점검 등 규정 삭제(안 제21조~제24조)
- 나. 문구 등 수정(안 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소민(☎2133-503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부위원장)”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때에는 부위원장----- ----- ----- ----- 때에는 ----- -----.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수당) ----- ----- 범위 위-----.
제21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수반되는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이소민(2133-5034)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체료 징수, 연체기간별 고정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법령 개폐시 동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 입법 경제에 부합하지 않음.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개정(2022.4.20.)된 바 있으나, 조례 제5조 제3항은 개정 전 연체요율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효성 있고, 입법 경제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을 적용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0. 19.~11. 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김광원(☎2133-9755)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경우에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료) ①~② (생략)	제5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 -----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삭 제>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삭 제>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삭 제>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징수시 적용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버스정책과 김광원 주무관 (☎02-2133-975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 도입으로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리 배출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자적 관리 및 보고를 통해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안 제5조의3제1항).
- 나.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의3제2항).
- 다.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안 제5조의3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9. ~ 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수형 (☎2133-373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각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 관리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각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u> <u>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 관리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빠기 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공업6급 정수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탄력적으로 자녀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신설

2. 주요내용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24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11.16.~12.06.)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 이재현 (☎2133 - 5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비하기위한”을 “대비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출장공무원””을 “이하 “출장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15일 범위 안”을 “15일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4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

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한다.

-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 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생략)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u>대비하기 위한</u>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u>대비하기 위</u> <u>한</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 ---- <u>범위</u> ----- ----- ----- -----.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u>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u>)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	제8조(출장공무원) ① ----- ----- ----- -- <u>이하 "출장공무원"</u> ----- ----- -----

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 ④ (생 략)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
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
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
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
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
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15
일의 범위-----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범위-----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

---- 범위-----
-----.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
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
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
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
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제6항 -----

-----.

⑦ ~ ⑬ (생 략)

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⑰ · ⑱ (생 략)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⑧ ~ ⑭ (현행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⑮ 제14항-----

-----.

⑰ · ⑱ (현행 제17항 및 제18항과 같음)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 범위-----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공무원 복무(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행정국 인사과 이재현 (☎2133 - 5729)

입법에 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정혜령 외 2	사용기간을 12개월 범위에서 36개월범위까지 확대	○ 미반영 - 대상자녀의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여부는 제도 시행 이후,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 필요 ※ 금번에 신설하는 특별휴가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령기 초기 준비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홍지수 외 1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6세 이상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3~6학년까지 확대	
이슬비 외 1	사용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모두 확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 8. 22.)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33조, 제90조)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5조 관련 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재산관리과 성지혜(☎2133-32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u>100만원을 초과하여</u>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u>50만원</u> ----- -----.
1.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u>	1.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u>
2. <u>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	2.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
3. <u>삭제</u>	3. <u>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u>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u>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u>	1. <u>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u>
2.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u>	2.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
3. <u>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	3. <u>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u>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생 략)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라 (생 략)

<신 설>

2. (생 략)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
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
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
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부서명 : 재무국 재산관리과 성지혜 주무관(2133-3280)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 6.30. 만료 예정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6
- 시설규모 : 지상 4층, (대지) 212.2㎡, (연면적) 333.37㎡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 7. 1. ~ 2027. 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34백만원('24년)

- 인건비 518백만원, 운영비 49백만원, 사업비 16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은주 (☎ 2133-4131)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 6.30. 만료 예정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지상 2층,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7.1. ~ 2027. 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44백만원('24년)

- 인건비 526백만원, 운영비 63백만원, 사업비 25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 은 주 (☎ 2133-4131)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6.30.자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 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시설규모 : 1,510.75m²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2027.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6백만원('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2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1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연희 (☎ 2133-4128)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다. 2024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동남,서북)
- 위탁기간 : 2024. 5. 1. ~ 2027. 4. 30.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923,124천원('24년 예산안 기준)
 - 동남(457,882천원), 서북(465,242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수탁기관 적정성심의)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률성 필요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 상담·평가 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사업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협력지원팀 이진희 (☎ 2133-7465)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리버버스 사업 추진
- 나. 한강 주요 지역의 연결을 통해 한강 개발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상이동수단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한강의 수변공간 개발 사업에 창동 씨드큐브, 마곡산업단지, 동남권물류단지 등을 수행한 공사가 참여하여 리버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운영, 시 재정지원 및 수익 공유시 회계투명성 강화와 공공재원 환수 등 공공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확보 하고자 함.
- 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등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개요
- 나. 한강 리버버스 사업계획
- 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비 및 재원조달
- 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 타당성
- 마. 한강 리버버스 사업 기대효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개발사업단TF
권준희 차장(☎3410-859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노들섬 다목적홀(숲)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으로 조성하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숲) 현황

- 주 소 : 용산구 양녕로 446(이촌동 302-6,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동측)
- 규 모 : <토지> 1,143.83㎡ / <건물> 1,222.83㎡

층수	내용	면적(㎡)
계		1,222.83
지상1층	다목적홀, 세미나실, 화장실, 창고 등	1,024.87
지상2층(지붕층 포함)	공용공간, 기계실, 창고 등	197.96

- 재산관리관 : 문화정책과장

나. 공유재산 사용계획

- 사용자(수허가자)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허가기간 : '24. 4. 1. ~ '27. 3. 31.[3년]

- 공유재산 주요사용계획(안) :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 조성·운영

위치	구분	면적(㎡)	주요 용도
지상1층	다목적홀(숲)	573	연습실(소규모 공연 가능)
	세미나실 A	110	사무실
	세미나실 B	83	리허설실
	세미나실 C	67	탈의실, 샤워실
지상2층	공용공간 등	197	공용공간, 창고 등(기용도)

- 허가조건 :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 허가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서울시 발레단 운영’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
 -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이행 시 「공유재산법」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가능
- 다양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 문화공간이라는 상징성과 공간적으로 적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들섬 다목적홀을 서울시발레단 전용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노들섬 문화인프라(콘텐츠)와 연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 불필요한 세입·세출 상계 지양으로 행정·회계 효율성 제고
-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노들섬 다목적홀(숲) 사용료만큼의 市(문화본부)의 세출(출연금)과 세입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이며 사용료 부과에 따른 국세(부가가치세) 지출 부담 등 행정·회계의 비효율성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사용료 면제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장정숙 (☎ 2133-2519)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사당역 일대는 과천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사당천 상류 유역으로부터 빗물 유출수 집중으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

- ‘22.8월 서울지역 이상폭우(최대 141.5mm/h) 발생으로 사당역 일대를 포함한 서초, 동작 지역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

나. 사당·이수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당천 단면확장’,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당IC 저류조 증설’ 등 대책을 추진 중이나,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사당천 상류(수방사 내)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추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사당천 상류에서 사당역쪽으로 유출되는 우수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수방사 내 빗물 저류조 설치 등 우수유출저감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호협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코자 하며,

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이동섭 (☎ 2133-3893)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기상이변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대방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수도방위사령부 건축물 옥상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수도방위사령부 운동장 상부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3. 수도방위사령부 계곡부 저류 및 하류부 수문 설치에 관한 사항
4. 수도방위사령부 운동장 하부에 저류조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수유출저감 및 수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역할 및 책임)

1. 서울시는 제 3조에서 정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수도방위사령부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공동협력) 양 기관은 제3조 제4호에 따른 지하 저류조 설치에 관하여는 국방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 및 시설 유지 관리·운영 등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며, 제7조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제7조(협약의 해석,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양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 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호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16.8.4.)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기 수립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일부 변경이 필요하여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내용

- 사업기간: 기정)2017년~2020년 → 변경)2017년~2021년
- 사업계획: 가로환경 정비 1개 폐지 및 1개 신설
- 총사업비: 기정)196.4억원 → 변경)166.9억원

나. 변경사유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기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 사항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최정훈(☎ 2133-8643)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지역 현황 및 인구변화 등 경제·문화·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 「건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

-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 기반 마련
- 건축물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건축통계 생산 역량 제고

나.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

-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통합하는 장소기반 도시설계 강화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도화 및 활용

다.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

-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거 확대 및 주택성능·디자인 품질 제고
- 일상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응 건축·공간환경 정비

라.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최적 활용

- 공공건축물 DB 구축 및 공공건축의 관리 효율성 제고
-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 개선

마. 서울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

- 서울 건축문화 포괄의제 설정 및 건축문화사업 재편
-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경쟁력 강화, 건축문화컨텐츠 발굴·지원

바.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

- 건축행정 디지털 대응력 강화, 건축정책위원회 위상 강화
- 서울시 건축정책 홍보 강화 및 실행력 제고

3. 추진경위

- '21.11. :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 '22.02.~06. : 실국 담당자 집중 워크숍, 자치구 면담
- '22.08. :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89명 설문조사
- '23.02.~06. : 총괄·분과별 전문가 15명 TF 개최
- '23.03. : 건축정책위원회 사전자문
- '23.10. :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위한 시민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기본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우종우 (☎2133-7100)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
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3. 안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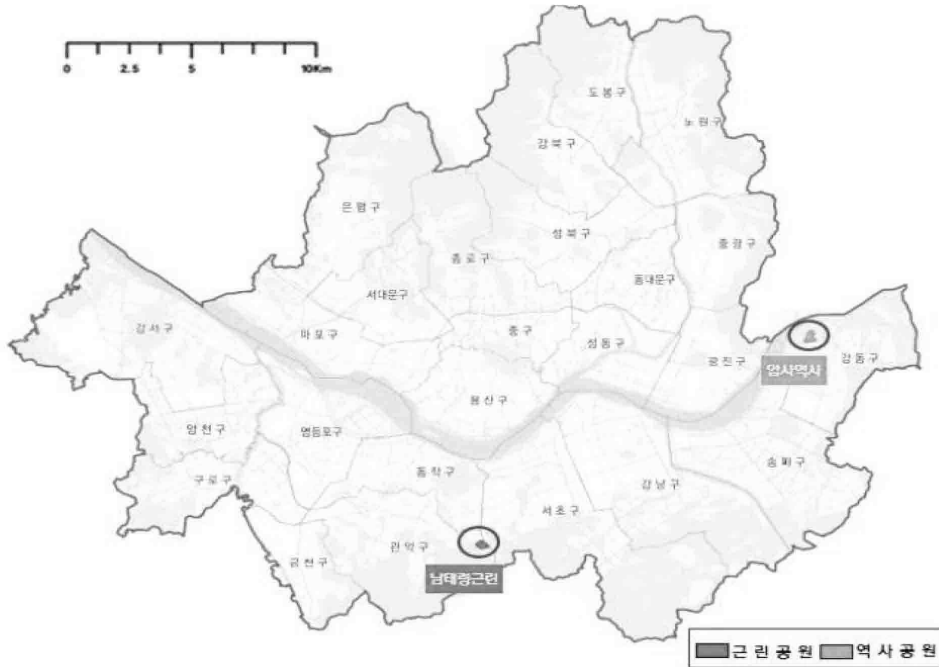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 2건

구 분	총 계(건)	존치	해제가능
총 계	2	2	0
공 원	2	2	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내역

시설 구분	명칭	면적(㎡)	위치	결정고시일	단계별 집행계획
공원	암사역사공원	110,198	강동구 암사동 136-1	2006. 5. 18.	1단계
공원	남태령근린공원	13,510	관악구 남현동 산99-21	2009. 1. 8.	1단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붙임1] 참조

4. 그 간 추진경위

- '20. 7. 1. 장기미집행시설 일괄 실효('00.7.1. 이전 결정 시설)
 - 일괄 실효 대비 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부서, 자치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실효, 폐지 등) 절차 이행
- '21.12. 단계별 집행계획 시의회 보고(제303회 정례회)
 - 장기미집행시설 2개소(공원 2개소)
- '24. 1. 장기미집행시설 2개소 존치

※ 작성자: 시설계획과 공공시설정책팀 김정은(☎ 2133-8408)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 시설 부문	사업개요				기 보상금액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4 ~)							실효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소계	~'22	'23	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24	'25	'26	'27	'28		'29이후	
	총 계 (2개소)				98,125	123,315	79,349	75,378	3,971	43,966	6,000	37,966	5,757	36,245	1,964	-	-
공원	암사역사공원 (강동)	'08 ~ '26	88,540	119,387	79,349	75,378	3,971	40,038	6,000	34,038	5,757	34,281	-	-	-	-	2026 이후
공원	남태령근린공원 (관악)	'09 ~ '29	9,585	3,928	-	-	-	3,928	-	3,928	-	1,964	1,964	-	-	-	2029 이후

붙임 2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현황

- 사유지 면적: 36.7km²(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69.2km² 중 약 53%)

□ 사유지 매수방법, 매수방향

- (매수방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구역’으로 공모를 통한 토지주 신청에 의해 협의매수를 추진
- (매수방향) 공원간 연결토지, 정형화 필요토지 등 토지용도에 따라 단계별 추진
 - 2022년 ~ 2030년: 공원간 연결토지, 정형화 토지 우선 매수
 - 2030년 이후 ~ : 잔여 사유지 매수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중장기계획(푸른도시여가국)

계획기간 유 형	2022년 ~ 2030년(2조 2,801억원)		2031년 ~ 잔여사유지
	공원간 연결	정 형 화	
개 념 도			
확보방안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 등		
규 모 (36.7km ²)	5.6km ²	0.7km ²	30.4km ²
소요예산 (14조8,665억원)	1조 9,820억원	2,981억원	12조 5,864억원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 사유지 협의매수 현황(2022년 ~ 2024년)

구 분	협의매수 면적(천 m ²)	협의매수 예산(억원)	비 고
2022년	128	617	매수 완료
2023년	186	829	진행중
2024년	94	3,064	진행 예정

□ 사유지 연차별 예산계획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면 적(km ²)	6.3	0.2	0.2	1.0	1.0	1.0	0.8	0.7	0.7	0.7
소요예산(억원)	22,801	617	829	3,604	3,604	3,604	2,866	2,559	2,559	2,559

붙임 3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현황

□ 2022년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집행액(백만원)	비 고
소계	38개소, 52필지		128,573	61,730	
1	불광	은평구 불광동	200	99	
2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200	100	
3	명일	강동구 상일동	76	55	
4	명일	강동구 상일동	3,614	1,986	
5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3,677	1,730	
6	초안산	도봉구 창동	4,710	1,999	
7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11,279	5,264	
8	명일	강동구 상일동 외 1	3,345	1,833	
9	불광	은평구 불광동	2,013	1,010	
10	서오능	은평구 갈현동	2,079	1,035	
11	대모산	강남구 일원동 외 2	2,649	442	
12	영축산	노원구 월계동	3,547	1,415	
13	상도	관악구 봉천동 외 2	3,733	1,982	
14	봉제산	강서구 등촌동 외 2	14,565	6,216	
15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282	132	
16	말죽거리	서초구 서초동	6,233	7,293	
17	고덕	강동구 고덕동	2,941	1,109	
18	명일	강동구 상일동	5,752	4,049	
19	수락산	노원구 상계동 외 3	8,584	1,740	
20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2,717	1,431	
21	궁동	서대문구 연희동 외 1	3,014	3,704	
22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3,122	107	
23	백련	은평구 응암동	3,893	2,274	
24	서리풀	서초구 반포동	4,322	4,639	
25	봉제산	강서구 등촌동	5,035	2,989	
26	현충	동작구 등촌동	11	6	
27	현충	동작구 동작동	14	8	
28	관악산	관악구 봉천동	700	217	
29	영축산	노원구 월계동	812	313	
30	관악산	금천구 독산동	1,215	530	
31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2,427	1,313	
32	인왕산	종로구 부암동	5,570	309	
33	불암산	노원구 하계동	262	61	
34	수락산	노원구 상계동 외 1	5,509	1,265	
35	대모산	서초구 염곡동 외 1	1,608	334	
36	불암산	노원구 상계동	169	42	
37	초안산	노원구 월계동	203	74	
38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외 1	8,491	852	
부대비	측량감정평가 등			1,773	

☐ 2023년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집행액(백만원)	비고
소계	34개소, 105필지		185,940	93,680	
1	용마산	광진구 중곡동	2,885	311	- '23년 예산 : 829억원 - '23년 실제 매수 예상액: 936억원 → 실제 감정평가 결과 평균 공시지가의 5.13배 수준으로 산정됨 - 부족예산 : 107억원은 '24년 예산 활용
2	봉화산	중랑구 묵동	4,498	2,101	
3	오동	강북구	12,937	7,128	
4	초안산	도봉구	4,046	1,946	
5	둘리쌍문	도봉구	9,816	6,387	
6	불암산	노원구	26,767	14,938	
7	수락산	노원구	7,837	2,051	
8	영축산	노원구	7,723	3,324	
9	초안산	노원구	17,462	3,479	
10	백련	은평구	7,076	3,622	
11	봉산	은평구	1,389	664	
12	불광	은평구	1,215	567	
13	신사	은평구	1,507	1,544	
14	백련	서대문구	14,650	5,959	
15	궁동	서대문구	959	1,612	
16	온수	양천구	3,506	584	
17	개화	강서구	6,190	1,065	
18	봉제산	강서구	14,532	6,035	
19	염창	강서구	6,160	3,248	
20	평고개	강서구	19	7	
21	온수	구로구	8,523	3,862	
22	천왕	구로구	200	32	
23	관악산	금천구	3,101	1,217	
24	현충	동작구	672	442	
25	상도	동작구	2,187	1,321	
26	관악산	관악구	2,366	1,373	
27	상도	관악구	1,271	762	
28	대모산	서초구	258	59	
29	말죽거리	서초구	4,681	5,617	
30	서리풀	서초구	2,193	3,481	
31	우면산	서초구	200	150	
32	도곡	강남구	5,707	7,481	
33	대모산	강남구	420	206	
34	일자산	강동구	2,987	1,1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국체육대학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학교	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방이동 88-15 일대	111,902.3	-	111,902.3	건고시 제326호 (1984.8.25.)	

○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구역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29,528.00	
		②	13,565.00	
		③	29,980.30	
유 지	외부활동구역	④	25,519.00	
		⑤	7,636.00	
보 전	녹지보존구역	⑥	5,674.00	
합 계			111,902.30	

- 밀도계획

1)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비 고
			기 정	변 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25	23.07	23.52	25	밀도 산정시 제외 면적 없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1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조례건폐율은 25%이하로 결정

2) 용적률

구분	총면적 (㎡)	비오톱 1등급지 (㎡)	공원 (㎡)	밀도산정 기준면적 (㎡)	조례 용적률 (%)	사용용적률(%)		관리 용적률 (%)	비고
						기 정	변 경		
자연녹지지역	111,902.3	-	-	111,902.3	82.00	77.33	78.91	82.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5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4호(23.9.7)의 결정(변경) 된 내용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조례용적률은 82%이하로 결정

3) 구역별 조서(용적률 및 높이 계획)

구역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조 례 용적률 (%)	사용용적률(%)		이 전 용적률 (%)	관 리 용적률 (%)	관 리 높 이 (m)	비 고
			기정	변경				
①	29,528.00	82	136.89	136.89	+56.00	138.00	• 지표로부터 최대 8m ~ 35m이하	일반 관리 구역
②	13,565.00	82	129.74	129.74	+49.92	131.92	• 지표로부터 최대 25m ~ 40m이하	일반 관리 구역
③	29,980.30	82	94.90	100.81	+24.44	106.44	• 지표로부터 최대 5m ~ 40m이하 - 최대 5m이하 지역 일부 최대 25m 이하로 변경	일반 관리 구역
④	25,519.00	82	0.24	0.24	-79.00	3.00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외부 활동 구역
⑤	7,636.00	82	-	-	-77.00	5.00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외부 활동 구역
⑥	5,674.00	82	-	-	-81.00	-		녹지 보존 구역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지하/지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③ 일반 관리 구역	13	골프 연습장	-	511.52	-	1,987.48	-	1,771.02	-	1/4	신축

3. 입안사유

- 한국체육대학교의 기존 골프연습장의 노후화(가설건축물: '89년)와 골프 부 학생정원 대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높이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2023. 10. 27. ~ 11. 09.
- 계 재 신 문: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 열 략 장 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송파구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친환경 건물과	○ 본 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 평가 조례」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 대상 사업이 될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 전 협의를 득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7. 환경성 검토

- 학생회관 철거 예정부지에 신축되는 사항으로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시행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분진 등)의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주거·교육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8. 기 타

-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구분		비 고
	년도	2022~2025년	
건축기금	공사비	7,607	한국체육대학교(국고) 자금
	설계비	366	
	감리비	80	
	부대비	20	
	총 공사비	8,073	

○ 주요 추진경위

- '76. 12. :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립
- '84. 08. 25. :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건고 제326호)
- '93. 03. 01.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로 교명 변경
- '17. 12. 28.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최초 결정(변경) (서고시 제2017-470호)
- '23. 09. 07.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서고시 제2023-394호)
 - 다목적 체육관 신축
- '23. 09. 14.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
- '23. 10. 26.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23. 10. 27.~ 11. 09,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도(안). 끝.

※ 작성자 : 시설계획과 교육문화계획팀 윤효진 (☎ 2133-84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강서구 오정로 -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가	30.5	주간선 도로	557	오쇠동 147-7	오쇠동 180-5	일반 도로	-	-	- 하수도 중복결정 (841㎡)
기정	중로	2	338	15	집산 도로	655	외발산동 288-8	공항동 401-2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변경	대로	1	338	36.5	주간선 도로	968	외발산동 423-12	공항동 445-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 철도 중복결정 (909㎡) - 공항 중복결정 (48,269.6㎡)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대로 2-가	- 신설 - 폭원 : 30.5m - 연장 : 557m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변경	중로 2-338	대로 1-338	- 선형 변경 - 폭원 변경 - 기정 : 15m - 변경 : 36.5m - 연장 변경 - 기정 : 655m - 변경 : 968m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3. 입안사유

- 대상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오정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나. 기 타 : 개발제한구역, 공항(김포공항), 철도대곡사선, 하수도, 도로

5. 주민 의견청취사항

가. 열 랐 기 간 : 2023. 8. 31. ~ 9. 14.(14일간)

나. 계 재 신 문 : 서울경제, 서울신문

다. 열 랐 장 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

라. 접 수 의 건 : 2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안○○ (오쇠동 169-3)	○ 본인소유토지(오쇠동 169-3)와 오정로를연결 할 수 있는 고리울 천 상 교량 설치 및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도로계획 변경 요청	○ 고리울천까지의 도로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본 도로 사용 형태 및 접속 여부 등 현황을 고려하여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음	미반영
권○○ 권○○ 오○○ (신영가설)	○ 오쇠동 175-4번지 공동명의 분할 사용 토지의 편입 배제 요청 ※ 지적 3,213㎡, 편입면적 1,070㎡	○ 도로를 확장하며 주변 토지와 의 단차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진 출입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계 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편입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하겠음	미반영

6.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가. 일 시 : 2023. 09. 11.

나. 결 과 : 원안채택

7.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 일 시 : 2023. 11. 30.

나. 결 과 : 원안동의

8.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강서구의회	○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간 교통성평가의 서비스 등급이 FF이므로,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오정로상황단보도를 '스테거드 횡단보도' 형식으로 변경하고 신호운영계획을 보완, 교차로 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를 개 선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도로구역결정(변경) 과 관련하여 강서IC 교차로 일대 도로 시설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 교통개선대책' 수립('21.2.) 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이후 고속도로의 강서IC 접속 계획이 변경(방화대로→오정로)되어 해당 교차로에 대한 정합성 검토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 소관사항이나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부분 반영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 도로 일부 구역이 '김포공항 대 중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성된 대 체녹지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대체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구 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사항을 시설 결정 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관리계 획규정 제29조, 제34조)	○ 해당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시설(광역도로)에 해당하나, ○ 대체녹지 관련 '김포공항 대중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 공사와 별도 협의 진행 중으로 대체녹지확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와 사전 절차를 협의하겠음	부분 반영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한국공항공사	○ LH공사에서 대체녹지조성*을 완료할 경우, 오정로 확장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제척 27,500㎡) 가능 * 대체부지 인정조건으로 LH에서 (주)구성환경 폐기물 처리 후 대체녹지조성	○ 폐기물 처리 관련 기 협의중인 조건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 후 관련 절차 이행하겠음	부분 반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강서 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와 사전 협의 필요	○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강서 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 연계계획에대해 국토교통부및 서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하겠음	반영
	○ 광명~서울 고속도로 도로계획 (강서IC) 반영 필요	○ 강서IC 변경 전 ‘부천대장동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21.2)으로 [오정로확장사업(4차선→8차선)]이 선평정되었으며, 강서IC 계획이 최대한 반영토록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9. 기타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2027년 이후	비고
총사업비	합 계	516	51	181	181	103	
	공사비	142	14	50	50	28	
	보상비	335	34	117	117	67	
	부대비	14	1	5	5	3	
	예비비	25	2	9	9	5	

나. 추진경위

- '20. 05.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 '21. 02. 부천대장·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21. 11.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23. 0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
- '23. 0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요청(LH공사 → 강서구)
- '23. 08.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3. 09.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3. 11.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박현일 (☎ 2133-8454)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1부.
3.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강서구 벌말로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 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9	25	주간선 도로	598	오곡동 546-1	부천시 도시구 역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350호 (1991.06.28.)	-
변경	광로	1	A	36.5 ~ 38.0	주간선 도로	598	오곡동 546-1	부천시 도시구 역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350호 (1991.06.28.)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89	광로 2-A	- 사업시행 구간의 폭원변경 - 당초 : 25m - 변경 : 50m ~ 58m - 사업시행 구간의 면적변경 - 당초 : 18,210㎡ - 변경 : 29,586㎡(증 11,376㎡)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인 국도39호선(벌말로 등) 확장공사(왕복 4차선 → 왕복 8차선)로 인한 폭원 변경 (대로3류 → 광로2류)

3. 입안사유

- 대상지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로 국도39호선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국도39호선 중 서울특별시 구간인 ‘벌말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나. 기 타 : 개발제한구역, 도로

5. 주민 의견청취사항

- 가. 열 략 기 간 : 2023. 8. 31. ~ 9. 14.(14일간)
- 나. 계 재 신 문 : 한국일보, 조선일보
- 다. 열 략 장 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
- 라. 접 수 의 건 : 2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원○○ (오곡동 593-2 토지소유주)	○ 확장되는 도로사업에 부지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LPG 차량의 충전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편입을 적극 반대하며 현 4차선 양쪽으로 국유지가 존재함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로 확장 건의	○ 당해 도로사업은 국가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계양지구(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선형 및 도로시설기준에 따라 불임과 같이 해당부지(전체면적의 39%)의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불임 참조) 이에, 부지편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부서(도시계획부·건설교통부·보상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관련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미반영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경○○○○○ 주식회사 (외동34-1, 5 토지소유주)	○ 도로사업 구간에 소유하고있는주 유소 부지(외동34-1(1,500㎡ 중 1,451㎡), 594-5(363㎡ 중 363㎡) 편입되어 주 유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 불가피, 또 한, 사업자 신뢰도 하락 및 주유 소 직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 게 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 반대	○ 당해 도로사업은 국가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계양지구(3기 신 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시 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선형 및 도로 시설기준에 따라 불임과 같이 해당 부지(전체면적의 96%)의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불임 참조) 아에, 부지편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 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관련법」에 따라 관련 부서(도시계획부처, 사업본부, 보상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관련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미반영

6.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가. 일 시 : 2023. 09. 11.

나. 결 과 : 원안채택

7.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 일 시 : 2023. 11. 30.

나. 결 과 : 수정동의

- 대지와 도로관계, 가각전제 불합리 해소를 위해 굴포천 측 별말로의 지정 도로계획선 유지
- 당비교 확장에 따른 가감속 차선 계획을 고려한 맞은편 사유지 부분 폭원 재조정 검토

8.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 전협의 의견과 같이 경지 정 리된 농지와 관련된 사전 절 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	○ 관련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로 협의 제외 대상 이나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에 해당 ○ 사전협의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시설결정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강서구 공원녹지과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도로편입, 가설건축물 설치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산정·납부 후 공사 착수토록 하겠음	반영
강서구 도로과	○ 도로설계 내용 중 횡단구성 상보도폭은 최소 2.5m이상 을 확보하고 보행이동에 장애나 불편이 없어야 할 것	○ 당해 도로사업 구간의 일부(부천시 구간)가 부천대장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부천대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보도폭은 부천시 구간과 동일한 폭인 횡단구성(보도폭 35m 보도2m + 측방1.5m)으로 도로과 의견에 따라 보도폭 최소 2.5m이상 확보되어 설계되었으며, ○ 가로등 및 분전함 등 보행 자장물은 식수대에 배치함으로써 보도 유효폭 2m 구간 내 보행 자장물이 없어 보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반영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도로 확장구간 신설되는 보도측구 시공 시 도로구배규정에 부합토록 설계하여 우기 시 물고임 현상 발생치 않도록 하며, 추가적인 빗물받이 최대한 확보 할 것	○ 추가적인 빗물받이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9. 기타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사업비	합 계	90	2	13	33	17	23	
	공사비	57	2	4	11	17	23	
	보상비	33	-	10	23	-	-	

나. 추진경위

- '19. 10.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 '21. 02. 부천대장·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21. 08.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22. 07.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
- '23. 0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요청(LH공사 → 강서구)
- '23. 08.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3. 09.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3. 11.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박현일 (☎ 2133-8454)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1부.
3.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9호선 양천향교역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양천향교역)	도시철도	강서구 가양동 150-34 일대	8,528.0	서울시고시 제2002-5호 (2002.1.9.)	-
변경	철도 (양천향교역)	도시철도	강서구 가양동 150-34 일대	10,130.7	서울시고시 제2002-5호 (2002.1.9.)	· 지하연결통로 설치 증) 1,602.7㎡ - 대로2-41 중복결정 (A=1,339.2㎡)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철도 (양천향교역)	가양동 150-34	길이(m)	-	증) 39.4	39.4	-	-
			폭(m)	-	증) 5.8~7.1	5.8~7.1		
			높이(m)	-	-1.0~+14.7 (해수면기준)	-1.0~+14.7 (해수면기준)		
			면적(㎡)	-	증) 263.5	263.5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철도 (양천향교역)	· 양천향교역 지하연결통로 설치 - 당초 : 8,528.0㎡ - 변경 : 10,130.7㎡ 증) 1,602.7㎡ (18.8%)	·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하철 이용자수 증가로 양천향교역 4번 출구의 보행여건 개선을 통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양천향교역과 본 건축물을 연결하는 출입구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함

3. 입안사유

-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동선 체계구축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양천향교역 신규 출입구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가. 용도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나. 기 타 : 지구단위계획구역(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철도(9호선 양천향교역), 도로(대로2-41, 양천로)

5. 주민 의견청취사항

- 가. 열 략 기 간 : 2023. 7. 14. ~ 7. 27.(14일간)
- 나. 계 재 신 문 : 서울신문, 문화일보
- 다. 열 략 장 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
- 라. 접 수 의 견 : 없음

6.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 가. 일 시 : 2022. 10. 21.
- 나. 결 과 : 원안가결

7.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가. 일 시 : 2023. 09. 14.
- 나. 결 과 : 조건부 동의
 - 안전시설인 피난계단 또는 대피시설 및 공조시설 설치 검토
 - 보행자의 쾌적환경 서비스를 위한 지하연결통로 내 녹지공간 검토

8.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시 관련 학회자문을 통한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이전 관련 학회자문을 통한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 검토를 하겠음	반영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시 운영기관(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공사, 관운영협약 관련 협의 실시	○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의 실 시하겠음	반영
	○ 지하연결통로 신설에 대해서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서울시 지침에서 제 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금회 지하연결통로 신설 계획은 기 고시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 부개발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진 행되는 것이며, ○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유지 내 지하철출입구를 설치하는 사항으 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서울시 지침 에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참고하여 지하 연결통로 조성 시 폭원은 10m 이상으로 계획 필요함	○ 지하 연결통로 조성 시 폭원은 10m 이상으로 계획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 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하나의 시설(철도)로 결정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내용 중 지하철역 연결통로 조성 시 보행공간 폭 10m 이상 계획에 대한 미반영 사 유 및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하여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람	○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하겠음, 10m 이상 계획 변경 반영	반영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 지하연결통로 연장상부도로(양천로) 이용 및 안전 지하매설물(이격거리 등) 시설 이용·관리에 제한이 없는지 검토 필요하며,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안정성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실시계획인가 시 확정된 계획안의 실시시설계도면에 따라 지하연결통로 상부도로(양천로) 이용 및 안전, 지하매설물(이격거리 등) 시설 이용·관리에 제한이 없는지 검토 진행하고,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안정성 등에 대해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음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양천향교역과 인접하여 설치되는 만큼 신설 지하연결통로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일체 관리하도록 변경 바람	○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방침제232호, '18.10)」 기준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일체 변경하도록 하겠음	반영
강서구 도시계획과	○ 가양동 134-1번지(려산빌딩) 지하 건축물경계 및 구조 확인이 필요하며 건축물과의 이격 필요성 및 안정성 검토 확인	○ 지하 건축물 경계 및 구조를 확인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메트로9호선	○ 당사의 의견반영 전 도시철도과와 연결통로 신설 관련 협의 및 승인이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연결통로 신설 관련 도시철도과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9. 기타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100%)
- 소 요 예 산 : 약 30,000백만원

나. 추진경위

- '22. 02.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심의결과: 지하철역과 연계한 보행동선 등 지하연결통로 조성(보행공간 폭원 10m 이상 계획)
- '22. 03.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 제안(시행자 → 區)
- '22. 07.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 '22. 10. 강서구의회 의견 청취(결과: 원안가결)
- '22. 12.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류)
 - 사유지를 포함하는 방안 등 폭원 10m 지하연결통로 확보 방안 재검토
- '23. 09.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결과: 조건부 동의)
 - 피난계단 또는 대피 및 공조시설 설치, 지하연결통로 내 녹지공간 검토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박현일 (☎ 2133-8454)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1부. 끝.

구 고 시

◆ 노원구고시 제2024-8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2010.12.1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변경결정(재정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2014.2.1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7.16.)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2021.2.18.)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호(2021.6.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8호(2021.9.16.)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1-166호(2021.11.4.)로 변경 결정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노 원 구 청 장

I. 결정취지

- 중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질 높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주민센터 및 우체국)를 공공청사(주민센터,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시설로 중복결정(변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일원	1,431,637.7	-	1,431,637.7	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31,637.7	-	1,431,637.7	100.0
주거지역	1,298,497.5	-	1,298,497.5	90.7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536.2	-	120,536.2	8.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5,841.8	-	35,841.8	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76,252.3	-	176,252.3	12.3
제3종일반주거지역	874,569.0	-	874,569.0	61.1
준주거지역	91,298.2	-	91,298.2	6.4
상업지역	5,559.3	-	5,559.3	0.4
일반상업지역	5,559.3	-	5,559.3	0.4
녹지지역	127,580.9	-	127,580.9	8.9
자연녹지지역	127,580.9	-	127,580.9	8.9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 (1) 도로(변경없음)
- (2)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3)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1) 녹지(변경없음)
- (2) 공원(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1) 학교(변경없음)

(2)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⑥	공공 청사	우체국	하계동 251-3호	505.7	감) 505.7	-	서고시 262 (1990.8.14.)	하계1동 우체국
폐지	⑨	공공 청사	동주민센터	하계동 251-2호	652.7	감) 652.7	-		하계1동 주민센터
신설	㉔	공공 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하계동 251-2호, 251-3호	-	증) 1,158.4	1,158.4	-	중복결정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⑥	공공청사 (우체국)	• 공공청사(우체국) 폐지 (505.7㎡ → 0㎡, 감 : 505.7㎡)	• 우정사업본부의 전국 우체국 창구 통합정책에 따라 폐국 되어 운영하지 않는 하계1동 우체국부지를 노원구에서 매입 후 공공복합청사로 개발하고자 공공청사(우체국) 폐지
⑨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폐지 (652.7㎡ → 0㎡, 감 : 652.7㎡)	• 노후화된 하계1동주민센터와 폐국되어 운영하지 않는 하계1동 우체국 부지를 통합하여 공공복합청사로 개발하고자 공공청사(동주민센 터) 폐지
㉔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 공공청사(동주민센터, 보건지소) 신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0㎡ → 1,158.4㎡, 증 : 1,158.4㎡)	•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질 높은 행정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동주민센터, 보건지소) 신설 •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및 직업교육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최초결정일	비 고
㉔	50% 이하	250% 이하	35m 이하	-	중복결정(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3) 문화시설(변경없음)

(4) 연구시설(변경없음)

(5)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⑥	사회복지 시설	하계동 251-2호, 251-3호	-	증) 1,158.4	1,158.4	-	중복결정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공공청사(동주민센터, 보건지소) 중복결정 (0㎡ → 1,158.4㎡, 증 : 1,158.4㎡)	-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및 직업교육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질 높은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동주민센터, 보건지소) 중복결정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최초결정일	비 고
⑥	50% 이하	250% 이하	35m 이하	-	중복결정(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6)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나.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라.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사.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축물 배치(변경)

[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 (한글비석길, 노원길)변 일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대곡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간선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충분한 도로 폭원을 확보
	소방서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공릉로62길변 (하계동 252-6호 일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공릉로62가길변 (하계동 252-6호 일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하계동 252-6호 일원 (사회복지시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 (한글비석길, 노원길)변 일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대곡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간선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충분한 도로의 폭원을 확보
	소방서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공릉로62길변 (하계동 252-6호 일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공릉로62가길변 (하계동 252-6호 일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하계동 252-6호 일원 (사회복지시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노원로11길 (하계동 251-2, 251-3호 일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노원로11길(하계동 251-2, 251-3호 일원) 건축한계선 1.5m 지정	노원로11길 이면도로의 경우 편측보도 1.7~1.8m 기확보 되어있음에 따라 하계동 251-2, 251-3호 일원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도형 전면공지 설치를 통해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2) 건축물 형태(변경없음)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한글비석길, 노원길)	간선도로에서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방통행구간	소방서길	원활한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양방차량통행 규제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한글비석길, 노원길)	간선도로에서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방통행구간	소방서길	원활한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양방차량통행 규제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하계동 251-2, 251-3호 일원)	간선도로에서 대지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하계동 251-2, 251-3호 일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면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고 간선도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2023년 제3차('23.12.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 조건부 의결
- 대상지 북측 도로(3m)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검토

Ⅲ. 위 변경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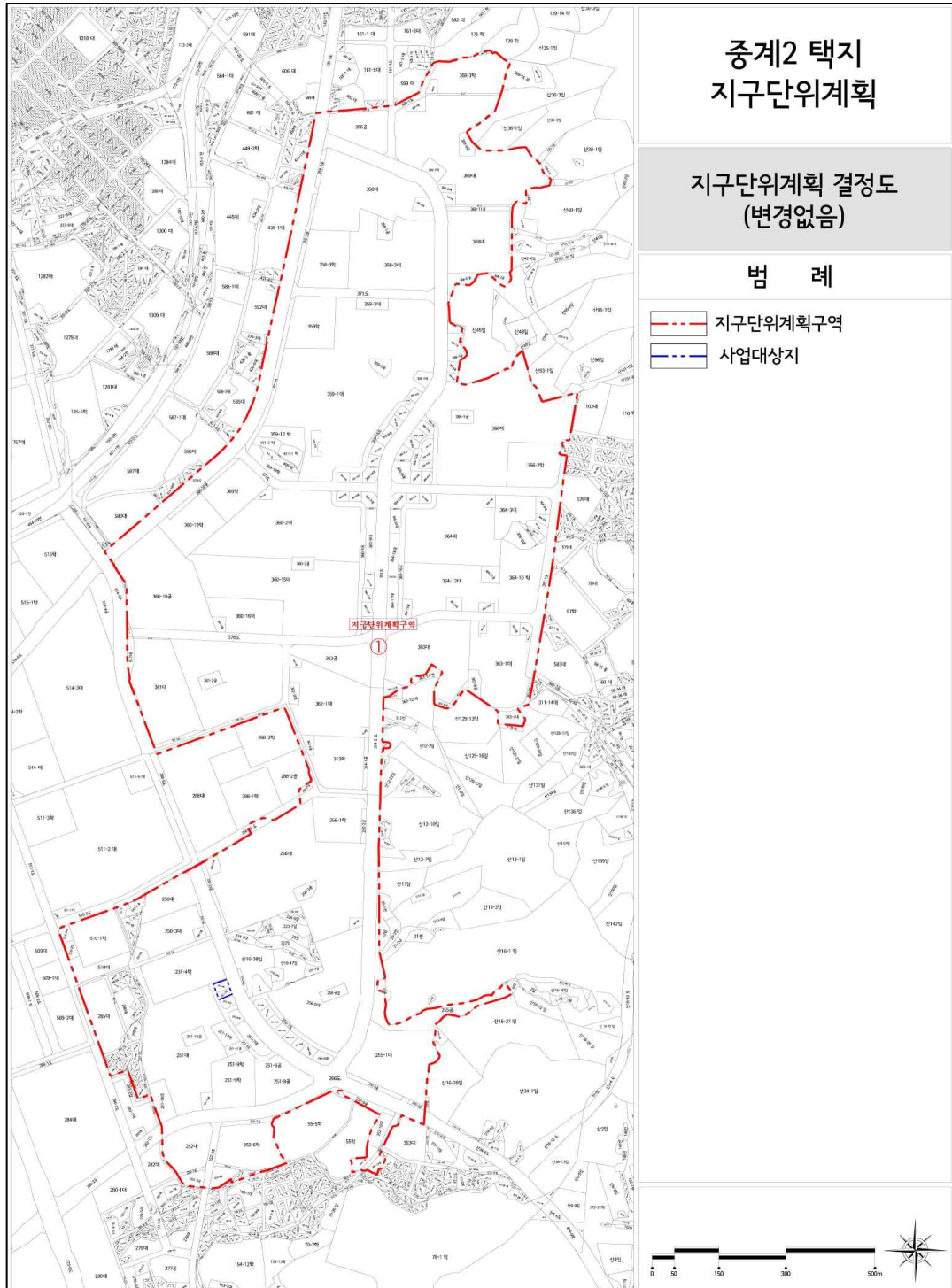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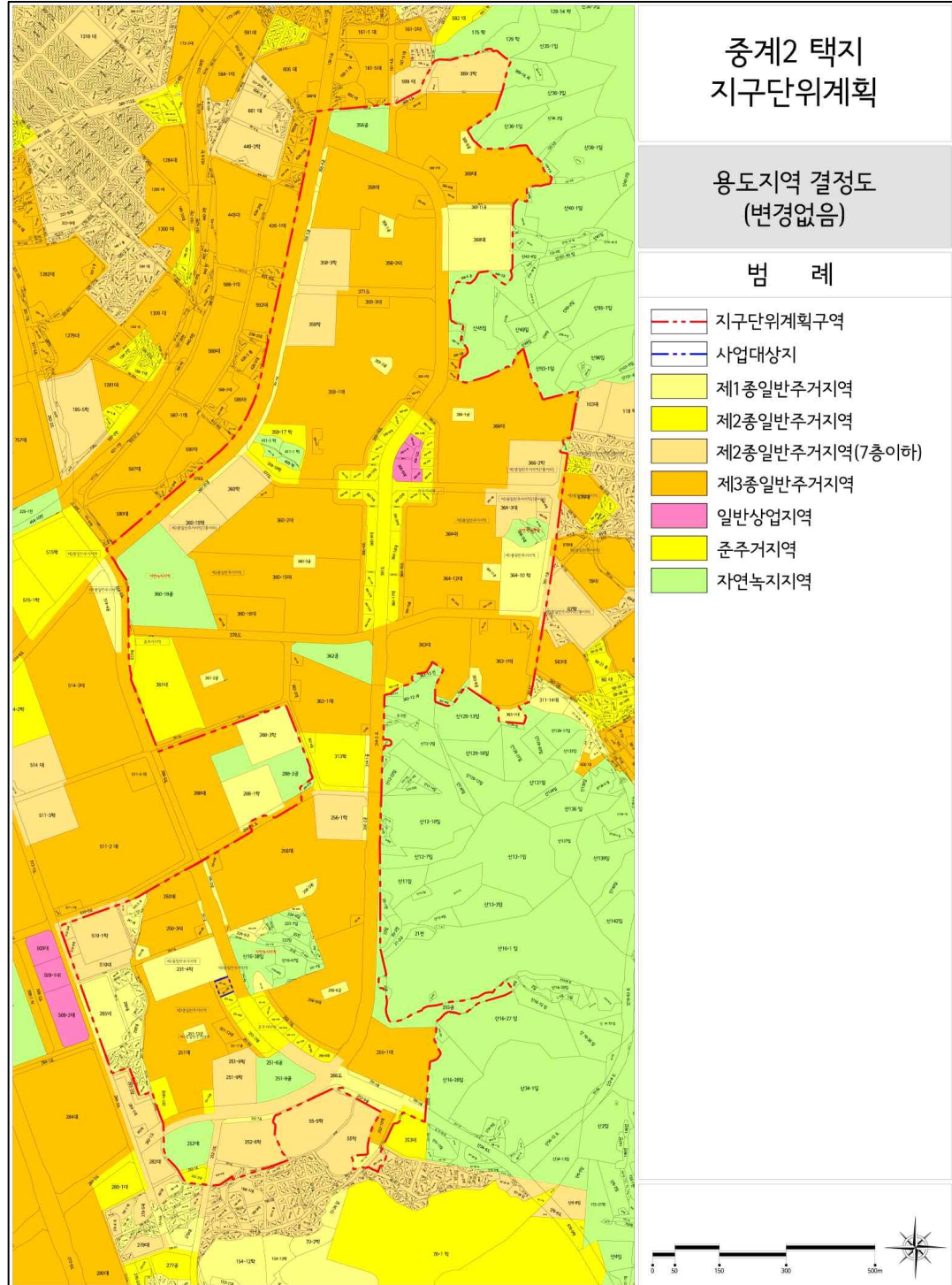
Ⅴ.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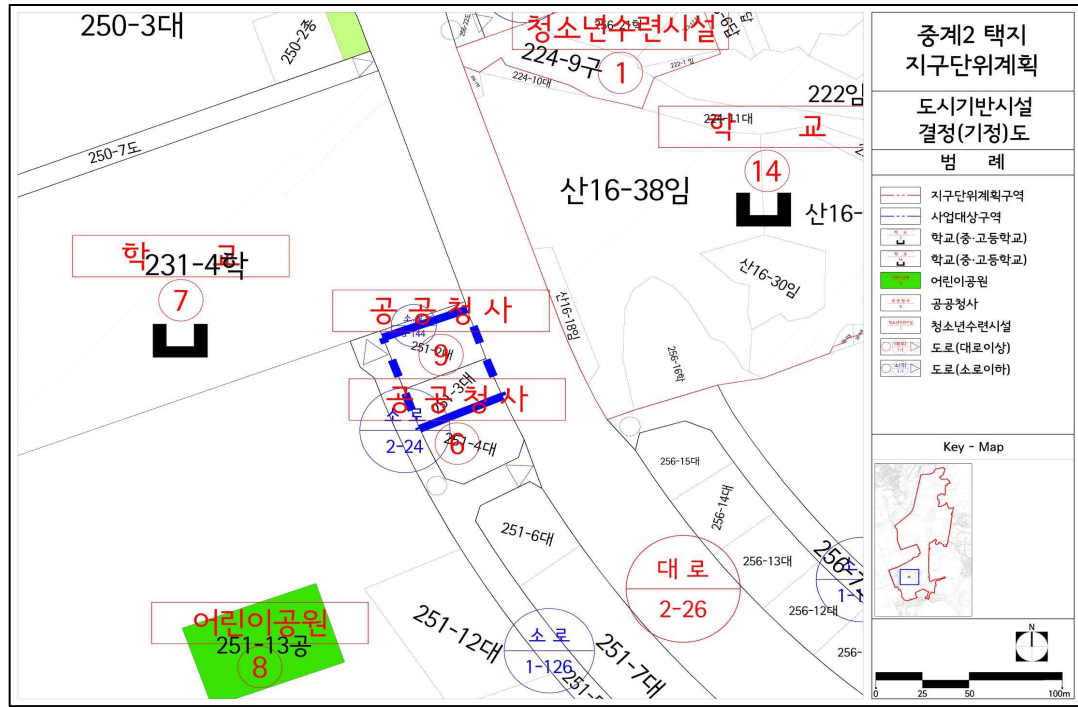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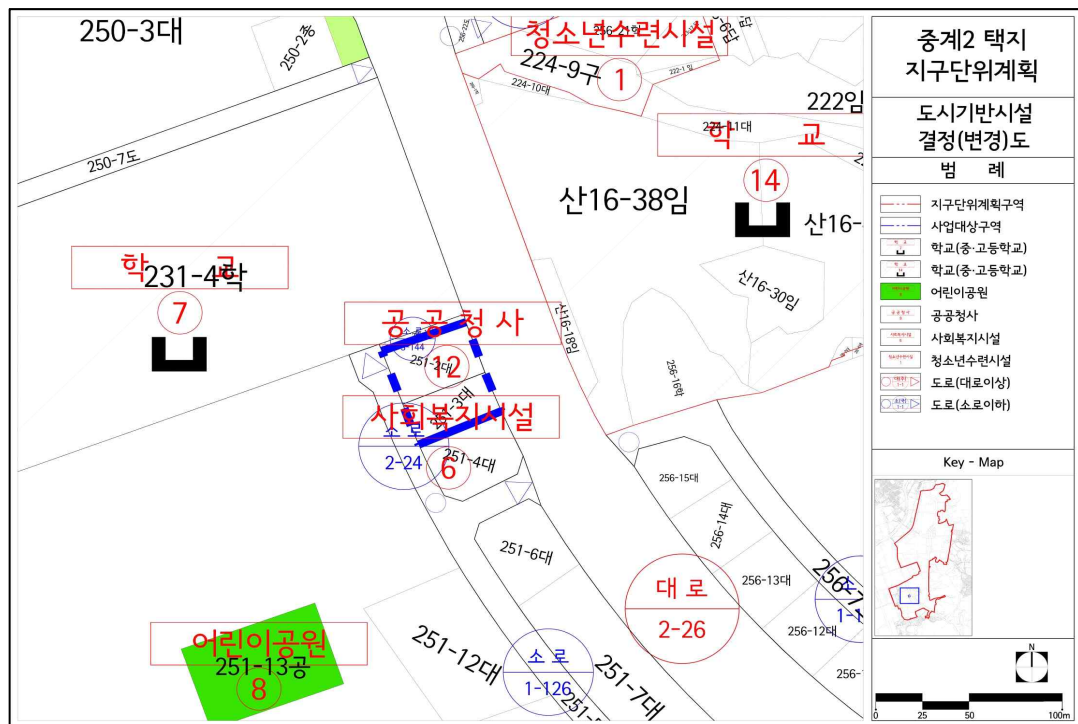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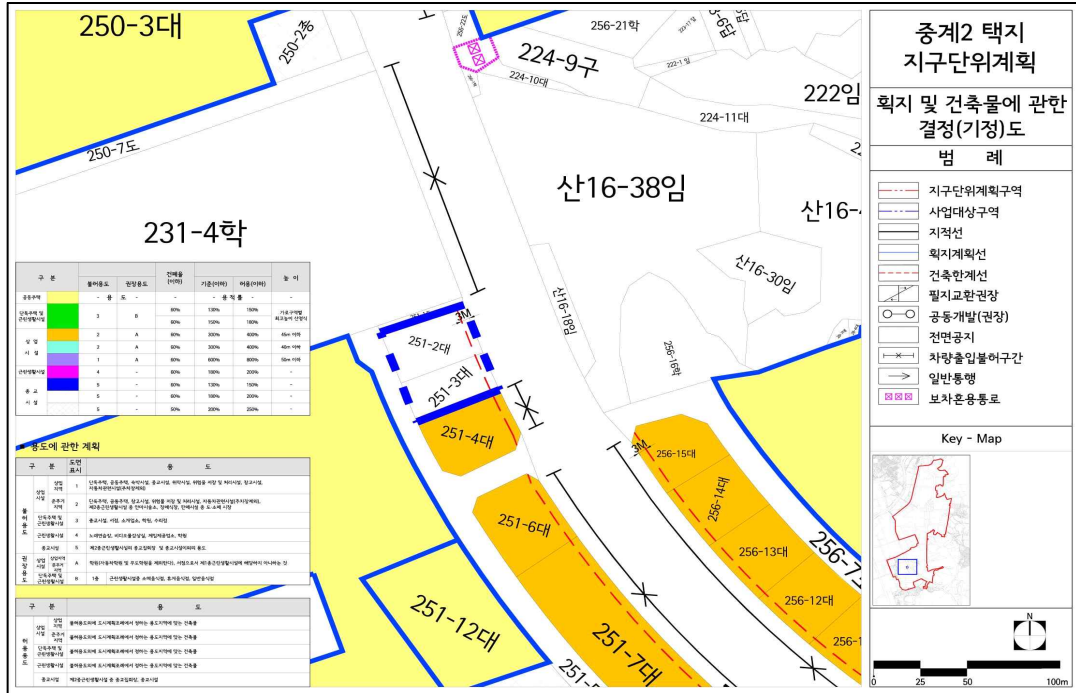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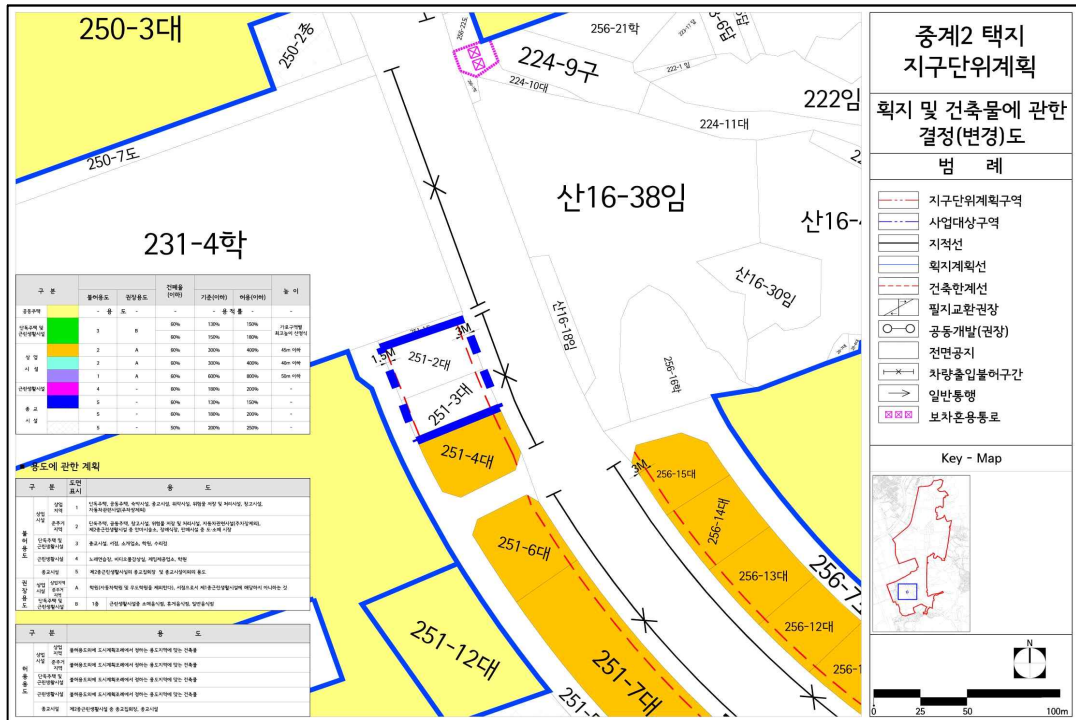
-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변경



◆ 노원구고시 제2024-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	6	국지 도로	92	상계동 322-50	상계동 322-8	일반 도로	-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도로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92m	•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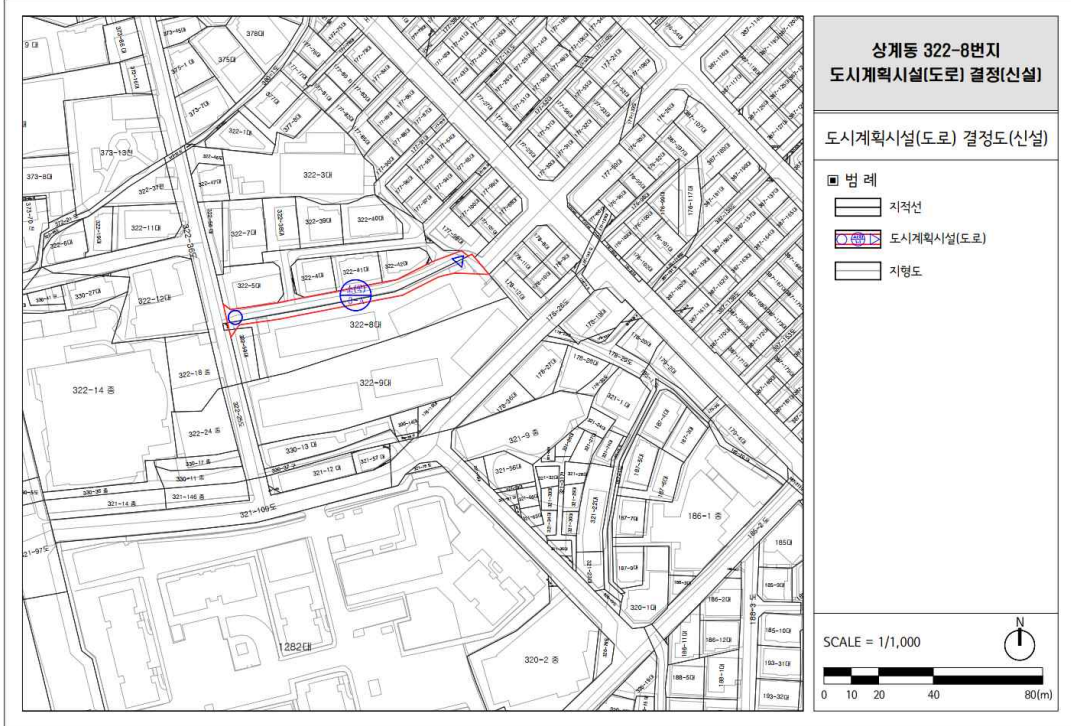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 은평구고시 제2024-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03.3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0-63호(2000.7.7.)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1-96호(2021.05.20.)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은 평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취지

-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정거장 인접 대지의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철 정거장 내 장애인 승강 편의시설 1기를 추가하고자 정거장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본선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6호선 본선)	은평구 역촌동 17번지 일대	중랑구 신내동 724번지 일대	-	연장 : 36.1km	교통부고시 제1993-5호 (1993. 4.13.)	

- 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6호선) (디지털미디어 시티정거장)	은평구 중산동 223-27 외	10,347.9	증)29.9	10,377.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 (1994. 3.30.)	승강기 신설

○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철도	도시철도 (6호선) (디지털미디어 시티정거장)	은평구 증산동 223-20 외	길 이	-	증) 12m	12m	-	입체적 결정 부분 (22㎡)
				폭	-	증) 2~3m	2~3m		
				높 이 (해수면 기준)	-	증) 4~19m	4~19m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정거장 규모 확대(면적 변경 : 증 29.9㎡) - 기정) 10,347.9㎡ → 변경) 10,377.8㎡	- 인접 대지의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철 정거장 내 장애인 승강 편의시설 1기를 추가하고자 정거장 규모를 확대하고 사유지 구간 입체적 결정 ※ 본 사업지 연관 필지의 정거장 현황과 도시계획시설선이 상이한 구간은 현황에 맞춰 시설선 일부 조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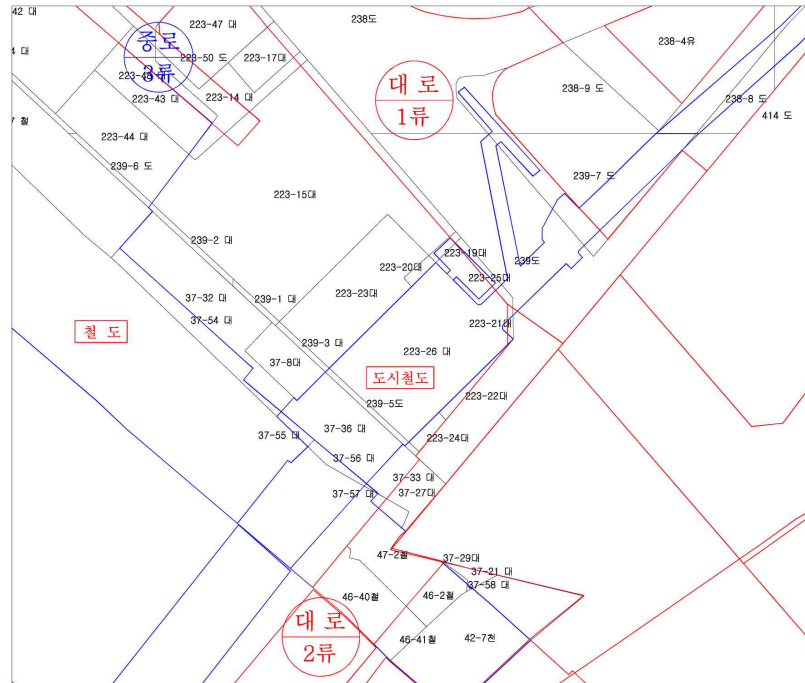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써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0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경미한 변경)

○ 기정



은평구 중산동 223-20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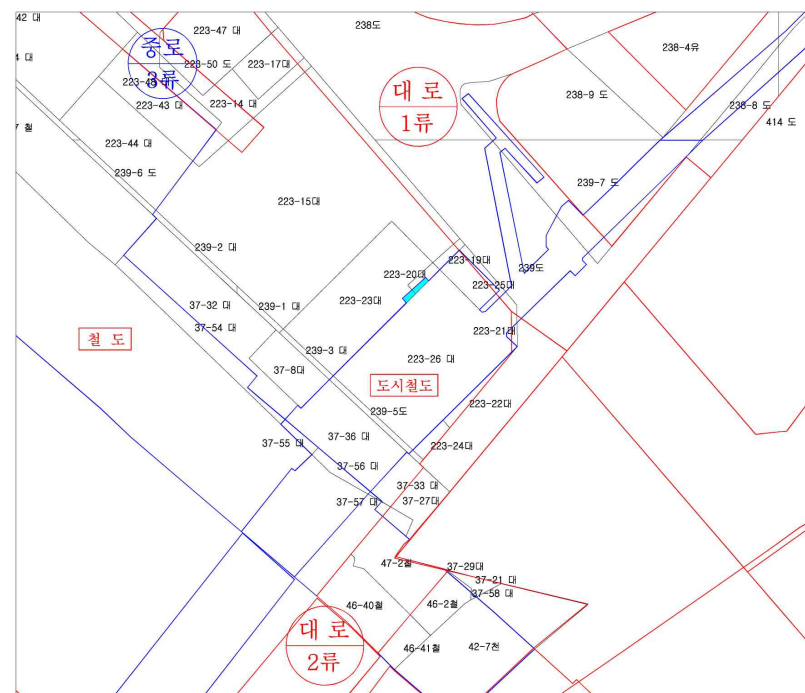
■ 범례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철도)

Scale : 1=1,000



○ 변경



은평구 중산동 223-20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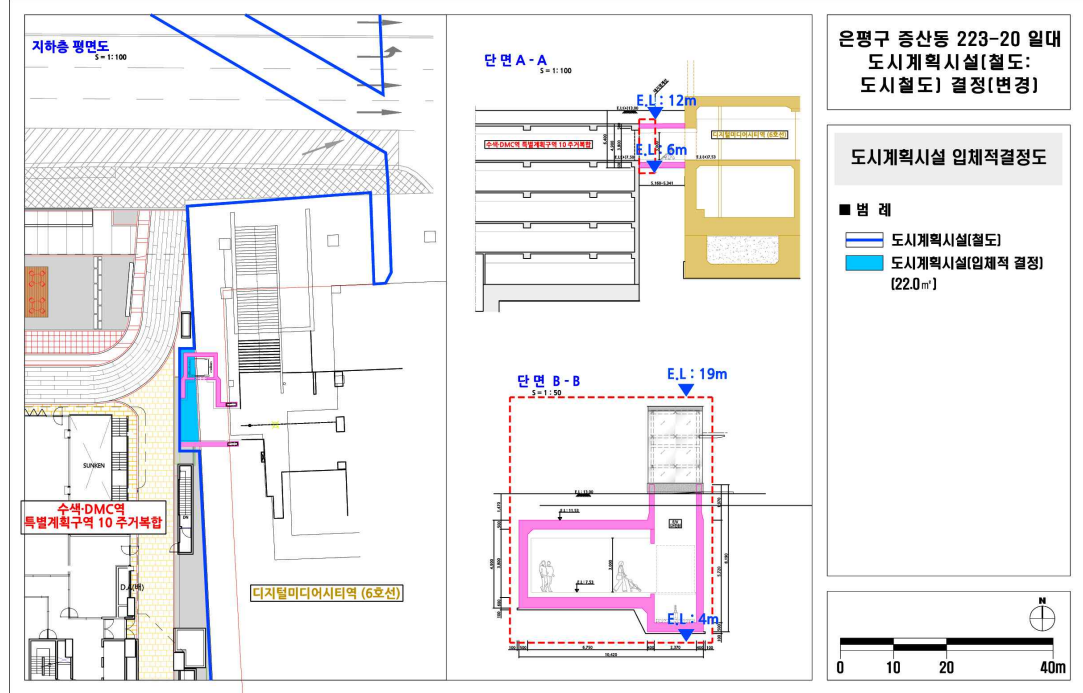
■ 범례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시계획시설 입재적 결정

Scale : 1=1,000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도



◆ 구로구고시 제2024-2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99호(1979.7.4)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구로구고시 제2022-110호(2022.7.7)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3호(2023.11.2)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2) 명 칭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1) 면 적 : 35,854.30㎡ → 38,681.80㎡ (증 2,827.50㎡)
- 2) 건축면적 : 17,210.84㎡ → 19,339.86㎡ (증 2,129.02㎡)
- 3) 건축연면적 : 119,779.87㎡ → 150,337.73㎡ (증 30,557.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1) 성 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 5가 1-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 초 : 1981.10.31 ~ 2022.08.31.
- 2) 변 경 : 1981.10.31 ~ 2027.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면 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1	구로구 구로동	80	대	35,854.3	35,854.3	35,854.3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2		80-25	대	2,827.5	-	2,827.5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80.10.31.매입 추가편입
합계				38,681.8	35,854.3	38,681.8			

2) 건축물의 조서

연번	당초(2022년 인가)			변경(2024 인가)			층 수	비 고
	건 물 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 물 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1	병 원 동	12,987.37	83,223.02	병 원 동	12,987.37	83,223.02	지하4층 지상10층	
2	새롬교육관	1,055.64	4,376.27	새롬교육관	1,055.64	4,376.27	지하1층 지상4층	
3	기 계 실	282.99	1,865.08	기 계 실	282.99	1,865.08	지하2층 지상1층	
4	적 출 물 보 관 소	67.75	67.75	적 출 물 보 관 소	67.75	67.75	지상1층	
5	별관 (치과센터)	504.08	1,957.19	별관 (치과센터)	504.08	1,957.19	지하1층 지상3층	
6	미래관	2,313.01	28,290.56	미래관	2,313.01	28,390.22	지하6층 지상6층	준공에 의한 면적 반영
7				암병원 (누리관)	2,129.02	30,458.20	지하9층 지상6층	신축 (병원동 포함예정)
계		17,210.84	119,779.87		19,339.86	150,337.73		
8	철골주차장	1,615.91	4,712.60	철골주차장	1,615.91	4,712.60	지상3층	공작물 (건폐율, 용적률 미산입)

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 (변경 없음)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결정면적 (㎡)	소유자		지상권자	비고
					성명	주소		
구로구 구로동	80-26	대	618.4	618.4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아. 변경사유

- 암병원(누리관) 신축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3호(2023.11.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되었고, 중증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 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공간을 확충하고자 암병원(누리관)을 신축하고자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고시 제2024-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54호(2021. 11.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08호(2022.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사업기간 변경)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127호(2023.1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변경)고시 한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시행지 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포함으로 인한 일부 편입면적 감소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 ~ 716-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간 도로개설공사

라. 총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6~10m, 연장 20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0. 6. 18. ~ 2024.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6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10m, 연장 20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	봉천	715-75	도로	66	66	현행 도로	김*남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22, *동 ****호(허왕십리동,무학한 신아파트)				5/15	소유권 이전
							김*숙	강남구 삼성로11, ***동 ***호(개포동,디에이치아 너힐스)				5/15	
							이*실	노원구 섬발로 265,*동 ***호(중계동,경남아파트)				3/15	
							김*정	노원구 섬발로 265,*동 ***호(중계동,경남아파트)				2/15	
2	봉천	715-189	도로	17	17	현행 도로	관악구						
3	봉천	715-194	도로	4	4	현행 도로	관악구						
4	봉천	715-201	도로	19	19	현행 도로	김*남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22, *동 ****호(허왕십리동,무학한 신아파트)				5/15	715-200
							김*숙	강남구 삼성로11, ***동 ***호(개포동,디에이치아 너힐스)				5/15	
							이*실	노원구 섬발로 265,*동 ***호(중계동,경남아파트)				3/15	
							김*정	노원구 섬발로 265,*동 ***호(중계동,경남아파트)				2/15	
5	봉천	715-105	잡	3	3	현행 도로	홍*옥	관악구 봉천동 ****-**					
6	봉천	715-104	잡	3	3	현행 도로	홍*옥	관악구 봉천동 ****-**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등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7	봉천	715-197	대	9	9	현행 도로	김*희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4, *층 ***호(신길동, 굿데이빌)	든솔신용 협동조합	-	근저당	2/4	715-18
							이*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18번길 6, ***동 ****호(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4	
							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15,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4	
8	봉천	715-198	대	1	1	현행 도로	김*희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4, *층 ***호(신길동, 굿데이빌)	든솔신용 협동조합	-	근저당	2/4	715-18
							이*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18번길 6, ***동 ****호(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4	
							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15,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4	
9	봉천	843	구거	225	203	현행 도로	국유지						
10	봉천	715-199	대	2	2	현행 도로	김*환	관악구 호암로 399, ***동 ***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715-158
							노*철	관악구 서림7길 39, ***호(신림동)					
							김*국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동 ***호 (남가좌동, 디엠씨파크뷰자이)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등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1	봉천	840-1	도로	2	2	현행 도로	국유지						
12	봉천	841	도로	109	71	현행 도로	국유지						
13	봉천	715-52	대	7	7	현행 도로	김*호	중구 신당동 **~*					
14	봉천	715-20	대	83	61	현행 도로	사유지						

위 치 도

□ 공사명 : 봉천동 719-41~716-1간 도로개설공사-No.46



◆ 서초구고시 제2024-2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2-77호(2002.7.22.)로 최초 결정된 내곡동 1-9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1)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하수도	서초구 내곡동 산12-413	서초구 내곡동 1-1016	-	3.6 ~12	468	3,296	서초구 고시 제2002-77호 (2002.7.22.)	감16㎡
		서초구 내곡동 산12-413	서초구 내곡동 1-1168	-	4.8 ~29	973	8,590		
변경	하수도	서초구 내곡동 산12-413	서초구 내곡동 1-1016	-	3.6 ~12	468	3,296		
		서초구 내곡동 산12-413	서초구 내곡동 1-1168	-	4.8 ~29	973	8,574		

2)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기점 : 내곡동 산12-413 ○ 종점 : 내곡동 1-1168	○ 기점 : 내곡동 산12-413 ○ 종점 : 내곡동 1-1168	○ 선형 조정에 따른 일부 면적변경 <table><tr><td>당초(㎡)</td><td>변경(㎡)</td><td>감소(㎡)</td></tr><tr><td>8590</td><td>8574</td><td>16</td></tr></table>	당초(㎡)	변경(㎡)	감소(㎡)	8590	8574	16	○ 공사완료 및 개인재산권보호
당초(㎡)	변경(㎡)	감소(㎡)							
8590	857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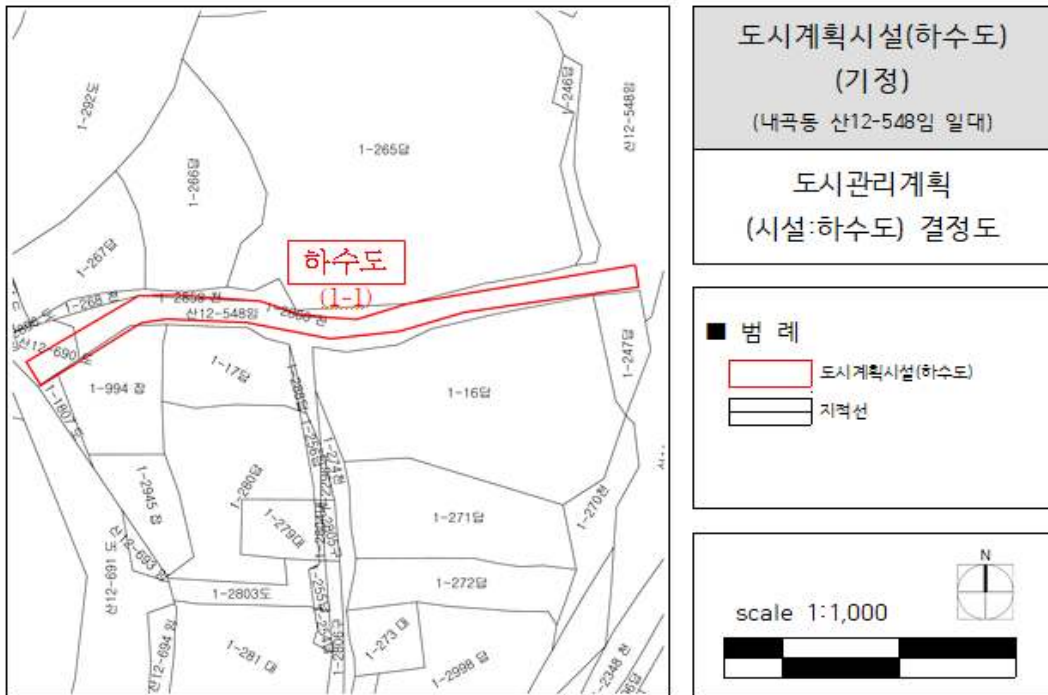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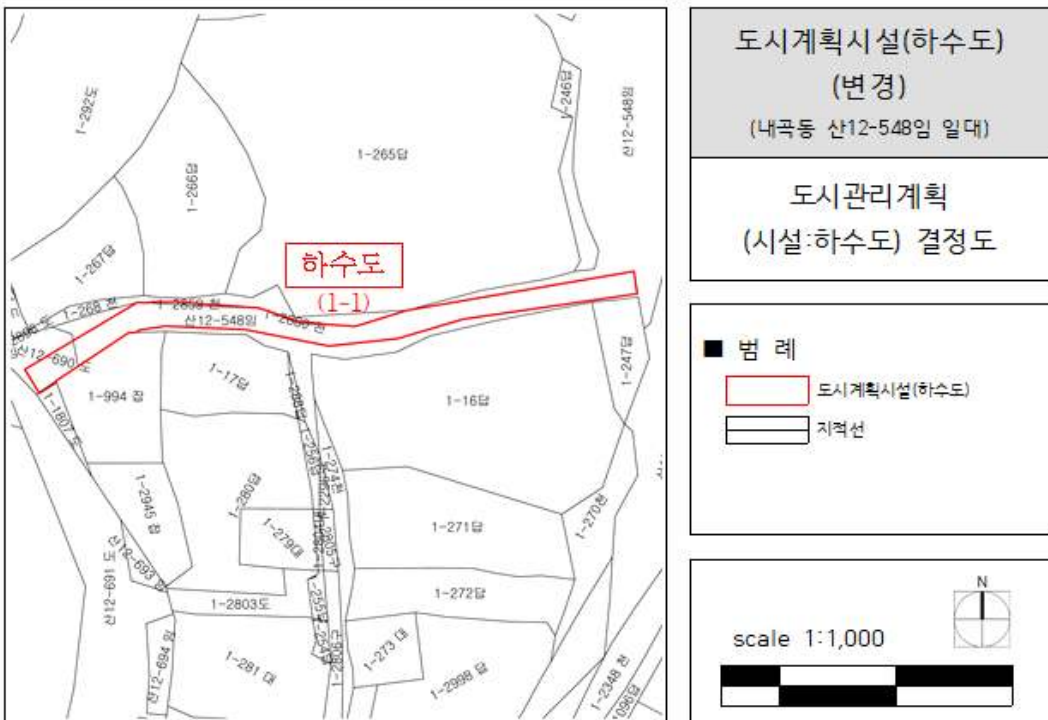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송파구고시 제2024-12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7호(2018.10.25.)로 결정(변경)된 「삼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송 파 구 청 장

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결정(변경) 취지

- 「삼전 지구단위계획」 내 잠실동 336-2호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주민제안[공동개발(권장) 해제] 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전동 7번지 일대	136,002 (507.6)	-	136,002 (507.6)	서울시고시 제1996-4호 (96.03.06)	-

※ 면적의 ()는 사업대상지 내 면적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A4	잠실동 336-2, 336-3, 336-14	1,121.9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규모있는 개발유도
변경	A4	잠실동 336-2	507.6	단독개발	공동개발(권장) 부분 해제
		잠실동 336-3, 336-14	614.3	공동개발(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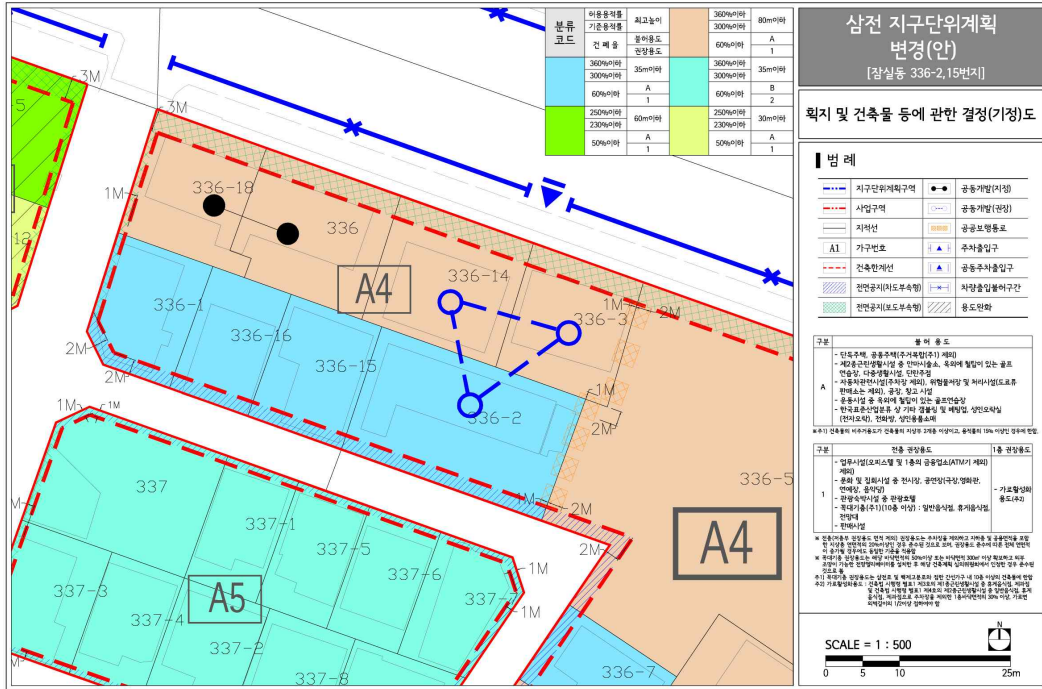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잠실동 336-2, 336-3, 336-14	◦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권장)부분 해제	◦ 공동개발을 위한 소유자간 의사합의가 어려움에 따라 공동개발(권장) 부분 해제	잠실동 336-3, 336-14는 공동개발(권장)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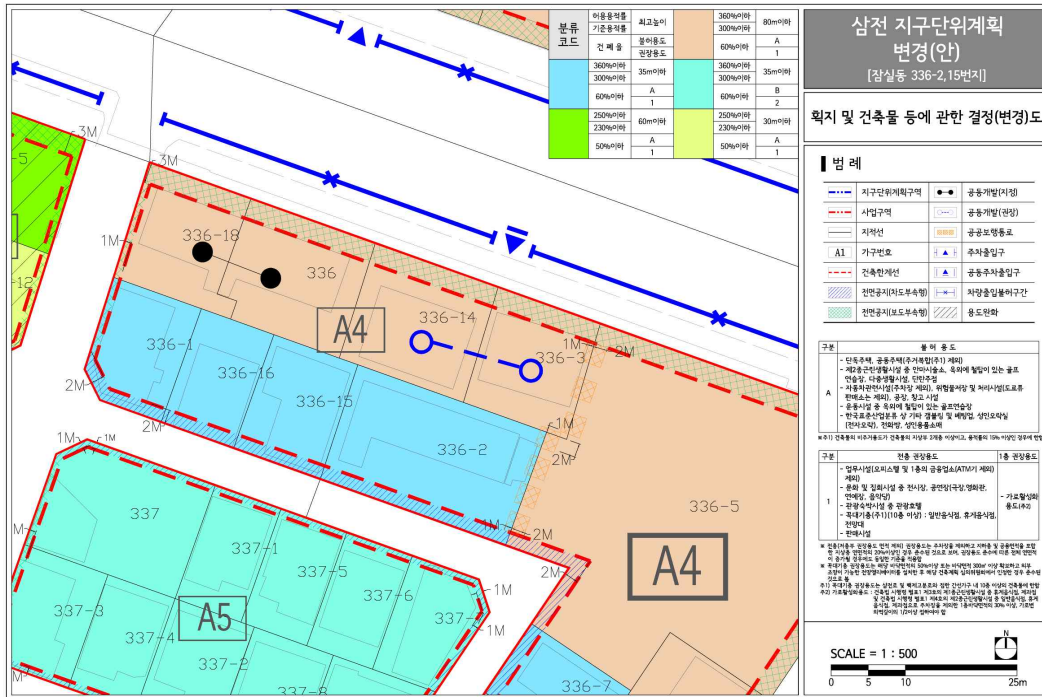
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24-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1.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2023년도에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및 공사완료 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작성일(최종)	사업기간
정릉동 365-4~404-3간 도시계획사업	정릉동 365-4~ 정릉동404-3	B = 10m L = 380m	성북구고시 제2020-97호 (2020.6.25.)	2020. 6. 25. ~ 2024. 6. 25.
석관동 124-4~77-5간 도시계획사업	석관동 124-4~ 석관동 77-5	B = 8m L = 312m	성북구고시 제2020-58호 (2020.4.23.)	2020. 6. 25. ~ 2024. 6. 25.
석관동 73-24~77-84간 도시계획사업	석관동 73-24~ 석관동 77-84	B = 10~12m L = 144m	성북구고시 제2020-59호 (2020.4.23.)	2020. 6. 25. ~ 2024. 6. 25.
장위동 69-49~68-1320간 도시계획사업	장위동 69-49~ 장위동 68-1320	B = 10m L = 68m	성북구고시 제2020-99호 (2020.6.25.)	2020. 6. 25. ~ 2024. 6. 2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도로과에 비치)

◆ 성북구공고 제2024-1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2023년도에 공사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및 공사완료 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작성일(최종)	사업기간
하월곡동 96-8~22-10간 도시계획사업	하월곡동 26-14~96-121	B = 8m L = 280m	성북구고시 제2022-120호 (2022.06.23.)	2020. 6. 25. ~ 2023. 12. 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도로과에 비치)

◆ 영등포구공고 제2024-1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69-3호(1969.01.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4-32호(2014.04.1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174호(2019.11.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1-52호(2021.03.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대림동 967-8 ~ 962-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영등포구청장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대림동 967-8 ~ 962-1간 도로개설공사	대림동 967-7번지 일대	폭 8m, 연장 40m	' 22.10.~' 23.12.

라.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 12. 14.

마. 위치도 및 토지조서: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24-1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0-32호(1970.07.2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175호(2019.11.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1-26호(2021.02.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대림동 1116-15 ~ 705-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대림동 1116-15 ~ 705-2간 도로개설공사	대림동 1059-53 ~ 1047-3번지	폭 8m, 연장 270m	' 22.10.~' 23.12.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 12. 14.

마. 위치도 및 토지조서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24-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768호(1964.01.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67호(2020.04.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90호(2020.05.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신길동 296-12 ~ 325-7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신길동 296-12 ~ 325-77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296-12 ~ 325-77	폭 8m, 연장 300m	' 22.10.~' 23.12.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 12. 14.

마. 위치도 및 토지조서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24-1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768호(1964.01.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166호(2019.11.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196호(2019.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신길동 325-1 ~ 320-8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신길동 325-1~320-8 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325-53~319-43	폭 6m, 연장 156m	' 22.10.~' 23.12.
신길동 315-35~318-1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315-72~318-2	폭 8m, 연장 158m	' 22.10.~' 23.12.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 12. 14.

마. 위치도 및 토지조서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24-1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1969-제3호(1969.01.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48호(2020.0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66호(2020.04.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신길동 4300-30 ~ 4300-3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신길동 4300-30 ~ 4300-37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4300-30 ~ 4300-37	폭 6m, 연장 70m	' 22.10.~' 23.12.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 12. 14.

마. 위치도 및 토지조서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24-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1969-제3호(1969.01.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47호(2020.0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신길동 4464 ~ 4408-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신길동 4464 ~ 4408-1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4464 ~ 4408-1	폭 6m, 연장 100m	' 22.10.~' 23.12.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3. 12. 14.

마. 위치도 및 토지조서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02-2670-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 강동구공고 제2024-215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87호(2023.3.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측량 및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9-1호 등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라.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바. 규 모: 토지보상 2,772㎡

사.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7. 12. 31일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이해관계인 추가)

자.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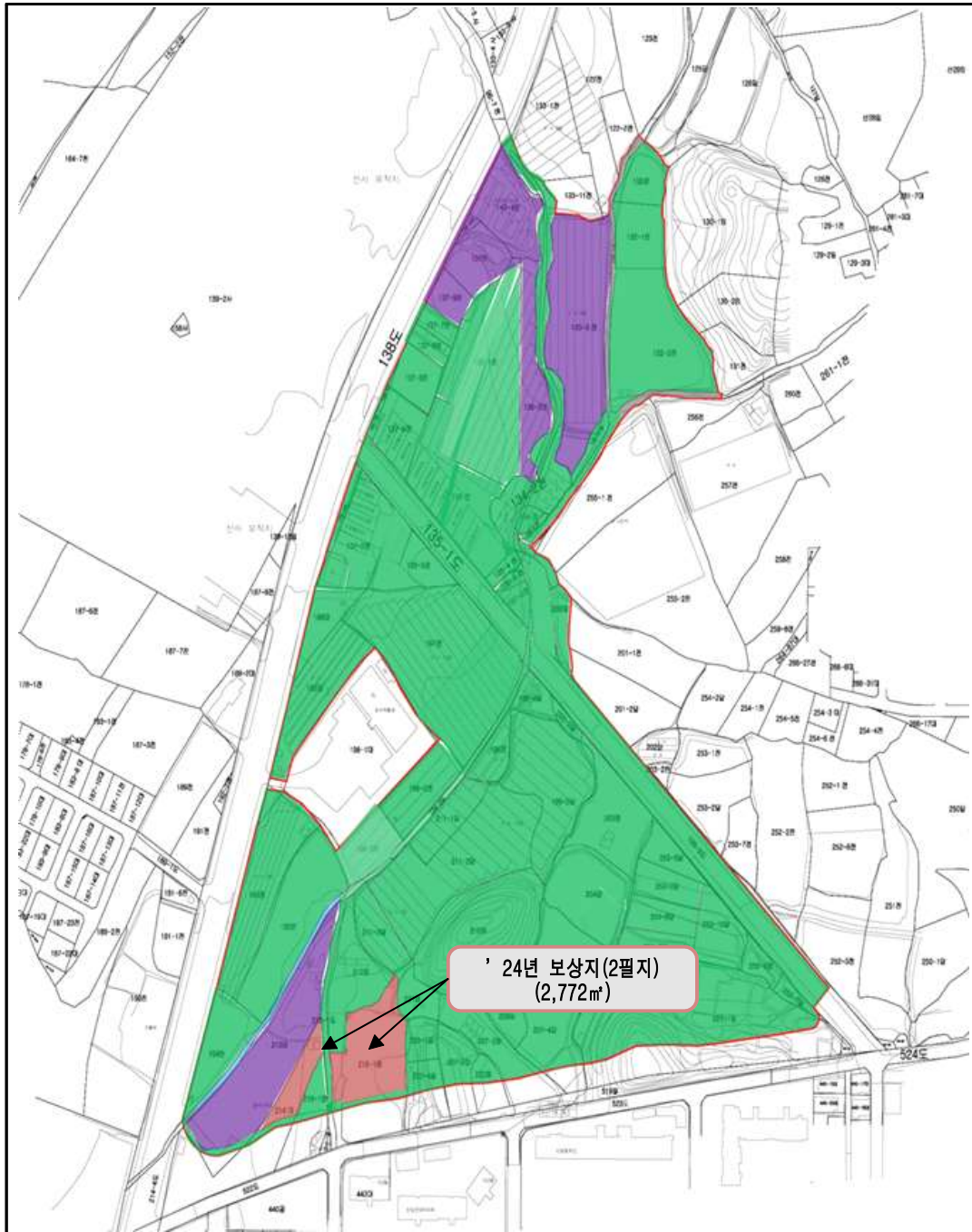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 리명세	
계		2필지		2,772	2,772							
1		암사동 219-1	잡종지	2,134	2,134	심*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로 **길 **(**동)	1	서울**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		암사동 214-6	대	638	638	박*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길 **, 4동 ***호(**동)	1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보 상 용 지 도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공향하이웨이 (주)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	서울시계 내 한강 (방화대교 인근)	선박 1척 (77.25㎡)	방화대교 정밀안전 점검	2024.1.29. ~ 2024.2.8.	2024.1.26.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3-1번지 등 3필지
 - 면 적 : 562.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당산배드민턴장 설치
 - 개 요 : 배드민턴장 4면, 햇빛가림막 구조물 1개소, 관리시설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9.10.30. ~ 2024.06.30.
(변경) 2024.01.24. ~ 2029.01.2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내 한강 L=41.5km
 - 면 적 : 325.476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르네상스 사업 중 전망카페 용도변경
 - 내 역 : 전망카페 8곳 중 1곳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직녀카페) → 숙박시설)
(당초) 전망카페 8곳
(변경) 전망카페 7곳, 숙박시설 1곳
5. 점용기간 : 2024.01.25.~2029.1.24.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03.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도로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5-1
 - 면 적 : 4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
 - 내 역 : 엘리베이터 1식
5. 점용기간 : 2024.01.29. ~ 2029.01.28.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03.3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